

만주학회·한중교류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만주와 그 주변 세계 : 만주에서 보는 동아시아

일시 : 2012년 12월 1일(토) 10:00 ~ 18:00

장소 : 글로벌 플라자 310호 회의실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만주학회·한중교류연구원

- 학술회의 일정 -

10:00 - 10:10	개회사	윤재석(한중교류원장) 김재용(만주학회장)
10:10 - 10:40	기조발표 고대의 만주	권오중(영남대)
1부 사회자: 이개석(경북대)		
10:40 - 11:10	북아시아 유목민의 역사 요람 홍안령	윤은숙(강원대)
11:10 - 11:40	쿠빌라이 시기 친킴-아흐마드 갈등의 배경과 성격	고명수(고려대)
11:40 - 12:00	토론 시간 토론자:윤영인(영산대), 최윤정(경북대),	
12:00 - 13:00	점심 식사	
2부 사회자:서정흠(안동대)		
13:00 - 13:30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	한성주(강원대)
13:30 - 14:00	명청시대 고지도를 통해 본 변경지대 연구: 압록강, 두만강변을 중심으로	남의현(강원대)
14:00 - 14:30	清代 정책결정 기구 속의 滿洲人	송미령(전북대)
14:30 - 15:00	토론 시간 토론자:박정민(전북대), 방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홍성구(경북대)	
15:00 - 15:20	휴식 시간	
3부 사회자:노기식(동북아역사재단)		
15:20 - 15:50	범월자와 국가의 경계: 조선과 청 사이	이동진(경북대)
15:50 - 16:20	국경지대에서 국경선으로: 19세기말 청과 조선의 관계	김선민(고려대)
16:20 - 16:40	토론 시간 토론자: 박장배(동북아역사재단), 박선영(포항공대)	
16:40 - 18:00	종합토론/ 폐회 사회자: 김재용(만주학회장)	

- 목 차 -

고대의 만주.....	권오중	1
북아시아 유목민의 역사 요람 興安嶺.....	윤은숙	7
쿠빌라이 시기 친킴-아흐마드 갈등의 배경과 성격.....	고명수	22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	한성주	40
명청시대 고지도를 통해서 본 변경지대.....	남의현	57
淸 정책 결정기구 속의 滿洲人.....	송미령	82
범월자와 국가의 경계: 조선과 청 사이.....	이동진	101
국경지대에서 국경선으로 - 19세기 말 청과 조선의 관계.....	김선민	133

고대의 만주 — ‘주변’과 ‘중심’으로서의 역사 —

권 오 중(영남대 명예교수)

1. 머리말
2. 요동지역의 특성
3. 요동의 종족 문제
4. 正史의 기록 문제

1. 머리말

고대라는 시간 속에서 만주 지역의 이름은 ‘요동’이라고 부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요동은 그 이름이 지닌 “요원한 동쪽”이라는 의미대로 고대의 중심지인 중원과 멀리 떨어져 격리된 지역이었다. 중원과 요동을 연결하는 교통 여건이나 요동과 동북 교통로 주변 주민의 종족 분포 등 인문 지리 환경은 요동을 고립된 지역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중원과 격리되어 고립된 지역으로서의 특징은 중국인에게 일찍부터 “遼東豕(요동돼지)”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고루하고 낙후한 대상을 빗대어 일컫는 “요동돼지”라는 용어의 유래는 일찍이 기원전의 시기로 소급한다.

요동이 중원지역에 비해 고립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지역과 비교한다면 그 입장은 판이하다. 요동은 위치상으로 주변의 새외 종족과 접촉이 용이하였을 뿐 아니라 요동이 향유하였던 문화와 문명의 수준 역시 주변의 종족들에 비해 선진적이었다. 중국의 범주에선 낙후된 상태였던 요동지역이 외곽지대라고 할 동아시아지역에서 선진적일 수 있었던 것은 군현제 때문이었다. 군현으로서 요동의 위상이 비록 변경에 자리한 邊郡이었다고 하더라도 요동이 구축한 체제는 동이지역 일대에선 우수한 선례로서 모방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말하자면 고대의 요동은 중국의 범주에선 주변의 위치이었으나, 요동이 자리한 지역 일대에선 중심의 위치이었던 셈이다.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주변’과 ‘중심’으로서의 이중적 위상은 고대라는 시기에만 한정된 현상으로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南越, 西域, 西南夷 지역에 개설된 변군지역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과 중심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고대의 요동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동이 지닌 주변적이거나 중심적 속성에 대한 확인은 요동사와 만주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에서는 요동 역사가 안고 있는 지역 특성과 종족 그리고 사료의 문제를 주변과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하도록 하겠다.

2. 요동지역의 특성

요동군이라는 기구의 존재와 위치 및 그 편제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 내용을 전하는 사료는 『한서』 지리지이다. 이에 의하면 요동군은 18개의 縣과 27만3천의 인구를 보유하고, 襄平(현재의 遼陽)을 중심지로 삼는 행정기구이다. 이 기록은 전한 말 平帝 2년(AD.2)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다. 지리지가 전하는 전한 말기 요동군의 실상을 의심할 수 없으나 그 시기를 전국시대나 고대 제국의 건립 초기로 소급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시기이다. 하나는 전국시대 燕 昭王(311-279BC.)의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진 제국의 수립 직전(222BC.) 秦軍의 원정에 의해 燕이 멸망하던 시기이다.

소왕의 시기 연나라는 장군 秦開의 활약으로 東胡의 땅을 빼앗아 그 자리에 요동군, 요서군을 비롯한 다섯 개의 군을 설치했다고 한다.¹⁾ 기원전 222년 진왕(시황제)은 장수 王賁을 보내 요동으로 도주해 있던 연왕(喜)을 체포하고 그 땅을 진의 영토로 병합하였다고 한다.²⁾ 위 두 시기의 요동이 『한서』 지리지에서 전하는 요동군의 위치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두 시기와의 시간적 차이를 비교할 때 약 3세기 그리고 2세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리지의 양평과 연의 중심지인 북경과의 거리는 약 7백km 이상이고, 진의 수도였던 함양과의 거리를 추산하면 2천km를 상회한다. 전국시대와 진 제국의 초기에 만주지역에 군현제라는 직할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리지에서 전하는 양평을 수도로 삼는 요동군은 한 무제 이후의 상황이 아닐까 한다. 무제 이후엔 요동의 외곽지역에 낙랑군이나 현도군과 같은 또 다른 중국 군현이 설치되었던 만큼 무제시기 이후에는 더 이상 요동군의 위치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요동이 격리 고립된 지역이라는 점에선 변함이 없었다. 요동을 왕래하는 먼 여정도 문제였지만, 교통로의 지형 조건 역시 순탄한 왕래를 제약하였다. 중원 방향에서 요동으로 들어오기 위한 관문에 해당하는 ‘遼澤지대’는 엄청난 장애지대였고, 해변에 인접한 ‘遼西走廊’ 역시 평이한 교통로는 아니었다. 강우기의 요서주랑은 해변지역의 침수로 왕래가 차단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험한 산간지대를 우회하는 불편을 자주 겪어야만 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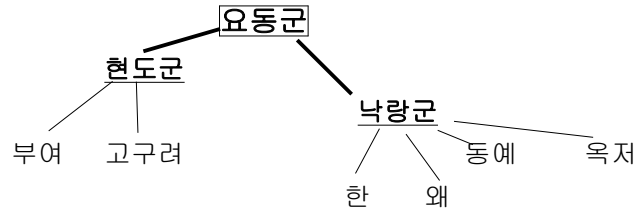
요동지역의 격리 고립된 현상은 요동군이 자족적이며 독립적 성향을 갖도록 하였다. 요동군은 자체의 주민만이 아니라 군 외곽 東夷와의 관계에서도 전위의 역할을 하였다. 呂后 때(195-180BC.) 조선과 맺은 ‘外臣의 협약’은 요동태수의 활약에 힘입

1) 『史記』 110 匈奴列傳, 2985-2986쪽.

2) 『사기』 6 秦始皇本紀, 234쪽.

3) 『三國志』 11 田疇傳, 342쪽에 의하면, 曹操는 207년 遼西의 오환을 토벌하기 위해 柳城으로 원정하였을 때 遼西走廊의 침수로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盧龍塞를 경유하는 험준한 노정을 택하였다.

은 것이었다. 조선이 멸망하고 그 지역에 漢 군현이 개설된 이후로도 요동군의 역할은 중단되지 않았다. 낙랑군과 현도군에 대해 동등한 군이 아닌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 신설된 두 군이 子郡의 위치라면 요동은 母郡의 입장에서 이들을 후원하였다.(그림 참조)



현도와 낙랑군은 동이의 여러 종족을 분담하여 저들의 內屬을 주관하였던 만큼 요동의 위상은 자연 동이세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요동에서 일어난 변화는 낙랑군과 현도군은 물론 동이의 여러 종족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한 대표적 예로는 공손씨정권이 왕국체제를 구축하였던 후한말~삼국시대 반세기의 역사와 祭彤이 요동태수로 재임하던 후한 초기 30년 동안의 시기를 꼽을 수 있다. 이 기간은 요동지역이 중원 정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이고 자족적 모습을 보이던 시기로, 왜를 포함한 동이지역의 중심지로서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3. 요동의 종족 문제

요동지역에는 군의 외곽은 물론 군의 내부에도 적지 않은 夷人들이 거주하였고, 이들은 원주민으로서 요동군의 주민을 구성하였다. 중국 주변의 지역 가운데 “遼東豕”라고 요동을 비하하는 별명이 붙게 된 것도 그 근본은 주민 문제 때문일 것이다. 요동지역의 주민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종족은 東胡와 穢貉(濊貊)이 아닐까 한다. 전국시대의 연나라가 요동을 비롯한 5군을 설치하는 데에는 동호의 영지를 빼앗은 사건이 전제되었고,⁴⁾ 한편으로 한 무제의 조선 원정은 흉노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예맥을 점령함으로써 가능하였다.⁵⁾ 이들 종족은 한족의 침입과 진출로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기도 하였으나 그 일부는 故地에 남아 새로이 진출한 한족과 더불어 요동의 주민을 형성하였다.

요동의 주민이었던 夷人 원주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部都尉이다. 부도위는 군 안에 거주하는 이민족 원주민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성격은 군현제의 원리와 원주민의 재래적 질서가 절충된 체제이다.⁶⁾ 따라서 부도위는 해당 지역 주민

4) 注1)과 같음.

5) 앞의 책, 2891 및 2913쪽.

의 종족 성분을 판별할 수 있는 지남석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요동군에는 동부, 중부, 서부의 세 지역에 부도위가 개설돼 있었다. 필자의 추산에 의하면, 각 부도위에 소속된 현의 수는 세 현으로서 모두 아홉 현이 부도위 체제 아래에 있었다. 부도위 체제가 아닌 일반 현에서도 夷人の 존재를 상정해야 하는 만큼, 전한 후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동군 전체 18현의 주민 가운데 반수 이상이 이인(胡)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요동의 주민 가운데 이인의 숫자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본토의 중국인 중에는 요동지역을 오랑캐(戎貊, 東夷)의 고장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⁷⁾ 더 나아가 요동지역의 주민과 재물 모두 중국을 이롭게 한다거나 부유케 하기에 부족하다는 ‘遼東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주장에서는 요동에 대한 단순한 차별만이 아니라 요동을 중국과는 다른 異域으로 구분하고 분리시키려는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요동을 중국이란 몸통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실체인 ‘海外(외국)’로 간주하는 입장은 위와 같은 인식이 전제되었음이 분명하다.

公孫淵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三世를 이어 遼東을 소유하였다. 天子는 그곳을 絕域이라고 여겨 海外의 일을 위탁하니, 드디어 東夷는 격리 단절되어 중국과 소통할 수 없었다.⁹⁾

요동에 대한 ‘絶域’ ‘海外’로의 판단은 정상적 시기의 인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중국제국이 혼란의 정국과 분열의 시기를 맞아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요동을 ‘중국’과 차별하고 구분하는 인식이 전제된 결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요동을 단절된 구역으로 보아 ‘해외’로 간주하여 분리시키는 처사는 도마뱀의 행동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곤경에 처한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끊고 도망치 듯, 중국 역사에서의 요동은 ‘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끊어버릴 수도 있는 異域, 즉 도마뱀의 꼬리에 해당하는 처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중국과 단절된 상태에서 요동은 해외의 한 구성원이자 해외의 종주로서 활약하였다. 동이의 여러 종족을 관리하였는가하면 이를 위해 낙랑, 현도군을 정비하고 지원하기도 하였다. 공손씨의 경우엔 대방군을 새로 설치하여 변화하는 동이의 판도에 새롭게 부응하였다. 요동의 실권자인 공손씨에겐 한반도 이남의 韓(삼한)과 倭까지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판도였으니, 이 시기 요동은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중심(中華)이자 종주의 위치였다.

6) 拙稿(2004), 「漢代 邊郡의 部都尉」 『東洋史學研究』 88, 28-31쪽.

7) 『삼국지』 53 吳書8 薛綜傳, 1253쪽 및 卷57 吳書12 陸瑁傳, 1337쪽.

8) 『삼국지』 14 蔣濟傳, 453쪽 注에서 인용된 「司馬彪戰略」

9) 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為其絶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삼국지』 30 東夷傳, 840쪽)

4. 正史의 기록 문제

고대의 만주지역에 관한 자료로서 正史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요동에 관한 정사의 기록은 매우 부족하여 제대로 된 만주 역사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자료의 부족은 정사의 성격 자체가 宮廷史家들의 기록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동이 지닌 주변성과 낙후성 그리고 이인의 고장이라는 요인 등도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의 전체 분량이 적기는 하지만 고대의 요동에 관한 정사의 기록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요동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다. 요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하는 단편적 기록 외에 요동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드물다. 예외라고 하면 『후한서』 열전에 수록된 祭彤의 기록(권20)과 『삼국지』 魏書의 열전에 오른 公孫度 一家에 관한 기록(권8)을 들 수 있다. 두 열전 모두 요동태수로 재직 한 인물들에 관한 기록으로서, 후한 초기의 제도는 30년 그리고 후한 말에서 삼국시대 초반까지 3대 4인이 지위를 세습한 공손씨 일가는 50년 동안 요동태수로 재임하였다. 위의 두 시기 모두 왕조교체의 혼란기에 해당하지만 이처럼 태수 직에 오랜 기간 재직 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기 어렵다. 앞에서 주목한 격리성이나 고립성과 같은 요동군이 지닌 특성으로부터 이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들의 열전에서 요동에 관한 내용은 열전 인물의 공적이나 행적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언급되었다. 장기간 재임하였던 덕분에 열전에 기술되어 있는 요동 관련 기록은 직접적인 내용이 많아 단발성 기사가 지닌 기록으로서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충해주고 있다.

앞의 두 열전의 기록이 비교적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 분량은 여전히 간결하다. 때문에 이들 사료에 대한 정확한 해독을 위해선 얼마간의 “보는 눈”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공손씨 일가의 경우 저들의 최후는 ‘叛徒’로 규정되었고, 정부군의 토벌로 공손씨왕국이 붕괴되었던 만큼 공손씨를 대하는 궁정사가들의 시선은 그만큼 냉소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손씨에 관한 평가에서 “威行海外”나 “雄張海東”과 같은 표현은 과장된 賞讚의 표현이라기보다 공손씨가 이룩한 업적을 최소한으로 축약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음은 요동에 관한 간접 기록이다. 요동의 안팎엔 여러 종족이나 국가가 자리하고 있었던 때문에 이들 이민족에 관한 기술은 간접이나마 요동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동 인근에 포진한 종족과 국가를 검토하는 데 자료의 보고 역할을 하는 것은 『삼국지』 동이전이다. 동이전의 기록은 『사기』 외국열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立傳할 외국을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두 문헌의 차이가 상당하다. 『사기』에선 중국에 병합되어 漢帝國의 군현에 편입된 대상여부를 불문하고 중국과 관계를 맺은 주변의 국가 모두를 입전하였음에 반해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군현에 편입된 대상은 배제한 채 군현 외곽의 국가나 종족들만을 열전의 대상으로 삼았다.

『삼국지』 동이전의 내용은 요동지역을 포함한 그 인근에 거주하는 이민족 모두를 망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이전에 입전되지 못한 대상이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삼국지』와 『후한서』 모두 동이전의 기록에서 군현의 범위 안에 편입되어 거주하던 원주민 종족을 배제한 때문이다. 이에 적합한 예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穢貉이다. 다음 사료의 예를 보도록 하자.

① (121년 4월)穢貉은 다시鮮卑와 더불어遼東을 노략질하였다. 요동태수蔡颯이 추격하였으나 전사하였다.(『後漢書』 5 安帝紀, 232쪽)

② 高柳 以東과 濊貉 以西는 선비가 수십 部衆으로서 比能·彌加·素利가 지역을 나누어 통솔하는데 각각 경계가 있었다.(『삼국지』 26 田豫傳, 728쪽)

위의 사료에 보이는 ‘예맥’은 동이전에 立傳되어있는 부여나 동예로 보기 어렵다. 그 주거지가 선비의 부락과 인접해 있고, 선비와 더불어 요동을 공격했던 ‘예맥’을 동이전에서 입전한 어떠한 종족에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기록②에 소개된 주거지로 미루어 ‘예맥’은 요동군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거주하던 종족일 것으로 짐작한다. 전한 후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들은 요동군중부도위에 거주하던 ‘예맥’이 아니었을까 추론해본다. 요동군 안에서 생활하던 예맥의 존재는 현재로선 가설의 단계로서 앞으로 구체적 논증과 토론의 단계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예맥’에 관해 학계에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지역과 관련된 정사 기록의 효용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고대 만주지역에 관한 정사의 기록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료로서의 효용성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선학들로부터 전하여 온 인습적인 해석의 틀로 말미암아 이제껏 주목받지 못했던 사료들도 있을 것이며, 관점 여하에 따라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값진 기록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발굴하여 요동사, 만주사 연구에 내실을 기하는 일은 현재의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일 것이다.

북아시아 유목민의 역사 요람 興安嶺

- 拓拔鮮卑와 室韋의 활동을 중심으로 -

윤은숙(강원대학교)

1. 머리말
2. 흥안령의 지리적 특성
3. 拓拔鮮卑의 원거주지 흥안령
4. 실위의 활동 무대 흥안령
5. 맺음말

1. 머리말

興安嶺은 남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드넓은 몽골 스텝과 동쪽으로 비옥한 만주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거대한 산맥이다. 또한 주변에 에르구네강, 흑룡강,嫩江, 송화강 등과 연결된 3,000여개의 지류들이 흐르고 있기에, 풍부한 수자원을 배경으로 비옥한 초원과 농경지대가 공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흥안령의 울창한 삼림은 야생동물의 寶庫로써 수렵 생활로 출발한 고대 북아시아계 민족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 삼림으로 둘러싸인 흥안령의 폐쇄적인 자연 환경은 자체적인 역량을 축적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축적한 집단들이 개방적인 몽골 스텝, 遼東과 中原으로 진출해 고대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흥안령은 지형적·경제적·전략적으로 북아시아계 유목민들의 태동지로서 고대 ‘북아시아 유목민족들의 歷史 搖籃’으로까지 칭송되는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¹⁾

흥안령은 북아시아계 민족들의 탄생지인 동시에 생활의 터전이었다. 고대 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유목민인 선비, 오환, 거란과 몽골 등의 탄생지였을 뿐만 아니라 숙신, 읍루, 말갈, 여진 등의 통구스계 수렵민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특히 拓拔鮮卑는 흥안령의 嘎仙洞을 모태로 활동하다가 남하해 北魏를 건립했고, 몽골의 선조인 蒙兀室韋는 에르구네강과 흥안령 일대에서 성장 발전하였다. 이들이 9세기에 몽골리아로 들어가 후일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역사상 초유의 초대형 국가인 몽골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흥안령은 고대 북아시아 몽골계 유목 민족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흥안령 지역을 유목지와 농경지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했던 이들은 몽골이었다. 특히 칭기스칸의 말제 가문인 옷치긴(Otchigin) 왕가는 이 지역의 전략적, 경제

1) 翦伯贊, 「內蒙訪古」, 『人民日報』, 1961, 12, 13.

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성장·발전했다.

북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홍안령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도 홍안령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선비족의 고향인 가산동에서 출발한 北魏史 전반에 대한 연구²⁾나 실위사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³⁾ 홍안령이 많은 북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의 탄생지인 동시에 활동무대였다는 사실은 홍안령이 단순한 산맥이라는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북아시아 유목민족들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안령 자체에 주목해서 홍안령을 터전으로 활동해 왔던 몽골계 유목민족들의 역사상을 살핌으로써 홍안령이라는 공간이 역사 주체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홍안령의 지리적 특성

몽골초원을 중심으로 그 동쪽 주변부에 해당하는 홍안령은 북쪽의 바이칼 지역과 더불어 몽골리아를 감싸는 광활한 삼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홍안령의 삼림지대는 상대적으로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일찍부터 많은 북아시아계 민족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었다. 그들은 홍안령의 삼림지대를 중심으로 채집, 수렵과 약간의 목축을 병행하며 소규모의 정치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문사료에서는 이들을 ‘東胡’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홍안령의 서쪽과 동쪽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다.⁴⁾ 홍안령 삼림의 폐쇄적인 자연환경 때문에 그들은 국가 단위의 정치집단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후일 몽골리아에서 空洞化현상이 발생하자, 수렵 삼림민으로 출발한 북아시아계 민족들은 점차 삼림환경에서 벗어나 광활한 초원으로 이동하여 거대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청나라 때 붙여진 이름인 홍안령은 만주어 ‘아이신 아린(Aisin alin)’의 한자 음역명

2) 탁발 선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金榮煥, 「拓拔鮮卑 歷史時期的 諸問題考釋—『魏書』 「序記」을 中心으로」, 『明知史論』 8, 명지사학회, 1997. 金榮煥, 「拓拔鮮卑의 傳說時期小論—『魏書』 「序記」을 中心으로」, 『魏晉隋唐史研究』 2, 위진수당사연구회, 1996. 김영환, 「拓拔鮮卑 第二次 南下過程의 諸問題考釋」, 『明知史論』 9, 명지사학회, 1998. 朴漢濟, 『中國胡漢體制研究』, 일조각, 1988. 薇元, 『北朝胡姓考』, 中華書局, 1962. 馬長壽, 『烏桓與鮮卑』, 上海人民出版社, 1962. 田剛, 「嘎仙洞與拓拔鮮卑의 歷史發展」, 『民族歷史』, 黑龍江民族叢刊, 2004-4期. 李吉和, 「鮮卑族在西北地區的 遷徙活動」, 『民族歷史』, 黑龍江民族叢刊, 2003-3期. 朱泓, 「從札賚諾爾漢代居民的體質差異探論鮮卑族的人種構成」, 『北方文物』, 第2期, 1982 등 다수.

3) 실위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지우허 씬, 북방사 연구팀 옮김, 『몽골인 그들은 어디서 왔나』, 소나무, 2009. 潘其風·韓康信, 「東漢北方草原游牧民族人骨의 研究」, 『考古學報』, 第1期, 1982. 王頰, 「室韋의 族源」, 『內蒙古社會科學』, 1984-3. 鄭英德·劉光勝, 「室韋部落新探」, 『中央民族學院學報』, 中央民族學院, 1982. 趙越, 「論呼倫貝爾發現의 室韋遺跡」, 『內蒙古文物考古文集』,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趙展, 「對蒙古族起源于“蒙兀室韋”說的 質疑」, 『學習與探索』, 學習與探索雜誌社, 1982 등 다수.

4) 司馬遷, 『史記』, 「匈奴列傳」.

으로 金山이라는 뜻이다. 청대에 홍안령이 금산을 의미하는 아이신 아린으로 불렸던 것은 알타이(Altai)산과 서로 대칭해서 알타이산을 西金山으로 칭하고 홍안령을 東金山이라 했던 점에서 연유한다.⁵⁾ 실제로 알타이산과 홍안령 일대는 지금도 금 생산지로 유명하다. 일찍이 홍안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몽골인의 선조들은 홍안령을 몽골어로 ‘깜깜할 정도의 수목으로 둘러싸인 낮은 산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라운 지둔(Qara,un jidün)⁶⁾ 즉, ‘黑山’으로 부르기도 했다. 또한 홍안령을 ‘칸울(Khan Uul)’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칸의 산’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을 초월하는 큰 산이라는 의미이다.⁷⁾

홍안령은 대·소·외 홍안령으로 구분되는데, 이중에 대홍안령은 북아시아계 민족들의 기본적 생활터전이 되었던 곳으로 현재 내몽골자치구와 黑龍江省에 걸쳐 있다.⁸⁾ 대홍안령은 높이 800-1400m정도로 낮은 산맥은 아니지만, 주변의 고도가 600m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깝다. 대홍안령은 총 길이가 1,200km, 넓이는 200-300km로 동북에서 남서 방향으로 비스듬히 뻗어서 두드러진 비대칭을 형성하여 마치 만주의 등뼈 모양을 하고 있다. 대체로 동쪽은 가파른 급경사를 이루는 반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남쪽은 承德평원, 북쪽은 흑룡강으로 연결되어 있다. 소홍안령은 대홍안령 산맥의 북단부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 산맥으로써 흑룡강과 송화강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대체로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는데 평균 해발고도는 약 500-800m정도이다. 삼림자원이 풍부하여 북부에는 사할린 소나무가 중심이 되는 침엽수림, 남부에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수림이 무성해서 林海로 불리고 있다. 대·소 홍안령 이외에 흑룡강의 북쪽에는 외홍안령 산맥이 있는데,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이 산맥은 러시아 영토에 귀속되었고, 러시아에서는 스타노보이(Stanovoy) 산맥이라고 부른다. 길이 725k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로 형성된 외홍안령에는 울창한 타이가 지대가 펼쳐져 있다.⁹⁾ 1689년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조인된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이 산맥은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었고, 중국에 있는 대·소 홍안령과 마주보고 있다.

홍안령은 만주의 松嫩평원과 몽골의 쿨룬 부이르 초원을 가르는 분수령으로써 북아시아 유목민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홍안령 동쪽의 송눈평원은 송화강과 준강의 퇴적물이 쌓여서 이루어진 광활하고 비옥한 黑土地대로, 현재에는 밀, 옥수수, 대두 등이 많이 생산되는 양질의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쪽의 쿨룬 부이르 초원은 물과 풀이 풍부한 대초원지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고원과 삼림의 중간지

5) 滿洲事情案內所編, 『滿洲地名考』, 慧文社, 2007, p.51.

6) 유원수, 『『몽골비사』 지명의 몽골어 요소』, 『알타이학보』, 한국알타이학회, 1997, pp.100-111에서 Qara,un jidün에 대해 Qara,un은 캄캄한(?), 어두운(?)으로, jidün은 (숲으로 덮인 낮은) 산맥으로 해석했다. Qara,un jidün은 캄캄한 숲으로 덮인 낮은 산맥으로 보았다. 村上正二는 Qara,un을 무성한 수목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장소)라고 해석했다.

7) 柏原孝久, 濱田純一 共著, 『蒙古地誌』, 中卷, 富山房, 1919, p.641.

8) 홍안령은 본래 대·소·외 홍안령으로 구분되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대홍안령 만을 다루려 한다. 따라서 대홍안령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홍안령’으로 표기하겠다.

9) Eugene A. Simonov and Thomas D. Dahmer, *Amur-Heilong River Basin Reader*, Manufactured in Hong Kong by Power Digital Printing Co. Ltd, 2008, p43.

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경도 가능한 일종의 목농 혼합지대이다.

홍안령은 현재 중국 최대의 원시림구로 삼림면적이 14%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10대 산림의 하나이다. 홍안령의 밀림은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3,000여종의 다양한 식물류가 운집해 있고, 사슴, 노루, 담비, 북극 여우 등의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홍안령의 울창한 삼림은 “소나무와 떡갈나무들이 40-50 정도로 둘러있어 시력을 다하여, 숲을 뚫고 가는데 낮임에도 해를 보지 못한다. 돌의 색은 얼룩덜룩하고 천리 같이 긴 모양이 화폭과 같다”¹⁰⁾라고 할 정도로 낮에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째깍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홍안령 밀림형성의 주된 요인은 水系로써, 홍안령의 서쪽은 몽골고원에서 발원한 오논강, 케를렌강과 실카강이 모두 에르구네 강으로 흘러 들어와 거대 수계를 형성하고 있고, 산맥의 동쪽에는 요하수계, 송화강과 눈강 수계가 흐르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흑룡강 수계로 연결된 조밀한 3,000여개의 지류와 500여개의 호수를 형성하고 있다.

홍안령을 분기점으로 기후 역시 명료한 차이를 보인다. 산맥의 동쪽은 남동풍이 불어 연강수량 500m이상의 습윤한 기후인데 반해 서쪽은 연강수량 300mm 정도로 반습윤 초원기후가 나타난다. 산맥의 북쪽지역은 겨울 기온이 영하 31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로 대부분 영구 동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산맥의 남쪽지역은 완만한 半건조지대가 많고 1월 평균기온이 영하 21도, 연 강수량 250mm정도로 북부보다 더 온화하고 건조하다. 홍안령 일대의 기후는 냉대, 온대 그리고 대륙성기후가 차례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겨울은 매우 춥고 길며 여름은 짧고 시원하다. 각 기후의 교차로 말미암아 산맥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울창한 침엽수림은 점차 활엽수림으로 바뀌며 수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홍안령을 경계로 지형, 기후와 강수량의 명료한 차이는 이 지역의 민족구성과 생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채취, 수렵과 어로 등의 원시적인 생산 방식에 의거해 생활해야 했던 초기의 북아시아 민족들에게 홍안령은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최적지였다. 따라서 이들이 홍안령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지역의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성장했기에 홍안령은 북아시아계 민족의 역사 요람으로 불릴 수 있었다.

홍안령 산맥의 서쪽은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상 내몽골 자치구에 해당하는데,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헨티 산맥으로 연결되는 몽골 고원과 접하게 된다. 이 지역은 산맥의 동쪽에 비해 강수량이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연강수량 300mm정도의 중초원지대로 천연 목초지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지가 촘촘하고, 풀의 길이가 40cm정도의 草甸 초원을 형성하고 있기에 草原城으로 불리고 있으며, 북아시아 유목 부족들 사이에 끊임없이 목초지 다툼이 벌어졌던 분쟁지역이기도 하다.¹¹⁾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목민들은 몽골 고원 보다 덜 건조하고 어느 정도의 강수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리아의 유목민들보다 이동거리가 짧고 사육 가축에서 말과

10) 方式濟 撰, 『龍沙紀略』, 中華書局, 1991.

11) 조병학, 「內蒙古呼倫貝爾지구의 자연지리 및 歷史考」, 『몽골학』6호, 1998, p.4.

양의 비중보다 소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완만한 지형과 더불어 하천 호수의 저지와 단구가 발달되어 있어서 유목과 더불어 일정 정도의 농경도 가능한 지역이다. 흥안령의 서쪽지역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대대로 선비, 실위, 거란과 몽골족 등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만주로 연결되는 흥안령의 동쪽지역은 툰드라 기후와 냉대기후가 교차하는 곳으로 이 지역의 생태적 특성상 순록 사육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순록사육은 불안정성 때문에 가축의 수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보조적인 식량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순록 사육이외에 이 지역의 울창한 침엽수림과 수계를 이용한 수렵과 어로가 부차적인 생업수단이 되었다.¹²⁾ 또한 산맥의 동남쪽 지역은 풍부한 강수량과 눈강 수계의 지류로 많은 호수와 강들이 발달해 있고, 퇴적물들로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농경도 가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대로 肅愼, 挹婁, 靺鞨, 女眞 등의 통구스계 수렵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흥안령 일대에는 현재까지도 몽골족, 다구르족, 에벤키족과 오로촌족 등이 유목, 수렵, 어로와 농경 등의 생업을 유지하며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몽골족은 흥안령 서쪽 지대인 쿨룬 부이르 초원을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하고 있고, 몽골계통의 다구르족은 눈강 유역에서 송눈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 농경과 수렵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통구스계의 에벤키족과 오로촌족 등은 산맥의 북쪽에서 순록을 사육하며 수렵과 어로 생활을 할 정도로 흥안령의 자연 환경은 이 지역민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拓拔鮮卑의 원거주지 흥안령

기원전 3세기 북아시아는 흉노의 지배하에 있었고 흥안령 일대는 흉노의 左賢王에 의해 통제되었다.¹³⁾ 그러나 좌현왕의 통치 중심이 지금의 실링골맹 중부에 위치해 있어서, 흥안령의 삼림지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좌현왕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¹⁴⁾ 이 시기 흉노의 통제 하에 있던 선비는 흥안령의 동북부 大鮮卑山을 중심으로 수렵에 종사하고 있었다.¹⁵⁾ 선비라는 이름은 이 대선비산에서 유래했는데,¹⁶⁾ 선비의 이름과 관련해 『몽골비사』 239절에 나오는 시르비(Sirbi, 失必兒)가 선비의 대응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¹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비를 한자로 음차한 경우에 鮮卑, 失韋, 室韋, 西契, 西北, 席白, 席北, 席帛, 錫卜, 什伯, 實伯, 喜伯 등

12) 하자노프 著, 金浩東 譯, 『遊牧社會의 構造 -역사인류학적 접근-』, 지식산업사, 1990, pp.74-80.

13) 司馬遷, 『史記』, 「匈奴列傳」.

14) 周清樹 主編, 『內蒙古歷史地理』, 內蒙古大學出版社, 1994, p.30.

15) 『後漢書』, 「烏桓鮮卑列傳」.

16) 『삼국지위지』, 「선비전」

17) 李文田注, 『元朝秘史』, 中華書局, 1985.

으로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북위를, 건립한 拓拔鮮卑의 발상지는 가산동(嘎仙洞, 현 오로촌 自治旗 我里河鎮 서북 10km지점)으로 흥안령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산동은 높이 10m, 너비 20m의 자연 동굴로써, 천 여 명이 집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평한 내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부의 적이나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¹⁸⁾ 『魏書』 「序紀」에서는 가산동 일대에서 생활하던 탁발선비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나라에 大鮮卑山이 있었기에 이름으로 되었다. 그 후에 대대로 군장이 幽都의 북쪽, 廣漠의 들판을 통치했고, 畜牧하며 옮겨 다녔고 射獵을 業으로 했다.¹⁹⁾

위의 기술은 탁발선비의 선조들이 흥안령의 원시 밀림에서 수렵을 중심 생업으로 하며 가축을 사육하고 이동생활을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산동 일대의 자연 환경은 침엽수림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렵생활을 주된 경제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후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烏洛侯, 室韋, 庫莫奚 등이 모두 유목 보다는 수렵위주의 생활을 했던 것도 흥안령의 자연 환경과 유관하다. 예를 들면 오락후는 “백성들은 용맹함을 숭상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에 도둑이 없다. 射獵을 좋아한다”²⁰⁾고 하여 그들이 수렵과 사냥을 좋아하는 수렵민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막해의 경우도 “射獵을 잘하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²¹⁾고 해서 주로 수렵 위주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위는 ‘노루와 사슴이 많아 사냥을 주된 일로 삼고’ “모두 담비 잡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²²⁾고 함으로써 흥안령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북아시아계 종족들이 대체적으로 수렵을 주된 생업으로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증명하는 것이 가산동에서 출토된 다량의 石鏃, 骨鏃과 노루, 사슴과 야생돼지 등의 야생동물 뼈 등이다.²³⁾ 즉, 흥안령의 수렵지대에서 활동했던 탁발선비를 포함하는 종족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삼림 수렵민으로써 유목 보다는 수렵을 중심 생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가산동을 중심으로 수렵생활을 하는 가운데, ‘拓拔毛’시기에 이르러 “36國과 99개의 大姓을 거느려 북방에 위엄을 떨치니 북중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²⁴⁾고 한 점은 ‘탁발모’시기에 부락 연맹체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²⁵⁾ 또한 拓拔越 시기에 이르면 “여러 부 99姓이 있었다”는 내용에서도 이 시기 탁발선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18) 米文平, 「鮮卑石室的發現與初步研究」, 『文物』, 1981.

19) 『魏書』 권1, 「序紀」.

20) 『魏書』 권100, 「烏洛侯傳」.

21) 『魏書』 권100, 「庫莫奚傳」.

22) 『隋書』 권84, 「室韋傳」.

23) 田剛, 「嘎仙洞與拓拔鮮卑의 歷史發展」, 『民族歷史』, 黑龍江民族叢刊, 2004-4期, p.64.

24) 『魏書』 권1 「序紀」.

25) 朴漢濟, 『中國胡漢體制研究』, 일조각, 1988, p.143.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탁발모는 가산동 일대에 산재한 36개의 國과 99개의 姓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고, 탁발월 시기에 이르면 99성을 지배하는 단계에 이르러 부락연맹체의 실질적인 패자가 되었다. 탁발선비가 가산동 일대의 정치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패자로 군림함에 따라 이어서 拓拔推寅 시기에 大澤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부락 이동과 같은 큰 사건은 강력한 통치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⁶⁾

1세기 말 흉노의 내분을 틈타, 탁발선비는 가산동 일대에서 대택으로 이주해 왔다.²⁷⁾ 대택은 대체로 에르구네하에서 쿨분호 사이를 지칭하는 곳으로 이 쿨분 부이르 대초원은 물과 풀이 풍부한 초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흉안령의 삼림지대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탁발선비의 선조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좀 더 안정적인 잉여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초원 유목 경제로 전환해 갔을 것이다. 삼림 수렵민이 초원으로의 이동과 유목민이 되는 과정은 한정되고 폐쇄된 삼림 지역을 벗어나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초원이라는 개방된 공간으로 진출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과 함께 여타 세력을 제압하고 정치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²⁸⁾ 수렵민 탁발선비의 유목민화는 쿨분 부이르 초원에 남아있는 탁발선비와 관련된 잘라이노르(Jalainoor, 扎賚諾爾) 무덤과 나부달린(Nabudalin, 拉布達林) 무덤 등에서 야생동물이 아닌 소, 말과 개 등의 가축 뼈가 다량 출토된 것에서도 입증된다.²⁹⁾ 따라서 흉안령 삼림지대의 수렵민이었던 탁발선비는 흉안령 서쪽 초원지대로 이주함에 따라 점차 초원 유목민으로 변모하였다.

탁발선비는 3세기의 수령 詰汾 때에 다시 이주를 시작해 남쪽의 음산산맥과 오르도스평원 일대로 옮겨갔다.³⁰⁾ 이 지역은 흉노제국이 번성했던 중심지였기에, 탁발선비의 음산 산맥 이주는 흉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의 융합을 통해 부락연맹체 단계를 벗어나 강력한 유목 국가로써의 성격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³¹⁾ 특히 詰汾의 아들 力微는 각부의 大人을 호령하고 불복한 자를 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했

26) 金榮煥, 「拓拔鮮卑 歷史時期의 諸問題考釋-『魏書』 「序記」을 中心으로, 『明知史論』 8, 명지사학회, 1997, p.209.

27) 金榮煥(「拓拔鮮卑 第二次 南下過程의 諸問題考釋」, 『明知史論』9, 명지사학회, 1998, pp.125-132.)은 대택이 반드시 호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대택의 위치를 오라후와 실위의 거주지 동쪽에서 흉안령 산맥에 걸친 광활한 초원지대인 현재의 치치하르와 울란 호트 및 大安市를 잇는 삼각형 지역이라는 추정했다. 이곳은 넓은 초원지대에 무수히 많은 물웅덩이가 있어서 마치 큰 호수처럼 보이며 곳곳에 키가 작은 초목이 무성하여 어류와 조수가 모여 서식하기 알맞은 지역이라고 보았다.

28) 鄭재훈, 「북아시아 遊牧民族의 移動과 定着」, 『東洋史學研究』 103輯, 2008, p.93.

29) 田剛, 앞 논문, p.64.

30) 金榮煥(「拓拔鮮卑의 傳說時期小論-『魏書』 「序記」을 中心으로, 『魏晉隋唐史研究』 2, 위진수당사연구회, 1996, p.49)은 탁발선비가 흉노 고지로 이동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내외적 요인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내적 요인으로는 拓拔隣 시기 탁발씨 체제를 공고히 하고 당시 탁발선비 사회의 발전과 주변지역의 선진 문화를 흡수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남하해야 했다. 외적 요인으로는 163년 檀石槐 세력이 동쪽의 부여를 격파하고 눈강 유역에 진출하자 부여 남쪽에 있던 탁발선비 역시 단석괴의 명령으로 남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31) 李吉和, 「鮮卑族在西北地區的遷徙活動」, 『民族歷史』, 黑龍江民族叢刊, 2003-3期, p.78.

다. 이를 통해 강력한 군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단계에 진입한 탁발선비는 마침내 중원으로 들어가 북중국을 통일하고 북위왕조를 건립함으로써 중원에 최초로 북방 이 민족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다.

4. 실위의 활동 무대 홍안령

수렵민 탁발선비인들이 여러 차례 이동을 통해 유목민화 되어 갔던 것과는 반대로 홍안령의 가산동 일대에는 여전히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는 수렵민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위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室韋는 대대로 홍안령의 가산동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한문 사료에서는 실위가 거란 북쪽에 거주하던 북아시아민족의 총칭으로 4세기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원의 필요성에서 따라 부침을 두고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은 홍안령 일대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한문사료에서는 홍안령 산맥의 동·서지역에 흩어져 분포하던 많은 부족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東胡’라고 부르다가 ‘실위’라고 했고, 이후에 이들을 達鞏이나 阻卜 등으로 불려 왔다. 한편, 투르크의 켈테긴 비문에서는 한문 사료의 실위를 오투즈 타타르(Otuz Tatar, 30姓 타타르)라고 부르고 있고 빌게카간 비문에서도 토쿠즈 타타르(Toquz-Tatar (9姓 타타르)로 부르고 있다.³²⁾

실위의 대략적인 위치는 실위에 인접해 있던 부족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북아시아계 부족에는 거란·庫莫奚·地豆于·勿吉·豆莫婁·유연 등이 있다. 고막해의 동쪽에 위치한 거란은 松漠 일대의 시라무렌과 노합하 사이에 머무르면서 유목하고 있었고, 고막해는 동쪽으로 거란과 인접해 있어서, 시라무렌 상류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³³⁾ 지두우는 “실위에서 서쪽으로 1,000여 리에 있다. 소와 양이 많고, 명마가 나오며, 가죽으로 의복을 만든다. 오곡이 없으며, 오로지 고기와 유제품만을 먹었다.”³⁴⁾ 따라서 지두우는 유목경제에 적합한 쿨룬 부이르 초원 남쪽에서, 서쪽으로 유연과 이웃해 있었을 것이다.

실위는 동쪽으로 두막루와 인접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은 모두 “물길에서 북쪽으로 1,000리 되는 곳에 있고, 洛陽에서 6,000리 떨어져 있다.” 지두우는 실위에서 “서쪽으로 1,000여 리”³⁵⁾ 되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烏洛侯는 “지두우의 북쪽에 있었다.”³⁶⁾ 따라서 『위서』에 따르면, 실위·두막루·지두우 등은 대체로 동일한 횡렬 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실위를 중심으로, 오락후는 실위의 서북쪽에 있었다. 오락후 서북쪽에는 탁발선비의 석실인 가산동이 있고, 이곳은 눈강 지류인 甘河 상류에 위치하므로, 오락후의 동남쪽에 위치하는 실위는 눈강 동쪽에 위치하게 된다. 肅慎 계통에 속하는

32) 「켈테긴 비문」, 『빌게 카간 비문』, 林幹著, 『突厥與回紇史』內蒙古人民出版社, 2007.

33) 『위서』 권100, 「거란전」, 「고막해전」; 『신당서』 권219 「거란전」; 『遼史』 권32 「營衛志」 등 참조.

34) 『위서』 권100, 「지두우전」.

35) 『위서』 권100, 「실위전」, 「두막루전」, 「지두우전」.

36) 『위서』 권100, 「오락후전」.

물길에 대해 “나라에는 큰 강이 있는데, 폭이 3리 정도이며 이름은 速末水이다”라고 했는데, 속말수는 북류하는 송화강을 말한다. 또한 “나라의 남쪽에는 徒太山이 있는데, 위나라 말로 ‘大白’이라 한다”³⁷⁾고 했는데, 도태산은 지금의 長白山이므로, 물길은 북류 송화강 동쪽과 동류 송화강 남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장백산과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막루는 “실위의 동쪽에 있었는데,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사방이 2,000리였다. …… 東夷의 땅 중에서 가장 평평하며 넓은 곳이다.”³⁸⁾ 『신당서』 「동이전」에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하니, 유민이 那河를 건너 그곳에 거주했다”고 했다. 나하는 지금의 눈강 및 제1송화강을 말한다. 두막루인들은 눈강 중하류 동쪽 지역과 동류 송화강 북쪽 지역 평원에 거주했다. 울란차부 고원을 중심으로 성장한 유연은 “서쪽으로 카시가르의 북쪽, 동쪽으로 고조선 옛 땅의 서쪽”³⁹⁾에 도달했고, “북쪽으로 사막을 건너 瀚海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큰 사막에 이르는”⁴⁰⁾지역을 통치했다. 대체로 지금의 음산 북쪽, 바이칼호 남쪽, 알타이산 동쪽, 쿨룬호 서쪽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방민족 분포 지역에 따르면, 탁발선비의 원거주지로 다른 부족들이 유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탁발선비가 원거주지인 가산동을 떠난 뒤 ‘실위’가 출현할 때까지 어떠한 북방민족도 대규모로 이동해 오거나 갔다는 기록이 문헌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위인은 서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남아있던 탁발선비의 잔여세력으로 탁발선비와 기본적으로 같은 원류라고 할 수 있다.⁴¹⁾

烏洛侯와 실위는 대체적으로 같은 부족을 가리키는데, 다만 오락후가 먼저 사서에 등장하여 오락후라는 개별 명칭으로 불려졌을 뿐이었고, 활동한 지역은 실위보다 작았으며, 부락의 수도 실위보다 적었다. 오락후는 443년(太平眞君 4년)부터 북위와 왕래했고, 544년에는 실위라는 이름으로 사서에 등장하는데, 그 사이의 100여 년 동안에 오락후라는 이름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후에 『구당서』에 ‘오락후’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때 오락후는 이미 실위 분포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적 분포로 볼 때도 『수서』에 나타난 실위지역은 오락후를 포함한다. 唐代 사서는 명확하게 오락후를 남부실위의 일부로 여겼다. 『위서』에 기록된 오락후와 실위의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은 지리환경, 경제생활, 풍속과 습관 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매우 많았다.

“그 땅은 낮고 습하며, 안개가 많고 추우며”, “돼지가 많고, 곡식으로 보리가 있다”, “그 풍속은 繩髮을 하고 가죽옷을 입으며 구슬로 치장한다. 백성들은 항상 용맹하고, 간사하거나 도적질하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들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아도 훔쳐가지 않는다.”⁴²⁾

37) 『위서』 권100, 「물길전」.

38) 『위서』 권100, 「두막루전」.

39) 『통전』 권196, 「邊防20蠕蠕」.

40) 『위서』 권103, 「연연전」.

41) 장지우허 씀, 북방사 연구팀 옮김, 『몽골인 그들은 어디서 왔나』, 소나무, 2009, pp.60-73.

42) 『위서』 권100, 「오락후전」.

“땅이 낮고 습하며”, “조, 보리 및 기장 등이 많으며, 오직 돼지고기와 물고기를 먹는다”, “성인남자는 삭발을 한다”, “남녀는 모두 흰 사슴 가죽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다”, “붉은 구슬을 좋아하는 풍습이 있다”, “그 나라는 도둑질이 적다”⁴³⁾

위의 『위서』에 기록된 실위와 오락후는 서술상의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실제 내용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보다 광의적 개념인 실위가 오락후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오락후가 443년(태평진군 4년)에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 왔고, 후일 사서에서 명칭이 실위로 바뀐 뒤인 554년(武定 2년)에도 東魏를 찾아왔다.⁴⁴⁾ 실위와 오락후가 북위와 동위를 찾아온 목적은 오락후의 서북쪽에 탁발선비의 조상 거주지였던 ‘石室’ 유적이 있으며, 오락후 사람들이 항상 찾아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들은 世祖 拓跋燾는 443년에 中書侍郎 李敞 등을 오락후의 거주지로 파견해 정황을 살피게 했다. 이와 관련해 『魏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世祖 眞君 4년에 내조했는데, 그 나라 서북쪽에 국가 조상의 옛터가 있으며, …… 석실에는 신령이 모셔져 있고, 많은 백성이 그곳에서 기원을 드린다고 했다.⁴⁵⁾

眞君 연간에 오락후국이 사신을 파견해 조공했는데, 石廟가 옛날과 같고, 백성이 항상 기도하니, 신비스러운 영험이 있다고 전했다. 그해 中書侍郎 李敞을 석실에 파견해 천지에 제사지내고, 皇祖와 先妣를 配享했다. …… 그 백성들이 더욱 이를 받드니, 모든 사람들은 魏國이 신령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말했다.⁴⁶⁾

여기에 등장하는 ‘석실’과 ‘석묘’는 곧 가산동(嘎仙洞)을 말하는데, 동굴 안 석벽에는 이창이 쓴 祭文이 새겨져 있다. 이때부터 북위는 사신을 파견해 가산동 석실의 주인을 탁발선비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지냈다.

물론 자신들이 ‘석실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북위에게 알린 실위의 목적은 그들이 북위의 조상을 잘 섬기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들이 탁발선비와 같은 계통이라는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위 또한 가산동 석실의 존재

43) 『위서』 권100, 「실위전」.

44) 『수서』에는 오락후와 관련된 기록이 없지만, 『수서』 「실위전」의 남실위 기록을 『위서』 「오락후전」과 비교하면 자연환경, 경제생활, 사회조직, 풍습과 습관 등의 방면에서 같거나 비슷한 점이 많다.

45) 『魏書』 권100, 「烏洛侯傳」.

46) 『魏書』 권108 「禮志1」.

를 확인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흥안령의 가산동에서 출발한 수렵 유목민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석실에 제사를 지내온 이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계통임을 알게 되었지만, 탁발선비가 그들을 ‘선비’가 아닌 ‘室韋’라는 명칭으로 부른 데에는 그 나름의 까닭을 찾을 수 있다. 일찍이 중원 지역에 제국을 건설한 탁발선비는 변두리에 치우쳐 살면서 夷狄의 신분으로 조공하러 온 실위와 기원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게다가 가산동에서 남하한 후에 탁발선비인들은 생산 방식과 심리, 언어와 생활 풍습 등의 분야에서 중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체질적인 측면에서도 초기의 탁발선비인과 차이가 발생했다.⁴⁷⁾ 따라서 이동한 탁발선비와 원거주민을 구별할 목적으로, 남북조시대에 음역 관례를 이용해 원거주지에 살고 있던 동족을 실위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⁴⁸⁾ 그러나 선비가 실위라고 표기해서 구별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탁발선비와 가산동에서 제사를 지내던 실위가 동족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위로 불리던 이들을 모두 선비의 후예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언어와 풍습 등으로 볼 때 이들의 주류는 대체로 선비계통이었다.⁴⁹⁾ 한문사료에 등장하는 초기의 실위는 흥안령을 중심으로 쿨룬 부이르 초원, 거란의 북쪽과 눈강 동쪽 일대에 거주했다. 한문 기록에 따르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의 실위는 嶺西실위, 山北실위, 黃頭실위, 大如者실위, 小如者실위, 訥北실위, 婆葛실위, 落俎실위, 達末실위, 大실위, 西실위, 蒙兀실위, 東실위, 烏素固部, 移塞沒部, 塞曷支部, 和解部, 烏羅護部, 那禮部, 達姁部 등의 20여개로 분화되었다. 이들은 투르크의 지배 하에서 주로 흥안

47) 북위 道武帝 이래 일련의 한화정책, 특히 孝文帝의 개혁을 통해 거의 모든 방면에서 탁발선비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주 과정에서 흉노계의 유입으로 탁발선비인의 체질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潘其風·韓康信, 「東漢北方草原游牧民族人骨的研究」, 『考古學報』(제1기, 1982); 朱泓, 「從札賚諾爾漢代居民的體質差異探論鮮卑族的人種構成」, 『北方文物』(제2기, 1982) 등 참조. 문헌상에도 탁발선비인이 大澤에서 흉노의 옛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종족과 통혼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涪汾이 天女와 결혼해 시조 力微를 낳았다는 전설, 또 “길분 황제는 처가가 없고, 역미 황제는 외가가 없다”는 등의 당시 속담은 탁발선비가 다른 종족과 동화한 역사적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陰山 지역에서 유목할 때 탁발씨는 이미 흉노, 정령, 유연, 오환, 동부 선비 등 31姓의 부족을 흡수했다. 姚薇元, 『北朝胡姓考』(中華書局, 1962), pp.25-166; 馬長壽, 『烏桓與鮮卑』(上海人民出版社, 1962), pp.249-254 참조.

48) 장지우허 씌, 북방사 연구팀 옮김, 2009, pp.67-69. ‘失韋’라는 이름은 『위서』에 처음 보이는데, ‘室韋’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수나라 이후에는 주로 室韋로 통일해 썼다. ‘失’과 ‘室’은 같은 음으로, 『廣韻』에서는 모두 式質切이라 썼다. 펠리오는 실위의 음역명이 선비와 서로 같다고 보았다. 그는 『火羅語考』에서 “선비는 뒤에 음역한 실위와 본래 같은데, Serbi, Sirbi, Sirvi 등으로 對音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n을 -r로 음역한 예를 볼 수 있는데, 단지 한나라 때와 그 이전의 음역법이 이와 같았고, 훗날에 와서는 치음齒音으로 끝나는 글자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鮮(心仙開三)과 卑(幫支開三)의 한나라 시기의 음가는 Sjan-pje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나라 이전의 한문 사서에 따르면, 중국어의 韻尾 -n은 북방 종족의 언어에서는 結尾 -r로 음역되는 경우가 있다. Sjan의 발음 -n을 음역하면 非漢族 언어의 尾音 -r이 된다. 곧 Sjan을 Siar로 쓸 수 있고, Pje는 bi, vi와 음이 같으므로 선비는 Serbi, Sirbi 또는 Sirvi에서 음역되었다는 것은 비교적 믿을 만하다. 失(또는 室: 心質開三)과 韋(云微合三)의 남북조시대 음가는 ejet-ɣjuai로 추측할 수 있다. ejet를 Ser 등과 비교하면, 모음 e와 S는 모두 맑은 마찰음으로 음이 나는 부위가 서로 비슷하다. 위진남북조시대 이후에 -t 등의 치음으로 끝나는 글자는 북방 종족 언어의 미음 -r로 음역했으니, 곧 ejet는 ejer로 쓸 수 있다. 또한 ɣjuai의 모음 ɣ는 발음이 아주 가벼운 舌根摩擦音이며, uai는 vi 또는 bi(b의 약화가 v이다)와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실위도 Serbi, Sirbi 또는 Sirvi에서 음역되었다. 음운학의 측면에서 볼 때, 실위와 선비의 원문은 확실히 동일한 것으로서 ‘실위’가 곧 ‘선비’이다.

49) 亦鄰眞, 「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 『內蒙古大學學報』, 內蒙古大學出版社, 1979.

령을 아우르는 눈강, 에르구네하, 쿨분호와 흑룡강 상류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본래 실위는 주로 수렵, 어로와 목축경제 상태에 있었고, 약간의 농경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위의 거주 지역인 흥안령 일대에는 강과 호수가 발달해 있고, 산속 밀림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많았기 때문에, 수렵과 어로가 실위인들의 생업이 되기에 적합했다. 이것은 『魏書』 「失韋傳」과 「烏洛侯傳」에서 실위인이 ‘사냥을 좋아하고’ ‘오직 돼지고기와 물고기를 먹으며’ ‘담비 가죽이 많고’ “남녀가 모두 흰 사슴 가죽으로 바지와 저고리를 만들어 입었다”고 한 기록과도 일맥상통한다. 북실위를 포함하는 북쪽지역의 실위는 그물, 작살, 뿔활과 화살 등의 도구를 이용해 사슴, 여우, 담비, 물고기와 자라 등을 잡는 수렵과 어로 생활을 했고, 남쪽의 남실위 등은 지형적 특성상 수렵과 어로 이외에 원시적인 농경과 목축활동도 겸하고 있었다. 『新唐書』 「室韋傳」에서는 “매사냥 때마다 무리를 모으고, 일을 마친 뒤 돌아갔다”라고 해서 실위인들이 집단 사냥을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당서』에는 실위인이 개를 키웠다는 기록도 있어, 그들이 수렵할 때 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초원지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실위인들의 주요 생업은 기마 양 유목으로 바뀌었고, 수렵은 보조적인 경제수단에 머물게 되었으며, 주로 군사 훈련이나 오락용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실위인들은 돼지, 소와 말 등을 사육했는데, 돼지고기는 가장 중요한 음식 재료로써 돼지 사육 두수도 꽤 많았고, 우리에게 가두어 키우지 않고 방목했다. 소나 말 등의 가축도 물과 풀을 따라 방목했다.⁵⁰⁾ “살인자는 말 300필로 배상한다” 그리고 “남실위인은 혼인할 때 소와 말을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이 상당량의 가축을 확보하고 있고, 가축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그런데 실위의 목축에서 주목할 점은 가축에 ‘양’이 없다는 것이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실위는 “오직 먹는 것은 돼지고기와 물고기이고, 소와 말은 길렀으나, 양을 기르는 풍습은 없다⁵²⁾”고 했다. 수나라 때 기록에도 남실위는 “양은 없고, 말이 적으며, 돼지와 소가 많다”고 했다. 당 전기의 문헌에도 실위에 ‘양’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것은 실위의 목축이 몽골리아의 유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중초원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쿨분 부이르는 지금도 양 보다는 소를 더 많이 사육하고 있고, 수렵지대의 영향으로 야생돼지를 가축화하면서 주로 소와 돼지를 사육했다면, 변화된 초원 환경에서는 소와 돼지는 적합한 가축이 아니었을 것이다. 반면 투르크의 啓民카간이 스스로 “투르크인의 양과 말이 산과 계곡을 가득 채운다⁵³⁾”고 말한 것에서 보거나, 당의 사신 鄭元璠이 “투르크의 흥망은 오직 양과 말에 달려 있습니다⁵⁴⁾”라고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 몽골리아에서는 양과 말이 중심이 되는 유목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⁵⁵⁾ 따라서 자연스럽게 몽골 초원의 생태 환경과 투르크의 영향

50) 『魏書』 권100, 「烏洛侯傳」, 「失韋傳」.

51) 『隋書』 권84, 「室韋傳」.

52) 『魏書』 권100, 「失韋傳」.

53) 『隋書』 권84, 「突厥傳」.

54) 『舊唐書』 권61, 「鄭元璠傳」.

55) 林幹, 『突厥與回紇史』, 內蒙古人民出版社, 2007, p.22.

으로 가축의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더불어 양과 말이 중심이 되는 ‘기마 양 유목’이라는 전형적인 유목 경제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실위 중에서 몽골족의 선조인 몽울실위는 『舊唐書』와 『新唐書』 등에 기술된 20부 실위의 하나였다.⁵⁶⁾ 이들은 본래 흥안령의 서쪽인 에르구네하로부터 흑룡강 상류의 산림과 초원이 교차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9세기 중엽의 위구르 제국의 붕괴를 계기로 실위인들이 대이동을 단행하자, 몽울실위도 수렵과 유목의 교차지인 헨터산맥의 오논강 유역으로 이동해 왔다. 몽골족의 기원에 관해 라시드 앳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종족들이 몽골종족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참살시켰던지 두 남자와 두 여자를 빼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한다. 두 가족은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험준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 주변은 모두 산과 숲이었고 통과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좁고 험한 길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느 방향에서도 없었다. 그 산지 중간의 목초가 풍부한 아름다운 초원이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에르구네 쿤이었다. 쿤의 뜻은 협곡이고 에르구네는 ‘가과르다’이니 곧 ‘가과른 山崖’를 의미한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네쿠즈와 키얀이었고 그들과 그 후손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혼인을 통해서 (숫자가) 많아졌다.⁵⁷⁾

라시드 앳딘의 설명은 몽골족이 에르구네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몽울실위가 에르구네 일대에 거주했다는 한문 기록과도 일치한다.⁵⁸⁾ 몽골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보이는 한문사료는 『舊唐書』 「北狄傳」으로 ‘蒙兀’이라 했고, 『新唐書』 「北狄傳」에서는 ‘蒙瓦’라고 했는데, 당시 음운 통례상 兀과 瓦는 같은 음이다. 요·금시대의 한문문헌에서 ‘萌古⁵⁹⁾’, ‘萌骨⁶⁰⁾’ 등으로 표기되다가 12세기 말경에 ‘蒙古’로 바뀌었다. 또한 『몽골비사』에서는 “칭기스칸의 뿌리가 되는 부르테 치노와 고아 마랄이 ‘텡기스(Tengis)’를 건너와 오논강의 발원지인 부르칸 칼둔에 터를 잡았다”고 했다.⁶¹⁾ 여기서 ‘텡기스’는 투르크어로 바다를 의미하지만 내륙 한가운데 바다는 호수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몽골인들은 큰 호수를 바다를 의미하는 ‘달라이(Dalai)’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텡기스’가 ‘쿨룬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⁶²⁾ 흥안령 서쪽지역의 에르구네와 쿨룬 부이르 초원에 거주하던 몽울실위가 몽골

56) 당대 한문사료에서 처음 등장한 몽울실위에 대해 중국학계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張久和와 林樹山 등은 수대 ‘심말달 실위’로부터 나왔다고 본 반면에 鄭英德, 劉光勝과 鄧國平 등은 ‘북실위’로부터 몽울실위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57) 라시드 앳딘 지음, 김호동 역주, 『부족지』, 사계절출판사, 2002, pp.252-253.

58) 『新唐書』 권291, 「室韋傳」.

59) 『遼史』 권24, 「道宗本紀」24, 도종4년조.

60) 『金史』 권44, 志25, 兵制.

61)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1절, 사계절, 2004.

62) 周清澍, 『元蒙史札』, 內蒙古大學出版社, 2001, p.21.

의 직접 조상이 된다는 것이 많은 사료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위구르제국의 멸망(840년)은 몽골실위를 비롯한 실위인들의 몽골리아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제국을 건설했던 투르크와 위구르의 선진 문화와 유목경제를 흡수함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것은 흥안령 서쪽의 에르구네하 일대에서의 수렵과 약간의 목축과 농경을 하던 경제에서 기마 양 유목 경제로 본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목 경제로의 전환은 흥안령 일대의 수렵과 원시농경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초원으로 이주한 수렵민은 유목민이 되었고, 이들이 기마 양유목민화는 몽골 초원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몽골 초원이라는 생태환경에서 초원 기마 양 유목민으로 전환한 몽골실위는 향상된 기동력을 발판으로 크고 작은 부족 전쟁을 통해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몽골실위를 주체로 실위인들이 점차 몽골족으로 응집되었고, 흥안령을 포함하는 실위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모든 지역은 몽골제국의 통치권 아래 흡수되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몽골계 유목민족을 중심으로 흥안령이라는 공간이 이 지역 역사 주체들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흥안령은 만주와 몽골을 가르는 분수령으로써 북아시아 유목민들의 탄생지이자 주요 활동무대였다. 흥안령 서쪽의 쿨룬 부이르는 드넓은 대초원과 하천호수의 발달로 40cm이상의 풀이 자라는 초전 초원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목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또한 일정정도의 농경도 가능한 지역으로, 선비, 실위, 거란, 몽골 등의 탄생지였다. 만주로 연결되는 흥안령의 동쪽지역은 ‘林海’로 불리는 울창한 침엽수림 지대로 수렵과 어로가 발달한 곳이다. 또한 풍부한 강수량과 눈강 수계의 지류들로 인한 퇴적물들은 비옥한 토지를 형성해 광범위한 농경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대로 숙신, 읍루, 말갈, 여진 등의 통구스계 수렵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었다. 대체로 흥안령을 경계로 몽골계 유목민들과 통구스계 수렵민들이 양분되어 있었다.

흥안령의 북동쪽에 위치한 가산동은 북위를 건립한 拓拔鮮卑의 발상지로서, 탁발선비의 선조들은 흥안령의 삼림지대에서 수렵 채집생활을 하다가, 1세기 말 에르구네하에서 쿨룬호 사이로 이주했고, 다시 흉노의 본거지인 음산산맥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자연환경과 흉노의 영향으로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좀 더 안정적인 잉여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초원 유목 경제로 전환했다. 유목경제로 전환한 탁발선비는 역량을 축적해 유목국가를 건설했고 후일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실위는 흥안령을 중심으로, 눈강, 에르구네하, 쿨룬호와 흑룡강 상류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수렵, 어로와 목축생활 및 약간의 농경을 병행하고 있었다. 특히 몽골

고원으로 이주하기 전의 실위인들은 상당량의 돼지, 소와 말 등을 방목했으며, 주식으로 돼지고기가 이용되었다. 한편, 이 시기 실위의 가축에 ‘양’이 없었다는 기록은 실위의 목축과 전형적인 유목은 많이 차이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흥안령의 서쪽인 에르구네하로부터 흑룡강 상류의 산림과 초원이 교차하는 지역에 거주하던 몽골족의 선조 몽골실위도 9세기 중엽에 유목과 수렵이 교차하는 헨티 산맥의 오논강 유역으로 이동해 왔다. 위구르제국의 멸망으로 공동화된 몽골리아로의 이동은 실위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이들이 흥안령 서쪽의 에르구네 하 일대에서의 수렵과 목농 위주의 경제에서 기마 양 유목 경제로 본질적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초원 기마 양 유목민으로 전환한 몽골실위는 크고 작은 부족 전쟁을 치루면서 향상된 기동력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점차 몽골족으로 성장 발전했고, 일찍이 실위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모든 지역은 몽골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몽골실위의 원 거주지였던 흥안령 지역은 몽골 전통의 말자 상속제에 입각해 이수계의 말자 옷치긴에게 주어짐으로써, 몽골의 원 거주지가 다시 몽골 황금씨족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흥안령의 동서 지역인 초원과 산림지대를 온전히 차지한 첫 번째 정치권력이었던 옷치긴 왕가는 흥안령을 터전삼아 발 빠르게 만주로 진출함으로써 13-14세기 동아시아 정치사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쿠빌라이 시기 친킴-아흐마드 갈등의 배경과 성격

-친킴의 漢化 문제에 대한 재검토-

고명수(고려대)

1. 서론
2. 친킴의 학문·종교적 배경
3. 친킴-아흐마드 갈등의 배경과 원인
4. 결론

1. 서론

1206년 탄생한 몽골제국은 이후 주변지역으로 빠르게 팽창하여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했다. 종래 대다수 학자들은 1260년 漢文化에 우호적인 쿠빌라이가 카안에 즉위하고, 동생 아릭부케와의 계승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몽골제국이 몇 개의 칸국으로 분열되고, 그 중 동아시아에 위치한 쿠빌라이의 직할 영역이 전통 중국왕조인 元朝로 변모했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인식은 쿠빌라이를 비롯한 몽골 지배층이 한문화의 영향을 받아 漢化되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몽골에 관한 한화론은 몽골제국 일대에 걸쳐 지배층 사이에서 단속적으로 발생한 갈등의 양상을 분석할 때에도 주요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의 갈등상을 한문화에 경도된 漢法派와 몽골의 전통이나 유목민 특유의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傳統派·理財派 사이에 발생한 정치이념의 대립으로 도식화하여 해석한다.¹⁾

그러나 근래 몽골제국사에 관한 여러 非漢語 자료가 발굴되고, 다양한 관점과 연구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몽골 지배층에 관한 한화론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 그러한 연구경향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몽골 지배층 사이의 갈등을 ‘한법과 대 전통파·이재파’의 정치이념 대립으로 보는 종래의 견해도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³⁾

1) 대표적으로 耶律楚材와 몽골관료, 쿠빌라이와 몽케,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쿠빌라이와 카이두, 아유르 바르와다(仁宗)와 카이산(武宗), 天曆년간 大都派와 上都派의 갈등 등이 위의 관점에 따라 이해되고 있다.

2) 그 대표적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호동,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2006;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Thomas T. Allsen,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위 도식에 따라 해석되는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가 쿠빌라이 시기 황태자 친킴과 서역인 재무관료 아흐마드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다. 즉 양자의 갈등은 대체로 한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친킴과 유목민 특유의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아흐마드 사이에 발생한 ‘한법과 대 이재파’의 정치이념 대립으로 이해된다.⁴⁾ 이 견해 역시 친킴이 한문화의 영향을 받아 철저하게 ‘한화’되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친킴의 한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대체로 한인의 유학적 가치관이 투영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활용자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관점과 연구방법을 개발한다면 친킴에 관한 한화론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친킴과 아흐마드의 갈등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우선 친킴의 학문·종교적 배경을 분석하여 ‘친킴의 한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친킴-아흐마드의 갈등을 ‘한법과 대 이재파’의 정치이념 대립으로 보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해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킴에 관한 종래의 한화론을 비판하고, 친킴-아흐마드 갈등의 양상과 성격에 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친킴의 학문·종교적 배경

대다수 학자들은 친킴을 시종 漢文化에 경도되고, 한인유사를 존중하며, 유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漢法의 시행을 중시하는 철저하게 漢化된 인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그가 어린 시절부터 漢人儒士로부터 받은 儒學교육을 강조한다. 『元史』 「裕宗傳」에 따르면 그는 쿠빌라이가 카안에 즉위하기 전부터 한인유사 姚樞와 竇默으로부터 유가경전을 배우고, 이후 장기간 王恂에게 유학교육을 받으며 한인유사들과 널리 교류했다. 그리고 이 같은 유학교육과 한인유사와의 교류는 1260년 쿠빌라이가 카안에 즉위하고, 1273년 친킴이 황태자에 책봉된 후에도 계속되었다.⁵⁾

어린 시절 친킴의 유학교육에 관한 배경으로써 일반적으로 潛邸시기 쿠빌라이의 친유학·유사 경향이 거론된다. 실제로 그 시기 쿠빌라이는 자신의 藩府에 여러 한인유사를 초빙하여 그들로부터 유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治道를 자문 받았다. 많은 학자들은 漢地(화북 농경지대)에서 유학적 가치에 입각하여 漢法을 적극 시행하려는 쿠빌

3) 일찍이 杉山正明과 김호동이 쿠빌라이에 관한 한화론과 그와 아릭부케의 갈등을 定住派(漢地派)와 遊牧派(漠北派)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를 설득력 있게 비판했고(杉山正明, 「クビライ政權と東方三王家」, 『東方學報』 54, 1982; 김호동, 앞의 책), 필자 역시 潛邸시기 쿠빌라이와 몽케의 갈등을 동일한 도식으로 이해하는 학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고명수, 「潛邸시기 쿠빌라이의 漢地경영과 세력형성—그의 漢化문제에 대한 재검토」, 『몽골학』 31, 2001)

4) 친킴과 아흐마드의 갈등을 전면으로 고찰한 연구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丁國范, 「眞金與權臣의鬭爭」, 『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 8, 1984; 黃時鑒, 「眞金與元初政治」, 『元史論叢』 3, 1986; 陳一鳴, 「論元代的太子參政問題」, 『內蒙古社會科學』, 1992-1; 片山共夫, 「アーマッドの暗殺事件をめぐって—元朝フビライ期の政治史」, 『九州大学東洋史論集』 11, 1983. 그 외 대부분의 쿠빌라이와 그 시대를 다룬 평전·연구서나 元代史 개설서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답습하고 있다.

5) 『元史』 卷115 列傳2 裕宗.

라이의 지향이 정통 중국왕조인 元朝의 건립으로 귀결되었다고 이해한다. 그가 장기간 한인유사들과 교류하며 한법시행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유학과 유사의 영향을 받아 그의 사상과 가치관이 전면 한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선행논문에서 잠저시기 쿠빌라이 측근에 여러 한인유사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쿠빌라이가 그들로부터 얻고자 한 것은 오직 효율적인 한지경영과 자신의 세력형성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지식과 재능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그에게 유학적 가치를 반영한 한법이란 한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통치수단이었을 뿐이다.⁶⁾

잠저시기 쿠빌라이는 휘하의 한인유사에게 친킴에 대한 교육을 담당케 했다. 이러한 조처는 한법시행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그가 만아들 친킴으로 하여금 한법에 관한 지식과 통치술을 습득케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쿠빌라이가 중국의 전통과 학문을 잘 익히면 중국인들로부터 충성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친킴을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시켰다”라는 로사비의 해석은 경청할 만하다.⁷⁾

친킴의 유학교육과 한인유사들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여러 한문자료를 활용한다면, 그가 시종 한문화에 경도되었고, 한화를 지향했다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은 철저하게 한인유사의 사상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씌어졌기 때문에 친킴의 다양한 성향 중 한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친킴에 관한 현존자료가 충분치 않지만 탈중국적 관점에서 그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유학·한화와 무관한 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친킴의 측근집단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그의 종족·문화·학문적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측근집단’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王府와 東宮에서 그를 보좌했던 속관을 측근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가 한인유사로부터 유학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한화된 인물로 성장했다면, 그의 측근에는 많은 한인유사가 포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속관에 관한 기록을 분석해 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元史』 「列傳」에 친킴의 속관에 관한 21명의 인물이 확인된다. 그들의 이름, 종족, 직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친킴의 王府·東宮 속관

	이름	종족	직위	전거
1	立智理威	탕구트인	必闡赤	『元史』 卷120 察罕傳 2958쪽
2	不忽木	칸글리인		『元史』 卷130 不忽木傳 3165쪽
3	完澤	몽골인	詹事長	『元史』 卷130 完澤傳 3173쪽
4	阿魯渾薩理	위구르인	宿衛	『元史』 卷130 阿魯渾薩理傳 3174~3175쪽
5	唐驥	위구르인	必闡赤	『元史』 卷134 唐仁祖傳 3253쪽

6) 고명수, 앞의 논문 참조.

7) 모리스 로사비, 강창훈 옮김, 『쿠빌라이칸—그의 삶과 시대』, 천지인, 2008, 229쪽.

6	也先不花	몽골인	必闍赤長	『元史』 卷134 也先不花傳 3267쪽
7	亦憐眞	몽골인	家令	『元史』 卷134 也先不花傳 3267쪽
8	義堅亞禮	高昌인		『元史』 卷135 鐵哥朮傳 3272쪽
9	王忱	한인	宿衛	『元史』 卷151 王玉傳 3568쪽
10	高諒	遼陽인	符寶郎	『元史』 卷153 高宣傳 3615쪽
11	李謙	한인	太子左諭德	『元史』 卷160 李謙傳 3767쪽
12	李德輝	한인		『元史』 卷163 李德輝傳 3815쪽
13	程思廉	한인		『元史』 卷163 程思廉傳 3829쪽
14	王恂	한인	太子伴讀	『元史』 卷164 王恂傳 3844쪽
15	譚克修	한인		『元史』 卷167 譚資榮傳 3932쪽
16	石抹明里	거란인		『元史』 卷169 石抹明里傳 3976쪽
17	吳鼎	한인	宿衛	『元史』 卷170 吳鼎傳 4004쪽
18	耶律有尙	거란인	詹事院長史	『元史』 卷174 耶律有尙傳 4064쪽
19	郝天挺	몽골인	宿衛	『元史』 卷174 郝天挺傳 4065쪽
20	王壽	한인		『元史』 卷176 王壽傳 4103쪽
21	哈剌帖木兒	거란인	宿衛	『元史』 卷179 蕭拜住傳 4156쪽

<표>에 제시된 21명은 분명 왕부·동궁의 전체 속관이 아닌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인물에 관한 기록 중 상당수에는 그의 속관을 역임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入仕 당시 해당 인물의 학문적 성향과 수준, 재능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비교적 상세한 일부 기록을 통해 친킴 측근집단의 구성과 성격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표>에 기재된 21명 속관의 종족 구성을 살펴보면, 한인 8명, 몽골인 4명, 거란인 3명, 위구르인 3명, 탕구트인 1명, 캉글리인 1명, 고창인 1명, 요양인 1명으로 집계된다. 한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漢人 대 非漢人으로 환산하면 8:13으로 비한인의 수가 더 많다. 이는 그의 측근집단에 한인 뿐 아니라 많은 비한인이 소속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점에서 친킴이 한인유사를 특별히 우대하고, 유독 한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선행 논문에서 잠저시기 쿠빌라이의 막료집단에 한인 뿐 아니라 다양한 비한인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⁸⁾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킴의 측근집단에도 각양각색의 종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많은 비한인이 소속되어 있었고, 친킴이 그들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얻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친킴이 유학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한화되었다면, 속관을 선발할 때 대상자의 유학적 소양과 학문수준을 가장 중요한 선발요건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료 곳곳에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깊이 익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학문이 오로지 유학이었던지, 친킴이 그것을 주요한 선발요건으로 고려했는지 여부에

8) 고명수, 앞의 논문, 106~112쪽 참조.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기록은 친킴이 한인속관을 선발할 때 유학적 소양이 아닌 실무지식과 재능을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했음을 나타낸다.

忱(王忱)은 字가 允中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익혔는데 명민하고 재능과 지식이 뛰어났다. 平章 趙璧이 裕宗의 潛邸로 데리고 가서 그를 소개하니, (유종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그를 宿衛로 삼아 조세수입의 회계를 맡아보게 했다.⁹⁾

王壽는 字가 仁卿이고 涿郡 新城 사람이다. 어려서 영민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장성하여 國字(몽골문자)에 정통하여 中書掾이 되었다. 얼마 후 신료들의 추천을 받아 裕宗에게 入侍했는데, 유종이 특별히 그를 후하게 대우했다.¹⁰⁾

첫 번째 기사는 한인속관 王忱이 어려서부터 명민하고 재능과 지식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증언한다. 친킴이 그를 속관으로 받아들인 후 조세수입의 회계를 맡아보게 한 사실은 그가 무엇보다 왕침의 재무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음을 짐작케 한다. 두 번째 기사도 王壽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장성하여 몽골문에 능통한 사실을 전하는데, 이러한 그의 뛰어난 언어능력이 그가 속관으로 선발되고 후하게 대우받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측근의 실무지식과 재능을 중요시하는 친킴의 현실적·합리적 성향은 비한인 속관에 관한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中統 3년 皇子를 燕王으로 봉하고 中書省을 총괄하게 했는데 그가 裕宗이다. 王府의 속관을 선발하는 조를 내렸는데 공(完澤)이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를 선발했다. 오랜 후에 東宮 詹事長에 임명했다. 안에서 지략을 내고, 밖에서 호위병을 통솔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밤낮으로 변함이 없어 裕皇이 그의 재능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¹¹⁾

阿魯渾薩理는 그(乞台薩理)의 둘째 아들로 부친의 字를 성씨로 삼아 舍氏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國師 八哈思巴에게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학문에 정통하고, 여러 나라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世祖가 그 재능을 알고 중국의 학문을 배우게 하여, 이에 經·史·百家와 陰陽·曆數·圖緯·方技의 학설에 모두에 정통하게 되었다. 후에 裕宗을 섬기게 되어 宿衛로 들어오니, (유종이) 그 재능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¹²⁾

算術에 대한 친킴의 관심도 실용적·과학적 지식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과 무관치 않

9) 『元史』 卷151 列傳38 王玉, 3588쪽.

10) 『元史』 卷176 列傳63 王壽, 4103쪽.

11) 『國朝名臣事略』 권4 丞相興元忠憲王.

12) 『元史』 卷130 列傳17 阿魯渾薩理, 3174~3175쪽.

다고 여겨진다. 어린 시절부터 친킴에게 유학을 가르치고, 오랜 기간 그의 조언자로서 활동한 한인유사 王恂은 유학 뿐 아니라 뛰어난 산술 능력으로 저명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재능을 인정받아 그는 쿠빌라이의 명에 따라 許衡, 楊恭懿, 郭守敬과 함께 金의 大明曆보다 훨씬 정확한 授時曆을 제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元史』 「王恂傳」에 친킴이 그가 산술로서 저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산술에 관해 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산술과 같은 실무적·과학적 지식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친킴은 속관을 선발할 때 후보자의 유학적 소양과 학문수준보다 자신의 정치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실무적 지식과 재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그의 측근집단에는 한인 뿐 아니라 몽골인, 거란인, 위구르인, 탕구트인, 캅글리인 등 여러 유능한 비한인들이 소속되었다. 아마도 그는 쿠빌라이와 마찬가지로 유학에 기반을 둔 한법을 한지와 한인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데 가장 적합한 통치수단으로 보고 한인유사를 그 전수자로 인식했을 것이다. 산술에 관심을 보인 사례도 실무적·과학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그의 성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친킴이 줄곧 한인유사로부터 유학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한화되었다는 종래의 해석은 그의 실무적 기질과 다양한 학문적·종족적·문화적 배경을 도외시키고 일부 모습만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티벳불교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친킴의 종교적 성향도 그에 관한 한화론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몽케 시기 쿠빌라이는 大理정벌군을 이끌고 진군하던 중 감숙지역에서 티벳불교 사카파 주장 파파와 접견함을 계기로 하여 티벳불교와 친연을 맺었다. 그가 카안에 즉위한 후 티벳불교는 몽골황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국의 제일종교로 성장했다. 쿠빌라이와 황후 차비를 비롯한 몽골의 황족들이 티벳불교를 깊이 신봉하는 현실에서 그 주요 일원인 친킴이 티벳불교를 신봉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몽골초원과 유사한 자연조건을 가진 티벳의 유목지대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한 티벳불교는 원시 인도불교와 티벳의 고유한 샤머니즘이 결합하여 형성된 종교신앙이다. 따라서 티벳불교에서 유목민족 특유의 샤머니즘적 요소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몽골시대 티벳불교는 동일한 종교적 전통을 지닌 몽골인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¹⁴⁾ 특히 몽골 지배층은 유목지대와 전혀 다른 자연조건과 경제형태를 보유한 화북 농경지대에서 탄생·발전한 儒敎(儒家)에 비해 티벳불교를 더욱 용이하게 받아들였다. 다음 기록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황태자가 일찍이 淸寧殿에 앉아 자리를 펼쳐 西番·高麗의 승려들을 앉게 했다. 황태자가 말하기를, “李好文 선생이 나에게 儒書를 여러 해 가르쳤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 佛法을 들으니 하루 밤에 환히 알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때부터 佛學을 깊이 숭상했다.¹⁵⁾

13) 『元史』 卷164 列傳51 王恂, 3844쪽.

14) 札奇斯欽, 『蒙古與西藏歷史關係之研究』, 正中書局, 1978, 8~9쪽.

15) 『元史』 卷46 本紀46 順帝9, 962쪽.

몽골시대 화북·강남의 한인사회에는 농경지대 자연환경과 역사전통에 맞추어 장기간 자체적으로 발전한 중국불교의 몇몇 종파들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과 전혀 다른 환경조건에서 성장한 티벳불교가 일찍이 전통 중국불교와 유교를 신봉해온 한인 지식인들에게 쉽게 전파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여러 기록에 그들이 민족적·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해 티벳불교에 대해 적잖은 거부감을 드러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한인 지식인이 티벳불교를 신봉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비한족 출신 지식인이라도 유교를 깊이 신봉하여 한문화에 경도되었을 경우 한인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티벳불교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음 기록에서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때 國師를 존중하여 예를 갖추는데, 황제가 希憲(廉希憲)에게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명했다. (염희헌이) 대답하기를, “臣은 孔子의 가르침을 받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孔子도 가르침이 있는가?”라고 했다. 대답하기를, “신하는 충성을 다하고, 자식은 효를 다해야 합니다. 孔子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 뿐입니다”라고 했다.¹⁶⁾

帝師가 京師에 이르자 (황제가) 1품 이하의 신료들에게 모두 백마를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라고 명했다. 대신들이 머리를 숙이고 옆드려 잔을 올리자, 帝師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직 狲(李朮魯狲)이 잔을 들고 선 채로 내주면서 말하기를, “帝師는 석가의 신도로서 천하 승려들의 스승입니다. 저는 공자의 신도로서 천하 孺人들의 스승입니다. 청컨대 각자 예를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帝師가 웃으면서 일어나 마침내 잔을 들고 마시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떨었다.¹⁷⁾

티벳불교를 신봉하는 종교적 성향이 곧바로 漢化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몽골시대 유교를 신봉하는 지식인들이 대체로 티벳불교가 유교와 조화·공존하기 어려운 종교·사상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멀리한 사실을 감안할 때 티벳불교에 대한 신봉은 친킴에 관한 종래의 ‘전면’ 한화론을 비판하는 논거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친킴이 장기간 유학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한화되었다면, 비록 황실종교라 하더라도 티벳불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한문자료에는 그가 티벳불교를 신봉했다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시대에 관한 몽골·티벳 자료에는 그가 티벳불교를 깊이 신봉한 사실이 곳곳에 기재되어 있다.

몽골시대 티벳불교 사카파 수장의 계통과 사적을 기록한 티벳자료 『薩迦世界史』에

16) 『元史』 卷126 列傳13 廉希憲, 3092쪽.

17) 『元史』 卷183 列傳70 李朮魯狲, 4222쪽.

는 1269년 帝師 팍파가 쿠빌라이의 부름을 받고 궁정에 도착했을 때 황태자 친킴이 후비와 대신 등을 이끌고 그를 성대하게 영접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⁸⁾ 이러한 친킴의 행동은 쿠빌라이에 명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스스로 팍파를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내용에 비춰 볼 때, 그의 종교적 성향에서 비롯된 자발적 행동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元史』에는 至元 11년(1274) 팍파가 쿠빌라이의 허가를 얻어 帝師직을 동생 亦憐眞에게 물려주고 티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⁹⁾ 한문자료에는 그 시기 친킴의 활동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없으나, 몽골자료 『蒙古原流』에는 그 때 친킴이 쿠빌라이에게 자신이 직접 팍파를 호송하겠다고 청하여 허가를 받아 팍파와 함께 티벳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또한 『薩迦世界史』에는 그가 귀환하는 팍파를 호송했다는 내용은 없으나, 1277년 티벳으로 돌아간 팍파가 그곳에서 대규모 법회를 개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친킴이 시주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²¹⁾ 공교롭게도 한문자료에는 팍파가 귀환하기 전해(1973) 친킴이 정식으로 皇太子에 책봉된 후 1279년 그에게 정치적 실권이 주어지기까지 그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위 몽골·티벳자료의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친킴은 한문자료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1274년부터 1278년까지 약 4년 간 티벳에 체류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 기간 중 친킴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의 종교적 성향과 위 『薩迦世界史』의 기록을 감안할 때 종교활동이 주요한 일부를 차지했으리라고 생각된다.²²⁾ 아울러 팍파가 친킴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저술했다고 알려진 『彰所知論』의 卷末에 수록된 贊語와 題記에도 그 책이 친킴이 팍파에게 여러 번 가르침을 청해 저술되었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²³⁾ 여기에서도 티벳불교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그의 종교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친킴은 몽골황실의 주요 일원으로서 황실종교인 티벳불교를 깊이 신봉했다. 그가 유학교육의 영향을 받아 철저하게 한문화에 경도되었다면 직접 티벳으로 가서 불법을 구할 만큼 열렬한 티벳불교 신자의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티벳불교를 신봉하는 몽골황실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친킴은 유교·티벳불교 뿐 아니라 道敎와도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 쿠빌라이 시기 도교의 일파인 玄敎를 창시한 張留孫의 일대기에, 1281년 全眞敎가 불교와의 논쟁에서 패배하여 도교경전이 모두 소각될 위기에 처하자 장유손이 태자 친킴에게 “黃老의

18) 阿旺貢噶索南, 陳慶英·高禾福·周潤年 譯註, 『薩迦世界史』, 中國藏學出版社, 2004, 163쪽.

19) 『元史』 卷8 本紀8 世祖5, 154쪽; 『元史』 卷201 列傳89 釋老, 4518쪽.

20) 烏蘭, 『《蒙古原流》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0, 234~235쪽.

21) 『薩迦世界史』, 165쪽. 이 사서에서는 팍파가 티벳으로 귀환할 때 쿠빌라이가 직접 그를 호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薩迦世界史』 164쪽) 그러나 정황상 친킴이 호송했다는 『蒙古原流』의 기록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2) 陳慶英은 친킴의 티벳 出鎮이 쿠빌라이의 명에 따른 것이고, 그 목적이 티벳에 대한 몽골의 지배체제 강화, 인도·서아시아(홀레구 울루스)로 통하는 교통로 확보와 같은 정치·군사적 측면에 있다고 보았다. (陳慶英, 『帝師八思巴傳』, 中國藏學出版社, 2007, 149~150쪽)

23) 王啓龍, 『八思巴生平與《彰所知論》對勘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245쪽.

서적은 漢帝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여 일찍이 그것으로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신이 감히 사사로이 말할 수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아뢰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경전 소각을 중지할 것을 쿠빌라이에게 상주해달라고 청하자 친킴이 翰林院 학사들과 논의하여 도교경전의 보전을 청해 관철시켰다는 기록이 있다.²⁴⁾ 이는 그가 도교의 종교인들과 일정한 친분을 쌓고 도교에 비교적 호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至元 16년(1279) 10월 도교의 일파 太一敎의 수장 李居壽가 쿠빌라이에게 황태자 친킴이 장성하였으므로 그에게 모든 정무를 위임하도록 건의했다는 일화도 친킴과 도교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짐작케 한다.²⁵⁾

주지하듯이 몽골 지배층은 카안의 영광을 위해 봉사한다는 조건 아래 모든 종교의 포교활동을 허용·지원하는 관용적인 종교정책을 채택했다. 티벳불교를 신봉하는 친킴이 도교에게 보인 호의적 태도는 이러한 몽골 지배층의 개방적·관용적 종교정책 방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서 장유손이 도교경전의 소각을 중지해야 할 이유로서 ‘漢帝가 黃老의 책으로 천하를 다스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전통 토착 종교인 도교의 경전이 한지와 한인을 다스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친킴이 그러한 요청을 수락한 것은 그가 유학과 마찬가지로 도교의 가르침을 한지·한인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유용한 치도의 하나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친킴은 어려서부터 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종교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한인유사로부터 유학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의 학문적 배경의 일부를 점했을 뿐이다. 그는 王府·東宮의 속관을 선발할 때 종족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의 유학적 소양과 학문수준보다 자신의 정치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실무능력과 지식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에 따라 그의 측근집단에는 한인 뿐 아니라 여러 유능한 비한인들이 소속되었다. 또한 그는 일반적인 한인유사 또는 한문화에 경도된 비한인 지식인과 달리 몽골의 황실종교인 티벳불교를 열렬하게 신봉했으며, 여러 종교의 조화·공존을 지향하는 정부의 개방적 종교정책 방침에 따라 도교의 종교인들과도 일정한 친분관계를 맺었다. 종합해볼 때, 친킴은 다양한 종족·문화·학문·종교적 성향을 갖춘 개방적·다문화적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장기간 유학교육을 받아 중국적 가치관에 경도된 결과 철저하게 한화되었다는 종래의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3. 친킴-아흐마드 갈등의 배경과 원인

대부분의 학자들은 쿠빌라이 치세기 몽골정계에서 전개된 친킴과 아흐마드의 갈등을 ‘한법과 대 이재과’의 정치노선 대립으로 이해한다. 즉 유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24) 『淸容居士集』 卷34 有元開府儀同三司上卿玄敎大宗師張公家傳.

25) 『元史』 卷202 列傳89 釋老, 4530쪽.

한법을 추구하는 친킴이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재무관료 아흐마드와 정치이념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친킴이 장기간 한인유사로부터 유학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한화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그에 관한 한화론을 부정할 수 있다면, 양자의 갈등을 정치이념의 대립으로 보는 종래의 해석도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친킴이 한인관료와 결탁하게 된 시기와 배경을 분석하여 양자 갈등의 실제상에 접근해보려 한다.

쿠빌라이는 카안에 즉위한 2년 후인 中統 3년(1262) 황자 친킴을 燕王으로 봉하고, 中書省의 장관인 中書丞에 임명했다. 이어 다음해(1263) 樞密院 장관인 判樞密院事도 겸직하게 했다. 이후 至元 10년(1273) 그를 황태자로 책봉할 때에도 여전히 두 직위를 겸하게 했다.²⁶⁾ 이와 같이 친킴에게 부여된 직함만 고려한다면, 쿠빌라이 정권 초기부터 그가 최고 행정·군사기구의 책임자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至元 16년(1279) 太一敎의 수장 李居壽가 쿠빌라이에게 황태자가 장성했으니 마땅히 국정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고 주청하여, 쿠빌라이가 中書省, 樞密院, 御史臺를 비롯한 모든 관청에서 업무를 먼저 친킴에게 보고하고, 후에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을 보면²⁷⁾ 그 때까지 친킴이 중서성·추밀원의 장관으로서 실제적인 정치·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至元 원년(1264) 劉秉忠 등이 연왕으로 하여금 매월 1~2차례 중서성에서 정사를 처결하도록 주청했다는 기록도²⁸⁾ 그가 자신의 지위에 걸 맞는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그가 중서령과 관추밀원사에 임명된 후 軍國大事를 직접 주관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쿠빌라이 정권 초기 친킴에게 부여된 직위는 일종의 명예직일 뿐, 그에 부합하는 실권까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²⁹⁾

이거수와 더불어 황태자의 친정을 주청한 董文忠은 쿠빌라이에게 친킴이 그 동안 중서령·관추밀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폐하께서 처음에 燕王을 中書丞·樞密使로 삼고, 가끔 한 번 中書省에 와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태자로 책봉한 후 여러 차례 軍國之事를 분명하게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태자께서) 항상 겸손해하며 정사를 돌보지 않은 것은, 폐하의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그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안을 미리 황제에게 아뢰어 재가를 청한 후 비로소 태자에게 보고하니, 신하로써 君父의 명을 재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오로지 묵묵하게 회피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를, 모든 관청으로 하여금 먼저 태자에게 보고하고 후에 황제에게 아뢰게

26) 『元史』 卷115 列傳2 裕宗, 2888~2889쪽.

27) 『元史』 卷10 本紀10 世祖7, 217쪽.

28) 『元史』 卷5 本紀5, 世祖2, 99쪽.

29) 陳高華·史衛民, 『中國政治制度通史』 (第八卷 元代), 人民出版社, 1996, 70쪽.

하며, 그 중 일처리가 적절치 못한 것이 있을 때 황제께서 조칙을 내려 그것을 처결하시면, 대체로 이치에 부합하고, 직분이 정도를 넘지 않아 태자께서 반드시 그 책무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³⁰⁾

위 글은 친킴이 중서령·추밀사에 임명된 후 10년 넘게 정부에서 먼저 쿠빌라이에게 아뢰는 사안을 추후에 보고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 실제로 정치·군사적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음을 전한다. 그 시기 쿠빌라이 정부의 집권자는 中書平章政事에 재임 하던 재무관료 아흐마드였다. 이 같은 조처는 그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친킴의 실권을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³¹⁾

친정 개시 이전 친킴이 아흐마드에 비해 정치적으로 열세에 놓였다는 것은 그 기간 중 발생한 崔斌 무고사건을 통해 확인된다. 『元史』 「崔斌傳」에 至元 15년(1278) 한인 관료 최빈이 쿠빌라이에게 아흐마드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 세력을 척결하려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아흐마드가 쿠빌라이에게 최빈을 무고했는데, 그 때 친킴이 사신을 보내 최빈에 대한 처벌을 막으려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³²⁾ 이 사건은 그 시기 친킴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흐마드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친킴은 쿠빌라이 정권 초기 행정·군사기구의 최고 책임자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아흐마드의 견제를 받아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양자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었을 뿐, ‘한법과 대 이재과’의 정치 이념 대립으로 보기는 어렵다.³³⁾

또한 양자의 갈등을 몽골의 정계에서 표면화된 정치적 대립구도로 설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중 양자의 대립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다.³⁴⁾ 친킴은 항상 아흐마드에게 견제당하는 입장에 놓여있었으므로 그에게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출할 만한 실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앞서 인용한 동문충의 진언에서 친킴이 항상 ‘정사를 묵묵하게 회피하고 겸손했다’라고 한 대목도 그가 아흐마드에게 대항할 만한 세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록 양자 사이에 갈등관계가 조성되어도 친킴이 열세에 놓여 있는 현실아래 그것이 몽골정계에서 가시적 형태로 표출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양자의 공개적인 대립은 친킴의 친정이 실현된 至元 16년(1279)에 비로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친킴과 한인 관료집단이 결탁한 시기와 그 배경을 살피는 것도 양자 갈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갈등을 ‘한법과 대

30) 『元史』 卷148 列傳35 董俊, 3503~3504쪽.

31) 片山共夫, 앞의 논문, 55쪽.

32) 『元史』 卷173, 列傳60 崔斌, 4038쪽.

33) 片山共夫는 몇 개의 사례를 들어 친정 개시 이전에도 친킴이 일정한 정치적 실권을 보유했음을 지적했다. (片山共夫, 앞의 논문, 55~56쪽)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의 실권이 아흐마드에게 대항할 정도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34) 李治安은 張文謙, 廉希憲, 許衡, 安童 등 한법파 신료들이 아흐마드와 충돌했을 때 친킴이 줄곧 아흐마드의 반대편에서 한법파 신료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보았다. (李治安, 『忽必烈傳』, 人民出版社, 2004, 211쪽) 그러나 그에 관한 사료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과'의 정치이념 대립으로 보는 많은 학자들은 그 근거로서 친킴과 한인 관료집단의 정치적 제휴를 매우 강조한다. 양자 모두 한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일한 정치이념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에 배치되는 정책노선을 추진하는 아흐마드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결탁한 시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

至元 10년(1273) 2월 쿠빌라이는 친킴을 황태자로 책봉하면서 내린 책문에서 책봉의 배경과 연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太祖皇帝의 유훈에 따르면 적자 중 유능하고 선조의 사업을 계승하여 임금의 자리를 이을 만한 자를 미리 선발하여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太宗 英文皇帝께서 즉위하여 나라를 세우는 사업을 계승했다. 그 이후로 적장자를 공개적으로 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짐이 위로 조상의 전통의 계승하고, 아래로 형제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燕王인 그대를 선발하여 황태자로 정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근래에 儒臣들이 주청하기를 국가에서 황태자를 정하면 마땅히 책명을 내리는 것이 황실의 관례라고 했다. 지금 攝太尉 左丞相 伯顏(바얀)으로 하여금 符節을 갖고 가서 그대에게 玉冊金寶를 내리게 한다.³⁵⁾

위 글은 일찍이 칭기스칸이 카안의 후계자를 미리 정해두라는 유훈을 남겼는데, 우구데이 이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후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으므로, 그 폐해를 방지하고 칭기스칸의 유훈을 따르기 위해 연왕 친킴을 황태자로 책봉했음을 전한다. 몽골에서 카안의 자리를 둘러싸고 황족들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까닭은 전통적으로 모든 몽골의 지배층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카안을 추대하는 쿠릴타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쿠릴타이에서는 논의에 참여하는 여러 인사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쿠빌라이 이전 새로운 카안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쿠릴타이에서는 예외 없이 분쟁이 발생했고, 심지어 무력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쿠빌라이 역시 독자적으로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카안에 즉위한 후 경쟁자였던 동생 아릭부케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와 같이 쿠릴타이에서 카안을 선출하는 몽골의 전통방식이 지배층의 대립·분열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었으므로, 쿠빌라이 즉위 후 郝經, 姚樞, 陳祐, 張雄飛 등 그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여러 한인관료들은 그에게 중국식 황태자 책봉 제도를 도입하여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을 것을 강하게 주청했다. 아릭부케와 치열한 투쟁을 겪었던 쿠빌라이 역시 몽골의 전통방식보다 중국식 황태자 책봉 제도를 수용하여 후계자를 지명하는 편이 카안 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킴의 황태자 책봉은 쿠빌라이가 자신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인관료들의 건의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킴의 한화’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쿠빌라이 정권 초기부터 친킴과 한인관료

35) 『元史』 卷115 列傳2 裕宗, 2889쪽.

집단 사이에 정치적 결탁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황태자를 책봉할 때 한인관료들이 쿠빌라이에게 그 적임자로서 친킴을 적극 추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³⁶⁾ 그러나 관련기록을 보면, 한인관료들이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조속하게 황태자를 책봉할 것을 촉구했을 뿐, 황자들 중 친킴을 추천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그 시기 친킴과 한인관료 사이에 제휴가 이루어졌다는 종래의 견해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친킴의 황태자 책봉이 누구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한문자료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집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카안은 노무간이 카이두군에게 끌려가기 전 몇 년 동안 후계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운위되었고, 그(카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뒤 짐김이 매우 총명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투데 몽케가 노무간을 돌려보냈을 때 그는 짐김에게 카안의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했다. 노무간은 불만을 품고 “만약 그가 카안이 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카안은 화가 나서 그를 힐책하고 자기 앞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 뒤 며칠 안가서 죽었다. 카안은 짐김을 군주의 자리에 앉혔는데, (짐김은) 3년 동안 군주로 있었지만 그 역시 사망했고, 그의 보좌는 봉인되었다.³⁷⁾

위 기록은 황태자 책봉 이전 몽골 조정에서 몇 년간 그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쿠빌라이의 막내아들인 노무간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었으며, 쿠빌라이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실제로 노무간은 至元 3년(1266) 北平王에 봉해져 몽골본토의 유목민과 오르도를 관할하는 직무를 부여받았고, 至元 8년(1271) 대군을 이끌고 알말릭으로 出鎮하여 당시 쿠빌라이 정권의 가장 큰 위협세력이었던 카이두의 군사행동을 방어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즉 그는 당시 실권이 없는 중서령·관추밀원사직에 재임하던 친킴보다 훨씬 중요한 정치·군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노무간의 출진 후 쿠빌라이는 친킴의 총명함과 유능함을 알게 되어 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는 그가 북방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노무간보다 항시 학문에 정진하고, 스스로 삼가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지의 사정과 한법에 정통하고, 여러 한인유사들과 친분을 쌓는 친킴을 한지·한인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6) 黃時鑿은 한인관료 집단이 쿠빌라이에게 중국식 황태자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친킴을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쿠빌라이가 그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친킴을 황태자로 책봉했다고 보았다. (黃時鑿, 앞의 논문, 196쪽)

37) 라시드 앳 딘,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443~444쪽. 위 인용문에서는 노무간이 카이두에게 사로잡혔다가 석방되어 돌아온 후 친킴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친킴이 황태자로 책봉된 시기가 至元 10년(1273)이고, 노무간이 석방된 시기가 至元 21년(1284)이므로 위 기록은 오류가 분명하다.

친킴은 본래 쿠빌라이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장자 도르지가 일찍 사망하여 사실상 장자의 위치에 있었다. 여러 학자들은 중국의 황태자 계승제도의 원칙이 ‘적장자 계승’이었으므로, 쿠빌라이 역시 그 전통에 따라 친킴을 황태자로 책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앞서 인용한 책문에서 “적장자를 공개적으로 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은 몽골에도 중국과 유사한 ‘적장자 계승’의 전통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몽골을 비롯한 일반적인 유목사회에서는 후보자 중 가장 유능한 인물이 지도자로 선출되는 ‘적임자 계승’이 전통이었다.³⁸⁾ 위 책문의 서두에 제시된 칭기스칸의 유훈도 “적자 중 유능하고 선조의 사업을 계승하여 임금의 자리를 이을 만한 자”를 후계자로 정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쿠빌라이 이전 몽골에서 적장자가 카안위를 계승한 사례는 전혀 없다. 우구데이는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이었고, 구육은 우구데이의 서장자였으며, 몽케는 우구데이가 아닌 툴루이 가문 출신이었고, 쿠빌라이는 몽케의 동생이었다. 아울러 위 『집사』의 인용문에는 적장자 계승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친킴이 총명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쿠빌라이가 노무간이 아닌 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친킴의 황태자 책봉은 비록 중국적 제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쿠빌라이가 가장 유능한 인물을 후계자로 선택하는 몽골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책문에 그가 형제들과 논의하여 친킴의 황태자 책봉을 결정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결정에는 당연히 친킴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한 쿠빌라이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시기 한인관료들이 쿠빌라이에게 중국적 황태자 책봉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지만, 정작 그들이 친킴의 책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친킴이 황태자로 책봉된 후 친정을 개시할 때까지 약 10년 간 양자가 결탁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한인관료 집단은 아흐마드에 위세에 압도되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친킴을 자신들의 정치적 파트너로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친정 개시 이전 친킴과 한인관료 집단 사이에 정치적 결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至元 16년(1279) 즈음 비로소 한인관료들이 친킴과 제휴하고 그의 친정을 주장한 실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킴의 친정 개시 이전 아흐마드와 한인관료 집단 간 대립의 양상을 검토해야 한다. 回回人 아흐마드는 정권성립 초기부터 쿠빌라이의 신임을 받아 재무관료로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諸路都轉運使, 制國用使司, 尙書平章政事 등 국가재정을 관할하는 직책을 부여받아 정부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재정정책은 重農主義 경향을 억제하면서, 국내외 상업을 육성하고, 징세체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 같은 정책노선은 필연적으로 유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중농주의를 지향하는 한인관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양자의 대립·충돌 과정에서 아흐마드는 강대한 위세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대항하는 여러 한인관료를 탄핵·실각시

38) 김호동,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中國史』2, 지식산업사, 1989, 301~303쪽; 김호동,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講座中國史』3, 지식산업사, 1989, 285~289쪽 참조.

키고, 자신의 친족과 측근세력을 정부의 요직에 배치했다. 이러한 아흐마드의 전횡으로 인해 한인관료 집단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시기 한인관료들이 아흐마드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파트너로 선택한 인물은 中書右丞相 安童이었다. 그는 칭기스칸 시기 몽골제국의 건립과 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한 무칼리의 후손으로서 당대 몽골의 최고 귀족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쿠빌라이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至元 2년(1265) 8월 18세의 나이로 중서우승상에 임명되어 정부의 최고위직에 올랐다. 그러나 이미 중서성에는 전년(1264) 8월 평장정사에 임명된 아흐마드가 확고한 지위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안동과 아흐마드 사이에 갈등관계가 조성되었다. 때문에 아흐마드에게 견제당하는 동일한 처지에 놓인 한인관료 집단과 안동 사이에 결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至元 3년(1266) 안동은 쿠빌라이의 명에 따라 저명한 유학자 許衡을 만나 그로부터 여러 방면에 걸쳐 자문을 얻었고, 다음해 요추를 비롯한 몇몇의 한인 유사를 중서성 관료로 임명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했다.³⁹⁾ 그 때부터 안동은 한인관료 집단과 연합하여 아흐마드와 그의 정치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안동·한인관료-아흐마드 간 대립은 尚書省의 中書省 병합과 안동을三公으로 삼는 사안을 둘러싸고 첨예화되었다. 至元 초기 아흐마드는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制國用使司의 장관과 중서평장정사를 겸직했다. 至元 5년(1368) 그는 제국용사사를 중서성과 대등한 지위의 상서성으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하고, 2년 후(1370) 상서성을 설립하여 스스로 그 장관인 상서평장정사에 올랐다. 이후 그는 쿠빌라이에게 중서성과 상서성을 하나로 병합하고, 중서우승상 안동을 명목상 최고위직인 삼공으로 임명할 것을 청했다. 그것은 중서성 장관인 안동을 허위직에 불과한 삼공에 임명하여 그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두 관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이 실제적인 정부의 최고 지위와 권력을 장악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쿠빌라이가 신료들에게 그것에 관한 의견을 묻자 商挺·王般·陳祐 등 여러 한인관료들이 아흐마드의 속셈을 폭로하면서 극력 반대했다.⁴⁰⁾ 이에 따라 결국 至元 9년(1272) 상서성이 설치 2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아흐마드는 그 후에도 안동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마침내 至元 12년(1275) 7월 노무간을 따라 북변의 알말릭 지역으로 출진하게 만들었다.⁴¹⁾ 이 사건은 아흐마드가 안동·한인관료와의 대립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안동의 실각으로 인해 동맹세력을 잃은 한인관료 집단이 그를 대신하여 선택한 인물이 廉希憲이다. 위구르의 귀족가문 출신인 그는 잠저시기 쿠빌라이의 번부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그의 핵심막료로 활동하고, 쿠빌라이 즉위 후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고위관료로 성장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유학을 깊이 공부하고, 여러 한인유사들과 교류했으며, 안동·한인관료 집단과 일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줄곧 아흐마드를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러한 성향이 그가 안동의 실각 후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는 한인관료 집단의 주목을 받게 된 주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39) 『元史』 卷126 列傳13 安童, 3082쪽.

40) 『元史』 卷126 列傳13 安童, 3082쪽; 卷160 列傳47 王磐, 3752쪽; 卷168 列傳55 陳祐, 3940쪽.

41) 『元史』 卷126 列傳13 安童, 3083쪽.

정부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염희현의 재상 임용을 둘러싸고 한인관료 집단과 아흐마드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었다.

安童이 북벌 길에 오른 후 阿合馬(아흐마드)가 홀로 국가권력을 차지하여 그의 친당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廉希憲이 다시 재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계획을 방해하여 希憲을 行省의 右丞에 임명하여 江陵으로 보낼 것을 주청했다. 文忠이 말하기를, “希憲은 국가의 名臣입니다. 지금 재상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를 오랫동안 외지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바람에 따라 마땅히 일찍 불러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 말을 따랐다.⁴²⁾

至元 14년(1277) 염희현이 도성으로 귀환한 직후 조정에서는 門下省 설립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시기 최고 정무기관 중서성은 아흐마드와 그의 친당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문하성 설립은 중서성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분할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하성 설치 주장은 아흐마드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한인관료 집단을 위시한 반아흐마드 세력이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쿠빌라이는 그들의 건의에 동의하고 염희현을 문하성의 장관인 侍中에 임명하려 했으나, 그가 질병을 이유로 고사하고, 아흐마드 세력이 강하게 반대하여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쿠빌라이는 至元 16년(1279) 초반에 염희현을 중서성의 고위직에 임명하려 했으나, 그가 다시 병을 이유로 고사하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했다.⁴³⁾ 한인관료 집단은 안동의 실각 후 염희현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버팀목으로 삼으려 했으나, 아흐마드의 방해공작과 염희현의 정계은퇴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친킴과 한인관료 집단 사이에 결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문하성 설치 시도가 좌절되고, 염희현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후 다시 동맹세력을 모색하던 한인관료 집단이 선택한 인물이 황태자 친킴이었다. 전술했듯이 그 때까지 친킴은 아흐마드의 위세에 압도되어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한인관료 역시 실권이 미약한 친킴보다 안동·염희현과 같은 유력 귀족가문 출신 정치가들과 제휴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아흐마드에 의해 모두 저지되자, 그 때 비로소 친킴을 反아흐마드 관료집단의 핵심인물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염희현의 정계은퇴 직후인 至元 16년(1279) 10월 한인관료 동문충이 쿠빌라이에게 친킴의 친정을 건의한 행위의 배후에는 이 같은 정황이 놓여 있었다. 친킴 역시 오랜 기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침해한 아흐마드에게 상당한 반감을 품고 있었으므로 양자의 결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친정 개시 후 친킴은 비로소 아흐마드의 전횡을 견제할 만한 지위와 권한을 지니게

42) 『元史』 卷148 列傳35 董俊, 3503쪽.

43) 『元史』 卷126 列傳13 廉希憲, 3095~3096쪽.

되어, 反아흐마드 관료집단의 대표자로서 부상했다. 이 때부터 그는 다음과 같이 아흐마드에게 직접 반감을 표출하고 그와 공개적으로 대립했다.

그 때 阿合馬(아흐마드)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태자가 그의 간악함의 싫어하여, 조금도 좋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阿合馬의 친당은 그가 두려워하는 자가 오직 태자뿐이라는 것을 알았다.⁴⁴⁾

키타이 [출신의] 아미르들은 질투로 인하여 그(아흐마드)와 관계가 나뉘고, 짐김도 그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하루는 활로 그의 머리를 향해 쏘아 그의 얼굴을 찢어 놓았을 정도였다. 그가 카안의 어전에 왔을 때 [카안이]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묻자, 그는 ‘말이 찢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짐김이 거기 있다가 화가 나서 ‘짐김이 찢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냐?’고 말했다. 또 한번은 카안의 면전에서 [짐김이] 그를 여러 번 때리기도 했다. 아흐마드는 항상 그를 두려워했다.⁴⁵⁾

그러므로 至元 19년(1282) 3월 발생한 아흐마드 피살은 몽골의 정치무대에서 양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아래 발생한 사건으로, 그 배후에 친김과 한인관료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⁴⁶⁾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친김의 친정이 개시되기 전까지 몽골의 정국구도는 아흐마드 세력과 안동·염희현·한인관료로 구성된 反아흐마드 관료집단 사이의 대립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 기간 중 친김이 反아흐마드 관료집단과 결탁했다거나 정권투쟁에 개입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가 中統 3년(1262) 중서령, 다음해 관추밀원사에 임명되고, 至元 10년(1273) 황태자로 책봉되었지만 그 직함에 걸 맞는 실제적 위상과 권한은 아흐마드의 견제에 의해 상당부분 제한되었고, 황태자 책봉 후 친정이 개시되기 전까지 약 4년 간 그는 티벳에서 불법을 익히는 데 전념하여 중앙정치에 관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인관료 집단이 그를 동맹세력으로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양자의 결탁은 反아흐마드 관료집단의 영수인 안동과 염희현이 정계에서 물러나, 한인관료들이 정치적 버팀목을 잃게 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따라서 친김과 한인관료가 제휴하여 아흐마드와 공개적으로 대립한 기간은 친김의 친정이 개시된 至元 16년(1279) 10월부터 아흐마드가 피살된 至元 19년(1282) 3월까지 약 2년 4개월에

44) 『元史』 卷115 列傳2 裕宗, 2889쪽.

45) 『칸의 후예들』, 430쪽. 『元史』와 『元典章』에 至元 16년(1279) 12월 제국 내 무슬림들이 전통방식으로 양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다. (『元史』 卷10 本紀10 世祖7 217~218쪽; 『元典章』 卷57 刑部19 禁宰殺 禁回回抹殺羊做速納) 『집사』에도 그 칙령이 약 7년 간 유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칸의 후예들』, 437~438쪽) 周良霄는 그 기간이 친김의 친정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조칙이 2개월 전 친정을 개시한 친김이 아흐마드를 필두로 하는 무슬림 재무관료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 쿠빌라이를 대신하여 반포한 것이라고 보았다. (周良霄, 『忽必烈』, 吉林教育出版社, 1986, 179쪽)

46) 片山共夫, 앞의 논문; 黃時鑿, 앞의 논문 참조.

불과하다. 그리고 친킴과 한인관료가 결탁한 까닭도 한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이념을 공유했다기보다, 아흐마드의 전횡을 견제하여 자신들의 세력과 지위를 보전·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친킴-아흐마드의 대립’과 ‘친킴-한인관료의 결탁’을 ‘한법과 대 이재파’와 같이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대립과 결탁의 구도로 이해하는 종래의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친킴은 한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전면 한화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학 외에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쌓았고, 실무적 지식과 재능을 본위로 삼아 막료를 선발한 결과 그의 휘하에 한인 뿐 아니라 여러 유능한 비한인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그는 유목사회의 샤머니즘과 전통을 공유하여 대부분의 한인유사들이 기피하는 티벳불교를 열렬하게 신봉했고, 몽골정권의 개방적인 종교정책에 입각하여 도교와도 일정한 우호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므로 그는 다양한 종족·문화·학문·종교적 성향을 지닌 개방적·다문화적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친킴의 한화’를 부정한다면 그와 아흐마드의 갈등의 ‘한법과 대 이재파’의 정치이념 대립으로 보는 견해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친정 개시 전까지 친킴에게는 실제적인 정치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흐마드에게 여러 정치·경제적 권한을 침해당하던 한인관료 집단은 그 대신 유력 몽골귀족과 제휴하여 아흐마드의 전횡을 견제했다. 그러나 아흐마드에 의해 몽골귀족이 실각하자 그 때 비로소 친킴을 새로운 동맹자로 선택하여, 쿠빌라이에게 그의 친정을 주청하게 된 것이다. 친킴 역시 한인관료 집단과 아흐마드의 압박을 받는 동일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므로 양자의 결탁은 쉽게 이루어졌다. 친정 개시 후 비로소 실권을 지니게 된 친킴은 한인관료 집단과 연합하여 아흐마드와 공개적으로 대립했다. 따라서 친킴과 한인관료의 결탁은 아흐마드를 타도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고, 양자의 갈등 역시 ‘한법과 대 이재파’의 정치이념 대립이 아니라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

한성주(강원대학교)

I. 머리말
II. 童淸禮의 1차 建州三衛 파견
III. 童淸禮의 2차 建州三衛 파견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전기 女眞關係는 ‘交隣’이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強穩兩面의 羈縻政策이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여진에 대한 기미정책은 遼東의 여진인들이 조선에 來朝하거나 向化하면 평화적으로 대우하고, 조선에 침입하면 격퇴하거나 征伐을 단행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진에 대한 강은양면의 기미정책은 기본으로 하되, 여진의 분포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크게는 지역적으로, 豆滿江流域과 鴨綠江流域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明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명과 가까운 압록강유역은 명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국경완충지대를 두었고,¹⁾ 이 지역 여진에 대한 明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여진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招撫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만강유역은 永樂帝 때 발생한 10處 여진인의 귀속문제를 시작으로 尹瓘의 公險鎭 설치와 상고되어 두만강外까지 조선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두만강유역 내외의 여진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의 결과, 6진 설치 이후에는 이들을 조선의 울타리인 ‘藩籬’로 만들어갔다.²⁾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유역에는 번리가 형성된 반면 압록강유역에는 조선의 번리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 변화, 명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는 조선의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조선 세조대를 전후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북방 오이라트의 침입이 격화된 시기였다. 명의 황제가 사로잡혀가는 소위 ‘土木의 變’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왕위계승에 대한 정당성이 없던 조선의 세조가 이러한 정세변화를 이용하여 압록강유역의 建州三衛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를 실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³⁾ 건주삼위는 세조가

1) 유재춘, 2011, 「중·근세 朝·中間 국경완충지대 형성과 경계인식-14~15세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9.

2)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이례적으로 平安道の 길을 개방하자 조선에 내조하여 조선의 관직을 받았는데, 조선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명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명의 간섭을 받았으며, 결국 세조는 건주삼위와의 교류를 일시 중단하였다.⁴⁾

그 동안 조선 세조대 건주삼위와의 교섭 중단으로 인해 조선과 건주삼위와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이렇다 할 교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것은 어쩌면 고정화된 事大라는 인식의 틀 속에서 조선·명·여진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즉 세조대 명의 간섭에 따라 조선이 건주삼위와의 교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건주삼위와의 관계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조선은 압록강유역의 건주삼위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았고, 세조대 이후에도 조선과 건주삼위와의 관계는 지속되어 왔다. 최근 조선 성종대 및 연산군대 조선과 건주삼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지만,⁶⁾ 여기서는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특히 연산군대 두 차례에 걸쳐 건주위에 파견된 童淸禮의 활동과 관련하여 『燕山君日記』를 중심으로 조선과 건주삼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⁷⁾

II. 童淸禮의 1차 建州三衛 파견

15세기 중반, 요동의 정세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명의 북부, 몽골에서 시작된 오이라트의 성장은 요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명의 위소체제를 따랐던 여진인들은 북방 정세 변화에 편승하여 명을 침입하였고, 많은 인민과 물품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여진인들이 점차 본격적인 농경화 단계로 들어간 것과 관련이 있는데,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여진인들의 입장에서는 발달된 농경 기술을 습득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결국 명이 요동 여진지역에 설치한 여진위소는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명에서는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요동변장을 설치하는 한편 여진 지역에 대한 정벌을 실시하였다.⁸⁾

<그림 1> 明末女眞分布圖⁹⁾

3) 박정민, 2010, 「세조대의 여진관계와 정책」, 『한국사연구』 151.

4) 한성주, 2007, 「朝鮮初期 朝·明 二重受職女眞人の 兩屬問題」, 『조선시대사학보』 40.

5) 이와 같은 시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에서도 대부분 비슷하다. 대부분은 조선과 건주위와의 관계를 조선 세조대와 선조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6) 김순남, 2009, 「조선 成宗代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김순남, 2009,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 『한국사연구』 144.

7) 연산군대 동청례의 파견에 대해서는 河內良弘, 1976, 「燕山君時代の朝鮮と女眞」, 『朝鮮學報』 81;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657~666쪽; 姜龍范·劉子敏, 1999, 『明代中朝关系史』, 黑龙江朝鮮民族出版社, 351~361쪽에 대략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8)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9) 孫進己 外 3人, 1987, 『女眞史』, 吉林文史出版社, 303쪽 ‘明末女眞分布圖’를 재작성함. 원(○)을 중심으로 건주여진이 분포하였다.



여진의 침입은 조선 방면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여진인들의 침입은 두만강유역보다는 압록강유역이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두만강유역은 5진 설치 후 알타리·울랑함·울적합이 5진 성저 또는 두만강 남·북안에 거주하면서 조선의 번리가 되어 먼 지역의 여진인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압록강유역은 이러한 번리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城堡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장성(행성)을 쌓아 방비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벌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압록강 북안에는 주로 건주삼위가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평안도의 여진의 침입은 건주삼위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종대 중반, 건주삼위의 통교에 대해 세조대와 같이 평안도의 상경로를 개방하여 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주삼위를 비롯한 여진인들의 평안도 침입은 끊이지 않았다. 연산군이 즉위한 초기에도 크고 작은 여진인들의 침입은 지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496년(연산군 2) 7월 渭原 침입은 조선에 큰 피해를 끼쳤다. 당시 위원의 피해 규모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80여 명이 사로잡혀갔던 것으로 보이며, 건주위의 침입으로 살해되거나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서 연산군이 매우 분개할 정도였다.¹⁰⁾

위원 침입 이후에도 여진인들의 계속된 침입 정황이 속속 보고되고 있었고, 명의 요동지휘사사에서도 咨文을 보내어 여진의 침입 정황을 알려주고 있었다.¹¹⁾ 실제로 며칠 뒤 평안도의 碧潼이 여진인들의 침입을 받아 변경의 수비를 담당하던 조선의 甲

10)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정미; 병인; 권17, 2년 8월 정해.

11)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기묘.

士가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¹²⁾ 이에 변방 백성이 편히 살 수 없어서 혹은 성안으로 들어오고, 혹은 멀리 山幕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름하는 시기를 잃어 장차 살 수 없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¹³⁾

조선에서는 위원에 건주위가 침입했을 당시부터 酋長에게 글을 보내어 조선의 인민을 刷還하게 하거나,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國威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¹⁴⁾ 또한 병조에서는 위원이 침략당한 원인 중 하나는 평안도 高山里 이하 昌城 이상의 강 밖의 여진인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사냥을 핑계로 유둔하면서 조선의 허실을 살펴본 것에 있다고 여겼다.¹⁵⁾ 따라서 여진인들과 강 저쪽 수십 리에까지 와서 유둔하지 못하게 약속할 것을 정하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모두 賊으로 논하도록 하는 한편 절도사가 강을 건너가서 군사의 위엄을 보일 것이 계획되었다.¹⁶⁾ 여진인들과의 약속 방법으로는 강 건너 수십 리 사이에 標를 세워서 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⁷⁾

그러던 중 위원을 침입했던 여진인들은 건주좌위와 건주우위의 사이에 붙어 살면서 자칭 岐州衛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보고가 들어와 정탐하고 날랜 군사로 습격할 것을 만포첨사가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⁸⁾ 그리고 건주위의 계속된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군사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부락의 강하고 약한 것과 멀고 가까운 것을 안 뒤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¹⁹⁾

한편 포로가 된 조선 사람들을 쇄환하자는 의논도 제기되었는데, 다음 <기사 1>을 보자.

<記事 1>

지금 마침 金主成可가 와서 童淸禮와 李山玉을 들여보내어 刷還하라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믿을 만한 向化通事 1~2명을 선택하여 金主成可·朴古里 등의 무리와 함께 보내서 만포에 받은 잡아두고 받은 嚮化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서 주성가의 말대로 各衛에 두루 타이르고 형세를 살피게 하소서, 만약 야인들이 그 말을 들어서 도둑질을 그친다면 또한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만약 후일 부득이 擧兵한다면 마땅히 이들을 嚮道로 삼도록 하소서.²⁰⁾

즉 야인 金主成可가 조선에 와서 童淸禮와 李山玉을 건주위에 보내 잡혀간 인민을

12)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계미.

13)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계사.

14)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정미.

15)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무신.

16)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무신.

17)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을축.

18)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병인.

19)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정묘.

20)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정묘.

刷還할 것을 처음 말하였고,²¹⁾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즉, 향화 통사 1~2명을 파견하여 각위에 두루 타이르고 형세를 살피게 하는 한편, 후일 정벌하게 되었을 때 향도로 삼자는 것이었다. 이에 向化部將 동청례와 兼司僕 이산옥을 파견하도록 하였는데, 동청례는 일가 친척이 건주위에 많이 살고, 이산옥은 信實한 사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²²⁾ 그러나 동청례는 職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品秩이 높고, 이산옥은 품질은 낮지만 벼슬한 지가 오래되어 두 사람이 동행하면 서로 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나이 많은 이산옥을 보내지 말고 浪好時介와 高崇禮를 청례와 함께 들여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³⁾

동청례는 원래 알타리의 추장 童所老加茂의 아들이었는데, 동소로가무는 조선이 회령진을 설치할 때 자진하여 집을 철거하고 땅을 바치는 등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²⁴⁾ 세종은 동소로가무의 공헌을 중하게 여겨서 禮賓寺 判事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고, 따라서 동청례는 외조부가 士族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²⁵⁾ 성종 때는 武科에 응시하기를 청하여 초시와 중시에 합격하였으며,²⁶⁾ 부령 靑巖里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이 도망하자 이를 쇄환하는데 노력하였고, 건주위에 대한 정책, 6진 지역에 대한 시무책 및 향화인 시책에 관한 많은 건의를 하였다.²⁷⁾ 동소로가무의 아들들은 대부분 동청례와 같이 조선에 향화하고 있었지만, 동청례의 형 童阿亡哈(童阿亡介) 회령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건주위로 옮겨가서 大族과 혼인하여 그 종족이 번성한 상태였다.²⁸⁾

한편 병조로 하여금 건주삼위 추장들에게 통유하도록 하였는데, 그 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記事 2>

... 근자에 너희들이 한갓 작은 이익만 탐내고 큰 화를 생각하지 않아 三水·理山 지방에 두 번 들어오고, 또 渭原에 들어와서 변방 백성을 침노하여 앞뒤로 죽이고 사로잡아 간 것이 매우 많았다. ... 전일에 폐단을 일으킨 것을 너는 비록 알지 못하겠지만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돌아갈 데가 있으니, 네가 능히 깨달아서 죄인을 찾아내 드러내어 형벌을 시행하고, 강탈해 간 것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 부락을 단속하여 줌도독질을 금하여, 두 지방으로 하여금 걱정이 없게 하면 이는 너희들의 복이다. ... 29)

21)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을해조에서도 金主成可가 동청례를 보내어 쇄환하자는 계책을 먼저 진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무진.

23)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갑신.

24) 『성종실록』 권273, 24년 1월 갑술; 『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신사.

25) 『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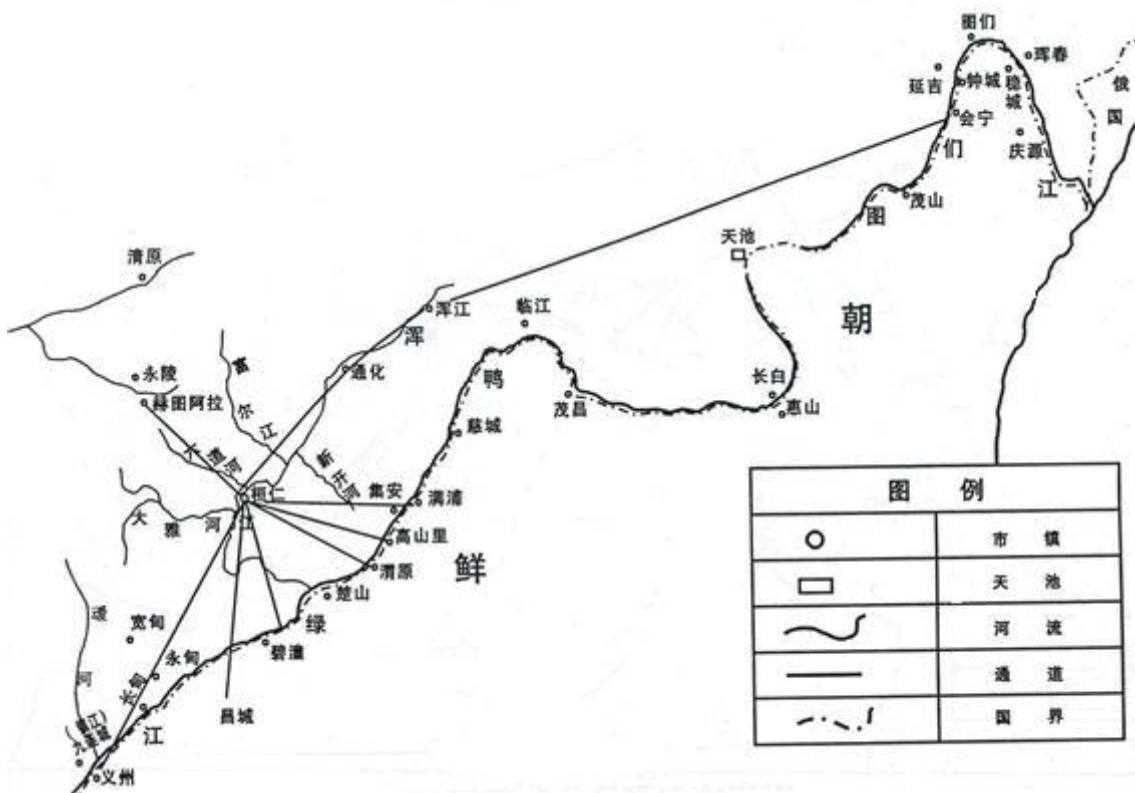
26) 『성종실록』 권34, 4년 9월 임인; 『연산군일기』 권38, 6년 7월 임술;

27) 『성종실록』 권148, 13년 11월 기유; 권178, 16년 윤4월 정미; 권289, 25년 4월 병술; 『연산군일기』 권12, 2년 2월 임자.

28) 『성종실록』 권96, 9년 9월 기미;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을해; 권23, 3년 5월 기사.

<기사 2>를 보면, 역시 여진인들의 계속된 침입이 있었고 위원 침입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죽거나 사로잡혀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책임은 조선 침입을 단속하지 못한 건주삼위 주장들에게 있으므로, 침입한 죄인을 찾아내서 벌을 주고, 조선에서 강탈한 인물과 재산을 돌려보내는 한편, 부락을 단속하여 더 이상 조선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 1>과 <기사 2>를 종합해보면, 동청례의 건주삼위 파견 목적은 먼저 위원에 침입한 여진인들을 설득하여 잡아간 인구를 쇠환하게 하는 것이었고, 쇠환에 응하지 않아 실패하더라도 조선이 건주위를 정벌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각위의 형세와 도로의 원근을 살펴 향도로 삼자는 것이었다.

<그림 2> 建州女真通向朝鮮道路示意圖³⁰⁾



결국 동청례는 三衛敬差官이란 이름으로 파견되었는데,³¹⁾ 경차관은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낸 임시 관원이었다.³²⁾ 동청례가 건주삼위로 출발한 날짜를 정확

29)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정해.

30) 黄相栋 主编, 2006, 『桓仁建州女真志』, 桓仁建州女真志编委会, 42쪽, ‘建州女真通向朝鲜道路示意图’를 보면 건주위와 조선과의 교통로가 여러 방향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다.

31) 『연산군일기』 권18, 2년 10월 정유.

32) 敬差官은 일반적으로 왕명에 따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對地方官이라 할 수 있다. 경차관 파견을 통한 조선의 대외활동 및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한문중, 1992, 「朝鮮前期의 對馬島敬差官」, 『전북사학』 15 및 Chong Da-ham(정다함), 2010, 「Making Chosŏn's Own Tributaries : Dynamics between the Ming-centered World Order and a Chosŏn-centered Regional Order in the

히 확인할 순 없지만 만포에서 압록강을 건너 2息쯤 되는 三岐峴에서 자고, 삼기현에서 1식 반쯤 되는 丐知帖 朴古伊라는 곳에 10월 1일에 당도하여 잠을 잔 것으로 보아 9월 30일 경에는 강을 건넜던 것으로 추정된다.³³⁾ 이후 동청례의 활동 사항을 <표 1>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1> 동청례의 1차 건주삼위 파견시 활동 사항(1496년, 연산군 2년)

일 자	장 소	활동 사항 및 기타 사항
9월 ?	만포 출발	야인들을 거느리고 압록강 도하
9월 ?	三岐峴	압록강에서 2息
10월 1일	丐知帖 朴古伊	삼기현에서 1식 반
2일	蒲州 강변	白礮巖 앞길을 경유
3일	白礮巖 北長坪	포주 강 건너 3~4리, 李加乙豆 집 앞 뜰, 達罕 및 左衛의 甫堂介와 右衛의 馬阿堂介에게 교지 반포
4일	白礮巖 北長坪	우위 추장 童甫花土가 사람을 보내 조공 요청
5일	王夫里介 집 방문	渭原을 침입한 金山赤下의 마을 추장(자칭 岐州衛), 달한 동행, 왕부리개가 금산적하를 잡을 것을 약속함
6일	王夫里介 집	금산적하 도망, 그 아버 및 야인 6명이 찾아옴, 쇠환 약속
7일	王夫里介 집	눈이 많이 쌓임
8일	金丐堂介 집	갔던 길을 따라 回程, 달한과 작별, 달한의 甫堂介와 군사가 만포까지 호송, 阿亡介도 호송 참여
9일	丐知洞口	
10일	丐知嶺을 넘어 영 아래	
11일	만포 도착	

동청례는 만포를 출발 → 三岐峴 → 丐知帖 朴古伊 → 蒲州 강변 → 白礮巖 北長坪 → 王夫里介 집 → 金丐堂介 집 → 丐知洞口 → 丐知嶺을 넘어 영 아래 → 만포로 돌아오는 경로로 건주위를 다녀왔는데, 총 12~13일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었다.

동청례는 만포에서 야인들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10월 2일에는 포주 강변에 도착하였고, 강 건너 3~4리 정도 떨어진 白礮巖 北長坪에서 건주위(본위) 達罕(李于之加茂, 李完者頭)³⁴⁾이 나흘째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인 3일 강을 건너가 李加乙豆 집 앞 뜰에서 달한과 건주좌위 및 우위에서 파견된 甫堂介, 馬阿堂介에게 교지를 반포하였다. 정확한 교지의 내용은 파악되진 않지만 <기사 2>의 내용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지 반포 후 달한은 야인들의 조선 침입을 금지하

East Asian Periphery(조선의 “조공국” 만들기-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중심의 동북아 질서의 사이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5-1 등이 주목된다. 특히 정다함은 明이 藩屏인 조선에 파견하는 欽差官을 차용하여, 藩籬·藩屏으로 규정한 여진족과 대마도에 조선에 대한 事大를 중용하려 파견한 것이 敬差官이었다고 하였다.

33) 『연산군일기』 권19, 2년 11월 갑진(이후 인용되는 동청례의 1차 건주삼위 파견시의 활동 상황은 이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았다).

34) 達罕은 建州衛 李滿住의 손자로, 李豆伊(李豆里)의 아들이었으며, 건주위(본위)의 추장이었다(김순남, 2009, 「조선 成宗代の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표 1 이만주 사후의 건주삼위> 참고, 229쪽).

려 하지만 법령이 없고, 형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삼위의 주장이 마음을 같이하여 침입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일에는 우위의 추창 童甫花土가 사람을 보내 자신의 나이가 73세인데 죽기 전에 친히 조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5일에는 달한과 함께 위원을 침입하였던 金山赤下의 마을 추장 王夫里介의 집을 방문하였다. 달한이 왕부리개에게 금산적하를 잡아와야 한다고 하자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날(6일) 금산적하는 달아나 숨고, 그 아버지가 야인 6명을 거느리고 왔다. 달한이 이들에게 쇠환을 강요하여, 결국 울적합에게 팔려간 사람들을 쇠환하기로 하고 몇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다음날(7일) 눈이 많이 쌓여 길을 떠난 자들이 제때에 돌아오는 것도, 길이 막히면 조선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동청례는 회정을 하면서 달한과 작별하였다. 이때 달한은 삼위의 裨將·里將 등의 성명을 써주면서, 이들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면 대조하여 문죄하고 잡아서 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달한은 甫堂介 등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까지 호송하게 하였고, 동청례의 형 동아망개 역시 호송에 참여하였다. 동청례는 건주위로 갔던 길을 돌아오면서 회정하였는데, 金丐堂介의 집과 丐知洞口, 그리고 丐知嶺을 넘어 영 아래에서 각각 하루씩 묵었고(8~10일), 11일에는 만포로 돌아왔다.

동청례는 달한이 사는 마을이 왕부리개의 집에서 북쪽으로 2息, 좌위는 서쪽으로 2息, 우위는 8~9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파악하였는데, 각위의 형세와 도로의 원근을 살피려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회정할 때에는 高山里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야인 童可多下에게 물어 야인들이 고산리진에서 3식쯤 되는 거리에 險處를 설치한 사실을 알아내었고, 후일 동청례가 다시 건주위로 온다면 이 길에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동보당개 등은 포로된 사람들을 추후에 쇠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동청례의 형 동아망개는 아버지 동소로가무가 회령의 번리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도 만포 건너편 皇城坪에 거주하면서 조선의 藩籬가 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³⁵⁾

그러나 동청례의 건주삼위에 대한 첫 번째 파견은 건주위에 국한되었고, 실제적인 피로인들의 쇠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쇠환할 것이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조선은 달한이 조선의 사신과 명을 받들고 쇠환을 독려한 사실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쇠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위엄과 명령이 아랫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³⁶⁾

Ⅲ. 童淸禮의 2차 建州三衛 파견

조선에서 건주위에서 돌아온 동청례에게 지도를 작성하고 서로 모일 절목을 마련하

35) 조선에서는 동아망개의 요청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후대에 여진인들이 증가하면 방어상의 폐단 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쪽 변경은 上國(중국)에 가까워서 마음대로 너희들을 가까운 변경에 옮길 수 없다'고 답하게 하여 동아망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산군일기』 권 19, 2년 11월 을사).

36) 『연산군일기』 권19, 2년 11월 병오.

도록 한 것으로 보아 동청례가 여진인들과 다시 만나 포로를 쇠환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³⁷⁾ 다시 회견할 시기와 정소는 다음해 봄 만포에서였지만,³⁸⁾ 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1497년(연산군 3) 4월 建州左右衛의 서계가 도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만포에서 다시 모이기로 기약하여 사람을 보내 동청례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으므로 4월간에 만포에서 만나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³⁹⁾ 이에 병조에서는 삼위 주장들이 도적질을 금지한 약속처럼 근간에 변방 경보가 좀 멎었으니, 그들의 청대로 청례를 다시 보내어 조선의 뜻을 통하고 삼위의 정황을 탐지하도록 하여 운허를 받았다.⁴⁰⁾

그렇지만 건주좌우위의 서계가 도착한 전후로 동청례의 재과견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재과견을 주장한 평안도관찰사李克均 및 兵曹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동청례가 건주위에만 방문하여 물품을 하사하고, 좌·우위를 방문하지 못해 주장에게 물품을 하사하지 못한 점은 嫌隙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둘째, 동청례가 급박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건주삼위의 도로 사정과 거처를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⁴¹⁾ 따라서 동청례를 다시 삼위로 보내어 균일하게 물품을 하사하는 동시에 지략있고 날랜 군사를 뽑아 伴奴라는 명색으로 따라가게 하여 도로와 요해지 및 거주처를 자세히 알아보아 후일의 토벌에 대비하도록 주장하였다.⁴²⁾ 또한 건주위 달한이 순종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어루만져 편안하게(撫綏) 하면 침요의 환란을 그치게 할 수 있고, 방수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³⁾

재과견을 반대했던 입장들은 왕래가 번거로우면 국위가 손상되고, 먼저 자주 사절을 보내어 약함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⁴⁴⁾ 또한 야인들이 동청례를 보려고 하는 사사로운 약속이며, 잡아간 인구를 한 명도 쇠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례를 보내는 것은 使命의 명분이 없음을 지적하였다.⁴⁵⁾ 그리고 농사철에 동청례가 많은 인마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邊鎮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양식만을 허비하는 것이고, 동청례에게 자주 왕래하게 한다면 야인을 대우하는 것이 동청례에의 입 놀리기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이에 동청례의 재과견을 반대하면서, 꼭 보내야 한다면 만포에서 서로 보는 것을 허락하여 귀순하는 마음을 위로하도록 주장하고 있었다.⁴⁷⁾

이러한 동청례의 재과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듭되어 2차 과견이 결정되었다가 중지되었던 상황이었지만, 건주삼위의 도독이 모두 서계를 보내어 와서 동청례 보기를 청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되었다.⁴⁸⁾ 건주삼위의 서계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없

37) 『연산군일기』 권18, 2년 10월 정유.

38)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정유.

39)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정유(서계를 보낸 것은 ‘建州左右衛’로 쓰여 있지만,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경신조에는 ‘左衛’로만 쓰여 있다).

40)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정유.

41) 『연산군일기』 권20, 2년 12월 경진.

42) 『연산군일기』 권20, 2년 12월 경진; 권23, 3년 5월 경신.

43) 『연산군일기』 권20, 2년 12월 경진.

44) 『연산군일기』 권20, 2년 12월 경진.

45)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경자.

46)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경자.

47)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경자.

지만, 야인들은 ‘전일 동청례가 갔을 때에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만일 다시 오면 평탄한 길로 맞이하고,窟穴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다.⁴⁹⁾

병조에서는 삼위의 도둑들이 보낸 서계에 대해 첫째, 동청례가 다시 온다는 말을 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어떤 모계가 있는지 그 정상을 알고 하는 시도, 둘째, 조선의 군사가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동청례를 통해 화호를 이루려는 시도, 셋째, 청례의 파견에 따른 하사 물품과 은상을 얻으려는 시도로 파악하였다.⁵⁰⁾ 그리고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야인이 침범하는데도 군사로 죄를 성토하지도 않고, 귀순하겠다고 하는데도 불러들이지 않으면서 오랑캐의 도적질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삼위의 요청이 돈독하므로 재차 동청례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⁵¹⁾ 결국 연산군은 대신들과 의논 끝에 동청례의 2차 건주삼위 파견을 결정하고, 병조에서 이극균과 함께 동청례가 가지고 갈 事目을 의논하게 하였다.⁵²⁾

병조가 이극균과 함께 만든 사목에서는 동청례를 宣慰官이라고 하였지만, 2차 파견시의 정식 명칭은 三衛宣諭官이었다.⁵³⁾ 사목에는 무신 4인을 함께 들여보내고, 통역으로 귀화인 高崇禮 및 京通事 1인, 하사물⁵⁴⁾을 가지고 가는 사람 2인, 호각 및 통소부는 사람 각 1인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파견되는 사람은 동청례까지 하면 총 11명이다. 그리고 각각 三衛와 岐州衛 및 濶下衛에 귀순의 징험을 보일 것과 피로인을 쇠환할 것, 휘하들을 단속하여 침략하지 말 것을 전하도록 하였다.⁵⁵⁾ 그리고 예조에서는 건주삼위에 曉諭할 글을 지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記事 3>

... 얼마 전부터 奸細한 무리들이 막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주 邊境을 침범하므로, 邊將들이 군사를 출동하여 죄를 성토하기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지난해 겨울에 童淸禮를 파견하여 너희들의 정상을 살펴보게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각기 부하를 보내어 경계 위에 나와 맞이하고 조심스럽게 朝命을 받들므로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

48) 『연산군일기』 권22, 3년 5월 경신.

49)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병인.

50) 『연산군일기』 권22, 3년 5월 경신.

51) 『연산군일기』 권22, 3년 5월 경신.

52)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병인; 기사.

53)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기사; 권28, 3년 10월 을해.

54) 조선에서 야인들에게 준 하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동청례가 가지고 갈 부채 130자루를 內廂庫에 저장해 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어 부채가 하사물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연산군일기』 권24, 3년 6월 임오).

55)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기사. 동청례가 건주삼위에 들어갈 사목까지 의논되었지만, 동청례의 재파견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다. 주요 반대 의견은, 여진인들이 위원에서 사로잡아간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므로 헛되게 갔다가 헛되게 돌아오면 국가의 위신만 손상될 것, 이적과 상통하면 반드시 걱정이 생기며 물품을 상국에 조공하듯 많이 주어 낭비되고 끝없는 폐단이 남쪽의倭와 같이 생길 것, 동청례를 다시 보내도 변방의 근심이 종식되지 않을 것 등이었다(『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갑진; 병오; 경술; 권26 3년 8월 경오).

시어 옷가지를 주게 하신 것이니 각기 영수하여 가고, 조정의 은혜로이 돌보아 주는 뜻을 체득하여 휘하들을 단속해서 더욱 순종하는 성의를 보이도록 하라. 만일 혹시라도 고치지 않고 다시 전일의 잘못을 되풀이 하게 되면 죄를 따지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각기 너희들의 마음을 경각시켜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하라.⁵⁶⁾

건주삼위에 효유한 글의 내용은, 위원 및 변경에 대한 침입이 있어서, 지난해 겨울 동청례를 파견하여 정상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여진인들이 朝命을 잘 받들었으므로 다시 동청례를 파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휘하들을 잘 단속하여 순종하고 침입을 하지 말 것이며, 침입이 있을 시에는 군사를 보내 정토를 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서계에 대해서는 예전에 야인에게 답한 서계가 전전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관계되는 말들은 일체 금기하였으므로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가부를 묻고 합당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⁵⁷⁾ 즉 건주삼위가 있던 곳은 중국 명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조선에서 보낸 서계가 명에 흘러 들어간 일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동청례의 파견과 조선의 서계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동청례는 7월 중에 이미 서울을 떠났고,⁵⁸⁾ 8월에는 만포에서 영접 나온 건주삼위의 여진인들을 만났다.⁵⁹⁾ 이미 7월 초순에 건주삼위의 여진인 70명이 만포에 와서 동청례를 기다리다가 동청례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이것을 전하러 돌아간 상황이었다. 동청례는 남아있던 네 사람에게 작년엔 인도하였던 길로 영접하면 가지 않을 것이고, 전자에 약속했던 평탄한 滿車의 길로 영접하도록 하였다. 이후 동청례의 활동 사항을 <표 2>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2> 동청례의 2차 건주삼위 파견시 활동 사항(1497년, 연산군 3년)

일 자	장 소	활동 사항 및 기타 사항
8월 23일	만포	右衛酋長 甫下土가 三衛 野人 50명을 거느리고 와서 영접
24일	만포	관찰사가 보하토 등을 宣慰하고 물품 차등 수여
25일	高山里	배를 타고 고산리에서 숙박 보하토 등은 강을 건너 皇城坪에서 숙박
26일	압록강 도하 滿車 길 경유 于羅山城 理山 飛羅	만거의 길 경유, 10리 지나 우라산성의 야인 11명이 영접 50리 떨어진 이산 비라에서 野宿
27일	三岐 鬱地	우라산성 야인 11명에게 각각 면포 1필과 종이 2권 수여 10리 지나 삼기 도착, 시냇물 20개 지나 40여리 가서 嶺

56) 『연산군일기』 권24, 3년 6월 신묘.

57) 『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계축.

58) 『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경술.

59) 『연산군일기』 권28, 3년 10월 을해(이후 인용되는 동청례의 2차 건주삼위 파견시의 활동 상황은 동청례가 복명한 이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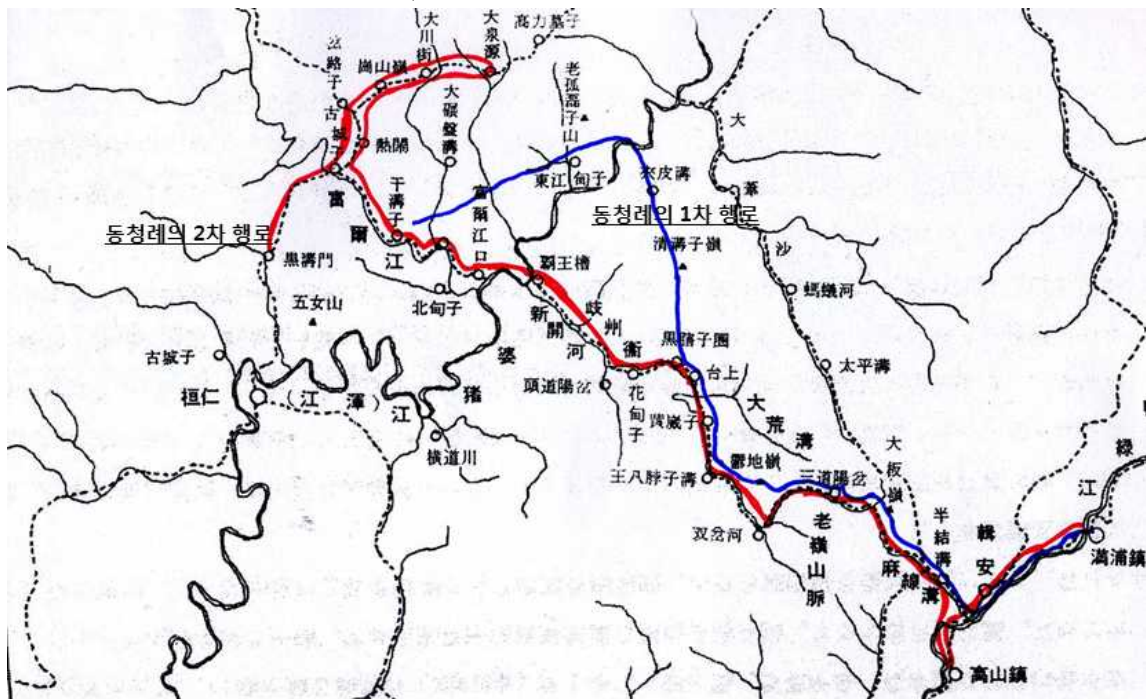
		도착(울지), 10여 리를 더 가서 산기슭에 노숙
28일	滿車坪	30리 지나 風雪이 갑자기 몰아쳐 유숙
29일	陣高介 蒲州江	10여 리 지나 비옥한 평야 봄(고려가 두려워 못 온다 함) 4~5리 지나 진고개 도착, 金山赤下가 設險한 시설 목도 7~8리 지나 管老 등이 새로 이사한 인가 8집 봄 15리쯤 가서 금산적하의 도당 4집 봄 1~2리 지나 포주강 당도, 금산적하 등 30여 명이 고려 사 신을 데리고 온 여진인들을 위협, 동청례를 가로막고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함, 부득이 江上에서 머무름
9월 1일	金山赤下 집	금산적하가 계속 가로막음 동청례의 형 아망합이 부하 18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옴 (동청례에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요청) 금산적하 등 7인이 강을 건너 와 대면하자 동청례가 힐책함 금산적하가 배를 모아 건너가기를 경근하게 청함 금산적하 집에 당도(산적하 및 그 아비 등이 심복함) 5리 쯤 지나 유숙(호각을 불어 방비 및 피로인들에게 알림)
2일	阿羅加舍里	20리 쯤 가서 王夫里哈 거주지 통과, 30리 쯤 가서 아라가사리 당도, 건주위 도독 羅下의 아들 羅吾將(동청례의 6촌)이 2~3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호각 을 불며 영접하고 유숙, 나오장이 조선인 1인 쇄환 趙三波의 아들 8인이 귀순 요청
3일	達罕 집	30리 지나 나오장 거주지 통과(10여 호) 20리 지나 달한 거주지 도착(50여 호) 10리 못가서 달한의 子 甫羅多 및 좌위추장 土老가 영접 5리 쯤 가서 달한이 소리를 불며 영접, 집 앞으로 안내 서계를 놓고 1백여 인을 사배하게 하고 宣醜과 물품 하사 事目에 대한 뜻을 말함, 술자리를 마련하고 잔치를 벌임
4일	達罕 집	달한이 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 달한이 조선 변경 침입 금지를 약속하고 도로로 소상히 알고 가도록 함
5일	羅吾將 집	도독 나오장의 집 당도(달한 거주지에서 20여 리), 유숙함 나오장이 5리 밖에서 영접,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
6일	左衛	나오장의 집에서 60여 리, 추장 토로가 5리 밖에서 영접, 서계에 절하고 사물을 받고, 침입 금지를 약속함
7일	左衛	추장 보하토에게 사물을 증여
8일	阿羅加舍其里	회정, 보하토와 달한의 子 多之哈, 동청례의 형 동아망합 등이 삼위의 諸種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호송함 아사가사기리에서 유숙
9일	蒲州 강변	王斜老가 말과 소로 양가 여자 延壽를 사가지고 옴
10일	鬱地 洞口	금산적하가 부모와 함께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길가 에서 접대하고 사로잡아간 위원의 여자를 돌려줌
11일	鬱地 산기슭	온하위 40여 명이 술을 가지고 오고 소 1마리 기증해 옴
12일	압록강 도하	호송인 2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 도하
13일	만포	만포첨사 이윤종과 호송해 준 야인을 위해 잔치를 벌임

동청례는 2차 건주위 파견시, 만포를 출발 → 高山里 → 滿車 길 → 于羅山城 → 理山 飛羅 → 三岐 → 鬱地 → 滿車坪 → 陣高介 → 蒲州江 → 金山赤下 집 → 阿羅加舍里 → 達罕 집 → 羅吾將 집 → 左衛 → 阿羅加舍其里 → 蒲州 강변 → 鬱地

洞口 → 鬱地 산기슭 → 압록강 도하 → 만포로 돌아오는 경로로 건주위를 다녀왔는데, 총 20여 일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었다. 1차 파견 때보다도 긴 여정이었으나, 만거 길을 경유하면서 건주위로 가는 길을 단축할 수 있었다.

8월 23일 만포에서 右衛僉長 甫下土가 三衛 野人 50명을 거느리고 와서 동청례을 영접하였고, 25일에는 배를 타고 만포를 떠나 高山里에서 잠을 잤는데, 보하토 등은 압록강을 건너 皇城坪에서 유숙하였다. 26일에는 동청례도 압록강을 건너 보하토 등과 함께 전에 약속했던 평탄한 滿車 길을 경유하여 우라산성의 야인들의 영접을 받고 理山 飛羅(澗水,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부근에서 야숙을 하였다. 27일, 三岐로 이동하여 시냇물을 20여 곳이나 지나 鬱地라는 재(嶺)에 도착하여 근처 산기슭에서 노숙하였는데, 우라산성의 야인들이 고려와의 원한을 풀고 上京하여 肅拜드릴 것을 요청받았다. 28일 만거평을 지나, 29일에는 陣高介에서 금산적하가 설험한 방어시설물을 목도하였는데 큰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놓아 판자를 세워서 방패와 같이 만든 것이었다. 설험한 장소는 ‘고려가 쳐들어올 적에 援軍을 머물러 둔 곳’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管老 및 金山赤下의 관하들의 집을 지나서 蒲州江에 당도하였다. 포주강에서는 금산적하 등 30여 명의 여진인들이 무장을 한 채 동청례를 데리고 온 여진인들을 위협하며, 동청례를 가로막고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여 부득이 江上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이들이 동청례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은 것은 위원 침입을 주도한 사람들이기도 하였지만, 이전에도 조선 사신이 왔다가 지형 및 도로 등을 파악하고 얼마 있지 않아 조선의 정벌이 있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림 3> 童清禮 行程 參考圖(60)



60)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660쪽, ‘童清禮行程參考圖’를 재작성함(같은 지

9월 1일에는 동청례의 형 아망합이 강을 건너 와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던 중 금산적하가 건너와서 동청례와 대면하게 되었다. 동청례는 금산적하의 조선 침입 및 피로인 쇄환 약속을 어긴 것을 힐책하였고, 금산적하가 건주삼위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허락하였다. 강을 건너 금산적하의 집에 당도하여 술을 대접 받으면서 금산적하와 그 아비 등의 위원 침입을 꾸짖고 심복을 받았으며, 5리 쯤 지나 유숙하다가 호각을 불어 방비하고 피로인들에게 조선 사신이 왔음을 알렸다. 2일에는 王夫里哈 거주지를 통과하여 阿羅加舍里에 당도하자 건주위 도독 羅下의 아들 羅吾將(동청례의 6촌)이 2~3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호각을 불며 영접하였다. 함께 유숙하면서 동청례가 쇄환의 일을 이야기하자, 나오장이 즉시 자신의 부하가 사로잡은 조선인 1명을 쇄환하였다. 또 趙三波의 아들 8인이 와서 조선에 귀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3일에는 나오장이 사는 곳을 통과하여 달한이 사는 곳에 이르렀는데, 달한의 아들 甫羅多 및 좌위추장 土老가 10리 밖에서 영접하고, 달한도 5리 밖에서 소리를 불며 영접하면서 집 앞으로 안내하였다. 달한은 전립을 쓰고 녹사와 흥배를 입었으며, 동청례가 서계를 긴 상에 놓고 달한 및 群下 1백여 인을 四拜하게 하고 宣醮과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事目에 대한 뜻을 말하고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고 잔치를 벌였다. 달한은 동청례에게 닭구이와 소주를 대접하였으며, 잔치에서는 琵琶를 타고 奚琴과 같은 屎屎音을 당기며 拍板을 치곤하였다. 또한 침방으로 청하여 풍악을 울리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술을 권하게 하기도 하였다.

4일에는 달한 등이 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동청례가 조선에 대한 침입을 금할 것을 요청하자, '큰 무리는 영원히 근절될 것이지만 소소한 무리들이 도적질하는 것은 보증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달한은 또한 조선이 침입을 받는 경우에는 大軍을 발동하지 말고 裨將을 보내 알리면 침입자를 수색하여 조선의 관군에게 넘길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도로를 다 알게 되면 침입하려는 여진인들이 보복이 두려워 굴복할 것이므로 동청례가 돌아가면서 도로를 소상히 알고 가도록 하였다. 동청례는 5일에 나오장의 집에서 묵고, 6일에는 左衛에 당도하여 추장 土老를 만났다. 토로는 紗帽를 쓰고 대홍색 袞龍 團領을 입고 5리 밖에서 호각을 불며 영접하였고, 역시 서계에 절하고 사물을 받았으며 조선에 대한 침입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술자리를 벌였는데, 술자리가 과한 다음에 토로의 아내가 옷을 잘 단정하고 여종 5~7명을 거느리며 사람을 물리친 이후에 동청례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

7일에는 좌위에 머무르면서 우위 추장 보하토에게 우위를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하토는 火刺濫 兀狄哈과 틈이 벌어져 자신도 다른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물을 받고 싶다는 대답을 들었다. 동청례는 부득이 좌위에서 우위 추장 보하토에게 사물을 증여하였고, 보하토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

도가 河內良弘, 1976, 「燕山君時代の朝鮮と女眞」, 『朝鮮學報』 81, 78쪽에도 있다). 河內良弘은 동청례의 1·2차 파견 행로를 비정하였는데, 그의 견해에 따라 지도에 '線'을 표시해 보았다.

풀지 못하고 소 2마리를 잡아 보내었다. 이때 보하토는 만포 이외에도 삼위가 각각 가까운 고을에 告變할 것과 朝貢하는 것도 전례에 속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청례는 이렇게 해서 건주위(본위)·좌위·우위 추장들을 모두 직접 대면하였다. 또한 각각에게 서계를 반포하고 사물을 증여하였으며, 침입 금지 약속을 받고 다음날인 8일 회정을 하였다. 회정시에는 보하토와 달한의 아들 多之哈, 동청례의 형 동아망합 등이 삼위의 諸種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호송하였다. 회정하던 중 9일에는 王斜老가 말과 소로 自作地에 사로잡혀 온 양가 여자 延壽를 사가지고 왔고, 10일에는 금산적하가 부모와 함께 와서 사로잡아간 위원의 여자를 돌려주었으며, 11일에는 온하위 40여 명이 소 1마리를 기증해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12일에는 압록강을 건너 만포로 돌아와서 다음날(13일) 호송해 준 여진인들에게 잔치를 벌여 주었다.

결국 동청례의 건주삼위 2차 파견은 지역적으로만 한정해보면 건주위와 건주좌위까지 이루어졌지만, 삼위 추장 모두에게 조선의 서계와 사물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조선 침입 禁約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에서 피로된 사람들의 송환을 이끌어내었으며, 건주위의 도로와 지형을 소상히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청례의 파견과 활동은 건주삼위 추장의 내조 요청⁶¹⁾과 연관되면서 이후 『西北諸蕃記』와 『西北地圖』 찬술의 바탕이 되었고, 『西國諸蕃記』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⁶²⁾ 『海東諸國記』는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온 후 만들어졌는데, 『西國諸蕃記』 역시 동청례의 건주삼위 파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⁶³⁾

그렇다면 동청례의 1·2차 파견으로 조선인 포로의 쇄환과 압록강유역에 대한 여진인들의 침입은 멈추었을까? 동청례의 파견 직후에는 압록강유역에 대한 여진인들의 침입은 잠시 멈추었지만, 여진인들의 침입은 다시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여진인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명과 조선과의 교역을 하였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자를 침입하고 있었다. 게다가 압록강 및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의 농경화 진행에 따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명과 조선의 사람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진인들의 요동에 대한 침입은 조선의

61) 『연산군일기』 권31, 4년 10월 무자(건주삼위의 추장 達罕, 甫花土, 土老 등이 내조 요청을 하자, 조선에서는 이들이 一品 都督이기 때문에 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었다. 건주삼위 추장들의 내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건주삼위의 추장이 내조하게 되면 평안도의 監司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고, 宣慰使를 보내서 觀察使는 北壁에 앉고 추장을 동벽에 앉게 하였는데, 추장이 품계가 조선의 관찰사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배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접대의 節目을 마련하여, 江界府에서 세 차례 잔치를 베풀고, 도둑 및 수행자들에게 수여할 물품과 장소를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62) 『西北諸蕃記』와 『西北地圖』가 撰述된 것은 1501년(연산군 7)으로 동청례의 건주삼위 파견 후 4년이 지난 뒤에 좌의정 成俊과 우의정 李克均에 의해 撰述되었다(『연산군일기』 권40, 7년 윤7월 갑신). 『西國諸蕃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西北諸蕃記』를 바탕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西國諸蕃記』에 대한 기록은 『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신미조에 보인다.

63) 『海東諸國記』는 1443년(세종 25)에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叔舟가 1471년(성종 2)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일본의 정치·외교관계·사회·풍속·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에 日本 및 琉球 등의 使臣이 왔을 때의 접대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승지 李懿孫이 '倭인에 대해서는 해동제국기가 있으므로 그 世系를 상고할 수 있지만, 野인에 있어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西國諸蕃記를 인출할 것을 청한 것'으로 보아 『서국제번기』 역시 『해동제국기』처럼 여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신미).

변경 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⁶⁴⁾

실제로 동청례의 2차 파견 이후에 건주위의 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해 1498년(연산군 4)부터 평안도 변경에 대한 여진인들의 침입 정황이 보고되고 있었다.⁶⁵⁾ 동청례의 파견 2년여 정도가 지난 1499년(연산군 5) 야인 20여 騎가 三水郡을 침범하여 거민 7명을 살해하고, 남녀 33인과 牛馬 10여 마리를 노략하여 갔으며, 碧潼鎭도 침입을 받게 되었다.⁶⁶⁾ 마침내 여진인 50여 기가 삼수군 甘坡里를 침범하여 남녀 4인과 소 2마리를 노략하고, 다시 삼수 경내의 변민 7인을 사로잡아가면서 우의정 成俊을 지휘관으로 하는 여진 정벌을 계획하게 되었다.⁶⁷⁾ 따라서 동청례⁶⁸⁾의 건주 삼위에 파견에 대해서도 ‘동청례가 갔다가 돌아온 후 여진인들의 도적질이 전보다 몇 배가 되었는데, 여진인들이 이익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자 도리어 화만 나게 된 것’⁶⁹⁾, ‘동청례를 보내어 추장을 위무하고 회유하였는데도 변방의 우환은 더욱 심해진 것’⁷⁰⁾ 등의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IV. 맺음말

연산군대 이루어진 동청례의 파견은 압록강유역의 위원이 침입을 받은 것을 계기로 포로된 사람들을 쇄환시키고, 교섭을 통해 여진인들의 침입을 금지시키며, 향후 정벌을 대비하여 건주삼위 지역에 대한 도로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동청례의 파견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청례의 1차 파견은 1496년(연산군 2)에 실시되었는데, 약 12~13일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었다. 동청례는 ‘三衛敬差官’이란 이름으로 건주위(분위)를 직접 방문하여 추장 達罕과 좌·우위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위원 침입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쇄환하고, 침입을 금지하라는 조선의 교지를 반포하였다. 그러나 건주위만을 방문하였을 뿐 좌위와 우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잡아간 사람들의 쇄환만을 약속받았을 뿐 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다만 조선에 대한 침입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눈이 많이 쌓이는 관계로 급히 돌아오면서, 다음해 봄에 만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런데 만포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건주삼위의 추장들은

64) 남의현, 2005, 「明代 兀良哈·女眞의 成長과 遼東都司의 危機」, 『만주연구』 3.

65) 『연산군일기』 권29, 4년 5월 기해.

66) 『연산군일기』 권33, 5년 4월 임진; 기유.

67) 『연산군일기』 권33, 5년 5월 무진. 成俊은 西征軍 2만 명의 동원을 요청하였고 특수 총통군 100명에게 화포훈련을 시작하였으나, 홍문관과 사헌부의 반대가 계속되어 조정에서 서정 가부에 대한 논의 계속되었으며, 결국 1499년(연산군 6) 정월에 西征 논의를 중단하였다(강성문,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군사』 18, 58~60쪽).

68) 동청례는 종종 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었다가, ‘禍心을 품고 도당을 맺어 반란을 선동하고, 인심을 동요시켜 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능지처사 당하였다(『중종실록』 권7, 3년 12월 병인). 여진인들은 동청례의 죽음에 대해 보복을 성언하기도 하고, 20여 년이 지났지만 憤怨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중종실록』 권12, 5년 8월 갑오; 권64, 23년 12월 병술).

69) 『연산군일기』 권36, 6년 1월 갑자.

70) 『연산군일기』 권36, 6년 1월 갑자.

서계를 보내 동청례를 다시 청하게 되었고, 조선에서는 동청례의 건주삼위 재파견에 대한 의논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동청례의 2차 파견이 결정되어 1497년(연산군 3)에 ‘三衛宣諭官’이란 이름으로 약 20여 일 정도 건주삼위를 방문하였다. 2차 파견시에는 동청례를 영접하러 온 여진인들을 따라 1차 파견 회정 때 약속받았던 평탄한 지름길을 통해 건주위(분위)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여진인들이 설치한 방어시설을 볼 수 있었고, 위원에 침입한 금산적하의 위협과 방해도 있었다. 그러나 건주위 달한과 좌위 土老, 우위 甫化土(甫花土, 南華土)를 직접 대면하고, 각각에게 조선의 서계를 반포할 수 있었다. 삼위 추장들은 宣醢 및 물품을 받고 잔치를 벌여 동청례를 환영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대한 침입 금지를 약속하였고, 특히 달한은 동청례가 회정할 때 도로를 소상히 알고 가도록 하였다. 소정의 목적을 이룬 동청례는 포로가 되었던 조선인 3명을 돌려받고, 2백여 명의 여진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돌아왔다.

조선전기 여진관계사 연구 중 건주위와의 교섭 관계는 조선의 세조 이후부터 선조 직전까지(1468~1567) 약 1백년 간 공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과 건주삼위의 관계를 고찰할 사료가 없는 것도 아님에도, 세조대 건주삼위에 대한 초무와 이에 대한 명의 간섭으로, 이후에도 양자 간의 관계가 중단된 것처럼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조대 이후에도 조선과 건주위와의 교섭은 계속 지속되었다. 성종대 세조대처럼 평안도의 교통로를 개방하여 건주삼위의 통교를 받아들인 사실이나, 연산군대 동청례를 건주삼위에 파견한 사실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 시기에 대한 조선과 건주삼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清朝 前史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終)

명청시대 고지도를 통해서 본 변경시대

- 압록강, 두만강 변을 중심으로 -

남의현(강원대)

1. 序 論
2. 명·청대 鴨綠江
3. 명청대 여진지역
4. 명청대 4郡·6鎮지역
5. 遼東邊牆과 柳條邊
6. 結 論

1. 序 論

명·청시대 요동은 조선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또한 수많은 여진족이 부족단위로 생활하던 지역이었다. 여진족들은 조선과 명을 상대로 交易, 越境, 農業 등을 통해 그들 경제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부족할 경우 빈번한 침략과 약탈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인축을 확보해나가며 그들 사회를 성장시켰다. 이러한 결과 여진족은 후기로 갈수록 생산력을 높이고 교역량을 늘려 농구와 철기를 수입하는 등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결국 성공적으로 후금, 나아가 청제국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적은 인구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원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여진은 명 초기에는 주로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진지역은 지리적 환경이 매우 다양하였다. 이들 지역은 산과 강이 널리 분포하여 조선과 명이 필요로 하던 산삼, 인삼, 모피 등 고가의 1차 생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이러한 특산물들은 조선과 명을 상대로 교역시장 곧 마시를 만들기에 충분했으며 마시는 여진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였다.

여진은 마시를 통해 생활필수품만을 제공받으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원시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조선과 명에 필적할만한 생산력을 축적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생활필수품 이외에 農具, 耕牛, 鐵 등을 가급적 많이 수입하고자 했으며 그만큼 많은 양의 특산물을 마시에서 교환해야 했다. 그리고 마시에서 자유롭게 교역이 안 되는 것들, 즉 인력, 철 등은 약탈이나 밀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하

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료에 나오는 수많은 여진인의 약탈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그들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초 원시경제 단계의 여진인들이 훗날 청제국을 건립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변경의 골칫거리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진경제를 연구한 성과물 특히 그들의 경제적 구조를 연구한 결과물들은 그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구조는 일종의 다원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주변국 곧 명·조선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역으로 인한 생산력의 확보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경제단위는 수렵, 어렵, 채집, 농업, 무역, 약탈 등으로 다양한 경제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여진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해 낸 토산물들 산삼, 모피, 어류 등은 주변국과 마시를 개설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물이었다. 그들의 특산물은 교역시장을 형성할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 냈고, 여진족은 교역시장을 통해 농구와 기술, 철 등을 수입해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상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농업의 발전은 더 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으며 곧 약탈경제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경제구조는 반복되는 피드 백 시스템을 만들어 내어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가 되어 여진경제를 다원경제의 구조로 만들었고 이러한 다원경제의 발전 속에서 여진이 통합되고 후금과 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보자면 여진은 특산물이 없었다면 조선·명과의 마시를 개설하는데 어렵다는 추측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특산물이 여진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진 사회의 성장은 고지도에 나타나있지 않다. 명대 여진지역을 그린 지도는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재 그들 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는 만나보지 못했다. 다만 조선과 명이 지도에서 그들 지역을 찾아 볼 수 있다. 적어도 이들 지도는 여진지역을 지도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료와 지도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지도에 나타난 여진지역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도를 통해 그리고 사료해석과 지도를 결합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변경지대의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지도를 많이 인용하였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그리고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지도들 중에는 간혹 조선 전기 4군 지역과 6진 지역을 그린 지도들도 있으며, 압록강 건너 편 여진지역에서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강 지류와 중요한 산을 표시한 지도들도 있다. 지도에 나타난 압록강 대안 지역 여진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것은 어떠한 배경이 있으며 봉금지대화된 행정구역 밖 여진지역을 지도에 표시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역사인식 내지 변경지역의 특징을 잡아내려고 시도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물론 이러한 지도에 대한 설명은 사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근거없는 지도에 대한 해석은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세종이 하필이면 왜 4군과 6진 지역에 군진을 집중적으로 세웠을까. 이것은 4군과 6진 지역의 자연환경 이외에 사료를 검색해 보면 많은 수의 여진인들이 이들 지역에 부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을 통해 그들의 약탈과 침입이 지속되거나 변경 위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도와 사료의 대조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첨예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02년 시작된 동북공정 과제들 역시 상당수 국경과 변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역사왜곡의 목표 속에는 변경의 안정 이외에 주변국과의 국경 및 변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들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한중간의 국경문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변경이론, 국경이론, 변속이론 등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고지도들 하나로 묶고 그들을 통해 전통시대의 변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사료와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도 앞으로 매우 필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은 조선과 명청의 변경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은 지도를 표시할 때 여진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명대 길림과 흑룡강 지역을 명의 강역 내지 그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 지역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명대 흑룡강 하류에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노아간도사가 수많은 여진부족을 관할했고, 그리고 청대 누르하치의 여진부족 통합 과정을 통해 명과 청의 힘이 압록강, 두만강은 물론이고 흑룡강에 미쳤다는 근거를 이론적으로 만들고 흑룡강도 청의 강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입관 후 만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조변을 설치하는 동시에 봉금지대화시켰으며 결국 흑룡강 일대도 명청시대의 역사적인 강역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당시 지도나 관련 사료를 정밀하게 비교 검토해봄으로써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명대의 여진지역은 명의 힘이 부분적으로 미쳤을 뿐이며 청대 흑룡강 유역에 누르하치가 부족연합을 위해 군사적 진출을 시도했지만 이것은 인구약탈의 범위였으며 그 지역을 청제국의 영토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근거로 중국의 입장에 맞서고 있다.²⁾

얼핏 보면 위에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변경의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 여진지역의 성격, 유조변을 둘러싼 한중러 삼국의 입장, 만리장성의 성격 등은 요동을 둘러싼 변경을 이해하는데 삼국의 관점이 모두 다르다.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토문강과 두만강의 문제도 양국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 고지도에 표시된 경계선과 지명 등 다양한 자료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林榮貴 主編, 『中國古代疆域史』 上·下 4卷本, 黑龍江教育出版社, 2007.

2) 黑龍江省哲學社會科學院第三室譯, 『滿洲人在東北—十七世紀—』, 商務印書館, 1976.

고지도를 통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 문제도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과는 다르게 보이는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 2005~2015)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리장성 보호공정 사업은 역사왜곡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중국은 오래 전부터 만리장성 보호 및 관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였고 장성보호공정 사업을 시작하였다. 장성보호공정사업은 만리장성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물 즉 성벽, 적루, 관성, 영성, 위소, 봉화대 등 모든 성의 부속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역대 장성의 총 길이를 추산하는 작업도 이 사업 속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연구를 통해 대략 장성의 총길이가 5만 km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장성보존사업이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역사왜곡부분도 관련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만리장성 동단기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도를 통해 요동변장과 유조변, 그리고 만리장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고지도들을 소개함으로써 요동변장과 유조변이 만리장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각 장의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2장 <명청대 압록강>에서는 연산관이 표시된 지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산관은 1480년대 봉황성으로 책문이 설치되기 이전 책문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 후기의 지도에도 연산관이 표시됨으로써 청 후기까지도 주요한 사행로임을 지도상에서 알려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명대 국경을 표시할 때 1480년대 이전에는 압록강~연산관이 국경완충지대로, 1480년 이후에는 압록강~봉황성 지역이 국경완충지대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경완충지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경의 개념이 선의 개념이 아니라 면의 개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군사와 사람들이 압록강변의 섬을 차지하거나 군사들이 강을 건너 여진이 출몰하는 길목에 목책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이 실질적인 국경선이 될 수 없음도 언급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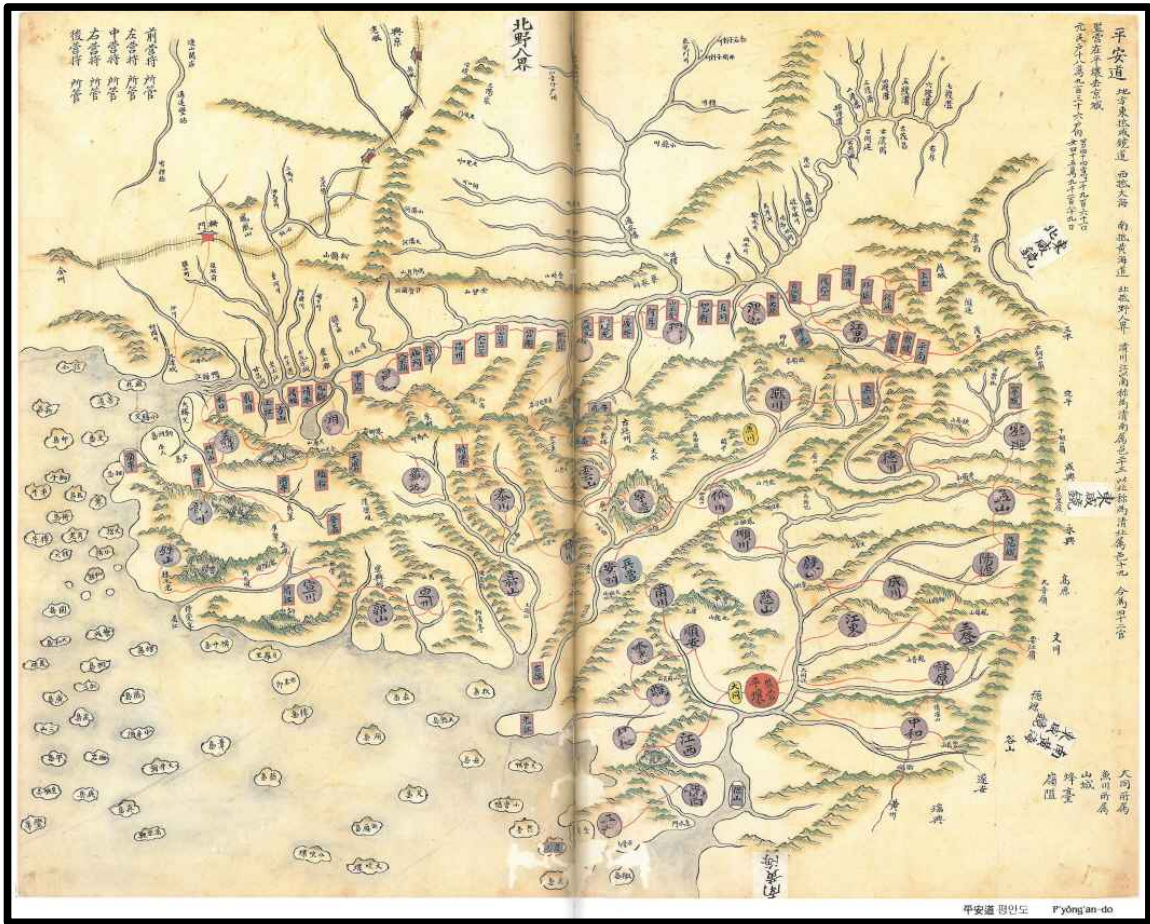
3장에서는 <명청대 여진지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진지역은 명대에는 여진의 관할지역으로, 청대에는 봉금지대로 설정되어 명청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지역을 지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를 살펴보면 명대 여진지역은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청대에는 그 관할지역이 매우 모호하였다.

4장 <명청대 4군6진지역>에서는 지도를 통해 긴 압록강과 두만강 방어선 중 4군과 6진 지역에 군진이 설치된 배경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로 4군과 6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진세력의 동향이 4군과 6진을 설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4군과 6진 지역은 여진이 농업 등을 시작하면서 비옥한 지역을 찾아다녔고 그들이 찾아 온 지역이 압록강변이 4군지역과 두만강 변의 6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곧 4군과 6진의 설치에 여진의 농업사회로의 진입과 정착, 그리고 인구의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지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우선 국내에서 발간된 『해동지도』(서울대학, 1995), 『Old Maps of Korea』(범우사, 1991), 『한국의 옛지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조선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조선도』 (국립중앙 박물관, 2007) 등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몇몇 지도를 참고하여 우선 살펴보았다. 차 후 다양한 지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실록류의 사료내용과 같이 비교하여 변경의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명·청대 압록강



【그림 1】 평안도(해동지도, 서울대학, 1995). 조선시대 평안도를 그린 지도이지만 봉황성의 책문을 넘어 연산관까지 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봉금지대를 청나라가 아닌 야인의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1) 명초 連山關과 柵門

명나라는 태조시기 고려의 요동진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철령위 설치시도이다. 명의 철령위 설치 시도는 명나라가 압록강으로 진출하려던 시도였다. 결국 요동 북부에서 몽고의 위협이 심각하였고 고려의 요동공벌론을 야기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압록강 변에 위를 설치할 경우 식량의 공급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압록강 변에 철령위를 설치하려던 명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중국에는 요동북부 현재의 철령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압

록강변 철령위 설치가 좌절됨으로써 명나라는 압록강을 그들의 군사방어지역에서 제외시켰고 이후 압록강 유역은 명나라의 판도와 지역이 되었다. 당시 명의 군사력은 대부분 북부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요동역참들이 정비되지 않아 요양의 군사가 출동하기 가까우며, 적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험준한 고개 지역 곧 연산관에 책문을 설치하였다. 연산관은 압록강에서 180여리 떨어진 곳으로 연산관에 도착해야 조선의 사신을 맞이하는 명나라 군사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처럼 명으로 들어가는 연산관과 압록강 사이 180리는 遼東八站, 혹은 東八站으로 불리며 양국의 국경지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부역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새로운 개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변경지대가 되었다. 실제로 사료를 살펴보면 범법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동팔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전쟁을 피해 명나라 사람 혹은 명의 위소에 소속된 사람들이 연산관을 지나 상당 수 조선으로 건너오고 있었다. 연산관만 넘으면 명과 조선의 군사가 없어서 쉽게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연산관을 넘어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조선은 이들을 압록강변에 거주시키지 않고 下三道의 여러 고을로 옮겨 驛吏와 官奴로 充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판단하기에 이들을 압록강 가의 州郡에 두게 되면 뒷날 요양 등 처에 풍년이 들고 전쟁이 그치게 되었을 때, 명나라가 인구쇄환을 요구하거나 생활필수품과 농업도구 등이 부족한 여진 등이 조선인을 유인하고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가지고 강을 건너 달아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요양을 벗어나 연산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명의 위소관할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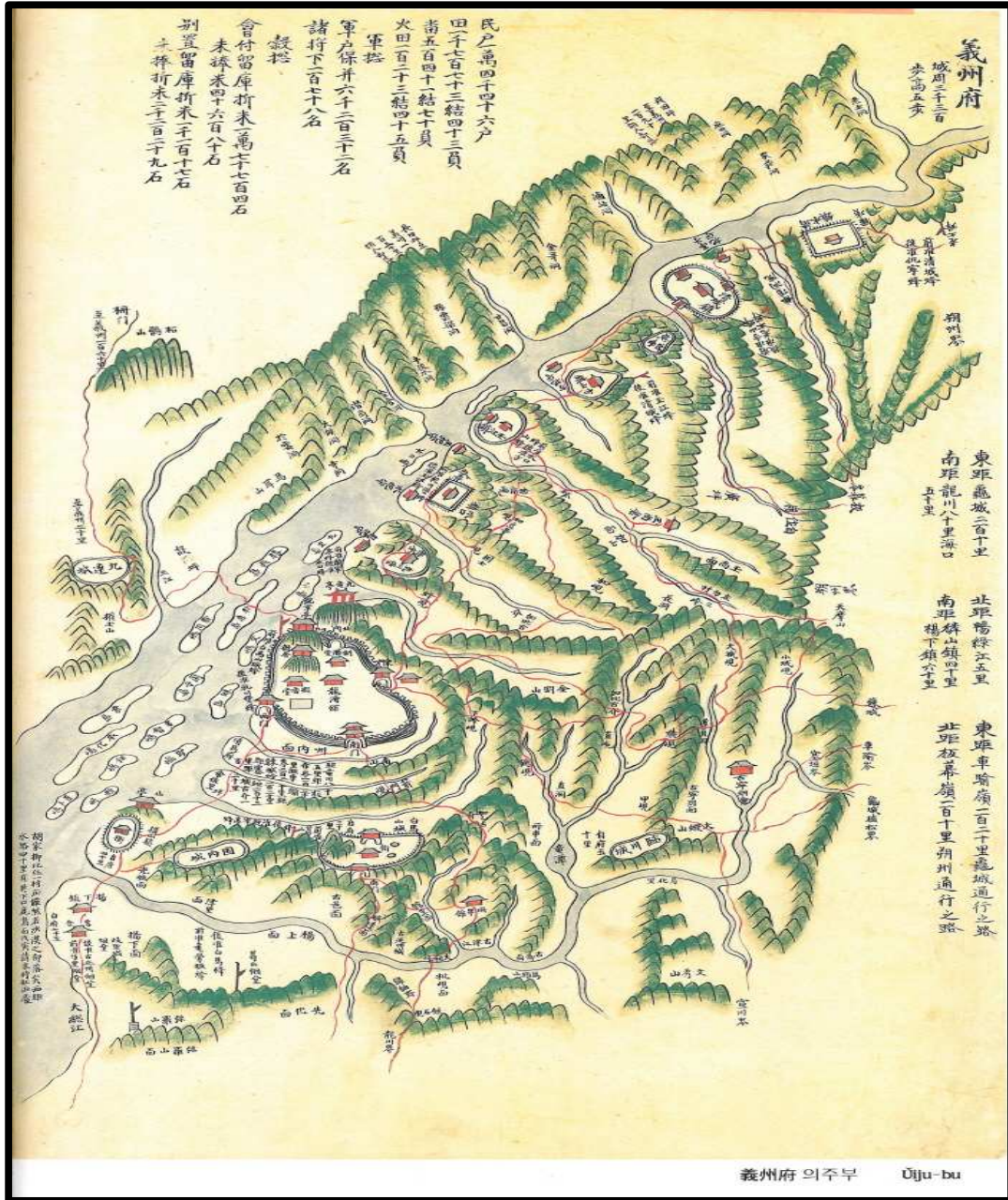
명나라는 건국 후에 내전을 겪었다. 황제위를 놓고 벌인 내전 靖難의 變은 영락제가 변방 군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전쟁에 지쳐있던 변방의 군인들 특히 요동의 위소군사들 상당수는 전쟁을 피해 연산관을 넘어 조선으로 넘어왔다. 만약 연산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에 명나라의 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위소병들이 장애물도 없이 조선으로 대거 귀부해 오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역시 명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연산관이었고 압록강에는 전혀 명나라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⁴⁾

연산관에 책문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으로 입경하는 조선의 사신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연산 관절에 도착하기까지 자체 조선의 호위병력을 대동해야만했다. 연산관까지의 이동 중 산적과 여진인 그리고 산짐승 등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정사와 부사는 모두 微服 차림으로서 군사들 사이에 끼어서 탄 사람들이 상사인지 부사인지 모르게 위장하는 등 철저한 군사적 경계를 취하며 연산관까지 이동하였던 것

3) 『朝鮮王朝實錄』太宗 2年 2月 丁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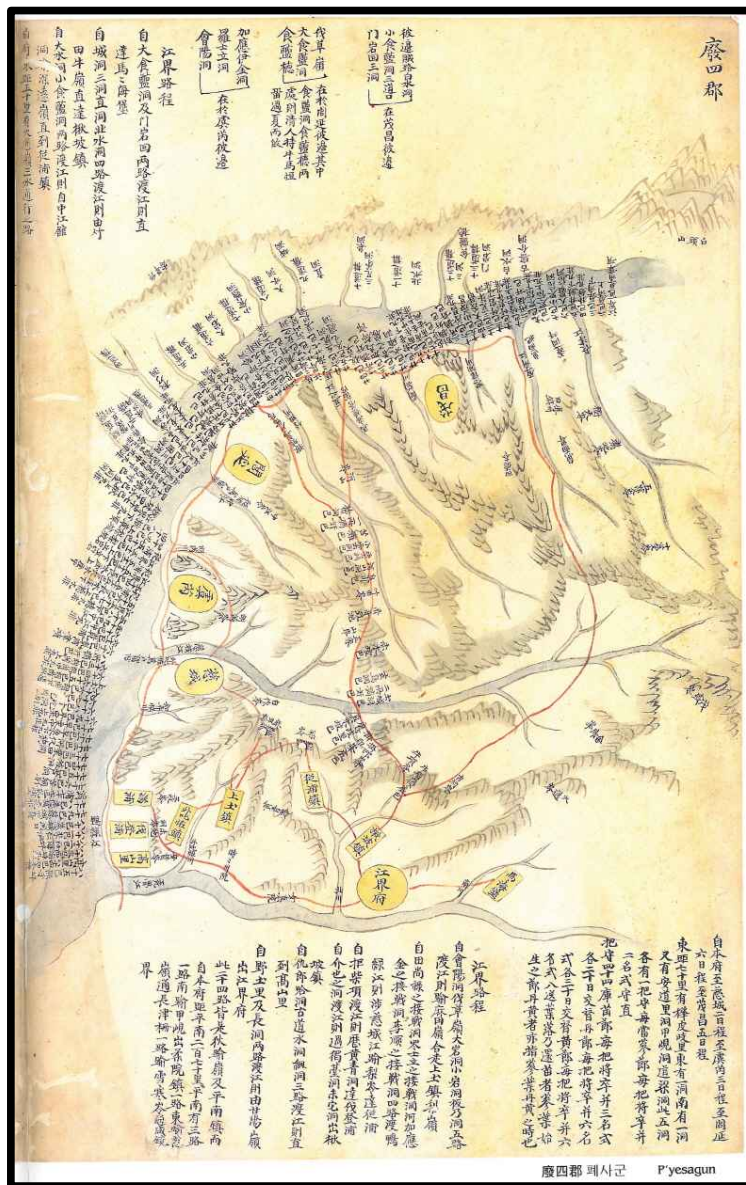
4) 『朝鮮王朝實錄』太宗 2年 4月 戊辰. 이외에도 명나라의 東寧衛千戶 林八刺失里가 3천여 호를 거느리고 요동을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명나라의 河指揮·姚千戶 등이 1천 5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모두 임팔라실리에게 죽음을 당하여 길거리에 梟首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명나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압록강으로 이동하여 강을 건너 조선에 귀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귀부과정을 통해서 보면 항상 명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요동팔참지역을 지나 조선으로 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다.5) 연산관은 명초 책문이 설치된 지역, 수많은 고려인들이 살던 지역, 연산관을 넘으면 요양이 나타나므로 고려와 조선에게 있어서 연산관은 특별한 지역으로 지도에 표현할만한 곳이었다.



【그림 2】 義州府(서울대학, 『해동지도』, 1995)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압록강 건너편의 물길과 산의 형세를 자세하게 그린지도들이 많다. 이것은 명대에는 여진을 정벌하거나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설치하기 위해 수시로 출입하였으며, 또한 산삼 등을 채집하기 위해 월경하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여진과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선과 여진의 명확한 경계선이 없었다.

5) 『朝鮮王朝實錄』世宗 20年 1月 丁未.



【그림 3】 廢四郡. (서울대학, 『海東地圖』, 1995) 해동지도집에 나타난 폐사군도로 4군 지역에 수많은 초소들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진지역에 인구의 증가나 생산력의 발전 등 조선의 4군 지역을 위협할만한 정세변화 등이 있었으며 조선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4군을 설치하였으나 방어의 곤란함으로 4군을 폐하고 다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했음을 의미한다.

2) 압록강을 건너간 조선의 군사활동

조선과 명 사이에 국경지대가 설정되어 있고 압록강이 명과 조선의 경계가 될 수 없음은 조선이 빈번히 압록강을 건너간 사례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명대에 조선은 수시로 명의 허락없이 압록강을 건너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압록강 건너편은 산세가 험하고 간혹 낮은 곳이 있기는 하나, 도로 사정이 전반적으로

불편하였고 여진의 기병이 넘어오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두 산골의 물이 통하는 협곡이 많아 여진인들은 이들 지역을 지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은 압록강을 건너 적이 넘어오기 쉬운 산골짜기 험한 곳에다 적당히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여 방어하였다. 돌을 쌓으면 역사가 매우 크고 갑자기 축조하기가 어려우며, 구덩이를 판다면 土城이 부드러워 쉽게 메워지기 때문에 가지가 많은 큰 나무를 베어서 길을 막는 등 압록강을 넘어가 길주·경성 등의 여러 산골짜기에 군사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것이다.⁶⁾ 이외에도 압록강 변에는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 이 섬들에는 조선인들이 건너가 농사지으며 살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이들 섬에 건너가 살도록 허락하였고 나아가 조세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명나라는 초기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호조에서는 평안도 敬差官의 보고를 듣고 의주 於赤島를 세종 4년부터 압록강 밖의 땅이라 하고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이 섬은 강으로 격리되어 명나라 땅이라 할 수 없고 또 의주 성내의 주민들이 모두 이 섬을 경작하여 살고 있으니 그 전대로 백성들이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한 조세를 거두도록 하는 등 대부분 압록강 유역의 크고 작은 섬들은 조선인들이 상당수 들어가 거주하고 있었다.⁷⁾

청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越境을 있었으며 청조 역시 산삼 등의 특산물 확보를 위해 봉금지대화 하면서 청대 역시 압록강~봉황성 지역은 국경지대로 남아있었다. 유조변의 내지 곧 심양을 중심으로 행정이 체계화되고 통치가 안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압록강변의 봉금지책은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강희 25년(1686)에 금주와 봉황성 등 처의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民丁과 耕牛를 旗丁에게 나누어 준 이후 점차 봉황성 밖으로 경지를 확대해 나갔으나⁸⁾ 압록강 유역으로 개간지가 확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압록강 유역의 산간지역에는 귀중한 특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산삼이다. 동4문 외곽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분포해 있었는데 왕청, 감창, 애양, 봉황산 등에는 청조정의 내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채삼산장과 타생위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봉금지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⁹⁾ 봉황성과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애하는 압록강과의 거리는 가까웠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그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더구나 당시 산삼은 최고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사람들이 충돌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서 청 정부는 압록강 유역을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대로 봉금지대로 묶어두며 국경지대로 두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였다.¹⁰⁾

6) 『朝鮮王朝實錄』世宗 22年 7月 己巳.

7) 『朝鮮王朝實錄』世宗 6年 10月 辛未.

8) 『鳳城縣志序』.

9) 『奉天通志』卷107, 田亩志.

10) 金宣旻, 「擁正-嘉靖年間 莽牛哨 事件과 淸-朝鮮 國境地帶」, 『中國史研究』 제71집. 2011.

3. 명청대 여진지역

명 태조는 여진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군사를 여진지역에 파견할 수 없었다. 명초 최대의 문제는 여전히 북변 몽골방어 문제였고 명나라는 몽골에 골몰하느라 동쪽의 여진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¹¹⁾ 고려와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하고 있었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부족을 조선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조선이 요동을 공벌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명 태조는 요동도사를 통해 여진을 통제 하였고 고려(조선)와 여진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차 명나라의 요동정책과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¹²⁾ 즉 홍무연간 명나라의 요동도사는 遼陽을 중심으로 25衛체제를 거의 갖추어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조선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식량과 조선 군대를 상대해 싸울만한 전문적인 군대가 부족했으며, 요동의 전투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였다. 조선에 대해 명 태조는

“조선은 國都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하는 식량이 1만석에서 10여 만석에 이르고 동녕부의 여진인을 유인하고 있으며 반드시 음모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요동은 지금 군량이 모자라며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는바 ... 그들(조선)의 20만 대군이 요동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¹³⁾

라고 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하던 遼王의 궁실공사마저 정지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는 당시 여진을 초무할만한 군사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永樂帝연간에 이르러서야 왕가인 등을 조선에 보내 參散·禿魯兀 등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10處의 溪關萬戶 寧馬哈 등을 招諭하겠다고 통보해왔다.¹⁴⁾ 이에 조선은 金贍을 명의 사신 王可仁과 함께 京師에 보내 조선의 동북지방은 公嶮鎭으로부터 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威州 등의 고을이 모두 고려의 땅에 소속되어 있고 여진인과 조선인이 섞여 살고 있고 각각 方言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이름지어 吉州를 ‘海陽’, 端州를 ‘禿魯兀’, 英州를 ‘參散’, 雄州를 ‘洪肯’, 威州를 ‘哈蘭’으로 각각 칭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홍무연간 명 태조가 말한 것 즉 ‘鐵嶺 이북·이동·이서는 원래 開原의 관할에 속하였으니, 軍民을 그대로 요동 관할에 소속시키라.’고 한 것을 상기시키며 10처 여진인 지역은 조선의 관할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¹⁵⁾

이처럼 명에게 있어서 여진지역은 통제하고 싶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정보 역시 명에 비해 조선이 수시로 교류하며 많은 여진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명이 여진을 정벌할 때 조선과의 협공을 선호한 것도 자체의 정보와 역량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다. 이처럼 명이 여진지역을 자국의 강역으로 삼는다는 것은 당시

11) 『朝鮮王朝實錄』太祖 2年 5月 丁卯.

12) 朴成柱, 「15세기 朝·明간 流民의 發生과 送還」, 『慶州史學』第21輯, 慶州史學會, 2002, pp.136~146.

13) 『明太祖實錄』卷238, 洪武 28年 4月 辛未.

14) 『朝鮮王朝實錄』太宗4年 4月 甲戌.

15) 『朝鮮王朝實錄』太宗4年 5月 己未.

의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명대에 여진에 관한 상세한 지도는 명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명나라의 사료에서 여진지역을 자국의 강역으로 삼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고지도를 보면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림 4】 대명여지도. 명대 요동변장을 그린 지도로 변장이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요동변장은 산과 강, 목책 등이 혼합된 방어선으로 산해관과 같은 견고한 벽돌성으로 축조된 것은 아니다.

4. 명청대 4군 6진지역

1) 4군지역

사료를 통해서 보면 여진족들이 4군의 대안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음은 확인된다. 15세기 후반 여진족들 특히 건주여진은 상당수 농사를 지으며 촌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농경사회로 접어들면 반드시 비옥한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였고 이것은 결국 조선과 명의 변경에 위치한 비옥한 지역으로 여진인구가 밀려들어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진은 명나라 변경 부근인 草河 부근이나 蘇子河, 婆猪江, 渾江 그리고 조선의 압록강변, 여연, 무창 부근으로 밀려들어와 집단으로 부락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변사에서 상주한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일 평안도 閔延·茂昌에 와서 사는 金主成哈에 대해 그대로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일찍이 물었더니, 邊將 등이 ‘主成哈이 사는 곳은 四郡의 지역과 거리가 멀고 또 그가 온 지 이미 오래므로 몰아내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馳啓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시켜 다시 타이르게 하기를 ‘이미 와서 거주한 주성합 등 6~7집 이외에 만일 동류들을 많이 이끌고 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즉시 몰아내어 편안히 살 수 없게 하리라.’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류들을 많이 이끌고 와서 사는 자가 해마다 늘어나 부락을 이루고 멋대로 漁獵을 하고 임의로 농토를 경작하되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으며, 변장이 전일의 약속을 들어 본토로 돌아가도록 아무리 영을 내려도 그들은 도리어 거만한 말을 하고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니 전일 三浦의 患을 거울삼을 만합니다.¹⁶⁾

이러한 상황은 16세기가 되자 여진의 인구가 늘고 농업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조선과 명은 이러한 여진인들이 토지를 침탈하며 변경으로 밀려드는 것을 금할 수밖에 없었다.¹⁷⁾ 실제로 여진은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다녔는데, 부족의 집단이주, 월경, 어렵, 토지침탈, 부락의 형성 등 형태로 변경의 비옥한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농업사회로 진입한 이상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조선의 여연이나 무창 등은 토지가 비옥한 지역으로 그들의 중요한 관심지역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다음의 사료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참찬관 崔世節이 아뢰기를, “신이 滿浦에 있을 때 閔延·茂昌에 와서 거주하는 野人이 겨우 30여 호였는데 지금은 부락이 점차 번성해진다니, 번성해지면 上土·滿浦 등의 鎭에 장차 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일찌감치 이들을 驅逐한다면 환란이 작지만 구축하지 않는다면 환란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特進官 尹熙平이 아뢰기를, “(여연과 무창은:역자주) 또한 토지가 비옥하고 水源이 좋아서 농사를 지으면 이득이 있고 漁獵을 하면 소득이 있으며, 貂鼠가 많이 나므로, 곧 도로 와 거주할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절이 아뢰기를, “여연·무창의 새로운 곳에 와서 사는 자는 곧 金朱成哈인데 이 사람이 와서 살게 된 이후부터 六鎭의 야인들이 4~5戶나 3~4호씩 그곳에 옮겨와 삽니다. 무릇 육진은 야인들로 울타리를 삼는데 육진이 장차 허수해질까 싶습니다.”

희평이 아뢰기를, “온하위·건주위는 서로 섞여서 사는데, 이번에 만일 경솔하게 쫓아낸다면, 이 두 위衛가 서로 화합하여 변방 환란을 일으키게 될까 싶습니다.”¹⁸⁾

위의 사료를 분석해 보면 여연과 무창 등이 매우 비옥하고 수렵하기에 적합하며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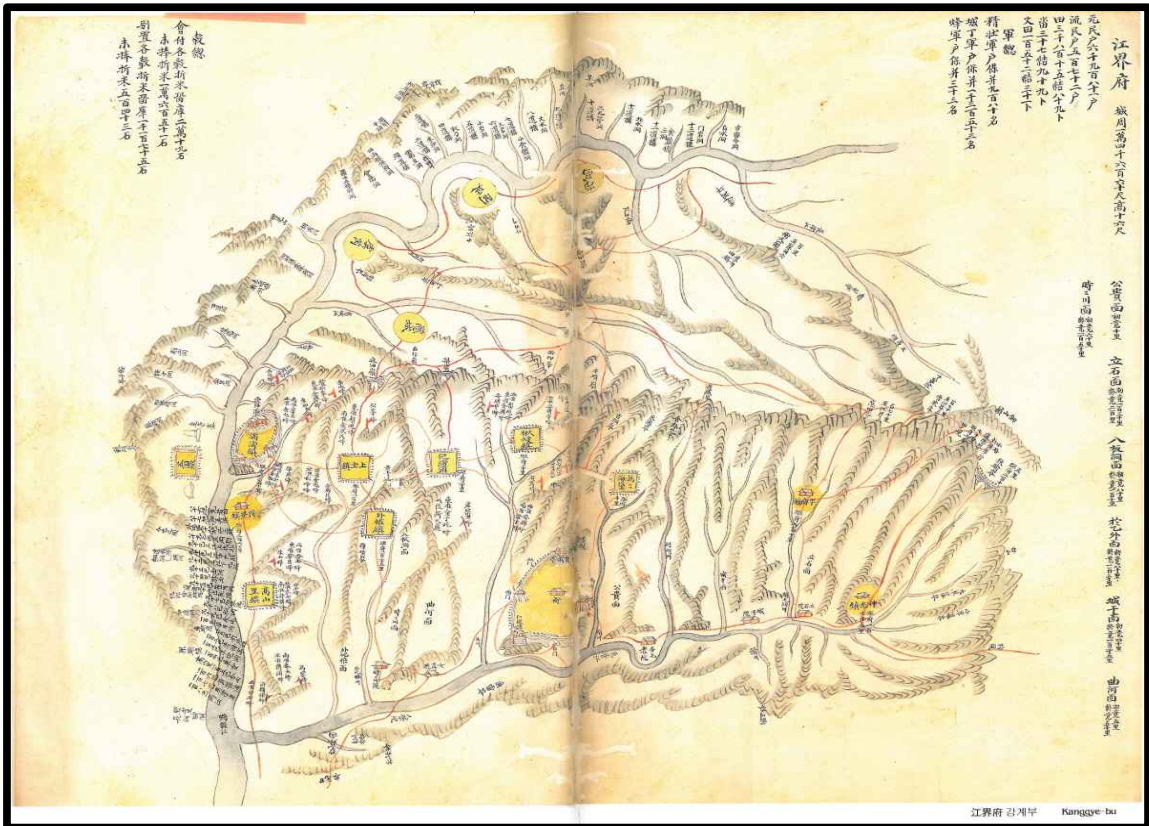
16)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7月 辛未.

17) 『明神宗實錄』 萬曆 42年 4月 丁酉.

18)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3月 甲寅.

진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점차 그들의 인구가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그들을 축출하는 방법을 통해 변경을 안정시키고 방어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명청대 지도에 4군과 6진 지역에 수많은 초소를 표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평안도 절도사 尹熙平의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① 軍官 金仁孫 등을 여연 성 밑[城底] 등지에 보내 탐지한 즉, 여진인 金阿·宋可 등이 여연 성 밑에 옮겨와 살며 성 안에는 채소를 심고 성 밖에는 밭을 개간하여 조를 심었으며, ② 이들 농작물이 다 무성하였고 집을 매우 튼튼하게 짓고 사방에는 사방에 木柵을 세우고 또한 동서에 문을 틀 내어 마치 오래된 부락 같은데 무릇 17호나 되었으며, ③ 조선이 위협하더라도 이곳 벼와 곡식이 바야흐로 무성한데 지금 만약 버리고 돌아갈 수 없으며 ④ 각 가호마다 상자를 많이 쌓아놓은 것은 장차 會寧에 사는 사람들 3백여 명이 앞으로 여기에 와서 살려고 준비한 것이었다. ⑤ 강 위 아래



【그림 5】 청대 지도에 나타난 4군지역 강계부. (서울대학, 【해동지도】, 1995.) 명대에 비해 파절과 같은 초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강 건너 산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여전히 월경을 통해 산삼 등을 채집하는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와서 사는 여진인들이 모두 92호에 장정이 무려 4백여 명이 되고 있다. ⑥ 그리고 조선은 장차 江界·咸興·三水·甲山 지경은 여진족의 피해를 받게 될 것임을 염려하고 있었다.¹⁹⁾

19)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6月 甲戌.

그들은 이미 변경 주위의 비옥한 지역으로 와서 조선인과 비슷한 가옥을 축조해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압록강 유역으로 온 여진인은 대부분 건주여진이지만 간혹 해서여진과 야인여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들은 농업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어렵과 수렵 등도 병행하였다. 여진족이 농사지었던 작물은 강수량이 적어도 잘 재배되는黍나粟, 채소, 대두 등으로 나타나지만 이외에도 여러 작물들이 사료에서 확인되고 있다.²⁰⁾

2) 6진 지역



【그림 6】 6진지역(『조선도』 참조) 청대에 그린 6진 지역이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봉수대들이 산을 중심으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명대와 마찬가지로 청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조선은 6진 지역 중 鏡城·慶源 등의 변경에 마시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에 많은 여진인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명대 여진 역시 많은 인구를 유지하며 많은 교역을 원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경성·경원 지방은 조선의 변경으로 군사적인 안정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였다. 마시의 개설 등으로 야인의 출입을 너무 개방하면 그

20) 『朝鮮王朝實錄』 世祖 12年 8月 乙卯. 成宗 14年 4月 丙戌, 成宗 21年 5月 丁丑 等

인구가 증가하여 조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려들어 변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우려하여 마시를 폐쇄하면 야인이 소금과 鐵을 얻지 못하여 혹은 변경에 우환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貿易所를 설치하여 互市를 운영하면서 적절히 여진을 회유하는 통제력이 필요하였다. 일종의 채찍과 당근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무기류는 매매를 엄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켰다.²¹⁾

하지만 이러한 금령은 여진으로부터 들어오는 고가의 특산품을 구입하려는 욕망과 함께 지켜질 수 없었다. 조정은 威吉道都節制使 康純에게

“鑰鐵器와 水鐵農器를 野人들과 서로 교역하는 자를 이미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요즈음 듣건대, 무식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서 매매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오로지 이것은 법을 소홀히 하여 禁畧이 解弛해진所致이다. 경은 그것을 다시 엄하게 금지를 더하여 推鞠하여서 아뢰어라.”²²⁾

고 하명하는 것을 당시 밀무역을 통해 상당수의 철기류가 여진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연간에도 또한 비슷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鐵物·牛馬·軍器 따위를 매매하는 것은 死刑으로 법이 엄함에도 변방 고을 수령들이 毛物을 사면서 鐵物만을 팔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진인들이 많은 병기를 만들어 내었고 ‘옛날에는 鐵箭이 없어서 모두 骨鏃을 사용했다는데, 지금은 쇠로써 갑옷도 만드는 자까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피와 같은 고가의 여진 토산물이 국내로 들어오고 대신 상당수의 철제가 여진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감시의 눈을 피해 밀무역 형태로 진행되었고 훗날 여진의 생산력과 군사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특히 貂皮는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매우 값진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즉 당시 풍속에 服飾에 貂皮와 鼠皮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朝士로서 官階가 4품에 승진되면 반드시 초피의 耳掩을 着用하며, 나이 젊은 부녀들도 모두 貂裘를 입는 등 수요자가 많아 그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를 구하기 위해 牛馬와 鐵物으로써 이를 구입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野人 화살촉 등의 무기가 철제로 변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여진의 수렵경제가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²⁴⁾

요약하면 여진의 토산물들은 조선과 명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가의 상품이 될 수 있었고 여진은 이들을 이용해 교역을 확대해 나가며 여진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농구와 무기류 등 철을 확보해 나갔다. 이러한 여진 다원경제의 유기적 관계는 흔히 원시적 이라고 하는 수렵과 어렵 형태의 경제를 명 후기까지 지속시켰고 오히려 농업과 교역, 나아가 상업과 수공업 등 여진경제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산업과 같은

21) 『朝鮮王朝實錄』 太宗 6年 5月 己亥.

22) 『朝鮮王朝實錄』 世祖 9年 8月 甲午.

23) 『朝鮮王朝實錄』 成宗 5年 10月 庚戌.

24) 『朝鮮王朝實錄』 成宗 6年 7月 辛酉.

것이였다. 즉 여진의 어렵과 수렵경제는 대외 무역경제를 유지하고 농업과 군사력을 키우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중요한 기초경제가 되었던 것이다.

여진사회의 약탈 역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진인들의 약탈은 일시적이고 그들 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단순한 사건으로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여진인의 변경 약탈은 그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며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여진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사료를 검색해 보면 변경을 약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약탈 대상은 사람, 소, 말, 재산 등 모두 여진경제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약탈해간 인구는 여진사회의 경제활동 즉 농업이나 수렵, 또는 그들의 군사력에 충당되었으며 재산은 그들 부족이나 부족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 인구의 약탈은 몽골 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 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동 북부에는 올량합 3위라는 몽골세력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동서몽골 또는 여진과 연합하여 작게는 1천 여 명 많게는 6천여의 군사력으로 개원, 무순, 심양, 요양 등을 공략하기도 하였다.²⁵⁾ 이들은 처음에는 올량합 3衛의 형태로 명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명나라가 그들의 경제적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약탈이라는 생존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동부의 여진 역시 명나라 요동변장의 동부방어선 내지 조선의 변경을 수시로 위협하여 수백 명의 인구를 약탈하거나 죽이는 경우 등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이것은 약탈경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²⁶⁾

조선은 여진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여진과 접하고 있어서 긴 경계선을 유지해야만 했다. 주로 조선의 변경은 강변에 위치한 경성, 갑산, 단천, 은성, 의주, 회령, 무산 등인데 이들 지역은 여진과 접하고 있어 항상 인구의 약탈지가 되었다. 조선 세조 초기 8여 년 동안 거의 2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족의 침입으로 인한 인구의 약탈이 있었는데, 세조 9년에는 182명이 여진의 공격으로 그들에게 죽거나 포로가 되고 소 155여 마리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²⁷⁾

이들의 약탈은 주로 사람, 소, 말이었으며 명과 조선 이외에도 이웃 여진부락에 대해서도 행해졌다. 침입한 여진인은 작을 때는 10명 이하, 수십 명, 많을 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무리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침략함으로써 약탈과 방화,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²⁸⁾ 이러한 여진의 약탈은 그 규모 그리고 여진족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약탈의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약탈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과 인력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경제회복방법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건주 세력은 두만강 유역 會寧(阿木河)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두만강유역의 會寧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농경에 적합한 지역이었고 조선과의 왕래를 통해 耕牛와 생산기술 등을 손쉽게 수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진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

25) 『明憲宗實錄』 成化 2年 7月 丁丑, 成化 9年 夏4月 戊寅.

26) 『明英宗實錄』 正統 元年 6月 庚寅: 正統 7年 10月 癸丑.

27) 『朝鮮王朝實錄』 世祖 7年 9月 乙丑.

28) 『朝鮮王朝實錄』 成宗 11年 8月 乙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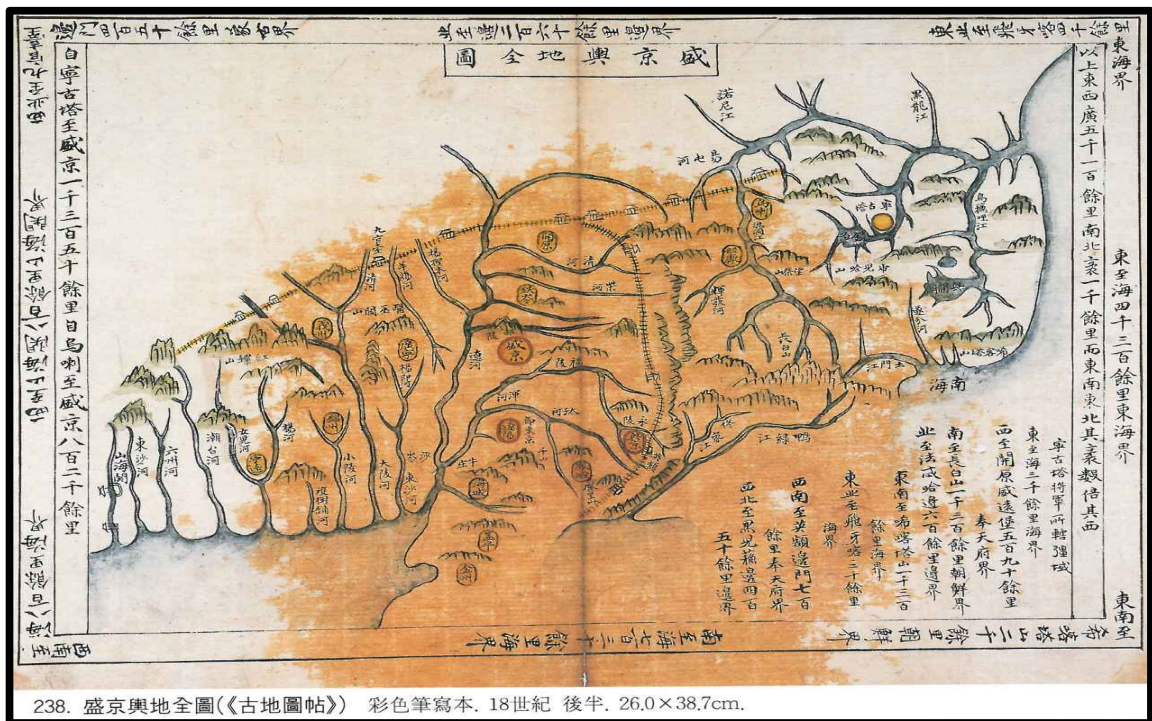
역이었다.

조선에서는 5진의 부근에 여진인들이 사는 것을 허락하고 이들을 번리화시켰는데, 會寧 성저에는 주로 알타리족이, 慶興 성저에는 骨看兀狄하이, 鐘城·穩城·慶源의 城底에는 올랑합이 居住하였다. 이들은 ‘城底野人’으로서 성내의 조선인과 수시로 교역하였다.²⁹⁾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여진사회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진이 수입해 간 물품은 鐵物과 牛馬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었고, 여진사회가 농경사회로 넘어가는데 커다란 촉매제가 되었다.³⁰⁾

두만강유역에서는 올랑합과 울적합의 대립이 심하였는데, 이러한 대립을 통하여 올랑합과 울적합은 집단 세력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세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申叔舟를 보내 올랑합과 울적합의 사이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올랑합 추장 浪孛兒罕 가족 11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낭패아한의 아들 阿此車가 1천 5백명의 올랑합을 동원하여 會寧에 침입하는 등 명대 6진은 여진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의 한 곳이었다.

5. 요동변장과 유조변



238. 盛京輿地全圖(《古地圖帖》) 彩色筆寫本, 18世紀 後半, 26.0×38.7cm.
 【그림 7】 盛京輿地全圖. 청대 유조변의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유조변이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9) 金九鎮, 앞의 논문, 1995, 357쪽.

30) 金九鎮, 앞의 논문, 1995, 362쪽.

요동변장과 유조변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柳條邊은 柳條關, 柳城, 柳邊, 條子邊, 邊牆 등으로도 불린다.³¹⁾ 柳條邊의 수축은 문헌을 살펴보면 ‘버드나무를 꺾어 울타리로 만들다(折柳樊之)’, ‘울타리를 끼워 넣어 경계로 삼다(插籬爲邊)’, ‘버드나무를 끼워 넣어 경계로 삼다(插柳爲界)’, ‘가시나무를 엮다(編荊爲之)’, ‘끈을 연결해 목책을 늘어놓다(結繩列柵)’ 등 갖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³²⁾ 이러한 柳條邊은 관방기록에는 ‘盛京邊牆’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³³⁾ 『奉天通志』 역시 “淸因明障塞故址, 植柳于牆之外, 名曰柳邊, 柳條邊”으로 기록하면서 ‘展邊’ 즉 변경으로 柳條邊을 확대해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⁴⁾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본다면 청대 老邊은 명대 遼東邊牆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 확대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³⁵⁾ 청대 유조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고지도들은 요동변장이나 유조변 모두 압록강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청에 압록강에서 봉황성에 이르는 지역은 국경중립지대이거나 봉금지대로 설정되어 압록강이 국경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명청시대 압록강이 국경선이라면 요동변장이나 유조변은 당연히 압록강을 따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요동변장과 유조변을 둘러싸고 중국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요동변장이 만리장성인가의 여부이다. 둘째 요동변장이 만리장성이라면 이것을 이어받은 유조변 역시 만리장성인가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유조변이 만리장성이라면 유조변은 몽고와 러시아와의 국경선인가 역시 중요한 영토를 둘러싼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柳條邊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단순한 지역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국경선이라는 러시아와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柳條邊은 두 개의 邊柵 곧 老邊과 新邊으로 구분되는데 老邊은 명대 遼東邊牆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며 新邊은 청 건국 이후 다시 설치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柳條邊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柳條邊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기록인 『柳邊紀略』 역시 노변에 해당하는 柳條邊(遼陽과 瀋陽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遼寧省 지역)은 版圖內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新邊

31) 중국은 이러한 柳條邊을 국경선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분계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柳條邊 북쪽은 몽골 지역으로, 중국의 입장은 내지를 보호하고 민족격리 정책을 실시하여 각 부족이 경계를 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만주족 통치자의 변외 토지 및 산림자원의 독점적인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격리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곧 국경선이 아니라 단순히 농업과 유목이라는 경제적 다양성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32) 楊賓, 『柳邊紀略』 卷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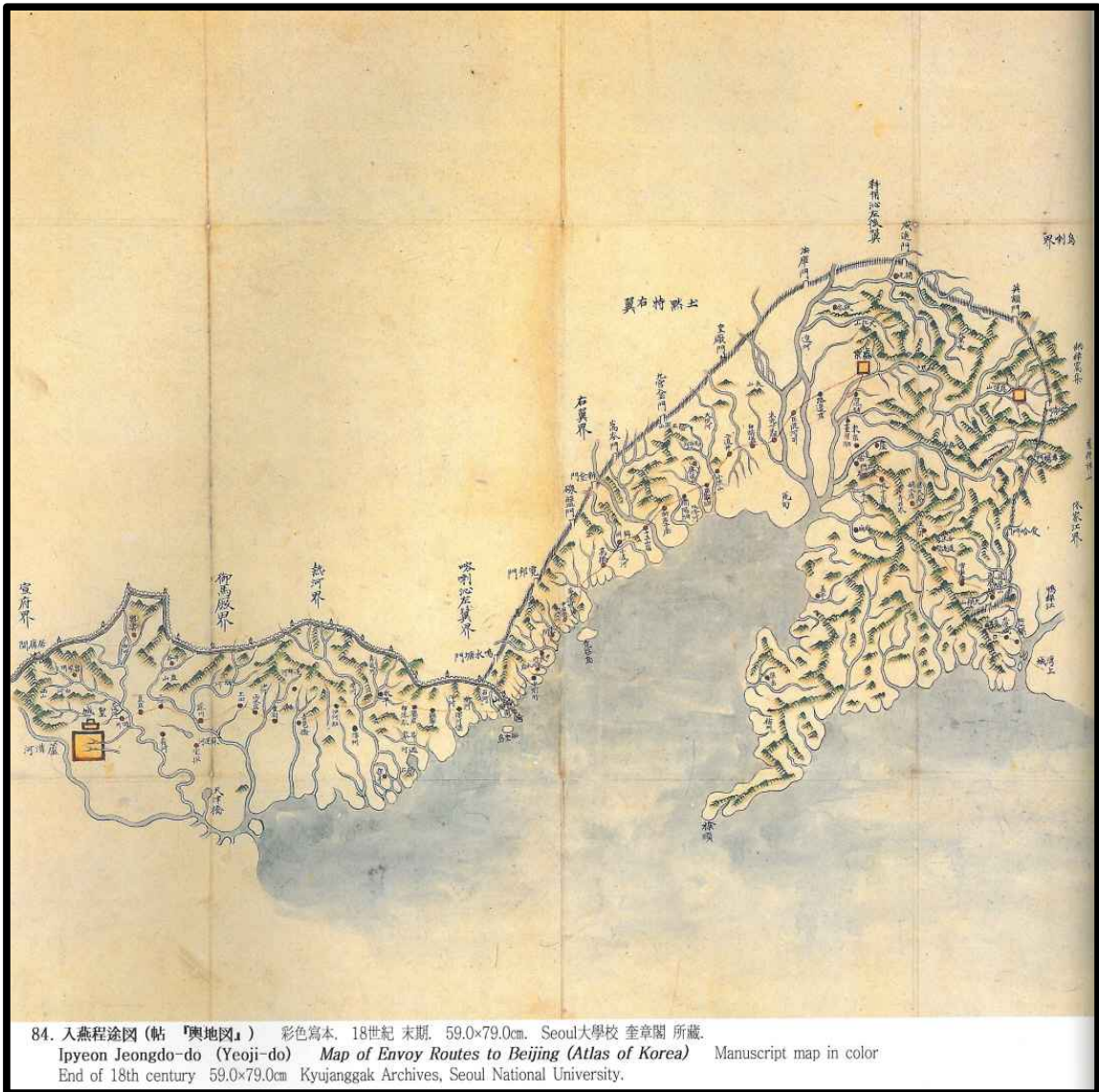
33) 柳條邊을 盛京邊牆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명대 遼東邊牆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대에 설치된 柳條邊은 변장이라는 기록이 없음에도 명대 몽골과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遼東邊牆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대 瀋陽을 盛京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변장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청대 柳條邊을 구성하는 柳條邊 중 老邊은 遼東邊牆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명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4) 『奉天通志』 卷78, 山川 12.

35) 이처럼 柳條邊 중 遼東邊牆에 해당하는 노변은 명대의 흔적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柳條邊이 수축되는 순차연간 노변을 새롭게 축조했다는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에 해당하는 柳條邊 안쪽은 無版圖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양빈은 봉금지대를 청조의 무판도 지역으로 인식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柳條邊의 선이 미치지 않는 黑龍江과 우수리강 유역은 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파악되어 柳條邊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柳條邊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우수리강과 흑룡강 유역도 누르하치가 17세기 원정을 통해 모두 그 곳의 종족들을 청건국의 주인인 滿洲人으로 편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지역과 민족 모두를 청의 강역 속에 넣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아무르강과 흑룡강 유역을 비롯한 봉금지대 상당부분의 토지와 여진부족이 청조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柳條邊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84. 入燕程途圖 (帖『輿地圖』) 彩色寫本, 18世紀 末期, 59.0×79.0cm. Seoul大學校 奎章閣 所藏.
Ipyeon Jeongdo-do (Yeoji-do) Map of Envoy Routes to Beijing (Atlas of Korea) Manuscript map in color
End of 18th century 59.0×79.0cm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림 8】 입연정도도(서울대학 규장각, 18세기 말) 18세기 후기에 조선은 명대 요동변장과 유조변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명이 망하고 청이 건국되자 요동의 만주족은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 모두 입관하였다. 청나라는 입관 이후 순치·강희연간에 요령과 길림 지역에 유조변을 설치하였다. 유조변은 일반적으로 서쪽 산해관 부근에서 시작해서 동쪽 길림성 송화강 변 북쪽 船廠에서 끝이 나며 북으로는 威遠堡에서 출발하여 남쪽 봉황산에 멈추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³⁶⁾ 유조변은 두 개의 邊柵 곧 老邊과 新邊으로 구분되는데 노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며 신변은 청 건국 이후 다시 설치한 것이다. 이 두 노선이 유조변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유조변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기록인 『柳邊紀略』 역시 노변에 해당하는 유조변(요령과 심양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요령성 지역)은 版圖內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신변에 해당하는 유조변 안쪽은 無版圖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청대 봉금지대를 무관도로 청대의 사료가 서술하고 있어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청대 유조변의 상당 부분은 명대 요동변장에 기초하고 있는데, 요동변장은 이미 1980년에 학술적으로 장성으로 불렸다. 그렇다면 이 명대 요동변장을 이어 받아 형성된 유조변은 만리장성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조변이 만리장성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것이며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이는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조변의 성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중국의 장성 연장론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유조변이 만리장성이라면 그 아래쪽 지역은 당연히 청조의 판도가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은 내지와 외지를 구분하는 국경선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성수축의 역사는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났다. 청나라는 건국 후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 여진부족을 거느리고 대부분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이 태어나고 국가를 처음 세웠던 만주지역은 인구가 부족한 무주공산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들이 발흥한 지역이자 수많은 특산물이 나는 경제적인 보고였다. 이 지역을 보호하고 만주족의 경제적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높은 성벽은 필요가 없었다. 높은 성벽을 쌓아 방어해야 할 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흙언덕 정도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유조변이 탄생하였다.

청대 유조변은 금나라 시대의 邊壕와 비슷한 형태로 땅을 파 호를 만들고 파낸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계호와 좀 다른 것은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조변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³⁷⁾ 버드나무를 심은 것은 흙 언덕의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유조변은 형태와 기능에서 遼金 시대 변경에 설치한

36) 楊賓, 『柳邊紀略』 卷1.

37) 중국에는 邊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만리장성으로 포함시키는 견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성의 개념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 이외에 점과 점으로 구성된 방어선도 장성의 범주에 넣는 등 장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邊壕’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조변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단순한 지역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국경선이라는 러시아와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³⁸⁾ 또한 유조변의 선이 미치지 않는 흑룡강 유역은 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지 않다는 의미로도 파악되어 유조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조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흑룡강 유역도 누르하치가 17세기 원정을 통해 모두 그 곳의 종족들을 청건국의 주인인 만주인으로 편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지역과 민족 모두를 청의 강역 속에 넣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흑룡강 유역을 비롯한 봉금지대 상당부분의 토지와 여진부족이 청조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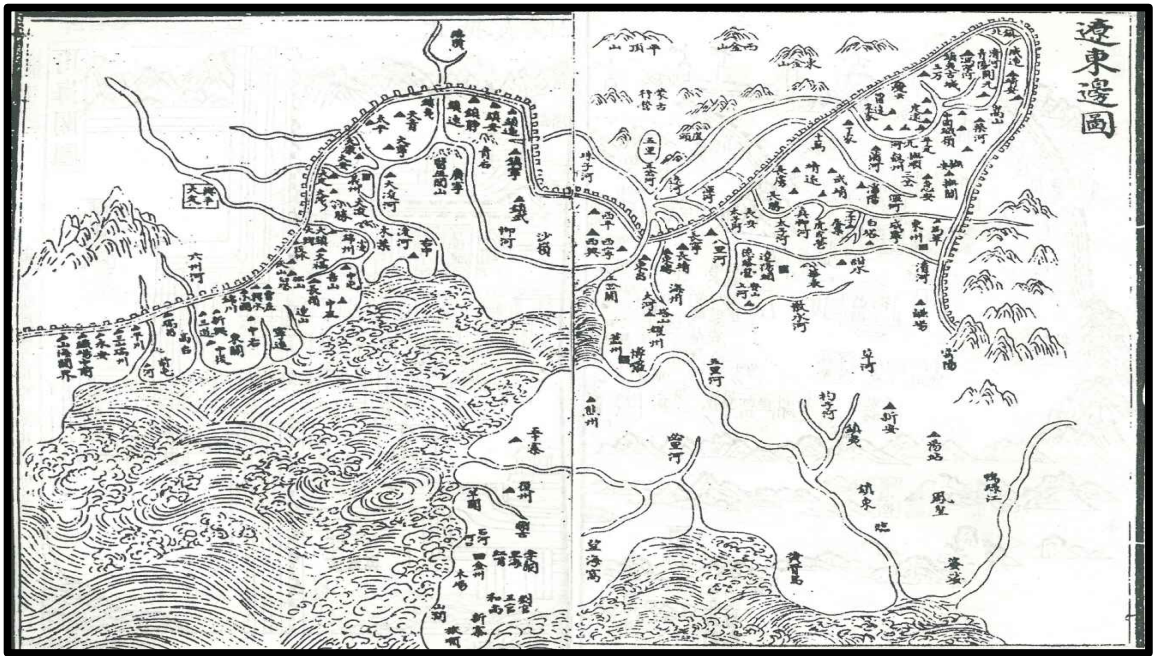
그렇다면 유조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은 어떻게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정할 것인가.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東爲土門, 西爲鴨綠’으로 경계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계비 이전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越境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대와 마찬가지로 청대 압록강과 두만강은 명확한 양국의 국경선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조변 이외에 청나라가 설정한 봉금지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도 있다. 나아가 만리장성 연장론과 관련하여 유조변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38) 柳條邊을 연구한 최근의 성과로는 施立學의 「東北柳條邊的封禁及對東邊道生態文化的影響」(『東北史地』, 2007年 第3期)과 「柳條邊伊通邊門」(『滿族研究』, 2006年 第1期), 張杰의 「柳條邊,印票與清朝東北封禁新論」(『中國邊疆史地研究』, 1999年, 第1期), 「清代柳條邊對東北地區生態環境的作用及影響」(『史學集刊』, 2010, 第6期), 「清代的柳條邊」(『蘭臺世界』, 1999, 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의 공통점은 모두 청나라가 入關한 이후에도 柳條邊 설치지역과 나아가 흑룡강 지역도 청대의 강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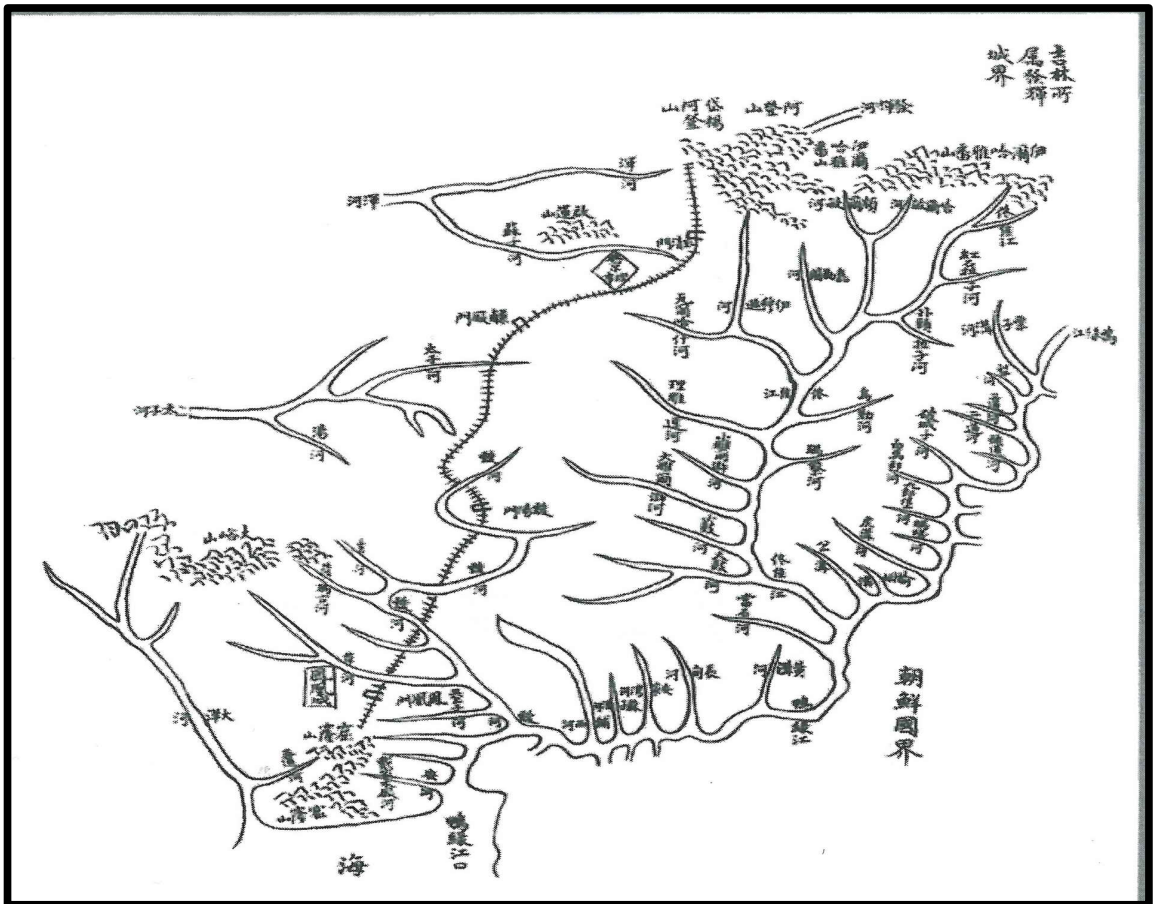


【그림 9】 명대 요동도사 관할지역과 역참분포도(楊正泰, 『明代驛站考』, 上海古籍, 2006)

명대 요동도사 관할지역은 청대 유조변과 비교해 보면 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요동도사가 초기를 제외하면 팽창하기 힘들었으며 오히려 몽고와 여진에게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동북공정 시작 이후 출판된 것으로 요동방어선이 압록강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실은 요동방어선이 요동변장으로 연결된 이후에도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16세기에 강연대보 곧 전초기지가 설치된다. 이러한 상황은 압록강 변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10】 『明代輿圖綜錄』 참조. 명대 요동변장을 표시한 것으로 대명여지도와 마찬가지로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11】 盛京奉天府轄區 東南府圖(출처: 『황여전도』 초본, 인용서: 요녕성도서관편, 성경풍물, 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07)

6. 結 論

한국에는 변경과 관련된 많은 고지도들이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이 지역의 물길, 산세, 군사시설 그리고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모두 변경지역을 이해하고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여진지역을 파악하고 여진지역과 조선과의 관계, 영토, 국경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던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 고지도에 여진지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산관의 경우 1480년대 이전 명나라로 들어가는 책문이 설치된 지역이다. 후에 책문이 봉황성으로 이전되지만 조선 후기의 지도에 연산관이 자주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책문이 설치된 지역이고, 명대 연산관이라는 험준한 지형을 지나야 요동도사의 치소인 요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실제로 봉황성 책문을 지나더라도 험준한 연산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압록강에서 연산관에 이르는 180여리가 조선과 명의 국경지대로 설정되어 연산관은 조선인들의 관념 속에 남다른 지역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연산관에서 봉황성으로 책문이 옮겨오는 과정은 명이 여진을 견제하고 조선의 사신을 보호한다는 명분하게 거의 군사적으로 선점해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명나라가 압록강으로 점차 군사기지를 옮겨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명으로 들어가는 책문은 봉황성 보다 연산관에 설치되기를 조선은 항상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고지도에 압록강 변의 섬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명초부터 압록강의 섬들은 대부분 조선인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명나라 사람들은 연산관이나 봉황성을 지나 한참을 더 와야 압록강에 다다를 수 있었고, 월경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록강 변의 도서에 함부로 올 수 없었다. 훗날 명이 책문을 봉황성으로 옮겨 온 이후 여진방어를 위해 봉황성을 넘어 압록강 변으로 성보를 수축하면서 명에 소속된 요동사람들이 요동도사의 목인 하에 압록강 변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서에도 월경한 요동인들이 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압록강을 바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이러한 압록강 두만강 변의 섬들을 자세히 기록해야만 했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여진지역을 상세하고 표시하고 있다. 4군 6진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것은 명대의 경우 조선의 군대가 강을 건너 여진을 수차례 정벌하고 그들이 침입을 저지시키기 위해 군사용 목적을 수시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인들 역시 몰래 월경하여 산삼 등 특산물을 채집하여 밀거래하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선은 항상 그 대안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조선이 그린 고지도에는 여진지역을 잘 표현한 지도들이 많이 있고 압록강 변의 초소를 비교

적 정확하게 그린 지도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대의 지도들에는 길림과 영고탑 등이 정확하게 채색되고 있다. 이것은 길림과 영고탑은 청대에 흑룡강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기지와 같은 곳이었다. 이를 위해 청나라는 항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더구나 영고탑은 고려 윤관이 고려 척경비를 세운 곳으로 명청시대 조선인들이 늘 북벌 등을 논의하면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마지막으로 4군과 6진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세종이 4군과 6진을 설치한 것은 이들 지역이 군사적인 거점으로 적합하기도 했지만 4군과 6진 대안 지역에 여진인들이 촌락을 이루며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진인들을 명대에 들어오면서 그들 지역에 풍부한 산삼, 모피 등의 특산물을 생산했고 이들 생산물들은 조선과 명의 왕실과 귀족들이 고가로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것들이었다. 이것은 결국 마시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가치를 발휘했고 여진은 교역을 통해 그들이 희망하던 소, 농구 등을 수입하며 점진적으로 농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사회로 진입한 여진인들은 비옥한 토지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동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변경 살기 좋은 곳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 4군과 6진 지역으로 여진족이 밀려들게 된 것은 조선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것 이외에 그들이 농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토지를 찾게 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고지도를 통해 보면 4군과 6진 지역에 여진부락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록을 검색해보면 4군과 6진 부근의 땅이 비옥하여 여진인들이 큰 부락을 이루고 농업위주의 정착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동변장과 유조변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만리장성 동단기점을 압록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것은 명대 요동변장이 만리장성이라는 전제하에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고지도에 표시된 요동변장은 압록강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청대 유조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명대 요동변장에 비해 요하유역이 일부 포함되고 그들의 조상묘가 있는 興京지역이 유조변 안쪽으로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요동변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조변 역시 어떤 고지도를 보더라도 압록강으로 연결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현대 중국이 주장하는 명청대의 국경선이 압록강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명대 형성된 국경중립지대 즉 동팔참 지대가 청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淸 정책 결정기구 속의 滿洲人

송미령(전북대)

I. 머리말
II. 入關 前 內三院과 6部の 滿洲人
III. 入關 後 滿洲人 大學士와 尙書들
IV. 맺음말

I. 머리말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가 후금을 세운 뒤 반세기가 흐르는 시간 동안에, 통치자의 자리는 홍타이지(Hongtaiji, 皇太極), 順治帝, 康熙帝가 이어갔고, 통치하는 영역도 중국 동북의 한 지역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호는 後金(Aisin Gurun)에서 大清(Daicing Gurun)으로 바뀌었고, 나라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滿洲人¹⁾이 주류를 이루었던 후금에 몽골인이 더해졌고, 그리고 漢人들까지도 그 체제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마침내 順治 元年(1644)에 淸 조정과 皇室이 山海關을 넘어 베이징에 입성한 후에는 지금까지의 인적확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한인들을 통치체제 안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청의 통치 집단에게 두 가지 과제를 부과하였다. 하나는 새롭게 접한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통치를 확대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과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청의 특성이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과 변화’, ‘지속과 유지’의 양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는 중앙행정 조직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성장과 변화가 두드러지는 入關을 전후한 시기에, 대표적인 정책결정 조직이라면 議政王大臣會議을 들 수 있다. 이것은 淸의 정치조직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고, 그 조직에서 논의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었으며, 天聰年間(1627~1625)까지 유일하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 조직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崇德年間(1636~1643)부터 이 조직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고,²⁾ 이 변화의 중심에는 권력을 장악한 군주와 연결된 內三院³⁾과 6部로 대표되는 중앙행정조직이

1)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天聰 9년(1635)에 홍타이지가 자신들은 滿洲人이라는 선언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은 女真人으로 칭해야 하지만,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만주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만주인을 八旗滿洲에 소속된 이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 姚念慈, 『淸初政治史探微』, 遼寧民族出版社, 2008, 186~187쪽

있었으므로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조직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내삼원(내각 포함)과 6부 외에도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都察院과 理藩院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관을 전후한 시기의 중앙행정 기구에 대한 연구들은, 清代 전체 행정기구를 설명하고 또 중앙행정 조직 내의 만주인, 한인, 몽골인의 비율을 자세하게 밝히는 연구,⁴⁾ 정책결정 기구에 초점을 맞춰 통시대적으로 조명한 연구,⁵⁾ 개별적인 중앙행정 기구를 검토한 연구⁶⁾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청초 중앙행정 조직 안에서 만주인, 漢軍, 한인, 몽골인들이 어떤 비율로 임용이 되었는지, 임명비율의 변화를 鳥瞰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통치자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구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통시대적으로 중앙행정조직을 다룬 연구들은 만주인, 한인, 漢軍, 몽골인들의 숫자 변화에 집중하고 있거나, 만주인의 漢化나 漢人들의 위상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임명된 만주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각 통치자 별로 중앙행정조직을 다룬 연구들은 홍타이지나 순치제의 통치시기를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 특징들에 주목하고 있어서 청초 중앙행정 조직 내에서 만주인들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이번원을 제외한 다른 기구들은 明朝의 제도를 계승하여 설립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지금까지 한인을 중심으로 그 조직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행의 연구들에서 이미 중앙행정 조직 안에서 만주인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⁷⁾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 위에서 중앙행정조직의 변화 속에서 '지속과 유지'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주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정권의 핵심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만주인들을 살펴 그들이 하나의 지방정권으로 존재하였던 시기부터 청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淸 역사상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승덕연간부터 順治年間(1644~1661)까지 내삼원, 6부, 이번원, 도찰원의 만주인 책임

3) 順治 15년 내삼원이 내각으로 개편되었다(『欽定大清會典』卷19, 「官制」3 참조).
4) 榑木野宣, 『清代重要職官の研究』, 東京, 風間書局, 1975; 古鴻廷, 『清代官制研究』, 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1999; 郭松義·李信達·李尙英, 『清朝典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陶希聖, 『明清政治制度』, 臺灣商務印書館, 1967; 楊樹藩, 『清代中央政治制度』, 臺灣商務印書館, 1978; 邱永君, 『清代翰林院制度』,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5) 白新良, 『清代中樞決策研究』, 遼寧人民出版社, 2002; 趙志強, 『清代中央決策機制研究』, 科學出版社, 2007
6) 神田信夫, 「清初の文館について」, 『東洋史研究』, 19-3, 1970; 杜家驥, 「對清代議政王大臣會議的某些考察」, 『清史論叢』7, 1986; 宮崎市定, 「清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アジア史研究』3, 京都, 同朋舎, 1975; 馮元魁, 「略論清朝內閣的職掌與機制」, 『上海師範大學學報』, 1989. 2(『K24 明清史』1989. 9에 재수록); 杜家驥, 「對清代議政王大臣會議的某些考察」, 『清史論叢』7, 1986; 高翔, 「清朝內閣制度述論」, 『清史論叢』2005
7) 磯部淳史, 「清初における六部の設置とその意義」, 『立命館東洋史學』619, 2010에서는 明朝의 6부와는 달리 황제가 직접 6부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사이에 旗王들을 배치한 것은 그들을 정치시스템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3명의 대버일러들의 세력이 약화된 후에는 旗王들의 권한도 제한하기 시작하였지만, 일률적인 원칙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磯部淳史, 「清初入關前の内三院について—その構成員を中心に—」, 『立命館文学』608, 2008. 姚念慈, 2008; 劉小萌,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遼寧民族出版社, 2001

자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2장에서는 홍타이지가 汗(Han)으로 즉위한 후 본격적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시기인 승덕연간에 내삼원과 6부에 책임자로 임명한 이들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입관 이후인 순치연간에 도르곤(Dorgon, 多爾袞)의 攝政, 순치제의 親政으로 소용돌이치는 정국 속에서 내삼원, 6부, 이번원, 도찰원에 임명된 承政 및 尙書들을 분석하여 그 이전시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淸初의 정치상황 변화와 중앙행정 조직 내 인적 구성의 관계, 입관을 전후한 시기 중앙행정조직에서 만주인들의 인적구성이 갖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入關 前 內三院과 6部の 滿洲人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홍타이지는 즉위 이후 여러 중앙행정기구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누르하치 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누르하치 때에는 議政五大臣과 理事十大臣을 두어 政務를 처리하고, 안건을 심의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의 최종 결정은 버일러(Beile, 貝勒)들이 했다. 나아가 天命 7년(1622) 누르하치가 여덟 명의 버일러들이 국정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이 후금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이 되었다.⁸⁾ 이렇듯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천명한 八王合議制의 구도 속에서 다른 버일러⁹⁾들과 권력을 공유하였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했다.¹⁰⁾ 따라서 통치자로서 입지가 약했던 홍타이지가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개한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버일러들이 조정과 八旗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틀에서 방법을 모색하여 八大臣과 十六大臣들을 두어 의정회의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¹¹⁾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홍타이지는 天聰 4년(1631)에서 6년(1633) 사이에 군주권력을 공유했던 阿敏(Amin)과 莽古爾泰(Manggūltai)를 축출하였고, 代善(Daišan)이 홍타이지와 함께 南面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데 동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조직들인 6부가 등장하고 연이어 내삼원, 이번원, 도찰원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조직 중에서 먼저 內三院을 살펴보자. 내삼원은 內國史院, 內秘書院, 內弘文院을 일컫는 것이다. 그 업무를 살펴보면, 내국사관은 황제의 起居詔令을 기록하고 사서와 실록을 편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내비서원은 외교문서와 勅諭祭文을 작성하고 각 아문의 疏狀을 기록하였으며, 내홍문원은 古今의 政事득실에 대한 註釋을 담당

8) 張德澤, 『清代國家機關考略』, 學苑出版社, 2001, 1쪽

9) 홍타이지 외 3명의 대버일러는 代善(Daišan), 阿敏(Amin), 莽古爾泰(Manggūltai)이다.

10) 八王合議制에 대해서는 郭松義外, 『淸朝典章制度』, 吉林文史出版社, 1992; 白新良, 『清代中樞決策研究』, 遼寧人民出版社, 2002; 楊珍, 「後金八王共治國政制研究」, 『中國史研究』, 2000-1를 참조하였다.

11) 張晉藩·郭成康, 『淸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遼寧人民出版社, 1988, 36-49쪽

하였다. 이곳에는 각각 大學士 한명씩을 두어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내삼원은 승덕 원년(1636)에 설립되었으나, 그 모태가 되는 기구가 천총 3년(1629)에 설립된 文館이다.¹²⁾ 문관에서 수행한 일들은 한자 서적을 번역하고, 政事를 기록하여 사서 편찬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¹³⁾ 이 문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만주어로 문서 해독 능력을 갖춰 ‘文儒’라는 의미인 巴克什¹⁴⁾이 중심이었으니, 기구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적구성면에서 만주인의 숫자가 한인들 보다 많았고, 당시 문관에서 활동하던 한인관료가 문관에서 기록하는 모든 문서가 滿洲文으로 되어 있어, 정보를 만주인이 독점하고 한인들은 정보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¹⁵⁾을 통해서도 한인들을 등용하기 위한 기구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시 내삼원으로 돌아와서, 승덕 연간 내삼원에 대학사였던 인물은 剛林(Garin), 范文程, 鮑承先, 希福(Hife) 네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만주인은 剛林과 希福 두 사람이다. 剛林은 瓜爾佳氏로 처음에는 滿洲正藍旗에 속했다가 홍타이지 사후 滿洲正黃旗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 그가 관직에 임용된 경로를 보면, 천총 8년(1634)에 禮部에서 만주인과 한인을 대상으로 만문·한문·몽골문에 능한 이들을 선발하였고 이때 剛林은 舉人이 되었으며, 그 해 文館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筆帖式(Bithesi)가 되어 한문을 만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승덕 원년(1636)에는 내삼원의 하나인 國史院의 대학사가 되었다.¹⁶⁾ 또한 希福는 滿洲正黃旗 소속으로 赫舍里氏이며, 그 역시 만문, 한문, 몽골문에 모두 능통하여 문관에 배치되었고 그 역시 비트허시 출신이었다. 그는 문관이 내삼원으로 확대 개편될 때 홍문원 대학사를 제수받았다.¹⁷⁾

이렇듯 내삼원에 배치되었던 두 만주인은 모두 筆帖式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文書·簿籍·帳目 등을 담당한 이들이었다. 청초에 筆帖式은 문관이나 내삼원뿐 아니라 여러 중앙부서에 배치되었고, 이들은 다른 관직에 비해 승진도 빠른 편이었다.¹⁸⁾ 剛林이나 希福에 대해서 부친 代의 세습직을 계승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보아 당시 가문이나 배경을 통해서 관계에 들어온 인물들이라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¹⁹⁾ 다만, 希福는 누르하치 때에 그 형과 함께 귀부한 것으로 세직의 가능

12) 『欽定大清會典事例』 卷11, 「內閣」1. 내국사원대학사 1인, 학사 2인; 내비서원대학사 2인, 학사 1인; 내홍문대학사 1인, 학사 2인을 설치하였다.

13) 『清太宗實錄』 卷 5, 天聰 3年 4月 丙戌條

14) 福格, 『听雨叢談』 卷8, 「巴克什」

15) 『天聰朝臣工奏議』, 「楊方輿條陳時政奏」, 天聰 6年 11月 18日(『清入關前史料選輯』 2,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4).

16) 『清史稿』 卷2, 本紀2 「太宗」; 『八旗通志』 卷 116, 「八旗內閣大臣年表」 上, 2965-2976쪽; 『滿漢名臣傳』 1, 5-6쪽, 17쪽, 53-54쪽; 清史編委會 編, 『清代人物傳稿』, 上篇-1권, 中華書局, 1984, 313-317쪽.

17) 『八旗通志』, 卷 147, 「名臣列傳」 7, 3782-3784쪽;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卷9 「赫舍里氏」, 147쪽

18) 筆帖式에 대해서는 최진규, 「청의 중국지배와 筆帖式」, 『중국사연구』 46, 2007참조.

19) 磯部淳史(2008)는 이 승덕연간 내삼원 관원들에 대해서 유력씨족들을 측근세력으로 수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가 청초 유력씨족으로 언급한 瓜爾佳氏나 赫舍里氏는 당시 오대신의 가계와 비교를 하자면, 주요 가문으로 성장을 하는 시작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홍타이지가 육성하고자 했던 신흥씨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巴克什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²⁰⁾

다음으로 6부를 보면, 그 설립은 天聰 5년(1631) 7월에 투항한 鮑承先 등 한인들이 관제정비를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한인들은 6부 뿐만 아니라 6科, 通政司 등 행정책임기구, 감찰기구, 문서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²¹⁾하였지만 흥타이지는 그 중에서 6부 설치안만 수용하였다.²²⁾ 흥타이지는 6부를 설립한 후 각 부에 버일러 1명을 배치하여 그 부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그 아래 만주인, 몽골인, 한군 承政과 8명의 參政, 1명의 啓心郎을 두어 보좌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²³⁾ 이때 각 부의 책임자로 임명된 버일러를 보면 吏部는 도르곤(Dorgon, 多爾袞), 戶部는 德格類(Degelei), 禮部는 薩哈廉(Sahaliyan), 兵部는 岳託(Yoto), 刑部는 齊爾哈朗(Jirgalang), 工部는 阿巴泰(Abatai) 등이었다.²⁴⁾

이 글은 중앙행정조직에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승덕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교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총연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천총연간에 6부 承政으로 임명된 확인 가능한 만주인들을 보면,²⁵⁾ 개국공신인 五大臣 중 한 사람인 額亦都(Eidu)의 아들인 圖爾格(Turgei)과 車爾格(Celge)이 있다. 그리고, 蘇納은 金台石(Gintaisi)²⁶⁾과 同族으로 여허부가 망할 때 누르하치에게 귀부하였고, 누르하치의 額駙가 되었으며 牛泉額眞을 제수받았다.²⁷⁾ 英俄爾岱(Inggüldai)도 천총연간부터 호부승정이었는데, 阿巴泰(Abatai)의 사위이니 종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듯, 천총연간 6부 승정들이 갖는 특징이라면, 오대신의 후손과 액부를 6부 승정에 임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천총연간의 6부 승정들은 승덕연간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승덕연간 6부²⁸⁾의 구성원 중 만주인들은 다음 <표 1> 과 같다.

20) 『八旗滿洲氏族通譜』卷9, 「赫舍里氏」, 147쪽; 『清史稿』卷225, 列傳12, 「扈爾漢傳」, 9188쪽. 希福은 索尼, 索額圖로 이어지는 가계를 형성하였다. 希福은 봉작을 받은 기록을 보면, 天聰 10년에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三等甲喇章京이 되었고, 순치 9년에 精奇尼哈番(三等子)이 되었다(『清史稿』卷171, 表11, 「諸臣封爵世表」4, 5543쪽)

21) 『清太宗實錄』卷10, 天聰 5年 12月 壬辰條.

22) 6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흥타이지의 태도는 직면한 정치적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명의 제도는 6부 체제를 수용한 것을 두고,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는 의견과 그 조직을 구성하는 체제가 달랐고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만을 가져온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3) 당시에 6부를 설치하였을 때 각 부마다 만주인 承政의 숫자가 달랐는데, 吏部에는 承政 1명, 戶部에는 2명, 禮部 2명, 兵部 2명, 刑部 2명, 工部 1명을 두었다가 승덕 3년에 각 부에 승정을 1명씩 두었다. 『欽定大清會典』卷 19, 卷20 「官制」3.4 참조.

24) 『清太宗實錄』卷 9, 天聰 5年 7月 庚辰條.

25) 天聰年間 6부에는 각각 4명의 승정을 두었는데, 만주인 2명, 몽골인 1명, 한인 1명이었다.

26) 金台石(?~1619)은 金台吉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여허부의 버일러로 흥타이지의 생모인 葉赫那拉氏가 그의 여동생이다.

27) 『八旗通志初集』卷154, 「名臣列傳」14, 3905쪽; 『清史稿』, 卷230, 列傳17 「蘇納傳」; 『清史稿』, 卷214, 列傳1 「后妃-太祖壽康太妃 諸妃」

28) 崇德 3년에는 承政은 만주인 1명만을 임명하였고, 左參政2명, 右參政 3명, 理事官 4명, 副理事官 6명, 滿漢 啓心郎 3명, 額哲庫 2명을 두었다(『欽定大清會典』卷 19, 卷20 「官制」3).

<표 1> 崇德年間 滿洲人 6部 承政

	滿洲人 承政	所屬旗	姓氏	비고
吏部	阿拜(Abai)	正藍旗	愛新覺羅	宗室, 누르하치 3子
戶部	英俄爾岱(Ingguldai)	正白旗	他塔喇	阿巴泰(Abatai)의 사위
	馬福塔(Mafuta)	正黃旗	納喇	
	車爾格(Celge)	鑲黃旗	鈕祜祿	
禮部	滿達爾漢	正黃旗	納喇	
兵部	宜蓀	鑲白旗	瓜爾佳	
	韓岱(Handai)	正白旗	愛新覺羅	宗室
刑部	郎球(Langkio)	正藍旗	愛新覺羅	覺羅
	曹海	鑲黃旗	瓜爾佳	
	吳達海(Udhai)	正白旗	愛新覺羅	宗室
工部	薩木什哈	正白旗	佟佳	

*참고자료: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吏部承政 鞏阿岱와 工部承政 星訥는 홍타이지 사망 시기에 임명되어 포함시키지 않았음

천총연간 6부 승정의 키워드는 ‘功臣’과 ‘皇族’이었다. 승덕연간 11명의 承政 임명자들 중에서 車爾格(Celge)와 宜蓀은 두 개의 키워드 중 하나인 ‘功臣’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五大臣과 관련된 인물들로 車爾格은 額亦都의 아들의 아들이고, 宜蓀은 費英東의 조카이다.²⁹⁾ 천총연간의 6부 승정 중에서도 있었던 五大臣의 자제들을 승덕연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五大臣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대신은 額亦都(Eidu), 費英東(Fiongdon), 何和禮(Hohori), 安費揚古(Anfiyanggū), 扈爾漢(Hürhan)을 가리킨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혼인을 통해서 누르하치와 동맹을 맺었다. 額亦都는 누르하치의 누이와, 何和禮는 누르하치의 큰 딸과, 費英東은 큰 손녀와 혼인을 했다. 천명 5년(1620) 팔기제도를 체계화하면서 額亦都和 費英東을 總兵官으로 임명했고, 安費揚古와 何和禮, 扈爾漢은 구사어전에 임명했다.³⁰⁾

또한 이들 중에서 英俄爾岱(Ingguldai), 馬福塔(Mafuta), 滿達爾漢, 薩木什哈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부친대에 누르하치에게 귀부하였고, 그 대가로 牛泉額眞³¹⁾을 제수받아 세습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薩木什哈의 부친은 누르하치 때 열

29) 『八旗通志初集』 卷159, 「名臣列傳」19, 3980쪽; 『清史稿』, 卷227, 列傳15 ,9239

30) 이블린 S. 로스키(저)·구범진(역), 『청 황실의 사회사』, (서울: 까치, 2010), 95쪽(←Evelyn S. Rawski,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 of California Press, 1997))

31) 니루의 책임자인 牛泉額眞이라는 명칭은 천총8년(1634)에 牛泉章京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順治 17년에는 佐領으로 바뀌었다. 누르하치 시대에 니루어전의 출신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각 부족의 수장들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주동적으로 귀부한 경우가 있다. 이들 중에는 누르하치보다 인구가 많은 자들도 있어서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두 번째는 누르하치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招撫에 응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투항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혼란한 상황에서 살길을 찾아서 오거나 다른 세력을 따라서 누르하치에게로 와서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니루어전이 된 경우가 있다(노기식, 「누르하치의 암반(amban) 에 대한 조직화와 통제」,

명의 아들들과 무리를 이끌고 귀부하였고, 그것으로 牛泉額眞이 되었다. 滿達爾漢의 부친 雅虎도 18戶를 이끌고 누르하치에게 귀순하였고, 牛泉額眞으로 삼았으며, 滿達爾漢과 馬福塔이 그것을 계승하였고, 소속된 人口를 분할하여 관리하였다.³²⁾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대해 나갈 때 주변의 부족장들은 그에게 귀부하였는데 누르하치는 그들에게 후하게 보상을 하였고, 그 중에서 牛泉額眞은 세습이 가능한 지위였다.³³⁾ 청대에 세작과 세직은 旗人의 핵심적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세작과 세직을 바탕으로 관직을 획득하였으니 자손들이 官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³⁴⁾

그리고, 阿拜(Abai)·韓岱(Handai)·吳達海(Udahai)·郎球(Langkio)는 그 성씨가 愛新覺羅로 앞의 세 명은 종실로, 나머지 한 사람은 각라로 구별되는 이들이다.³⁵⁾ 韓岱는 누르하치의 동생인 穆爾哈齊(Murhaci)의 아들이고, 郎球는 塔克世(Taksi)의 伯父인 索長阿의 후예이다. 잉골다이는 그 자신이 황실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누르하치의 7자인 阿巴泰의 사위라는 점에서 혼인으로 종실과 이어진 인물이었다.³⁶⁾ 승덕연간 6부 승정은 관부 버일러가 있는 상황에서 종실과 각라를 다수 임명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英俄爾岱는 신흥세력이면서 황실과 연결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11명의 소속기를 보면, 正黃旗 2명, 鑲黃旗 2명, 正白旗 4명, 鑲白旗 1명, 正藍旗 2명이다. 승덕연간에 흥타이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旗는 정황기, 양황기, 정랍기였다. 정황기는 누르하치가 기주로 있던 기였고, 양황기는 흥타이지가 군주가 된 후 장악하였다.³⁷⁾ 원래 만주 정랍기의 旗主는 德格類였는데 천총 9년에 그가 사망하자 흥타이지는 원래 양황기 소속이었던 豪格(Hooge)를 정랍기의 기주로 삼았다. 이로써 흥타이지와 그 아들이 팔기 중 세 개의 기를 장악하게 되었다.³⁸⁾ 11명 중에서 황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 5명이나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흥타이지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천총연간까지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의정왕대신회의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시 말해서, 당시 청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정왕대신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군주의 藩屏 역할을 할 세력을 확보해야 했다. 흥타이지는 崇德 2년(1637) 4월에 각 旗마다 의정대신 3명을 더 두도록 하였다. 승덕연간 6부의 승정이었던 이들 중에서 의정대신을 맡았던 인물들이 있는데, 英俄爾岱, 韓岱, 郎球³⁹⁾ 등이다.

『명청사연구』 16, 2002, 66-67쪽)

32) 『清史稿』 卷228, 列傳15, 「英俄爾岱傳」; 『清史稿』 卷228, 列傳15, 「滿達爾漢傳」; 『八旗通志初集』 卷147, 「名臣列傳」7, 3788-3789쪽; 『八旗通志初集』 卷152, 「名臣列傳」12, 3859-3860쪽. 『八旗通志初集』 卷154, 「名臣列傳」14, 3900-3901쪽.

33) 이블린 S. 로스키, 2010, 94-95쪽.

34) 雷炳炎, 『清代八旗世爵世職研究』, 中南大學出版社, 213쪽

35) 승덕 원년(1636)에 흥타이지는 顯祖로 추존된 塔克世(Taksi)의 직계를 宗室로, 그 나머지 방계는 覺羅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宗室로 구분된 이들은 黃帶子를, 覺羅는 紅帶子를 사용하게 하여 구별하였다. 누르하치는 塔克世(Taksi)의 長子이다.

36) 『八旗通志初集』 卷139, 「宗室王公列傳」11, 3670쪽.

37) 마크 엘리엇(저), 김선민·이훈(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140-141쪽, 577쪽 참조

38) (Arthur Hummel,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vol.1,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280-281쪽.

이 세 명을 天聰 元年(1627)의 議政王大臣들의 구성과 비교를 해 보자. 원래 그 회의의 구성원들은 대버일러 代善, 阿敏, 莽古爾泰에다가, 버일러 阿巴泰, 德格類, 阿濟格, 杜度, 岳托, 碩托, 薩哈廉, 豪格 등이었는데, 홍타이지가 즉위한 후 팔기에 새로 固山額眞들을 두면서 그들도 그 회의의 구성원이 되었다.⁴⁰⁾ 우선 팔기를 기반으로 의정회의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책결정기구인 6부의 관원들을 통해서 의정대신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겪은 후에 승덕연간 의정대신의 구성을 보면, 宗室, 開國功臣의子弟, 6부의 책임자, 梅勒章京, 大學士, 學士 등도 의정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승덕연간의 의정왕대신회의는 각 부에서 논의한 것을 의정왕대신회의에서 형식적인 비준만 하거나 6부에서 논의된 것에 대체로 찬성의 의사를 표하였다.⁴¹⁾ 종실 중심의 의정회의를 견제하게 위해서 홍타이지는 당시 공신이나 종실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정권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11명의 만주인 6부 승정들 중에서 英俄爾岱, 宜蓀, 馬福塔, 滿達爾漢은 조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使臣으로 파견되었던 인물들이다. 17세기 초반 조선은 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입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청 조정에서는 조선측을 설득하고 압박하였다.⁴²⁾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4명이 여러 차례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조선왕조실록』, 『심양일기』, 『심양장계』 등에서 龍骨大, 馬夫大, 滿月介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英俄爾岱는 천총 2년부터 조선관련 일을 처리하였고, 馬福塔는 천총 5년에 호부참정으로 임명되었고,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滿達爾漢은 馬福塔의 형으로 그 역시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⁴³⁾

다음으로 이번원과 도찰원의 만주인 책임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이번원을 보면, 승덕 2년(1637)에 蒙古衙門을 설치하였고, 그 다음해 理藩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承政 1명, 參政 2명, 副理事官 8명, 啟心郎 1명을 두었다. 승덕 원년에 설치된 도찰원에는 승정과 참정을 두었지만, 정원이 없었다. 그러다가 승덕 3년에 도찰원을 개편하면서 승정 1명, 참정 4명, 이사관 6명을 두었다.⁴⁴⁾ 승덕연간에 이번원에는

39) 『淸史稿』, 卷3 本紀3 「太宗本紀」

40) 『淸史稿』卷二, 本紀2, 「太宗本紀」 이때 固山額眞으로 임명된 이들을 살펴보면, 納穆泰는 正黃旗固山額眞, 額駙達爾漢은 鑲黃旗固山額眞, 額駙和碩圖는 正紅旗固山額眞, 博爾晉은 鑲紅旗固山額眞, 額駙顧三泰는 鑲藍旗固山額眞, 托博輝는 正藍旗固山額眞, 徹爾格는 鑲白旗固山額眞, 喀克篤禮는 正白旗固山額眞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6대신을 설치하여 政務를 처리하게 하였고, 팔기의 訟獄을 판결할 수 있게 했으며, 출병과 주둔도 담당하게 하였다. 이 固山額眞의 임명에서 보이는 특징은 額駙가 3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41) 姚念慈, 2008, 193-203쪽

42) 『滿文老檔』, 崇德 元年 4月 15日, 998-999쪽; 『內國史院檔』上, 天聰 9年 6月 16日, 174쪽.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천하의 사람들의 천하'라는 말과 함께 '덕'의 여부가 天子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遼-金-元-明, 그리고 淸으로 이어지는 천명의 이동과 덕의 여부를 부각시켰다.

43) 『淸史稿』, 卷227, 列傳14, 「英俄爾岱傳」, 9239쪽; 『淸史稿』 卷228, 列傳15, 「滿達爾漢傳」 9266-9267쪽; 『朝鮮仁祖實錄』 卷24, 仁祖 9年 6월 11일(癸丑); 『滿漢名臣傳』 1, 黑龍江人民出版社, 75-77쪽, 109-110쪽; 『八旗通志』, 卷 147, 「名臣列傳」 7, 3788쪽.

44) 『欽定大清會典』(光緒朝), 卷20, 「官制」4 참조. 순치 5년에 承政이라는 명칭을 左都御史로 변경하였고, 이때 한인 좌도어사 1명을 두었다.

博洛(Bolo)가 줄곧 承政을 맡았고, 도찰원은 阿什達爾漢와 羅託이 승정으로 임명되었다.⁴⁵⁾

博洛는 누르하치의 손자로 종실의 일원이고, 阿巴泰의 아들이다.⁴⁶⁾ 阿什達爾漢은 葉赫의 버일러 金台石와 동족이며 홍타이지의 諸舅였다.⁴⁷⁾ 羅託도 종실의 일원으로 貝子였다.⁴⁸⁾ 승덕 2년 尼堪, 羅託, 博洛 등에게 국정을 의논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였다⁴⁹⁾는 것으로 의정대신의 일원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황실과 혈연으로 연결된 이들이 승덕연간에 두 기구를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승덕연간 정책결정기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삼원은 6부에 비해 종실과 공신 가계의 인물들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6부는 설립 초기에 管部 버일러들을 두었는데, 이들의 권위나 세에 눌리지 않을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품급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입관 전에 내삼원은 2품의 관청이고 6부는 1품의 관청⁵⁰⁾이었던 것도 그 안의 사람들을 규정하는 한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후금의 한이 된 홍타이지는 분권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구조에 변화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 조직을 탄생시켰다. 3명의 대버일러와 의정회의로 대표되는 분권적인 성향의 세력들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親臣그룹을 배양한 것이 내삼원, 6부, 이번원, 도찰원의 책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구성을 보면, 종실(각라포함), 공신들의 家系 등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홍타이지가 군주 권력을 강화하면서 분권적인 성향의 세력들과 혈연으로 연결된 이들을 끌어들이는 경쟁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들을 배양하였다. 이러한 승덕연간 정책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책임자들의 성격은 入關이후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入關 後 滿洲人 大學士와 尙書들

이 장에서는 순치연간 중앙행정기구의 만주인 책임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홍타이지 사후 청 조정 내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崇德 8년(1643)에 홍타이지가 사망한 후 청 조정은 새로운 군주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45) 『清代職官年表』, 中華書局, 1980; 『八旗通志(初集)』,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 中華書局, 1977 참조.

46) 『八旗通志初集』 卷138, 「宗室王公列傳」10, 3649-3653쪽.

47) 『八旗通志初集』 卷154, 「名臣列傳」14, 3908-3910쪽; 『清史稿』 卷230, 列傳17, 「阿什達爾漢傳」, 9307-9309쪽

48) 『清史稿』 卷238, 列傳25 「車克傳」

49) 『清史稿』 卷3, 本紀3 「太宗」2, 59쪽. 이때 각기마다 의정대신 3명을 증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50) 『清世祖實錄』 卷15, 順治 2年 3月 戊申條.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처음에는 누르하치의 14子인 도르곤(Dorgon, 多爾袞)과 홍타이지의 장자인 豪格(Hooge)가 대권을 놓고 대립하는 구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홍타이지의 9子인 福臨(Fulin)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결 구도는 팔기와도 연결되어서 正白旗·鑲白旗는 도르곤을 지지하였고, 正黃旗·鑲黃旗는 홍타이지 직계 중에서 새로운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결국 6세의 福臨을 새로운 군주로 결정하였고, 유력한 帝位 계승 후보였던 도르곤과 그의 사촌인 濟爾哈朗(Jirgalang)이 섭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⁵¹⁾ 이로써 도르곤을 중심으로 청의 정치와 행정이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뒤 도르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순치제가 통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순치연간의 도르곤이 섭정을 한 시기와 순치제가 친정을 했던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 볼 것이다.

1. 도르곤 섭정기(1644~1650)

섭정이 된 도르곤은 팔기의 여러 왕들과 버일러들의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각 部 大臣들의 보고를 받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것으로 승덕연간 말기에 管部 버일러의 존재는 상징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⁵²⁾ 이 시기에 내삼원⁵³⁾, 6부, 도찰원, 이변원의 만주인 책임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도르곤 섭정기에 내삼원의 대학사를 맡았던 만주인은 剛林과 祁充格 두 사람이다. 이때 剛林의 소속기가 정람기에서 정황기로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홍타이지 사망 후 조정 내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가 속했던 阿達禮(Adali)가 죄를 지어 처형되었기 때문이었다.⁵⁴⁾ 그리고, 승덕연간에 대학사였던 希福는 도르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바로 혁직되었다. 정황기 소속이었던 希福가 도르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⁵⁵⁾ 이러한 내삼원에 입관 이후 새로 투입된 인물은 祁充格였다. 그는 烏蘇씨이고 만주양백기 소속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瓦爾喀에 거주했는데, 부족사람들과 함께 귀부하였다. 홍타이지는 그가 文史에 능통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발탁하였고, 6부 설립 후에는 예부 계심랑을 역임하였고, 순치2년 내홍문원대학사가 되었다.⁵⁶⁾ 剛林이나 希福가 홍타이지 통치시기에 비트허시부터 관직을 시작한 것처럼

51) 李鴻彬, 「清初傑出的女政治家-孝莊文皇后」, 『滿族研究』, 1998.2, 48-49쪽; 이블린 S. 로스키, 2010, 136-137쪽.

52) 『清世祖實錄』 卷2, 崇德 8年 12月 乙亥條; 『清世祖實錄』 卷3, 順治 元年 正月 己亥條.

53) 順治 2년(1645)에 翰林院을 내삼원에 합쳤는데, 이에 내국사원은 내한림국사원으로, 내비서원은 내한림비서원으로, 내홍문원은 내한림홍문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내삼원에는 만주인과 한인 대학사 7명을 두었는데 많은 때에는 16명까지 있었다. 그 아래 學士, 典籍, 侍讀, 中書 등의 관원을 두었다. 내삼원의 관원수는 유동적이었다. 순치 15년에 내삼원을 내각으로 변경하였는데 殿閣의 명칭을 따른 대학사가 생겼다.(張德澤, 2001, pp.3-4).

54) 『瀋陽狀啓』 1643년 9월 26일의 기록을 보면, 푸린의 즉위에 불만을 토로하고 도르곤을 지지했던 아달리가 처형되는 상황에 대한 서술이 있다.

55) 『八旗通志初集』 卷147, 「名臣列傳」7, 3783-3784쪽; 『八旗通志』 卷116, 「內閣大臣年表」上, 2968쪽

56) 『清史稿』 卷245, 列傳32 「祁充格傳」, 9629쪽; 『清史稿』 卷2, 本紀2, 「太宗」1, 37쪽; 『清史稿』 卷4, 本紀4 「世祖」1

입관이후에도 내삼원에서 중시하는 능력은 비슷한 양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祁充格가 계심랑 출신이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홍타이지가 계심랑이라는 관직을 각 부에 설치하면서 각 부의 버일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바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관부 버일러들을 견제하고 6부를 장악하기 위한 장치였다.⁵⁷⁾ 그러니 계심랑은 조정 내에서 군주의 권력을 강화해나가는 지점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이었다. 祁充格는 귀부했을 당시에는 세직을 받지 못하였고, 천총 8년에 공을 인정받아서 牛象額眞이 되었다.⁵⁸⁾ 따라서 세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입관이후 내삼원의 인적구성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데, 명 조정에서 관직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이들이 청 조정으로 유입된 것이었다. 즉, 馮銓, 謝陞, 李建泰⁵⁹⁾ 등 한인들이 내삼원에 진입한 것이다. 馮銓은 명 만력 41년에 進士가 되었고, 翰林院檢討가 되었다. 그는 명 조정에서 禮部, 戶部の 尙書는 물론 大學士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입관 후에 도르곤이 그를 불러들어 대학사의 직함을 주었고, 순치 2년(1645)에는 弘文院大學士兼禮部尙書가 되었다. 馮銓은 대학사 洪承疇와 함께 명조정의 票擬제도를 부활할 것을 제안하거나, 대학사 謝陞과 함께 郊社·宗廟樂章을 議定하였다. 그리고, 謝陞은 萬曆 35년 進士가 되었고, 崇禎 7년에는 吏部尙書가 되었으며, 이후 이부와 예부의 상서와 대학사를 역임하였다. 청의 입관 후에 청 조정에 귀부하였다. 마지막으로 李建泰는 天啓 5년에 진사가 되었고, 國子監祭酒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 16년 이부우시랑, 대학사가 되었다. 청 조정이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에는 대학사로 임명되었다. 이렇듯 한인들의 인적구성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만주인쪽에는 승덕연간과 비교해서 변화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내삼원에 비해서 6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순치 원년에 버일러들이 각 부를 관리하는 것을 폐지하였고, 承政을 尙書로, 參政을 侍郎으로, 理事官은 郎中으로, 副理事官은 員外郎, 額哲庫는 主事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순치 5년에는 만주인과 한인을 각각 상서로 임명하도록 하였다.⁶⁰⁾ 도르곤의 섭정기간 동안 각부의 상서가 되었던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7) 『清太宗實錄』 卷12, 天聰 6年 8月 丁卯條. 그 부를 관리하는 버일러와 거기에 소속된 계심랑의 출신 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시기 육부의 승정이나 참정과 같은 관리들은 대개 버일러들의 소속기 출신이 선발되었으나, 계심랑의 경우는 예외였다. 지위가 낮은 계심랑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버일러에게 예속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홍타이지는 지위가 비교적 낮은 계심랑에게 감찰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그 목적은 6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張普藩, 『清朝法制史』, 法律出版社, 1994, 24-25쪽.)

58) 『清史稿』 卷245, 列傳32 「祁充格傳」, 9629쪽

59) 명의 대학사로 투항한 이들, 謝陞은 建極殿 대학사로 임명되었음.

60) 『大清會典』 卷19, 「官制」3 참조.

<표 2> 도르곤 섭정기 6부의 滿洲人 尙書

		滿洲人 尙書	所屬旗	姓氏	비고
吏部	1	鞏阿岱		愛新覺羅	종실
	2	譚拜(Tambai)	正白旗	他塔喇	
戶部	3	英俄爾岱	正白旗	他塔喇	
	4	巴哈納(Bahana)	鑲白旗	愛新覺羅	각라
	5	噶達渾	正紅旗	納喇	
禮部	6	郎球(Langkio)	正藍旗	愛新覺羅	각라
	7	卓羅(Jolo)	正白旗	佟佳	
兵部	8	韓岱	正白旗	愛新覺羅	종실
	2	譚拜			
	9	阿哈尼堪(Ahanikan)	鑲黃旗	富察	
刑部	10	吳達海(Udahai)	正白旗	愛新覺羅	종실
	6	郎球			
	11	阿喇善(Arašan)	鑲黃旗	博爾濟吉特	
工部	12	星訥(Singne)	正白旗	覺爾察	

*참고자료: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濟席哈과 陳泰는 순치 7년 12월에 도르곤 사망 시기에 임용되어 제외하였음

이들 12명의 소속기를 확인해보면, 정황기 1명, 양황기 3명, 정백기 4명, 양백기 1명, 정람기 1명, 정홍기 1명이었다. 도르곤과 2개의 황기의 관계는 홍타이지 사후 청 조정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고려할 때 원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황기 소속인물이 4명이나 임명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순치제 즉위 초기에는 황기 출신으로 임명된 이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순치 4년(1647) 이전까지는 索尼(Sonin)·鰲拜(Oboi)·圖賴 등 정황기·양황기 출신 대신들을 중심으로 단단한 연대를 유지하였으나 순치 4년을 전후하여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순치 3년(1646) 圖賴는 불로와 함께 浙江과 福建에서 정복전쟁을 수행하다가 사망하였고, 또 다른 핵심인물인 소니는 순치 5년(1648) 3월에 革職되어 瀋陽의 昭陵을 돌보는 일로 보내졌다가 도르곤이 사망한 이후에나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보이 역시 비슷한 시기에 홍타이지 사망이후 도르곤에 맞섰던 일 때문에 견제를 받았다. 이렇듯 순치 4년을 전후하여 도르곤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 견제와 위협이 지속되자 이들의 결합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⁶¹⁾ 따라서 정황기와 양황기 출신들은 이러한 연대가 무너진 후에 임명된 것이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면서 상서들이 속한 旗의 분포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 또 다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

61) 姚念慈, 「多爾袞與皇權政治」, 『清初政治史探微』, (遼寧民族出版社, 2008), 292-296쪽(←『清史論叢』, (遼寧民族出版社, 1996)); 이블린 S. 로스키, 2010, 137쪽.

이들 도르곤 섭정기에 6부 책임자로 임명된 만주인들은, 종실과 각라가 12명 중에서 5명을 차지할 정도이다. 여전히 종실과 각라의 비중이 큰 것이며, 권력을 가진 이와 혈연은 정치적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송덕연간에는 五大臣의 자손들이 입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르곤 섭정기에는 상황이 어떠한가? 陳泰는 額亦都의 손자이고, 車爾格的 아들로, 一等侯를 세습하였다.⁶²⁾ 五大臣과 같은 개국공신의 반열에 있는 이들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 인물로 阿喇善이 있다. 그는 土謝圖汗으로 책봉된 奧巴의 후손이다. 奧巴는 코르친 몽골의 부장으로 초기에는 여허(yehe 葉赫)부와 함께 누르하치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기도 하였으나, 차하르 몽골의 톱단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누르하치의 지원을 받고 귀부하였다. 이에 천명 11년에 和碩公主를 그에게 시집보냈고 土謝圖汗에 책봉했다.⁶³⁾ 阿喇善은 몽골족으로서 만주팔기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그 이전 시기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까? 송덕연간부터 계속해서 6부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을 보면, 12명 중에서 韓岱, 英俄爾岱, 郎球, 吳達海 등이 있다. 韓岱는 병부승정, 英俄爾岱는 호부승정, 郎球은 형부와 예부승정, 吳達海는 형부승정이었다. 송덕연간 후반부에 6부의 책임자였던 만주인들이 그대로 순차 초기 3~4년까지 그 업무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홍타이지 사후 도르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입관과 섭정이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중앙행정조직의 책임자들의 성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종실, 각라, 황실과의 혼인자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도르곤 섭정기에 6부에 새로 투입된 인물들의 관직경력도 어떠한가? 譚拜는 병부참정, 巴哈納는 형부참정, 卓羅는 형부참정, 阿哈尼堪는 예부참정을 맡았으니,⁶⁴⁾ 내부에서 승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세직을 이은 이들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英俄爾岱 외에 三等梅勒章京을 세습한 卓羅, 牛泉額眞을 계승한 星納 등이 있다.⁶⁵⁾ 噶達渾은 그의 선조가 누르하치 때 귀부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집안에 어떤 세직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⁶⁶⁾ 이렇게 세직이 없었으나, 자신의 능력으로 세습가능한 직위를 받은 이들로는 牛泉章京을 계승받은 譚拜, 一等阿喇章京을 받은 阿哈尼堪이 있다.⁶⁷⁾

이들 6부의 승정들 중에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민감하게 투영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부승정으로 임명된 鞏阿岱이다. 그는 顯祖로 추존된 塔克什의 손자이다. 崇德 8년 8월 9일에 홍타이지가 사망했을 때, 정황기와 양황기 소속의 圖爾格, 索尼, 鞏阿岱, 鰲拜, 譚泰 등은 홍타이지의 장자에게 군주의 자리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鞏阿岱와 譚泰 등은 도르곤 쪽으로 돌아섰고,⁶⁸⁾ 이후 6부에

62) 『八旗通志初集』 卷142, 「名臣列傳」2, 4708-4710쪽; 『清史稿』 卷168 表8 「諸臣封爵世表」1

63) 『清史稿』 卷77, 志52, 「地理志」24, 「內蒙古, 科爾沁部」; 『清史稿』 卷209, 表49, 「藩部世表」1

64) 『清史稿』 卷241, 「譚拜傳」, 「阿哈尼堪」, 9562-9563쪽; 『清史稿』 卷236, 「卓羅傳」

65) 『八旗通志初集』 卷148, 「名臣列傳」8, 3804-3805쪽; 『清史稿』 卷236, 列傳23 「卓羅傳」; 『八旗通志初集』 卷155, 「名臣列傳」15, 3921쪽

66) 『清史稿』 卷242, 列傳29 「噶達渾傳」

67) 『清史稿』 卷172, 表12, 「諸臣封爵世表」5上

68) 『清世祖實錄』, 卷63, 順治 9年 3月 癸巳條

서 활동을 하였다.

도르곤 섭정기에 내삼원과 6부의 만주인 책임자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이번원과 도찰원의 책임자로 임명된 만주인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입관이후에도 이번원 상서는 1명이었는데, 도르곤 섭정기에 이번원상서를 맡았던 인물은 博洛(Bolo)와 尼堪(Nikan)이었다. 博洛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덕연간에 理藩院 承政이었는데, 그는 누르하치의 손자이며 아바타이의 아들이었다. 尼堪은 승덕연간에 蒙古衙門承政 理藩院右參政이었는데, 섭정기에는 理藩院侍郎을 거쳐서 理藩院尙書가 되었다. 그는 누르하치의 장자인 褚英(Cuyen)의 셋째 아들이었다.⁶⁹⁾ 입관을 하였지만, 宗室 출신들을 이번원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도찰원에는 순치 5년이 되어서야 한인 좌도어사 1명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滿達海(Mandahai)는 승덕연간에 都察院承政(도찰원 좌도어사로 명칭이 변경됨)이었고, 도르곤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都察院承政 左都御史이었다. 卓羅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실이었다. 이처럼 종실과 각라들의 임명이 두드러진 것이 이번원과 도찰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順治帝 친정시기(1651-1661)

입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도르곤이 순치 7년(1650) 12월 9일에 사망하자 순치제가 親政을 시작하면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할 이후 내삼원의 대학사로 임명된 이들은 아래와 같다.

<표 3> 順治帝 親政時期 內三院(內閣)의 滿洲人 大學士

	滿洲人 大學士	姓氏	所屬旗	비고
1	陳泰	鈕祜祿	鑲黃旗	
2	雅泰	黨爾察	正藍旗	
3	額色黑(esehei)	富察	鑲白旗	
4	車克(Ceke)	瓜爾佳	鑲白旗	
5	希福(Hife)	赫舍里	正黃旗	
6	圖海	馬佳	正黃旗	
7	巴哈納	愛新覺羅	鑲白旗	覺羅
8	伊圖	愛新覺羅	鑲紅旗	覺羅

*참고자료: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승덕연간과 도르곤 섭정기에 대학사를 지냈던 剛林과 祁充格는 도르곤 세력이었기

69) 『八旗通志初集』 卷,133, 「宗室王公列傳」5, 3592-3595쪽.

에 순치제 친정과 함께 사형되었다. 반면에 히피는 도르곤이 섭정을 시작하면서 혁직 되었지만, 순치제가 친정을 하면서 내삼원에 복직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새로 내삼원에 투입된 圖海는 이전의 내삼원 대학사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筆帖式에서부터 시작하여 國史院侍讀을 맡았던 경력이 있다.⁷⁰⁾ 8명의 대학사들 중에서 陳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額亦都의 손자이다. 그리고, 세직이 있던 인물은 車克와 額色黑인데, 그의 조부가 누르하치에게 귀순하여 牛彘額眞을 받았다.⁷¹⁾

이들 8명의 소속기는 정황기 2명, 양황기 1명, 정람기 1명, 양백기 3명, 양홍기 1명이다. 도르곤의 旗였던 정백기출신은 없으나, 황제가 관할하는 정황기와 양황기 소속이 3명인데 비해 양백기 출신이 3명이나 된다.⁷²⁾ 또한 순치제의 친정과 함께 내삼원에 나타난 변화는 巴哈納(Bahana)와 伊圖(Itu) 등 각라의 등장이었다. 그런데, 승덕 연간 이래로 내삼원이나 내각에 각라들이 투입된 사례는 없었다.

순치 15년에 내삼원이 내각으로 변경하면서 中和殿大學士, 保和殿大學士, 文華殿大學士, 武英殿大學士, 文淵閣大學士, 東閣大學士 등이 등장하는데, 내삼원에서 대학사였던 額色黑, 車克, 圖海, 巴哈納 중에서 額色黑과 巴哈納는 내각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학사였다. 그러나 車克와 圖海는 각각 管戶部尙書事와 刑部尙書를 맡으면서 6부로 옮겼다.⁷³⁾

순치 친정기에 내삼원(내각)은 여전히 비트허시 출신과 공신의 자체가 있다는 점은 그 이전과 다름이 없었으나, 각라들이 대학사로 임명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한 후 6부상서로 임명된 만주인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順治帝 親政時期 6部の 滿洲人 尙書

	滿洲人 尙書	所屬旗	姓氏	담당한 6부 상서직	비고
1	韓岱		愛新覺羅	吏部·刑部	宗室
2	陳泰	鑲黃旗	鈕祜祿	吏部·禮部·刑部	
3	朱瑪喇(jumara)	鑲白旗	碧魯	吏部	
4	譚泰	正黃旗	舒穆祿	吏部	
5	卓羅	正白旗	佟佳	吏部	
6	科爾昆	鑲白旗	愛新覺羅	吏部	覺羅
7	伊圖	鑲紅旗	愛新覺羅	吏部·兵部·刑部	覺羅
8	車克	鑲白旗	瓜爾佳	吏部·戶部	
9	巴哈納	鑲白旗	愛新覺羅	戶部·刑部	覺羅
10	雅賴	正白旗	佟佳	戶部	
11	噶達渾	正紅旗	納喇	戶部·兵部	

70) 『八旗通志初集』 卷149, 「名臣列傳」9, 3809쪽; 『清史稿』 卷168, 表8 「諸臣封爵世表」1, 5345쪽; 『清史稿』 卷 251, 列傳38, 「圖海傳」, 9711쪽

71) 『八旗通志初集』 卷160, 「名臣列傳」20, 4000-4001쪽; 『清史稿』 卷238, 列傳25, 「車克傳」, 9491쪽

72) 이들의 소속기에 대해서 磯部淳史(2012)는 순치친정기의 내삼원의 관원은 혼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바타이家の 양백기, 사할리안家の 정홍기 등 인물들을 등용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분석하였다(磯部淳史, 「順治帝親政期における側近機構の一考察」, 『立命館東洋史學』 35, 2012, 36쪽).

73) 『清代職官年表』 1, 「大學士年表」 9쪽

12	郎球	正藍旗	愛新覺羅	戶部·禮部	覺羅
13	阿哈尼堪	鑲黃旗	富察	禮部	
14	恩格德(enggedei)	鑲藍旗	納喇	禮部	
15	渥赫	正藍旗		禮部	
16	阿思哈			兵部	
17	蘇納海	正白旗	他塔喇	兵部·工部	
18	濟席哈	正黃旗	富察	刑部	
19	藍拜	鑲藍旗	佟佳	刑部·工部	
20	圖海	正黃旗	烏佳	刑部	
21	能圖	正紅旗		刑部	
22	阿布蘭	鑲紅旗	愛新覺羅	刑部	覺羅
23	譚布	正黃旗	舒穆祿	工部	
24	星訥	正白旗	覺爾察	工部	
25	郭科	鑲白旗	愛新覺羅	工部	覺羅
26	孫塔	鑲藍旗	覺爾察	工部	
27	穆里瑪	鑲黃旗	瓜爾佳	工部	
28	喇哈達	鑲黃旗	鈕祜祿	工部	

*참고자료: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이들의 소속기를 확인해 보면, 정황기 4명, 양황기 4명, 정백기 4명, 양백기 4명, 정홍기 2명, 양홍기 2명, 정람기 1명, 양람기 2명이다. 이 분포를 놓고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백기와 양백기 출신들이 8명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순치제가 도르곤 섭정시기에 요직을 차지했던 두 백기 출신자들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팔기 내부의 갈등이 이미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⁷⁴⁾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들의 임명시기와 기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르곤이 장악하고 있었던 정백기 소속의 만주인들은 卓羅·雅賴·蘇納海·星訥 등 4명이었다. 도르곤의 동생인 도도의 기였던 양백기 소속은 朱瑪喇·巴哈納·郭科·科爾昆 등 4명이다. 이들 8명 중에서 星訥와 雅賴는 각각 순치 8년 정월과 3월에 해임되었고, 巴哈納는 순치 8년 4월에 도르곤 세력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그 다음해 재기용되었다. 그리고 蘇納海가 임명된 것은 순치 17년의 일이고, 郭科가 순치 11년, 科爾昆은 순치 13년에 이부상서로 임명되었다.⁷⁵⁾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백기와 양백기 출신들이 다수였다는 점으로 팔기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같은 숫자를 놓고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이 중에서 정황기, 양황기, 정백기 출신이 12명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찍는 것이다. 정백기는 도르곤이 사망하면서 황제 관할이 되었고, 정황기·양황기와 더불어 이른바 ‘上三旗’를 구성하였다. 이 상삼기는 下五旗에 비해 旗人도 많고 旗의 자원도 가장 많이

74) 姚念慈, 2008, 358쪽

75) 『八旗通志初集』卷156, 「名臣列傳」16, 3944-3945쪽

차지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황제의 통제가 확실했던 旗였다. 순치제의 친정 초기에 새로 황제관할로 편입된 정백기을 강하게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백기와 황제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순치제가 친정을 선언하면서 취했던 조치를 보자. 도르곤은 순치 7년 12월 9일에 사망하였는데 순치제는 그 달 26일에 이부, 호부, 병부에 만주인 상서를 2명씩 두도록 하고 韓岱·譚泰·噶達渾·濟席哈·陳泰 등을 새로 상서로 임명하였다.⁷⁶⁾ 이들 중에서 韓岱는 종실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또한 譚泰는 額駙 楊古利의 一家이다.⁷⁷⁾ 정황기와 양황기 소속 각각 1명을 둔 것이다. 홍타이지 이후 6부를 표현하는 키워드인 ‘황족’과 ‘공신’이 여전히 건재하며 따라서 도르곤의 사후 정백기가 황제관할로 재편되었지만, 그 동안 쌓였던 양금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28명의 만주인 상서들은 도르곤 섭정기의 12명의 상서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다. 섭정기간이 7년이고, 순치제가 친정을 한 기간이 11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것은 우선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만주인 상서의 숫자를 증가시켰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는 순치 10년에야 만주인 상서의 숫자를 한 명으로 줄였다.⁷⁸⁾ 순치 8년과 9년에 6부 상서로 임명된 이들은, 韓岱·陳泰·朱瑪喇·譚泰·卓羅·車克·巴哈納·雅賴·噶達渾·郎球·阿哈尼堪·濟席哈·藍拜·星訥·譚布 등 15명이다. 이들 중에서 譚泰와 巴哈納는 도르곤의 세력이었는데 임명된 지 얼마 후에 譚泰는 사형되었고,⁷⁹⁾ 巴哈納는 혁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다. 譚泰의 동생인 譚布도 임명된 지 5개월만에 혁직되었다. 그리고, 순치 8년에는 왕과 버일러가 部務를 담당하는 것을 부활시켰다가 순치 9년에 이를 다시 폐지하였다⁸⁰⁾는 것으로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한 후 2년여는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간이었다는 점과 그 안정을 종실이나 각라들을 통해서 도모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직이나 세작을 세습한 이들로는 朱瑪喇, 穆里瑪, 喇哈達 藍拜 阿哈尼堪 등이다. 朱瑪喇는 三等子の 작위를 세습하였고, 穆里瑪는 순치제의 친정기에 다시 정계로 진출한 敖拜의 동생이다. 그들의 父親이 費英東의 아홉째 동생이니 공신 가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喇哈達는 車爾格的 5자이니 오대신 중 한사람인 額亦都의 손자이다. 순치연간에 侍衛로서 三等阿達哈哈番을 세습하였다. 그리고, 朱瑪喇와 孫塔의 집안도 누르하치 때 귀부하여 우록액진을 세습했다.⁸¹⁾

76) 『清世祖實錄』 卷51, 順治 7年 12月 乙巳條.

77) 『八旗通志初集』 卷146, 「名臣列傳」6, 3776-3777쪽

78) 『欽定大清會典』(光緒朝) 卷 19, 「官制」3 참조

79) 譚泰는 홍타이지 사망 후 군주 선출을 놓고 조정에서 갈등이 커질 때 홍타이지의 직계가 계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도르곤측에 합류하였다. 그런 인물이 순치제 친정과 함께 大學士 剛林과 祁充格는 처형을 당했는데, 그는 이부상서로 임명된 것이다. 이에 대한 사료의 내용을 보면, 그 후 그의 전횡과 도르곤에게 충성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清史稿』 卷246, 列傳33, 「譚泰傳」).

80) 『欽定大清會典』 卷19, 「官制」3 참조.

81) 『八旗通志初集』 卷141, 「名臣列傳」1, 3699-3704쪽; 『清史稿』 卷249 列傳36 「索尼傳」; 『八旗通志初集』 卷152, 「名臣列傳」12, 3862쪽; 『八旗通志初集』 卷160, 「名臣列傳」20, 3996쪽; 『八旗通志初集』 卷167, 「名臣列傳」27, 4120쪽; 『清史稿』 卷172 表12, 「諸臣封爵世表」5上(P.5737)孫塔의 봉작은

다음으로 이번원상서, 도찰원의 좌도어사로 임명된 이들은 아래와 같다.

기구	만주인 상서	소속기	성씨	비고
이번원	尼堪		愛新覺羅	宗室
	沙齊達喇			
도찰원	卓羅	正白旗	佟佳	
	噶達渾	正紅旗	納喇	
	覺善	正紅旗	李佳	
	俄羅塞臣	正藍旗	郭絡羅	
	阿喇善	鑲黃旗	博爾濟吉特	
	屠賴(圖賴)	鑲藍旗		
	阿克善	正黃旗	愛新覺羅	覺羅
	能圖	正紅旗		
	阿恩哈			
	阿思哈			
	寧古禮	正藍旗	托和洛	

*참고자료: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순치제의 친정기에 이번원은 여전히 종실에 속하는 이들이 책임자를 맡았다. 沙齊達喇에 대해서는 『實錄』이나 『清史稿』 등에서 順治 11년 11월에 이번원시랑에서 상서로 임명되었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다.

도찰원의 만주인은 모두 11명인데 이들 중에서 각라는 阿克善뿐이어서 각라의 비중이 그 이전보다 줄었다. 도찰원의 책임자도 순치제 친정 초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친정을 시작한 후 2년 동안에 卓羅·噶達渾·覺善·俄羅塞臣·阿喇善 등이 좌도어사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양황기 1 정백기 1, 정홍기 3, 정람기 2, 양람기 2명이다. 覺善은 부친이 누르하치에게 귀부하여 牛泉額眞이 되어 그 직을 세습하였고, 처음에는 備禦를 맡았다가 군공을 인정받아 一等甲喇章京이 되었고, 순치 7년에 三等阿思哈尼哈番이 되었다.⁸²⁾ 俄羅塞臣의 부친 達爾漢은 누르하치의 외조카(甥)이고 액부이다. 홍타이지가 즉위했을 때 8대신 중 한 사람이었다.⁸³⁾

IV. 맺음말

지금까지 입관을 전후한 약 30년간 내삼원(내각)·6부·이번원·도찰원의 만주인 책임

강희3년에 一等阿思哈尼哈番이 되었다. 『清史稿』 卷249, 列傳36, 「蘇納海傳」; 『清史稿』 卷254, 列傳41 「拉哈達傳」

82) 『八旗通志初集』 卷157, 「名臣列傳」17, 3961쪽; 『清史稿』 卷241, 列傳 28, 「覺善傳」(P.9550); 『清史稿』 卷171, 表11, 「諸臣封爵世表」4

83) 『八旗通志初集』 卷165, 「名臣列傳」25, 4084-4085쪽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皇室 家系로 구성되어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정왕대신회의와 군주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버일러들을 대면하고 있던 흥타이지는 군주로서의 권한을 확보하면서 커져가는 국가의 규모에 걸 맞는 행정조직을 마련해갔다. 그의 통치시기에 내삼원의 대학사들은 비트허시 출신들이며, 황실과 조정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반면, 6부나 이변원, 도찰원의 승정들 중에는 ‘황족’이나 ‘공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입관을 한 후 도르곤이 섭정을 하는 시기에, 내삼원 대학사들은 승덕연간과 비교를 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에 6부로 임명된 이들 중에는 승덕연간 후반에 6부의 책임자였던 이들이 그대로 순치 3-4년까지 그 업무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삼원에 대학사로 새로 임명된 이는 비트허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6부의 승정들 중에는 ‘황족’과 ‘공신’에 연관된 이들이 여럿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순치제가 친정을 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황족’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내삼원에 覺羅들이 임명되었고, 6부 상서들 중에도 ‘황족’들이 7명이나 되었다. 개국 공신 家系의 인물들도 입관 전이나 도르곤 섭정기와 마찬가지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황실’이나 ‘공신’에 연관된 이들 외에도 世職이나 世爵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기구로 진출한 이들이 있다. 이들도 일정 정도의 지위는 갖은 家系였으나, ‘황실’이나 五大臣 반열의 ‘공신’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이었다. 또한 세직이나 세작을 계승하지 않은 이들도 있으나, 그들이 이들 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월인과 국가의 경계: 조선과 청 사이

이동진(경북대 사회학과)

1. 서론
2. 칙사가 파견되어 조사한 사건
3. 관원을 파견하여 봉황성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사건
4. 조선 국왕이 처리하게 한 사건
5. 결론

1. 서론

국가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영토는 국경에 의해서 확정된다. 다시 말하면 국경은 영토의 끝이고 가장자리이다. 이 가장자리는 영토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낸다. 이 국경을 드나드는 것을 출입국이라고 하고 국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된다. 조선과 청 사이의 출입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출병-조선의 ‘나선정벌’, 청의 ‘임오군란’ 시기의 출병 등이 그 사례이다-을 제외하면 오직 외교적인 절차-이 절차는 청의 예부와 조선국왕 사이에서 교섭되는-에 의해서만 허용되었다.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의 총리 기무아문과 조선의 외부, 그리고 ‘한청통상조약’ 이후에는 청의 외부와 조선의 외부 사이에서 외교적 절차가 처리되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래 양국의 ‘상민’의 출입-조선(한)과 청 사이에는 불평등한 요소가 있었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1860년까지 조선의 국경은 청과 일본과만 접하고 있었으며 육지로는 오직 청과만 접하고 있었으며, 바다에서의 출입국 문제-불법 조어와 밀무역-도 주로 청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다. 조선과 청 사이에서 출입국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육로에 의한 불법적인 출입국-‘월경’-이었다. 이를 ‘범월’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출입국법 위반죄-해로에 의한 경우는 ‘밀항’이라고 한다-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선의 경우에 범월죄는 바로 참형에 처해졌고 심지어 효시를 당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범월죄가 엄벌에 처해 지게 된 것은 청이 범월 사건을 외교적인 압력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청이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은 강희 후기가 되면, 다시 말하면 ‘대청제국체제’가 완성된 후에는 조선의 범월인에 대해서도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선정부가 구형한 엄벌을 완화해주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방관이나 국경의 경계 담당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국왕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청이 조선인의 ‘범월’을 심각한 문제로 삼은 것은 이유가 없지 않았다. 조선인의 범월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 지역은 청의 발상지(‘龍興之地’)였으며, 지역 전체가 ‘만주인’의 땅으로서 그 지역의 자원은 주로 ‘황실’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황실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을 ‘황장’이라고 하고, 이 외에 왕공과 귀족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 관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관장’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만주인, 곧 기인이 경장하는 토지가 있었다. 일종의 ‘아파트하이드’가 성립되어 민인(한인)은 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 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민인과 기인간에는 토지 거래를 할 수 없었다(‘旗民不交產’).¹⁾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도 청의 속국이었으며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조선인도 청 황제의 백성에 속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청의 개입을 우려하여 조선 정부가 범월인과 그 관련자에 대해서 무거운 형벌을 가하였고, 청 정부는 황제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조선 정부가 부과한 형벌을 감형해 주었다. 조선에서는 이를 황제의 ‘먼곳의 사람을 회유하는(柔遠)’의 덕으로 칭송하고 방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는 주로 ‘同文彙考’ 중 犯越編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 범월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범월 사건은 개시(사건 제기), 조사, 처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시는 청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조선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조사는 청과 조선의 합동 조사 혹은 조선의 단독 조사로 이루어졌다. 처리는 조선 정부의 처리에 대해서 청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감형하였다. 범월 사건의 유형은 경제적 난민(기민 혹은 궁민으로 유랑)의 경우(특수하게는 양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경우가 있음), 경제적 활동(주로 채삼, 수렵, 벌목 등), 강도와 살인 범죄, 마지막으로 범월 거주(단지 농경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고, 국경 무역을 중개한 경우도 있었다)가 있었다. 이러한 범월 사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범월자, 범월 지역(민), 국가의 관계, 그리고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경과 변경은 영토의 가장자리이지만 영토성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국경에 관한 연구는 영토성, 나아가 국가성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경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곧 ‘범월인’은 인민의 가장 가장자리이지만 마찬가지로 인민성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범월인에 관한 연구는 변경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민성, 나아가 국가성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월 사건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1860년대 이후, 범월 거주 유형을 주로 하는 대량 범월은 그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이룬다. 이 초기 ‘이민(이산) 사회’에 대해서는 1872년에 작성된 ‘강북일기’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이전 시기까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1712년의 백두산 정계가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범월 사건 자체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의 처벌에서는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²⁾ 다만 현재 번역

1) 기인과 민인간의 ‘아파트하이드’는 토지소유권, 통혼 등에서도 발휘되었고 나아가 형사 처벌도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조선인과 청인간에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청 정부에서는 청인이 기인인가 민인인가를 먼저 확인하려고 했다.

된 ‘동문회고 범월사료 1, 2, 3(정조 12년, 1788년에 편찬한 동문회고의 초편 60책을 번역한 것임)’에서는 19세기의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³⁾

공간적으로는 압록강 중하류 연변(조선의 평안도)과 압록강상류·두만강 연변(조선의 함경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압록강 상류지역은 압록강 중하류지역과 두만강지역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전자는 성경(봉천)장군-옹악부도통-봉황성수위의 관할 지역이고, 후자는 길림장군-영고탑부도통-훈춘협령의 관할 지역이었다. 전자에는 성경사냥터(위장)가 있었고, 후자에는 길림사냥터 중 남황사냥터가 있었다. 이 두 지역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청과 조선으로서는 압록강지역이 더 중요한 지역이었음은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범월 사건에 대해서 주로 국가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살펴본 데 대해서, 범월인과 범월 지역(민)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연구에 치중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조선인 범월인과 범월 지역을 통해서 조선의 인민을 이해하고자 한다. 범월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러한 범월인을 만든 범월 지역, 나아가 변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둘 것이다.

2. 칙사가 파견되어 조사한 사건

(1) 순치 9년 유춘립사건

범월 사건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당연히 강도·살인 사건이었다. 살인 사건 가운데서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 <동문회고>에 나오는 살인사건은 모두 범인을 색출했다(한 사건의 경우만 혐의자가 범죄를 부인했다). 조선인과 청인의 변경 지대의 차이를 반영해서 조선인의 범월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선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 더 많았다. 더욱이 범월 사건 자체는 외교적 사안이었고, 조선은 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청이 공세를 취하였다. 청인에 의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동문회고에 나오는 최초의 강도·살인사건은 1637년(승덕 2년)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조선정부가 수사를 개시해서 청 예부에 보고하였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12월 19일에 함경도 병마절도사 보고, 유원첨사 치보, 11월 5일 신시에 소요항의 수호장인 최단이 와서 보고, 청인(‘상국인’) 두 사람이 걸어서 두만강 건너편 국사당에서 나와 강가에 이르렀다. 통사 김응신이 대화에 응했는데, 청인 일행 7명이 후라도에서 살다가 고응고태 부락으로 가는 중인데 양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했다.⁴⁾

2) 정혜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 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 2006.

3) 고종 18년(1881년)까지 속찬한 동문회고 속편 36책이 19세기의 범월 자료를 싣고 있다. 김경록, 조선 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p. 190.

4) 두 번째 사건으로는 승덕 5년 3월 6일, 니응고태 부락에 사는 우리 사람이 12월에 훈융의 건너편으로 가서, 독수리를 잡기 위해 덧, 네 마리의 독수리가, 훈융 사람 4-5명과 경원 사람 12명이 우리 땅

봉강이 엄연히 구분되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금은 기근으로 도울 수 없다고 하고, 국사당동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6일 온성부사가 미전진첩사 장보를 전달, 유원진의 보고와 부합하였다. 11일에 유원첩사가 치보 이어서 받았는데, 11일 오시에 알두리 등이 강 건너편에 이르러, “제 처가 만삭인데 병이 심하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해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양식주머니가 비게 되면 다시 와서 구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약간의 양식과 물건을 주어 돌려보냈다. 이번달 25일에 유원첩사 치보, 본진의 출신 김유선 등에게 조사하게, 국사당 근처에는 머물던 흔적만 있고 강가 위 아래로 왕래한 흔적은 따로 없었다. 27일에 유원첩사 또 치보, 매우 의심스러워 본부에 신속히 보고, 관원 파견하여, 조사, 장대춘, 김유생, 김계립 등 3명, 체포, 김유선은 도망하였으나 다음날 체포, 건너편 산좌에 머물면서 때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작년에 강 위쪽 사람들(상변인) 100여명이 저희 섬을 습격, (상변에 투항할 수 밖에 없어서) 니응고태 부락에 의지하여 강을 따라 올라왔다. 25일에 4명은 그 체류지로 가서 파괴하고 살해, 그들이 지니고 있던 물건들을 빼앗았다. 김계립은 검을 휘두르다 부상을 입었다.

25일에 4명은 그 체류지로 가서 파괴하고 살해하였으며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물건들을 빼앗음, 김계립은 검을 휘두르다 부상을 입어서 장대춘과 김유선 등이 힘을 합쳐서 살림, 김일남이란 자가 저희가 나간다는 것을 듣고서, 사냥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타고 술을 차고 눈위의 흔적을 쫓아왔다가, 저희가 행한 상황을 보고서 당황하여 돌아갔다. 저희는 추격하여 그 술을 빼앗아 마시고, 또한 그 말을 빼앗아서 계립을 싣고 돌아왔다. 조선인들이 가져온 물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피의 3개 표피와 황서피를 합성한 옷 2개, 황서피 단의 1개, 녹피의 1개, 황반의 1개...>, 김유선 등을 국경에 효시하였다. 김유선은 29세, 출신이고, 장대춘은 53세, 갑사신역, 김유생은 23세, 무학신역, 김계립은 29세, 정병신역을 지고 있었다. 모두 유원진에 적관을 두고 있었다(30-34).

청인 난민 일행 7명을 잔인무도하게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훔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문회고에는 청 정부의 조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승덕 연간에는 칙사 파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⁵⁾ 승덕 4년 2월 13일 병부의 보고에 따라 12일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곧 “회령과 만포 두 곳의 속민들이 변경 밖으로 몇 리를 나가서 인삼을 캐가고 있다. ..대청국의 인민들이 멋대로 그 나라에 가서 토산물을 취한다면 괜찮겠느냐...캐 간 인삼과 인삼을 훔쳐간 범인들을 신속하게 색출하여 포박해서 압송해오라”라고 했다. 3월 20일 조선국왕이 혐의자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자, 병부가 황제의 명령, 곧 “조선의 변민들이 몰래 우리 영토로 들어와 두루 들어와 인삼을 캐고 있는 곳을 분명히 보았다. ...지금 이미 없다고 말하니, 이후로는 병사를 뽑

으로 와서 사냥을 하다가 훔쳐 갔음, 이선달(이립)이 ..청인과 말을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하고, 훈련원 첩정 파견하여 압송, 귀부(예부)의 처분을 기다린다(38-39).

5) 동문회고 보편 권9, 詔勅錄을 인삼과 청대 순치, 강희, 옹정, 건륭 연간 칙사 파견을 기록한 연구에서는 승덕 연間は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구범진, 청의 조선사행 인선과 ‘대청제국체제’, 인문논총 59, 2008.

아 그곳으로 가게 하라. 만약에 영토로 들어와 인삼을 캐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거나 사로잡아라.”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범월사료 1, 37).

송덕 4년 5월 27일에 조선국왕이 예부에 보낸 보고로는 청인 장수가 한 말을 보고 했는데, 곧 니응고태 부락에 사는 청인이 작년 12월에 훈융의 건너편으로 가서 독수리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아 네 마리의 독수리를 잡았는데 훈융 사람 4-5명과 경원 사람 12명이 우리 땅으로 와서 사냥을 하다가 훔쳐 갔다고 했다. 훈융의 이선달이라는 사람이 “독수리와 덫이 정말 빼앗아온 것입니까?”라고 하면서 그 독수리를 주지 않고 단지 다른 잡새들은 주었고, 청인이 받아오지 않았다. 이립에 대해서는 단지 청인과 말을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하고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다. 훈련원첨정 정윤성을 파견하여 압송해가도록 하여 귀부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예부에서는 ...이립을 강제로 처벌할 수는 없겠다고 하고, 馬夫達에게 조사하고 회주하게 하였다(37-39).⁶⁾

송덕 7년 3월 2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보고에 의하면 작년 11월 24일 세자를 따라 온 재산 이경석 등이 치보, 이번 달 12일에 인삼을 캐 각 범인들을 심문하고 처리를 기다리던 중 통사 한보룡과 변란 등이 세자관소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 범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적절히 처리한 후 보고하합니다. 형관으로 하여금 심문 하였으나 시인하지 않았다. 각 범인들은 월경하여 인삼을 캐 죄를 면하기 위하여...65명 중에서 앞서 이미 죽은 자 4명과 병이 나서 낙오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자 1명, 강을 건넌 후 죽은 자 김돌노(의주에서 병사, 갑산군사), 김산(서흥에서 병사) 등 2명, 그리고 우두머리라고 각 범인들이 진술하여 남겨두라고 분부하여 오지 않은 자 김계득 등 13명 외에 압송되어 온 사람 이유선 등 45명은 모두 사형에서 감형하여 그 죄를 결정하였습니다(매질하여 유형보내기로 하였습니다).

4월 2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보고에 의하면 각 범인들은 월경하여 인삼을 캐 죄를 피하기 위하여 길주와 갑산 등의 관원들이 호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우리 쪽 국경에서 채취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호조에서는 결코 각 관원들에게 할당한 적이 없으며, 각 관원들은 이러한 무리배들이 금령을 어기고 월경하여 채취할 것을 미리 염려하여 촌거의 이노인들을 다섯 명 열 명 단위로 통으로 조직하여 4월부터 8월까지 몰래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각 범인들은 모두 본토의 주민들이 아니므로 더더욱 멋대로 본적을 칭하면서 관부에서 캐 것이라고 속이면서 거짓으로 진술하여...사하, 서북 등 보 또는 진동과 운총 등 보에서 강을 건넜다고 하므로 길주·갑산 등 관원들의 소관이니, 길주목사와 갑산부사는 정범으로 다루되 감형하여 율에 따라 각자 장 100대에 처해야 하며 운총만호와 서북만호, 사하·서북권관 등은 모두 형신하여 유배를 보내야 한다(43-44).

이를 보면 조선인 범월인에 대해서 청 정부가 조선 정부가 체포해서 압송해 오거나 청 관원이 체포(혹은 죽여도 무방함)해서 청 정부가 심문을 하고 처벌을 하되, 죄가 가벼운 사람(수범이 아닌 중범)의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압송해 가게 해서 조선 정부

6) 마부달은 마푸타(마달복, 마부대)일 것이다. 잉골다이(영아이대, 용골대)와 함께 일찍부터 호부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며, 송덕연간에 조선 문제를 전달했다. 배우성, 서울에 온 청의 馬夫大와 삼전도비, 서울학연구 28, 2010, p. 239.

가 처벌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청이 아직 입관하기 전이고, 심양에는 소현세자가 관할하는 세자관소(심양관소)에 있었기 때문에 청과 조선 간에 범인을 인도하는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정부가 변경의 관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여 범월을 막으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칙사가 조선국왕과 함께 심문을 한 최초의 사례는 순치 5년에 발생한 범월 채렵 사건이었다.⁷⁾ 순치 5년 정월 15일에 호부의 보고에 의하면 영고탑주방인 만주인(만주) 撥說庫 수합납이 보고하기를, 만주인 병정 100명을 대령하고 변경을 순찰하며 수색을 하였는데 고찰호라는 곳에 이르러 인마의 종적을 발견하여 나아가 찾아보니 고려인 12명과 말 8필과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손에 조창 8정을 갖고서 사냥하고 있었다. 회령사람이었다. 변외 지역에 이르러 또 11명과 말 9필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각자 조창 6정을 갖고서 역시 사냥하고 있었다. 충순성 사람이라고 했다. 위의 사람들과 말들을 데리고 성경에 갔다. 도중에 1명이 도주하고 말 4필이 죽었다. “지방에는 각자 강계가 있고, 경계를 넘어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금하여 이미 오래토록 자문으로 알려왔다.” 이들을 조선정부에 보냈다. 회령부사와 종성부사와 함께 회령의 범인 김익겸 등 12명, 종성의 범인 김애봉 등 10명을 칙사(순치 5년에 칙사는 두 번 있었다)가 보는 앞에서 함께 조사하여 심문한 결과 회령과 종성의 군관이 석전에 쓸 제사용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냥을 보냈음이 밝혀졌다. 이에 두 군관은 율에 따라 처단하여 국경 위에 효시하고, 김익겸과 김애봉, 도망하여 돌아온 신만목 등 23명에 대해서는 각각 매질하는 것 외에 마땅히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여 호부로 보고하기로 했다(138-140).

이 경우에 칙사가 범인을 심문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인지 다른 일로 파견된 칙사가 범인 심문에 참가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 국왕이 형조의 장계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국왕이 칙사와 공동으로 심문에 참가한 것 같지 않고, 조선 국왕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조선 국왕에게 대한 추궁을 내포하는 칙사 파견은 아니었던 듯하다.

칙사를 파견해서 사건을 처리한 최초의 사례는 순치 9년의 사건이었다. 11월 7일에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칙유를 내렸는데, 진수성경등치양방장경 섭극서 등의 자문에 의하면 조선의 별극둔성에 있는 관원 김은상이 관할하는 심향의가 정백기 포하의 산삼 지방 동아서우아마산에 와서 삼을 캐다가 포하의 알포랍 우록의 발십고인 장우에게 체포되어 보내져 심문을 받았다. 심향의가 유자나무 껍질과 소나무 열매를 따기 위하여 왔다가 인삼을 보고서 다섯 뿌리를 캐다. 일행은 10명으로, 니목초력필이 우

7) 순치 3년 8월 3일에 호부의 보고에서는 영국달 소속 지방에 조선인 10명이 강을 건너 삼을 캐다가 만주인들에게 적발되어 2명이 익사하고 8명이 체포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들을 심문한 후 이들이 운총보와 나란보의 토병으로서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냥에 나섰는데 짐승을 쫓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월경한 것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따로 삼을 캐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황제는 나라에는 강계가 있으니(국유강계) 어찌 사사로이 월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기용사월), ...실사 사냥을 나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월경한 죄(월경죄)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율에 따라 처벌하게 하여라"라고 했다(134-135). 조선 정부는 의정부 장계의 내용인 제차 심문하여 주범과 중범을 구분한 결과 주모자 1명은 국경에 효시하고, 중범 7명은 외딴 섬으로 유배보낸다는 것이었다(136).

두머리였다. 심향의는 2명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정해진 경계에 대해서는 멋대로 넘어가 채집하고 사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금령은 이미 오래되었다....삼을 훔친 일은 작은 것이지만, 봉강의 일은 큰 것이다...내각학사 소납해와 매륙장경 胡僂, 이사관 곡아마홍(조선 출신 鄭命壽) 등을 파견하여 체포된 자들을 데리고 왕 앞에 가서 분명하게 심문하여 의논하고 상주하게 하라(143-144).”

순치 10년 정월 22일에 조선 국왕이 유춘립 등을 울에 따라 처벌하고, 권관과 윤이현은 보관이면서도 춘립과 다를 바가 없었고, 군수 박배원은 장을 가한 후에 유배하고, 감병사는 파직하겠다고 보고하고, 표를 받들어 사은의 글을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 그런데 순치 10년 4월 26일에 올린 형부의 보고에 의하면 3우러 24일 성지를 받들어 도찰원과 대리시의 관원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조선인 유춘립과 강파회 등 23명은 예(외국의 백성이 멋대로 대국의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를 어기고 불법을 저질러, 번번이 대국의 경내로 들어와 삼을 쟀다. 유춘립 등 4명은 주모자로 마땅히 함께 참해야 한다. 유춘립과 함께 간 유춘남 등 8명, 그리고 강파회, 고현남과 함께 간 범인들, 이 19명은 모두 함께 모의하여 고의로 금령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으니, 모두 교형에 처하여 봐줘서는 안됩니다. 대과아보의 권관인 윤이현은 그 병방 최월계가 배에 할봉한 흔적이 있다고 고하였으나 ...건너는 것을 도워줬습니다. 이사립도 또한 이현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형에 처해야 합니다. 도훈도 이사립은 배를 관리하는 책임자임에..역시 마땅히 참해야 합니다. 벽동군수 박배원은 ...체포한 자들은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월경한 범인들은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관직을 박탈하여 민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찰사 오정일과 절도사 정익은 ...1급을 강등시키고 벌봉 1년에 처해야 합니다. 4월 17일에 내린 성지는 주모자 유춘립과 고현남, 강파회, 이사립은 모두 교형에 처하라. 그 나머지는 사형을 면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시행하라. 박배원은 벌봉 1년에 처하며, 오정일과 정일은 모두 처벌을 면하여 회유의 덕을 현창하도록 하라.

(2) 순치 12년 김충일사건

1654년(순치 11년) 12월에 올린 예부의 보고에 의하면, 진수성경지방양방장경 섭극추가 고아개 지역의 뇌탑고의 무리 2명이 몰래 조선의 무이성으로 가서 소를 교역하다가 살해당하였다. 아들 액의두와 수도, 덕극두가 성경으로 와서 북경으로 가서 이 일을 아뢰고 싶다고 해서 북경으로 보냈다. 우리 고아개 지역의 영추와 섭아목 형제는 한 호의 토지를 함께 경작하기 위하여 본둔에서 20리 바깥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 경작할 소가 없어서 몰래 조선 무이성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두사람의 동생 윤치가 와서 수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두 형들은 경작할 소가 없어서 조선 무이성으로 가서 소를 교역하려고, 이미 여드레가 지났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약속한 기일도 이미 지났다. 6명을 파견, 두 사람이 걸어간 눈위의 흔적이, 무이성, 관원, 소 두 마리를 사게 해줬다. 그들은 나에게 통 소가죽 한

장을 보내줬고 통사에게는 재단된 소가죽을 보냈다. 도강지점을 살펴보니 우리 쪽에 발자국 흔적, 조선인이 강을 건너 이쪽으로 와서 나무를 베어 간 흔적, 목곤 하나와 두 사람이 드는 채찍 2개, 2개의 작은 拖床,이 있었다. 나무를 베어 돌아간 발자국 중에는 소의 발자국이 있었으며 아산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관원, 우리 90명이 강을 건너 나무를 베는 것은 사실, 소를 데리고 간 적은 없으며, 단지 말 한 마리를 갖고 갔을 뿐이라고 했다. 수도가 둔의 두목인 뇌탑고에게 말했다. 뇌탑고 자신이 30명을 데리고 아산성으로 가서, 관원에게, 우리 사람들의 유골과 궁전, 의복 등의 물건은 가지고 와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경원성에서 돌아온 대관에게, 나무를 베러 간 사람들을 잡아와서 고문, 시인하지 않았고, 감옥에 보내 심문을 기다리게 했소. 세 사람의 다리에는 모두 맞아서 난 상처, 두 사람의 부모와 처자, 성묘, 물건은 우리가 지급, 마포 15필과 돼지 두 마리를 지급했다(180-185).

순치 12년 4월 12일에 조선 국왕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경원 사람 채윤립(도감관)이 임진년에 향청을 보수하기 위하여 약간의 역인과 군인들을 소집하여 종성부 경계 지역의 장풍리에서 나무를 베었음, 계사년 9월에 본부로 운반되어온 수 중에는 대들보로 쓸 나무 세 그루가 오지 않았음, 김충일에게 물으니 가뭄이 들어 물이 얕아 큰 나무는 흘러내려 보낼 수가 없었음, 작년 봄에 다시 충일에게 운반해오라고, 아산의 토병인 신랑산과 몰래 약속하여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었음, 김충일은, 작년 정월 14일에 본부의 부사가 공무 때문에 경흥부로, 채윤립이 본부에 유수하면서, 신은산을 불러....약 4-5일이 지나자, 상국인 서너명이 아산보 건너편에 와서...경흥부 무이성 등지의 건너편에서는 상국인 30여명이 소리 높여 비난하였음, 저와 신은산은, 한그루당 마포 5필로 계산하여 15필을 지급할 것이며...아산보 만호 김문세...무이성 사람 김원일, 갑오년 정월에 상국인 두 명이 양털 옷 두벌을 가지고, 본보에 와서 경작에 쓸 소를 교역하려, 유사영은 저의 소 한 마리를 빌리고 또 다른 소 한 마리를 빌려서, 경흥부 사람 유사영은, 지난 경인년에 김원일은 저의 집의 피직 여섯 석을 빌려먹고 곧바로 갚지 않고 있었음, 신묘년 3월에 남자는 다르지만 제가 원일의 집으로 가서 양털 옷 한 벌을 뺏어왔음, 원일은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암상으로부터 산 것이라고 함, 의정부 장계에 의하면 김충일과 신은산에 대해서는 몰래 월경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월경한 것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움(186-193),

7월 8일에 황제가 칙유하기를, 심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아직 상세하고 분명하지 못하다. “태종황제께서 세우신 법은 매우 분명하므로, 너희 나라 군신들은 함께 이를 삼가 준수해야 할 것이다.” 내대신 오배와 시랑 교라과아곤, 학사 절고납을 파견하여왕은 곧 오배 등과 함께 위의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라. 중범(民丁)이 90여명에 달하였다. 결국 나무를 베어 운반해 올 때 김충일과 신은산, 이기남이 요도를 차고 목추를 들고서 (말을 타고) 뒤쪽에 처져 있다가, 소를 사고 돌아가는 상국인을 살해하고 그 소를 탈취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 사람은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마포 15필과 돼지 두 마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권대덕은 돼지 건은 알지 못한다고

했고, 채윤립은 제가 강변에 가서 돼지와 마포를 지급할 때 부사도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신, 이, 채는 사형, 아산 만호 김문세는 삭직, 종신 유배, 경원부사는 혁직하여 3년간 유배, 병사는 관작을 삭탈하고 영원토록 서용하지 말아야 하고, 감사는 삭직, 나머지 각 수중범들은 장 100대, 전기옥은 강을 건너가 대들보로 쓸 나무들이 있는 곳을 살피고, 또 각 범인들과 강을 건넜으니 다른 범인들보다 더욱 무거우므로 장 100대를 치는 것 외에 형신 30차례를 가해야 한다. 실토로 인하여 단서들을 얻게 한 16명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칙사와 신은 서로 의논하여 석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암상 유사영 등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이전에 상주한 것에 따라 처치해야 합니다(198-203).

범인들이 끌고 왔다는 황색 수소와 암소를 찾았다든지 하는 증거물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칙사를 파견한 황제의 뜻이 관철되었다. 이 보고에 대해서 황제가 삼법사에서 조사하여 상주하라고 하여, 형부, 도찰원, 대리시가 함께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음을 보고했다. 김충일과 신은산은 강도살인자율에 따라 참하고 즉시 효시, 이기남은 참, 탈취된 소 두 마리는 김충일 등의 가속으로부터 추정, 금례를 어기고 산 것이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관부로 몰수, 채윤립과 전기옥에 대해서는, 몰래 국경 밖으로 나가거나 금례를 어기고 바다로 나간 자는 장 100대에 처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를 누설한 자는 참하게, 해당 관사와 파수인들이 내통하여 봐주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관하였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처벌하되, 등급을 감해 주게, 율례에 따라서 각각 본국의 변경 지역으로 유배, 아산만호와 경원부사는 ‘알면서도 방관한 자는 범인과 같은 죄로 처벌하며 사형에 이르면 등급을 감해준다’는 율에 따라, 장 100대, 3,000리 유배, 예에 따라 4년간 도형에, 병사 김응해는 가까운 곳에 주둔하면서 단속하지 못했으니 ‘해서는 안되는데 행한 사안이 중대한 자’ 율에 따라 장 80대, 혁직, 채윤립 등의 일은 순치 11년 6월 사면령 이전의 일이므로 각각 죄를 면해주되 혁진은 해야, 90여명 중 16명은 각각 죄를 면해주기로 한 것 외에 그 나머지는 ...‘피해를 알게 된 후에도 고발하지 않은 자’ 율에 따라 각각 장 100대, 사면령 이전의 일, 죄를 면해 주어야, 국왕과 처음 심문하였던 관원들은 모두 논의하여 처벌해야, 순치 13년 2월 19일에 지, 김충일 등 3명은 즉각 참하라. 채윤립 등은 논의한 대로, 국왕과 ...해부로 하여금 처벌을 논의하고 상주하게 하라. 국오아은 은 1,000량과 초피 50장 등, 벌금으로, 처음 심문하였던 관원들은 각 1품관들은 네 급을 강등하고, 2품 이하의 각 관원들은 3급을 강등하며, 형명을 관장하는 형조의 각 관원들은 혁직하여 평민으로 삼아야 합니다. 3월 1일에 지, 조선국왕은 죄를 묻는 것은 면해 줄 것, 그가 하문한 각 관원들에 대해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국왕과 함께 조사하여 그 죄를 결정하고 상주하도록 하라(207-214).

순치 13년 10월 26일에 조선 국왕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4월 26일에 칙사(흠차대신 태자태보 흑백, 양방 합십둔, 228)가 가지고 온 성유 성지를 받들었는데 처음에 심문한 각 관원들인 의정부의 영의정 이시백 등 삼정승, 원임 6조 판서(호조판서 원두표), 원임 겸동지의금부사 2명, 원임 도승지, 대사헌, 대사간, 형조참의 등을 불러들

였다. 칙사가 먼저 이시백에게 책문하였다. 지난 가을에 칙사께서 심문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칙사가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죽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공문하였기 때문에 시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칙사가 조선 국왕에게 여러 관원들과 함께 조사하도록 했다고 한 말이 사실인가를 물었다. 사실이다. 삼정승은 관직 다섯 등급을 강등하는 등 모두 강등 처벌을 부과했다(219-225).

최종적인 황제의 결정(旨)은 순치 13년 10월 5일에 나왔는데, 이시백 등은 원래 논의한대로 각각 항직해야 한다. 국왕은 심문한 각 관원들이 일시적으로 대충 처리한 결과이니, 모두 당분간 논의하는 것을 면해주어라(227-228, 항직처분의 논의를 면제, 229). 이 사건으로 칙사가 두 번이나 파견되었으며 두 번째는 국왕과 여러 대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심문하였다.

(3) 강희 원년

강희 원년 3월 23일 예부가 올린 보고에 의하면, 진수요동등처장군이 보낸 자, 봉황성 장경 아미주가 보고, 장경 포라기가 병정 20명을 이끌고 가서 탐방하다가 조선 지역 2명이 강을 건너와 벌목하고 있어 붙잡았다. 또 말 2필과 인문이 있어, 같이 본성 정감기 우룡아 좌령 하 밭십고 목성격의 병정 4명에게 넘겨주었고, 12월 28일에 이곳에 이송되어 왔다. 의주성에서 강도로 가서 사람을 치는 목곤을 벌목하려 하였는데 도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강을 건너와 벌목하게 된 것, 말 2필은 우리가 목었던 주인집의 말로, 나무를 얻게 되면 이 말에 실어서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이고, 인문은 본관이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한 인문이다. 인문을 대략적으로 번역해보니, ‘鎖匠의 助役 이말일생 등의 장임. 위에서 그 뜻을 삼가 진술하였음. 짧은 몽둥이로 쓸 장목과 형신에 쓸 장목을 이쪽에서는 얻을 곳이 없으니, 앞의 도중에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금계에 넘어가서 형물에 사용할 것을 베어오지는 말 것, 베어올 때 파수꾼은 막지 말고, 내려 보내서 관찰사가 처분할 수 있게 할 것. 순치 18년 11월 12일.’ ‘파수인에게 금지하는 것을 불허한다.’ 해당 지방관은 특히 더 금령을 어긴 것, 이에 특별히 관을 파견하여 조선국왕과 협동하여, 지방관과 인문에 이름이 있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심문하고 제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월 26일에 조선국왕이 칙사와 함께 범인을 심문한 후 다음과 같이 상주를 올렸다. 의주부윤과 범인 3명(이말일생은 연명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당일에는 아파서 같이 가지 못했음. 나중에 같이 갔다가 탈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음)을 경옥으로 데려오게 한 후, 5월 16일에 칙사관소로 가서 함께 심문하였다. 의주부윤이 “본국은 상국에 대하여 단지 두 개의 강으로 떨어져 있을 뿐, 토양은 매우 가까움, 전부터 범금을 엄격히 하여 곳곳에 파수를 두었는데, 두 강 사이에 있는 3도는 본국의 지역임, 쇠장 조역 등이 도중에서 형장목을 베기 위하여 연명으로 장을 올렸기에 제가 허가한 것, 인문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본국의 도중에 가고자 한 것이고, 허가한 것도 본국의 도중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장에는 이 부근에는 나무가 없다라고, 이 부근 외는

어떤 지역인가, 중강과 삼강 사이는 상국의 도가 아닌가 하였더니, 중강에는 파수를 설치하지 않는데, 이는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이 부근 외라고 하는 것은 삼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중강과 삼강 사이는 개시하는 곳입니다. 지명은 ‘介田’이라고 하며, 그곳을 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본부 사람들은 삼도를 도중으로 섞어 부릅니다. 담당 파수는 상관의 인문이 있어 넘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 저 인문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범인 2명은 참형, 의주부윤은 영장을 두루 보고 인문을 주어, 파수로 하여금 금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금지임을 알고도 월경하게 한 것인 즉, 울에서 교형, 이말일생은 장 100대에 처하고 변원지방으로 유배, 담당 파수는 장 100대에 각각 처해야 합니다(관찰사는 의주부윤이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면죄).

10월 11일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7월 26일에 상주하여, 9월 22일에 지를 받았는데, 범인 2명은 사형을 면하고 장 100대에 처하면 변원지역으로 유배, 의주부윤은 사형을 면하고 혁직, 이말일생은 장 100대에 처하고 유배형은 면하도록 하고, 담당 파수는 장 80대에 처하였다. 이에 조선국왕이 강희 2년 3월 20일에 회자하고 사범인 감죄표와 방물표 등을 올렸다(327-328). 이 사건을 보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이 발급한 인문으로 인해서 칙사가 파견되어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4) 강희 19년 장이립 사건

강희 19년 7월 27일에 예부가 보낸 보고에 의하면(부도통, 진수영고탐등처장군, 형부의 보고를 거쳤음),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좌령 철이득이 조선의 3명 고려인을 붙잡아 이리로 보냈다. 온선성에 속한 운성 사람, 새끼줄을 만드는 데 쓸 목피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역을 통해 압송한다. 소를 묶을 새끼줄이 없어서 4월 17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건너와 자작나무 목피를 구하기 위해 새끼줄을 만들려다가, 수색자들에 의해 붙잡혔다. 강희 원년 3월에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너 벌목한 것에 관하여 진수요동등처장군이 보낸 자를 받고서 다음과 같이 제를 올린 적이 있다. 조선 사람 2명이 강을 건너 벌목했다가 봉황성에서 수색하던 장경 포라기에 의해 붙잡혔다는 내용과 아울러, 그들의 담당 지방관이 벌목한 자들에게 발급한 공문에는 ‘파수인은 금지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에는 인문을 발급하여 제멋대로 강을 건너 벌목하게 한 것이니, 해당 지방관은 특히 더 금령을 어긴 것, 특별히 관을 파견하여 조선국왕과 협동하여 지방관과 인문에 이름이 있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심문하고 제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343-347).

체포한 범인은 모두 각 (지방에서) 구금했었고 해 지방에서는 예부로 문서를 보내 제를 올리도록 하면서, 그 회문에 따라 해국으로 보내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체포한 죄인들을 관병을 보내서 역참을 통해 경사로 보내왔으니, 부적절한 것,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는 장군과 부도통을 병부에 넘겨 조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7월 28일에 황제

가 조선국왕에게 칙유을 발하여 내각학사 겸 예부시랑 희복과 일등시위 장니대달이새를 파견하였다. 11월 3일에 조선정부가 謝查勅表를 올리고, 11월 27일에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윤8월 13일에 칙사가 갖고 온 성지를 받들었다. 범인 박시옹과 장이립, 노도소 등에게 심문한 결과 자작나무 껍질과 고사리 말고 다른 것은 범한 것이 없다. 영고탑 사람 19명이 모두 목격하였다. 유원침사의 관할을 받고 있으며 집은 유원성 안에 있고, 강물은 성을 둘러싸 흐른다. 유원침사, 관찰사, 절도사, 온성부사를 심문했지만 ‘간민’과 내통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유원침사는 혁직하고 3,000리 유배, 온성부사는 혁직, 관찰사와 절도사는 각각 5등급 강등하여 조용하기로 결정했다(354-360).

강희 2년 2월 12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조선국왕의 상주를 올리자 관례대로 삼법사에서 조사하고 결정하여 상주하라는 지를 받았고, 이에 제를 올릴 것인데, 이외에 예부가 2월 7일에 조선국왕에게 온 1만량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는 제를 올렸는데, 11일에 너그러이 용서해 주어 벌을 면해주라는 지를 받았다(364-366). 3월 28일에는 예부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에 의하면, 형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조선국왕과 학사 희복 등이 논의한 바에 따라 좋을 것입니다. 3월 4일에 내린 지에 의하면 장이립 등은 모두 너그러이 죽음은 면해 주어 예에 따라 등급을 감해주어라. 나머지는 논의한대로 하라(367-368). 강희 20년 9월 3일에 조선국왕이 사례하고 방물을 올리는 咨, 表, 箋 등을 올렸다(374-376).

이 사건 강희 원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사건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강희 원년의 사건과는 달리 지방관이 발급한 인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칙사를 파견하였다. 이는 칙사 파견이 조선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1679년(강희 19년)은 삼변의 난이 발생하고 있던 시기로, 1678년에 오삼계가 병사한 후 삼변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5) 1685년(강희 24년) 한득환 사건

대개 채삼을 하다가 순찰을 도는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거나, 범죄 사건, 주로 강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범월 사실이 드러났다. 후기에 올수록 후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강희 24년에 발생한 삼두구 사건이 대표적인 예였다. 이 사건은 청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⁸⁾ 삼도구에 왔다가 마침 (산골짜기 좁고 험한 곳에서) 인삼을 채취하던 한 무리의 조선인들과 (두 차례) 조우하게 되어 조선인측에서는 조충을 쏘고

8) (강희 16년(숙종 3년)에 내대신 각라무목납을 파견하여 백두산의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해에 산령에 봉호하여 치제하였다. 이때에도 주방협령 늑초로 하여금 제차 백두산 답사를 실시케 하였다. 이해 9월에 흑룡강 연변의 목이근성을 수축하기 위하여 부도통 온대납진을 주방시켰으며, 이보다 2개월전인 7월에는 길림과 흑룡강 사이에 19개 역을 신설하여 백두산쪽으로 남하하는 역로를 개척하였으며, 주방협령 늑초도 전기 부도통의 예하로서 삼도구에서 측도에 임하였다. 이 일은 다음 해 3월에 착수한 <대청일통지> 편수르 앞둔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청사고 권7, 성조본기 7, 강희 24년 7월 임신, 9월 감신조 및 동25년 3월 기민조 참조; 이홍렬, 삼두구사건과 그 선후책들, 백산학보5, 1968, p. 169-179.

청측에서는 활을 쏘아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호군통령 修寶, 중서·통역 각 2명이 파견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선인은 모두 31명이었다. 화살에 맞아 죽은 김귀봉,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득현과 박대립, 도망 중인 신식을 제외하고 27명이 심문을 받았다.⁹⁾ 주범은 삼수군 별해진 주민인 한득완과 후주진 금단차사인 이득현이었다. 이득현이 8월 초에 강을 건너가서 인삼을 캐자고 해서, 흥년을 들어 먹고살 방법이 없었기에, 후주의 앞은 여울로 건너가서 삼장동 근처(삼도구가 삼수부관하의 후주대안 부근이며 백석탑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에서 인삼을 캐다가,¹⁰⁾ 청측이 먼저 화살을 쏘아서, 총을 쏘며 도망을 쳤다. 조선인 무리들은 간민, 산골짜기의 무뢰, 원적지를 벗어나 따들며 구걸하는 무리들, 변민과 간세 등으로 표현되었다(434).

먼저 형조판서 이이명의 보고에 의하면 총을 가지고 있었던 주범 6명은 삼수별해보의 한득완, 함흥장진채의 장계백, 삼수후주진의 김송언, 삼강강구보의 박득언, 희천인 박상일, 장진채 최수원이었고, 따라 간 자 20명은 함흥장진채가 12명, 안주인이 1명, 강계신광보가 2명, 희천인이 3명, 삼수별해보가 2명이었다.¹¹⁾ 장진채에서 구걸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 후주로 갔다가 장계백 등과 공모하였거나 함흥에서 걸식하다가 한득완과 공모하였다.¹²⁾ 한득완은 저희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다가, 삼수 후주가 작황이 좋아 그곳에서 구걸을 하였고, 이득현이 저희에게 동행하자고 하였다(448).

후주첨사, 삼수부사, 함흥판관, 희천군수, 서안주사, 영변부사, 강계부사 등 지방관이 “너희가 관할하는 민인이...” 이에 대해서 방한이 없기 때문에 민인이 유리걸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이막란(희천) 등이 간악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른 것은 집을 떠난 뒤의 일이라고 하고 원적지의 관원은 이미 적발할 수 없었다고 했다(453). 주범 6명은 입참하고 처자를 노비로 삼았으며, 김성태 등 종범 19명은 입참하였다(442-459). 후주첨사는 자살하였는데, 청사는 판결하기를 파직, 2,000리 유배로 하였다가 귀국 도중에 장 100대, 3,000리 유배로 고쳤다. 삼수군수는 조선국왕이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청사가 파직, 2,000리 유배로 판결하였다. 감산부사, 해산첨사는 처음에는 혐의가 있었으나 나중에 혐의를 벗었다. 함경감사는 관작삭탈 영원히 서용하지 않

9) 11월 17일의 비국계사에 의하면, 노약자로 막사를 지킨 자를 제외하고 총을 쏜 자가 6명, 동참자가 19명, 사망자가 3명으로 모두 28명이었다. 한득완의 진술에서 같이 간 사람이 30여명이라는 진술로 인해서 부득이 이미 체포된 신산과 체포되지 않은 신식, 이운학 등 3명이 공범으로 추가되어 범인은 모두 31명이 되었다. 이에 청사는 추가 범인의 체포와 범인들의 원적관(수령, 첨사)과 지방관(감사, 병사)의 소환 문책을 요구했다. 승정원일기 제312책 강희 24년 11월 22일조, 승정원일기 제312책 강희 24년 11월 23일조, 이홍렬, 전계 논문, p. 173, 175.

10) 승정원일기 제311책 강희 24년 11월 초10일조; 이홍렬, 전계 논문, p. 173.

11) 승정원일기 제311책, 강희 24년 11월 초10일조; 이홍렬, 전계 논문, p. 172. 이들 외에 운흥·해산 사이를 경유하여 포타외에 범월 작변한 박승선·박승학이 있었으나 삼도구사건과는 범월지방, 작변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본사건의 심리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다.

12) 장계백(장진채)은 구걸로도 먹고살기가 어려웠기에, 박득립(삼수 강구보)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박상일(희천)은 후주에서 걸식하다가 장계백의 말을 듣고, 최수원(장진채)은 집이 매우 가난하여 생활할 방법이 없어서, 8월 초 후주로 가서 장계백 등과 공모하여, 김태성(함흥)은 흥년으로 걸식하다가...

음(과직으로 판결), 남병사는 3년 도형(과직, 처음에는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부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고쳤음), 함흥판관, 강계부사, 안주목사, 희천군수는 과직(5급 강등으로 판결), 평안감사는 향자(2급 강등으로 판결), 국왕은 사죄문을 올리는 것으로 하였다.¹³⁾ 그런데 예부에서 조선국왕에게 벌금으로 은2만냥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465).

그런데 우의정 정재고, 예조판서 최석정 등 조선 사신단 일행이 요서에서 회환하는 절사를 만나, 이 사실을 알고, 조선국왕(과군)에게 내린 처벌을 거두어 달라는 글을 올렸다.¹⁴⁾ 이들은 태종(승덕 연간) 시기에 최효일을 청을 배반하고 명국에 투입하였을 때 효일의 족속 중에서 그 음모를 알고 있던 자만을 주살한 사실, 병사 임경업이 청에 죄를 얻어 체포하여 심문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경업이 종로에 숨어버리자 다만 그 처첩을 성경에 잡아다 가두었던 사실, 세조(순치 연간) 시기에 경원부 간민이 잠입하여 나무를 베고 사람을 해친 사실, 인평군 이준 사행에서 돌아가던 길에 그 종인이 염초를 많이 거래한 사실 등에서 조선국왕에게까지는 죄가 미치지 않았던 전례를 들었다(아울러 인평대군도 죄를 주지 않았다. 467). 그리고 앞에 든 경원 간민 사건에서 당사자만을 주살하고 관리를 내치는 일은 없었지만, 조선국왕이 그 범한 것이 지중하다 여겨 경원부사를 한 가지 죄로 처단하였다. 이번에 후주첨사의 일도 칙사가 올 때 죄가 유형에 그쳤지만 그가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소방의 법이 반드시 주살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468).

강희 25년 윤4월 3일에 예부가 전달한 자에 의하면, “태종황제는...그 군주를 산성에 몰아넣고 그 처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고토를 돌려주고 그의 구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세조 황제는....특별히 공부의 절반을 줄여주었고 팔분 무역 역시 다시금 금지시켜 주었습니다. ...신 등이 항상 득견대, 사신이 그곳에 이르면 과거에 정한 의주를 준수하지 않아 그 국왕이 혹 영접 나와 알현하지 않거나 혹 거만하게도 영접을 하지 않으니...과거 배신이 북경에 와서 금령을 어기고 야사를 몰래 구입하여 계해년에 있었던 폐립의 시말을 산개해 달라고 함부로 요청하였으며..망령되게도 일본이 그 나라를 치러온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시간을 두고 살펴보니 대략 소식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장주를 올린 적이 있는데, 왜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선혹하고 기망하는 것은 곧 그의 고태입니다. 마야호로 우리 국가에서 소추가 아직 진압되지 않아 군사를 일으켜 정도할 때, 다시 허풍스런 말을 떠들어서 우리의 허태를 엿보았으니...근년 이래 변계의 간민이 누누이 범금을 어겼는데, 일국의 수장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인 양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든 일들에 대해서 그 죄명을 정할 때 가벼운 처벌을 따른 경우가 많았지만, 강희 5년에 도망간 사람을 숨겨주었던 벌금으로 은 5천냥을 부과하였고, 강희 6년에는 진공한 종이 품질이 나빠서 은 1천냥을 부과하였으며, 강희 20년에는 의주 사람이 경계를 넘어와 인삼을 췌

13) 이홍렬, 전계 논문, p.176-177.

14) 조선정부에서는 정재고 등을 사은검진주사로 파견하였다가, 벌은 2만냥 부과 소식을 안 후에 다시 제2차 사행으로 량원군 侃, 제3차 사행으로 좌의정 남구만(벌은 2만냥을 가지고 갔음, 562), 제4차 사행으로 량선군 오 등을 파견하였다. 이홍렬, 전계 논문, p. 178.

며, 강희 24년에는 우측의 매입을 그만두자는 말을 한 데 대해서 은 만냥을 부과하고 했으나 황제께서 면제해 주셨다(475). “저들은 소국이라도 또한 인민과 사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신복한 지 50년으로 패수 바깥은 모두 우리의 강역이지만 우리 왕조를 위하여 복을 부르길 기대하여 그 조사를 보전하도록 하였으니, 그 인민·사직이 누가 실로 네게 주었는지도 생각지 아니하고,...”.¹⁵⁾

강희 25년 4월 26일에 이 제본을 올렸는데 29일에 “정재고 등은 체포하여 끌고 오는(嚴拿)하는 것을 면해 주고, 나머지는 의논한 대로 하라”고 하는 유지를 받았다(469-477). 10월 1일에 예부가 성지를 받들어 죄벌을 감정하는 자를 보냈다. 예부가 제복한 내용은 조선국왕이 올린 주를 6월 22일에 주하여 9월 4일에 지를 받았는데, 이부, 예부, 형부 3부에서 면밀히 의논하여 상주하라. 소를 올려 죄를 청하니 곧 정재고, 최석정 등에 대해 그 관작을 체직하고 월방으로 유배시킨다는 내용이다. 마땅히 의논한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9월 17일에 제하여 19일에 지를 받들었는데, 정재고 등은 본래 마땅히 의논한대로 처분해야 하지만, 우매하고 무지한 것을 고려하여 우선 관대하게 처리하여 혁직과 정배에 대해서는 각기 4급을 낮추어 조용하도록 하라(583-585).

이 사건이 처리되는 시기인 강희 24년과 25년(1685년과 1686년)은 삼번의 난(1673-1681년), 대만 정복과 열하에 목란위장 설치(1683년), 제1차 남순 강행(1684년)을 거치고 청이 전성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강희제는 1688년에 황하 치수의 실패를 문제 삼아 남당(강남지역 출신 한인)과 손잡고 북당세력(만주족과 북방 한인 출신)을 축출하고 다음 해에는 남당세력마저 축출함으로써 황제 일인지배체제(친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강희제는 강력한 황권을 바탕으로 대규모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다.¹⁶⁾

(6) 강희 30년

강희 29년 9월 15일에 조선국왕이 예부에 보낸 자에 의하면, 9월 15일에 함경도 관찰사, 절도사, 치계, 경원부사의 정문, 지난 달 27일에 말을 탄 청인 13명이 두만강 북안에 도착하여 지방관을 불러, 군관 및 통사 등을 파견, 우리들은 북경 사람으로 채삼의 일 때문에 금년 2월에 북경에서 행장을 받아 출발하여 4월 3일에 후춘 지역에 도착하였고, 후춘에서 동북의 초지로 전입하여 2일에 막소를 만든 후 1명을 남겨 짐을 지키게 하고 각기 산에 올라 채삼하였다. 본월 20일 저녁 무렵에 막소로 돌아와 보니, 막소를 지키던 한 명과 말 13필이 탄환에 맞아 죽어 있었고, 두었던 인삼은 모두 훔쳐가 버렸다. 동쪽으로 반일정도 가서 조선인 10인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돌입하여 결박하려고 한즉, 각 범인이 일시에 탄환을 쏘아 우리들은 건디지

15) 조선국왕의 글에서도 태종의 ‘재조지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16) 1689년에 그해 단행된 제2차 남순과 함께 <강희제남순도권>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황여전람도> 사업을 시작하였다. 장진성, 천하태평의 이상과 현실: <강희제남순도권>의 정치적 성격, 미술사학 22, 2008, p. 280-281.

못하였고 도망가는 사이에 물건을 습득하였다. 아울러 수습한 물건을 보여 주었다. 을축년(강희 24년)에 일이 생긴 이후 더욱 칙매를 가하여 연강의 파수를 밤낮으로 순찰하게 하였으며 변신으로 하여금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리되 5일마다 확인하도록 했다(588-589).

10월 27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서, 예부가 올린 제에 의하면, “연강의 수천리는 모두 사람이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이번에 간민이 이육에 빠져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으니...” ...성경 및 영고탑장군으로 하여금 이번에 채삼한 사람들이 팔기 소속인지 민간인인지 및 관채인지 사채인지의 문제에 관해 모두 아울러 밝혀내게 하고...방비에 소홀했던 각 관원의 직명을 모두 분명히 조사하게 하여 도착하는 날에 조선국왕에 대해서도 아울러 처분을 의논해야 합니다. (589-591). 11월 21일에 조선국왕이 예부에 보낸 자에 의하면, 10월 18일에 전차한 근신, 관찰사, 절도사 등이 올린 치계를 연속해서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범월인 6명이 다행히 잡혔다. 기한에 쫓겨 감히 월경하여 채삼할 계책을 내어, 8월 7일에 7명이 약속하여 14일 밤이 깊어진 후에 모두 경흥에 있는 망덕연대 아래쪽 강변에 이르러 말구유로 건넜습니다. 동월 20일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역에 도착하여 멀리 바라보니, 한 곳의 산곡 중에 청인의 장막이 있었는데 오직 한 명의 간수가 있었습니다. 2명이 일시에 총을 쏘았는데 그 간수 한 명과 말 304필은 총에 맞아 죽었고, 그 나머지 마필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날이 저물 즈음에 청인 10여명이 추격해 와서 느닷없이 공격하여 이기남은 추에 맞아 즉사하였고, 2명이 또한 총을 쏘자 청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강변으로 돌아와 마른 버드나무 뗏목을 만들어 다시 건너왔습니다(592-593).

강희 30년 2월 9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봉천·영고탑장군 동보 등이 보낸 자에 의하면, 조선인 30명이 정흥기 진국공 六哥 가의 채삼인 한 명 및 말 13필을 조총을 사용하여 죽였습니다. ...서로 차이가 나며 또한 인명과 관계되니, 이 일은 응당 강희 24년에 관원을 파견해 가서 조사하게 한 예에 따라, ...(594-595), 2월 25일에 내린 칙유에 의하면, 영고탑장군이 보고한 인수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특별히 내각학사 겸 예부시랑 서안과 일등시위 나과다를 파견하여...(596)

6월 21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내각학사 등이 작성한 소에 의하면, 조선국왕에게 벌은 1만냥을 처해야 합니다. ..의논한대로 벌은 1만냥에 처해야 합니다. 6월 13일에 제하여 본월 8일에 지를 받들었는데, 용서하여 벌은 1만냥을 면하게 하라(597-598). 강희 30년 윤7월 7일에 조선국왕이 상주하였는데, 4월 4일에 ...칙유를 받들어 왔는데...임인이 공술하기를, 종성의 백성으로 기근을 만나 살아갈 방도가 없어, 이기남, 소현 등 3인이 같이 모의하여, ...4명을 데리고, 강희 29년 8월 13일밤에 깨진 말구유를 타고 경흥강변에서...본월 20일에...낮에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하면서 겨우 도망 와서, 넘어갈 때 건넜던 경흥강변에 되돌아왔는데, 놓아두었던 깨진 말구유가 물에 떠서 흘러가 버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에, 마른 버드나무 뗏목을 만들어 9월 7일에 밤을 틈타 되돌아왔습니다. 소현이 공술하기를, 경흥의 백성으로...경흥지역에서 임인의 말구유로 잠월하여 도강하였습니다. 저와 임인은 각기 조총 한 자루를

가지고 악수가 덤빌 것을 방지했습니다...박계선의 공술, 경원의 백성으로 동서로 걸식하다가, ...채삼한다는 말을 곧이듣고, 원득생, 종성 사람으로 호구할 방도가 없어, ...김원증, 경원 사람, 경흥강, 강의선, 종성의 백성으로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임인, 소현은 응당 입참, 이기남 또한 입참으로 의율해야 하나...그들의 처자는 노비로 삼아야...나머지 4명은 비록 총을 쏘아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으나, 응당 입참으로 의율해야...경흥부사는 혁직, 2,000리 밖으로 유배, 관찰사는 혁직, 절도사는 혁직, 경원부사와 서리종성사무좌수관은 도강한 지역이 비록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민인을 엄히 단속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5급을 강등하여 조용해야 합니다 (610-629).

강희 30년 10월 26일에 예부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에 의하면, 형부에서 보낸 자에 의하면, 조선국왕의 제한 것을, 윤7월에 주하여, 9월 7일에 지를 받들었다. 10월 17일에 주하여 21일에 지를 받들었는데, 범인 6명은 모두 즉시 참형에 처하고 빼앗아간 인삼, 의복과 상처 입힌 마필 및 투채한 인삼은 모두 그 추후에 징수하는 것을 면하게 하라.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633-635). 강희 31년 4월 9일에 조선국왕이 상주하였는데, 이후 잡지 못한 나머지 무리에 대해서 끝내 그 종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인표 또한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637-639).¹⁷⁾ 6월 17일에 예부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에 의하면, 조선국왕이 보낸 소에 의하면, 강희 29년 12우리에 진수영고탑등처장군 동보의 보고에 의하면, 정흥기 진국공 육가가 발십고의 장육이 정문, 서봉산에서부터 채삼하며 나가다가 해안에 이르러 거주, 8월 20일 고려인 30명이 총을 가지고 와서 ...인삼 70여근과 표 11장, 장막 관리자의 의복 등의 물건을 빼앗아간 것, ..그 여당과 인표에 대해서 응당 즉시 엄히 잡아들이고 찾아내게 하되...6월 8일에 제하여,本月 14일에 지를 받들었는데, 죄범에 대해 수색하였는데 잡지 못하였고 아울러 은닉함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올려 진청하였으나, 다시 잡아들이게 할 필요가 없다(639-641).

3. 관원을 파견하여 봉황성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사건

(1) 1710년(강희 49년) 이만성 사건¹⁸⁾

강희 49년 11월 26일에 조선국왕이 예부에 보낸 자에 의하면, 10월 20일 평안도관찰사, 절도사 등이 잇따라 올린 치계에 의하면, 강계부사의 첩정, 청인 여러명이 소선

17)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이들을 감쌀 거름은 없을 것임, 만일 수십의 동당이 있었다면 애석해하지 않고 말하였을 것, ...사리로써 헤아려보건대 거의 꾸민말은 아닐 것, 같은 무리 및 총으로 상처 입힌 말의 숫자는 근본적으로 그 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관계가 없음, 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인 즉, 마땅히 한사코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엄한 형벌을 공문하였으나 끝내 승복하지 않았으니, 이 이후에도 아마 잡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그러나 일이 상국과 관계도니 만큼 마땅히 다시 조사하여 주문하겠음, (629), 31.4.9. 수십의 여당이 빠져나갔고 인표가 남아있다면 비록 깊이 숨고 비밀리에 은닉한다고 하더라도 필히 소방의 지역에서 떠날 수 없었을 것인데 살살이 수색하는 사이에 어찌 끝내 드러나 발각되는 단서가 없었겠습니까마는, ...(637-639).

18) 이만지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문회고 자료를 보면 이만성사건이라고 해야 한다.

을 타고서 위원군 읍저로 넘어와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본군인이 유막에서 같이 거주하는 5명을 죽였기에 몹시 화가나서 잡으러 왔다. 위원군수 회첩, 9월 9일 청인 28명이 물가에서 마상선 6척을 타고 월변에서 머물러 있어 순라장을 따로 정하여 살펴보게, 그들은 강을 넘어와서 잡아갔는데, 13일에서 동월 22일까지 청인이 혹은 15-20명이 혹은 4-5명이 연일 본군의 북문밖으로 와서 소리 질러 말하기를 본군인 이만지 등 5명이 8월 4일 밤을 틈타 넘어 와서 우리 유막에서 같이 거주하는 5명을 죽이고 인삼, 녹피 등의 물건 전부를 훔쳐갔다. 3명은 이미 도주했고 만지, 만성 2인을 잡아들여...원래 범월하여 작변한 일이 없습니다(780-782).

강희 50년 2월 14일에 예부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에 의하면, 제본을 올린 후 지를 받들었는데, 부내의 현능한 장경 1인, 성경장경 1원을 봉황성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원과 함께 살인(이 일어난 지역이) 혹 청의 계내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계내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고 상세히 의론한 후 상주하라(782-783). 3월 11일에 조선국왕이 예부에 보낸 자에 의하면, 본년 2월 20일에 전차근신의 치보를 연속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3명을 현상금을 걸어 잡아들이고, 신문을 가한 즉, 만성이 공술하기를, 강변에 살면서 청의 채삼인 중 월변에서 결막하는 사람과 더불어 금령을 어기고 몰래 교류하였는데 부채의 물건이 생기자, 청이 매번 넘어와서 심하기 독촉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고 또한 발각되어 죄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감히 살해 한 후 종적을 덮을 계책을 내었습니다. 결국 작년 8월 4일 밤, 9명이 모의하여 청인 2명을 이쪽의 은밀한 곳으로 피어 이르게 한 후 목추로 때려죽이고 강중에 버렸습니다. 저희들 9인은 곧 청인이 타고온 마상(선)을 타고 잠월하여 막소에 이르러 또 목추로 3인을 때려죽이고 인삼, 삼승, 과자 등의 물건을 약탈한 후, 돌아와 오노량지역에 내렸습니다. ...아울러 관찰사, 절도사, 위원군수, 고산리첨사, 오노량만호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사역원정 김경문을 파견하여 자문을 가지고 보낼 즈음...강희 50년 3월 5일에 삼가 김홍지가 가져온 귀부의 자복을 받았는데...이를 받고서 형조참의를 별도로 파견하여 급히 봉황성으로 보내 때에 맞추어 참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783-785).

5월 29일에 흠차대인 목극등 등이 보낸 자에 의하면, 상유에 의하면 이 안건의 피살된 사람은 비류가 아님이 없으며 모두 도망인으로써 몰래 범월한 무리이다. 너희들은...조선국왕에게 넘겨 완결하되, 그 연강일대는 다시 드나들며 투월할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또한 분명한 조사를 시행하라. 위원군 북쪽 장항현 지역에서 살해당한 2명, 강 건너 조유덕 지역에서 살해당한 3명은 시신이 모두 없습니다. ...조선국왕에게 넘기고 이를 삼가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789). 6월에 조선이 보낸 자에 의하면 봉황성을 거쳐 위원으로 오셨는데...저 연변에서 순심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로소 이 일이 황상께서 소방을 곡진히 생각하셔서 변계를 申飭함으로써 잠월하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끊게 하려는...강계 이남의 내지의 경우는 진실로 조사하시려는 대상에 들지 않으니, 만포 이북의 강변도로에 대해서 ...다만 서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는 도로가 끊겨있고 중간의 폐사군 지역은 본디 궁황하고 산이 첩첩하여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곳이니...(790-791). 8월 13일에 병부시랑 상태 등이 보낸 자에 의하면, 8월 4일 내각태학사 온 등이 접본하여 진정한 후 지를 받들었는데, 오라총관 목극등 등은 조선국인이 청인을 살해한 사건을 이미 분명히 심리하였으니 조선국왕에게 넘기고 파견한 심사사관은 돌아오리(794). 9월 17일 예부가 보낸 자문에 의하면, 조선국왕 자문에 의하면, 위원에서 출발하여 만포를 지났습니다. 수록으로 행차하여 저동의 파수처에 도착했는데...사역원정 전차하여 자문을 가지고 보낼 즈음에, 귀부가 회복한 자내의 황지를 받들었는데, 봉황성으로 가게해서...전에 차정한 참복배신이 이미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기에 지금 별도로 형조참관을 파견하여 죄인을 데리고 봉황성으로 가서 참복하게 하오니...죄인을 데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8월 17일에 제하여本月 8일에 지를 받았고, 또 지를 받았는데, 지난 번 심사장경의 보고를 받았는데, 조선국의 죄범중에 친형제 3-4명이 있습니다. 본조의 예중에 형제가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면 1인을 남겨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 있다...(794-796). 조선국왕이 올린 주에 의하면, 흥차병부랑중 상태 등이 본국의 참복관 형조참관 조태동과 함께 봉황성에서 조사를 행하여 심문한 범인 이만술의 공술에 의하면, 연변에 살면서 작년 4월 청인이 강 저쪽에서 결막하고 있다가 삼승, 전모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강을 넘어와서 강제로 소금·쌀 등의 물건과 교환했는데...이선의 등과 함께 사람이 없는 곳으로 속여서 오게 한 후, 제가 이선의와 같이 목추로 때려죽이고...2경쯤 저희들은 고산리 지역을 거쳐 청인이 타고 온 마상선을 타고 강을 건너 결막처로 갔는데, 겨우 3명만이 있기에 제가 이준건과 같이 바로 목추로 때려죽이고 인삼 45량, 삼승 8필, 금가 2건, 고 1건, 녹피 10장을 약탈했습니다. 녹피는 썩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물건은 저희들 9인이 나누었습니다. 송만홍이 만성이, “청인의 침학을 혹독히 당하고 있으니 힘을 같이하여 죽여서 후일의 폐해 없게 하자”라고 하기에 동정하여 넘어 가서 작변할 때 참여하였습니다.¹⁹⁾

오노랑 파수장은 이만성 등이 살인한 날에 저는 처의 병으로 집으로 돌아가 있어 파수하는 장소에 있지 않아...파수군은 저는 미열한 사람이라 막중에서 자고 있어...이만성 등 5명은 수종의 차이는 있지만 ...입참에 처해야, 송홍준은 ...입참에 처해야, 윤만신은 ...9월 6일 병으로 인해 의주의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각범의 처자는 노비로 삼고 가산은 적몰하겠습니다. 이만건은 이만성 등의 친형제 4인 중 1인이며 이준원은 이선의 등의 친형제 중 1인인데...특별히 남겨두어 그 부모를 봉양하게 하겠습니다. ...파수장은 장 100대를 시행하고 변방으로 정배, 파수군은 어리다고 핑계 대었지만 경수가 근면하지 못했으니 장 100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801-807).

강희 51년 2월 21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조선국왕에 대해서 마땅히 조사하여 의론해야 하나 다만 일이 탄로 나자 즉시 죄인을 잡아들여 보고 했으니 마땅히 조사하여 의론하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809-811). 조선국왕과 칙사가 결정한 대로 삼법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황제도 범인 6명에 대해서는 모

19) 다시 조사했을 때는 밭이 강변에 있어 밭의 묘를 가서 보려다가 우연히 이만성을 만났는데, 이야기 가 밭은 1냥 2전에 미쳐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원수를 맺어 엮여 들어왔으나 그들의 행한 일은 일체 알지 못합니다(804).

두 즉각 참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고 하였다. 6월 5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자에 의하면, 5월 14일에 6명을 경상에서 입참하였으며...무지한 변맹이 기한에 쫓겨 이렇게 살인하고 약탈하는 변고가 생겼으니...이에 처분하신 것이 원의대로 하였고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죄인이 약탈해와서 나누어 쓴 것은 이미 각범의 진술에서 드러났으니, 비록 추정하여 관에 들이고자 해도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811-812). 9월 13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위의 사유로 제하였는데, 나누어 써버려서 비록 추정하고자 해도 징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추징을 면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813).

이만성 사건은 목극등이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조사한다고 조선의 경내에 들어와서 위원에서 다시 압록강 상류지역으로 가다가 결국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음해에 백두산 정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계를 마친 다음 해인 1713년(강희 52년)에 호렵총관 목극등이 부사로 조선에 왔다(정사는 두등시위 아제도). 범죄 사실로만 보면 칙사를 파견해서 조선국왕과 함께 심문하고, 조선국왕에게도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관원을 봉황성으로 파견해서 심문하게 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 지역을 조사하게 하는 명분을 가짐으로써 결국 조선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절차는 이후 범월 사건을 다루는 하나의 전례가 되어 이후에는 칙사를 파견해서 조선국왕과 합동으로 심문하는 사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2) 건륭 15년 김인술 사건

옹정 연간(1723-1736년)에는 범월 사건에 대해서 관원을 파견한 사례가 없었다. 두 번째 관원을 파견한 사례는 건륭 15년에 발생했다. 1월 9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자에 의하면, 정월 5일에 함경도관찰사, 절도사 등 관원이 잇달아 올린 치계에 의하면, 온성부사의 첩정 첨부, 작년 12월 3일 본부 坪把과수군인이 청의 민인 8명이 강 건너편으로 와서 통사를 보려한다고 했다. 좌수 군관을 파견해 알아보니 유원진 사람들이 청인 6명을 때려죽였다. 연이어 이달 19일 및 23일에 온성부사 및 개시지방관 경원부사, 통사 등이 청의 차관에게 자세히 물은 후, 이번 청인 7명은 본래 성경, 오라, 영고탑 등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마다 채삼하러 후춘을 왕래한다. 지난 달 15일 영고탑으로 돌아갈 때, 유원진의 강 건너편에서 잠을 잤는데 한밤중에 조선인에게 6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중 1명이 몸을 빼내 도망가서 후춘의 파수에게 알렸다. 피살자는 5명이었고 시체에는 도끼자국이 있었다. 그 땅은 유원진 건너편에서 3-4리 떨어져 있었고 눈 위의 인적은 곧장 유원과 연결되어 있어 유원 사람이 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인 1명과 말 1필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도망온 사람은 동상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2일 후에 또한 죽어서, 조선인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애초에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죽임을 당한 각각의 사람은 공문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에 성명과 거주에 대해 근거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온성부에서 종적이 의심스러운 유원진 토병 장한이 등 5명을 체포하여 모두 압송해 와서 심문한 결과, 범월한 여섯 사람 중 3명은 지난 달 13일에 본진 평연대에서 진성 아래에 있는 갈비탈을 올라가 대동구로 넘어가 땀감을 줍다가 갑자기 청인의 인마를 만나 잡혀가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운포, 면포를 꺼내서 보여주며, 식량이 끊겨 쌀을 구하는 것이 급하다. 마땅히 이 물건들로 보상할 것이다. ...인술은 이맥 5두, 황두 2두를 성군은 황두 3두를, 두석은 이맥 3두를 챙겨 그날 밤 다시 청인이 머무는 곳으로 가니 청인이 그 곡식을 받고서 인술에게 삼승포 1필을, 성군에게 녹피 1령을, 두석에게 삼승포 5척을 준 후 또 면포, 운포를 보여주며, 너희가 쌀을 주면 다시 사겠다. 다음날 밤, 인술 등은 성군의 집에서 쌀 9두를 가지고 다시 넘어가서 주었는데, 청인들은 그 쌀을 받고서 면포 등의 물건을 주지 않고 모두 쫓아버렸다. 인술 등은 분함을 가누지 못하고, 장한이, 장귀안, 장후창 등과 다시 다음날 밤중에 인술은 도끼를 지니고 나머지는 각각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몰래 넘어갔는데 청인들이 초막 안에서 혹은 자고 있었고 혹은 앉아 있었다. 인술, 두석이 선두가 되어 먼저 돌진하고 그 나머지는 초막 밖에서 늘어서 있었는데, 싸우는 사이에 한명이 도망을 갔다. 그 중 김두석은 도망을 갔는데 회령부에서 잡았다. 그 자백한 말이 다른 죄인들과 차이가 없었다. 강희 49년 경인에 사건이 발생한 후 황상의 위엄을 빌어 변방의 관리를 신칙했습니다. 그런데...(422-424).

움막을 둘러싸고 싸우는 사이에 두 움막이 무너졌고 불길이 번져 타버렸습니다. ...말 4필은 이목을 번거롭게 하기에 감히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중 김향삼은 최초로 심문할 때 드러나지 않은 자이나 모두 낱알이 심문한 즉, 행적이 6명과 더불어 다름이 없었습니다(427-428). 3월 14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상주하기를, 유지를 받들어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심문하겠습니다. ...마땅히 지를 청하건대 형부 및 성경형부에 칙령을 내리셔서 각기 현명하고 능력있는 사관 1명을 골라 봉황성으로 가게 한 후, 조선의 관원 1명과 함께 내용을 분명히 조사함으로써, 강희 49년의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범월사료 2, 429-430). 예부에서는 강희 49년의 이만성 사건과雍正 12년에 김세정 사건 중에서 무엇을 전례로 할 것인가를, 다시 말하면 지를 청해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조사한 후 우리 부로 보고하게 할 지, 아니면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다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신부에서 삼법사와 같이 낱알이 검토하고 죄를 정하여 완결할지는 모두 유지를 기다려 따르겠습니다. 지를 받들었는데, 강희 49년의 전례에 따라...(431-432).

6월 10일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6월 6일에 형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본부의 낭중관 보가 위의 사유에 대하여 제본을 올렸는데, 봉황성으로 가서...5월 10일에 봉황성에 도착하여 성경형부 원외랑 납룡아, 조선의 참복사 형조참의 남태기와 함께 심문하였다. 모두 온성부 유원진의 토병, 건륭 14년 11월 13일 3명이 몰래 도문강의 대동구로 넘어가서 땀감을 베다가 영고탑의 채삼인 7명을 우연히 만났다. 식량이 떨어져 쌀이 몹시 필요하다고 하며...15일밤 도끼, 총, 몽둥이를 가지고 강을 건너가 채삼인들의 움막에 도착했는데, 7명이 불을 피우고 둘러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먼저 총

을 쏘자 채삼인들이 놀라서 나왔고 싸움이 붙었다. 도끼를 써서 2명을 죽였고, 몽둥이로 1명을 쓰러뜨리자 도끼로 죽였습니다. 총을 가진 자와 몽둥이를 가진 자가 각기 1명씩 죽였고 3명은 1명을 갈대밭까지 쫓아가 각기 몽둥이로 때려죽였습니다. 오직 1명만이 도망갔습니다...그 도망간 사람이 말을 타고 영고탑 소속 혼춘의 미첨카툰에 알렸습니다. ..당시 카툰좌령이 증공량을 수레에 싣고 안내을 받아 피살된 정형을 밝힌 후, 조선에 알려 조사하여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피살된 6명에 대해 평소에 서로 알지 못했다고 하고, 다만 영고탑의 채삼인은 알고 있었는데 마이 통하지 않아 그 성명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툰의 순찰을 제대로 못한 각 관원에 대해서는...이미 병부에서 징계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칙령을 내려 증공량 등의 채삼에 관표가 있었는지...(458-461).

이 자에는 점단을 첨부하였다. 김인술은 유원진의 토병으로 유원성에 살며 27세, 형이 없으며 비록 부친에게는 형제가 3명이 있지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내막을 알고서 장물은 나눈 일은 없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청인이 두 개의 자루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자루 안에 있는 것은 인삼인데, 네가 쌀을 가지고 오면 바꾸겠다고 한 일은 있었습니다. 김두석은 ...28세, 부친이 계시지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장성균, ...36세, 부친, 형제는 없고 다만 모친이 있지만 결코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장후창은 ...46세, 집에는 모친이 있는데 결코 내막을 모릅니다. 장한이는 ...38세, 부친과 형제가 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막을 모릅니다. 장귀안은 ...33세, 모친과 아이가 있지만 결코 내막을 모릅니다. 김형삼은 ...26세, 집에는 모친이 있는데 결코 내막을 모릅니다. 지방관 온성부사가 진술했다(449-458).

11월 7일에 조선국왕이 상주하기를, 7명은 죄질에는 비록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마땅히 참해야 합니다. 처자는 노비로 삼고 가산은 몰수해야 합니다. 관찰사, 절도사 등은...혁직해야 합니다. 온성부사는...혁직에 더하여 2,00리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유우너첨사는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판결할 것이 없습니다(469-471). 건륭 16년 3월 21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본부에서 이부와 병부 및 삼법사 등의 아문과 함께 위의 사유로 제본을 올렸는데, 강희 49년 이만성 등이 강을 건너와 내지 민인을 살해한 전례에 비추어...강희 49년에...조선국왕이 즉시 범인들을 잡은 후 보고했기 때문에 조선국왕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했습니다. ,,마땅히 같은 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73-477). 모두 참형에 처하고...

(3) 건륭 21년 조자영 사건

건륭 21년 12월 초4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자에 의하면, 1월 24일에 함경도 절도사가 보낸 계에 의하면, 중성부의 간민 조자영 외 8명이 강변에 출몰하여 행동거지가 매우 수상하였다. 조자영 등 6명은 잡았으나 한상린, 이귀삼은 이미 도피하여 함께 잡지 못했다(범월 사료 2, 550-551). 건륭 22년 2월 17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

면, 건륭 21년 9월에 예부에서 토의하여 답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선창장군이 포획한 고려인 한상림, 이괘삼에 대해서 심문한 결과 먹을 것을 구하는 가난한 백성일 뿐 다른 이유는 없으니 시헌서를 가져가는 재자관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552-554).

2월 17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자에 의하면, 조자영이 공술하기를 종성부 주민으로서 연이어 흉년에 들어 기근에 시달려 소나무 꺾질을 벗기기 위해서 작년 6월 보름 5명과 한 무리가 되어 두만강 상탄에서 넘어가 30리 정도를 갔는데, 청인(대국인) 10여 명이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는 익힌 고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미 2두로 그 사슴고기와 바꾸고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달 18일에 우리 6명은 또 두만강 상탄에서 넘어가, 길에서 청인을 만나 포박되어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다시 예전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갔는데, 청인은 대부분 사냥을 나가고 단지 2명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끼로 나이든 자를 살해하고, 2명은 낫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때려서 어린 자를 살해하였습니다. 강비암은 공술하기를, 작년 4월 4일에 한경필과 함께 두만강 도적탄에서 건너가 사슴 한 마리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7월 2일, 조자영, 한경필 등과 건너가서 사슴 한 마리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6우러 18일에 조자영 등 6명이 살해를 범했을 때에는 정말로 간일이 없습니다(556). 한상림은 공술하기를, 저희들이 문자를 몰라 청인이 듣고서 옮겨 적을 때 이렇게 와전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종성부에서 같이 살고 있다가, 흉년으로 굶주리게 되어, 물고기를 잡고 소나무 꺾질을 벗기고자 경계를 넘었다가 붙잡혀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경계를 넘은 날짜가 조장영 등이 살해를 범한 날짜보다 뒤이므로, 조자영 등과 같은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557). 귀부의 자에 의거하여 건륭 6년의 예(김시중 사건)에 따라 헤아려 처벌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557).

5월 18일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시간이 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발각되어 잡혔습니다...아울러 조선 국왕에 대해서도 그 죄를 논의해야 합니다...건륭 15년 2월에 조선의 토병 김인술 등이 내지에 몰래 들어와 살인한 사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에 의하면, 강희 49년의 예에 따라 청컨대 예부 관원 1명을 파견하여 가서 함께 심리하게 하거나, 옹정 12년의 예에 따라 조선국왕이 분명히 심의하고 공술을 기록하여 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상주하여 지를 받았는데, 강희 49년의 예에 따라, 관원을 파견하여 가서 함께 심의한 후 상주하도록 하라. 이 지에 따라, 형부낭중 관보를 파견하여 성경사관 1명, 조선국 관 1명과 함께 봉황성에서 심리한 후, ...(560).

6월 초 10일에 조선 국왕이 보낸 자에 의하면, 자문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회심하라는 것에 따라 형조 당상관 1명을 파견하여 급히 봉황성에 가서...참복하도록...그러나 이들 범인들은 함경도 회령부에 구금되어 있어...(567-568). 7월 27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본부의 사달이 위의 사유로 상주하였는데, 6월 12일에 봉황성에 도착하여 7월 4일에 이르러 조선에서 해당 범인 조자영 등을 봉황성으로 압송해 온 것을 접수하였습니다. 성경형부 원외랑, 조선의 안복사 형조참의와 함께...단지 내지 타생인인 것만을 알고 그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인인지 민인인지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건륭 12년 김인술 등이 월강하여 내지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예부에서 상주문을 올렸던 예에 따라...571-573). 9월 14일에 예부가 보낸 자문에 의하면, 봉황성 성수위가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본성 소속의 해당 계책 안쪽에 조사해 보았는데 결코 두만강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저의 관할구역에서는 역시 조자영 등에 의해 살해당한 사고가 없었으므로...아울러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두만강이 ...토문강인지 아닌지, 혹은 어음이 달라 이름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582-583).

10월 초1일에 예부가 보낸 자문에 의하면, 길림장군의 직무를 서리하고 있는 과대의 자문을 받았는데, 검토해 보니 작년 7월 17일에 길림 좌령 나이호선 등이 답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를 유도구에 보내어 순시하도록 하셔서, 영최와 피갑 17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유도구에 순시하러 갔다가 길을 나누어 순사하고자 영최 강격과 피갑 삼목달 등을 보내 해란하 유도구 등지로부터 순시하도록 하였는데, 18일에 강격(정남기 각노좌령 소속의 영최, 586) 등이 보고하기를, 17일에 저의 가인 보주아가 머물던 곳에서 살해되었고, 삼목달의 가인 왕칠은 이미 없어졌다. 19일에 그들이 머물던 곳에 도달하여 보주아(23세)가 막사 입구에서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머리 뒤쪽에 깊이 도끼가 있었고 등에 타박상을 입은 곳이 한 곳에 있었다. 20일에 머물던 곳에서 1리쯤 되는 갈대 저수지에서 왕칠(35세)의 시신이 머리를 위로 향한 채,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죽어있는 것을 찾았다. 왼쪽 겨드랑이로 조총이 뚫고 들어가 오른쪽 겨드랑이로 나아 죽은 것이 분명하였다(범월사료 2, 584-585). 유도구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광야와 산하로서 수목이 밀집해 있어서 찾아낼 수 없었고 어느 곳으로 도망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586). 6월 17일 보주아 등이 살해된 후에 저희들은 위장을 조사하였고, 22일에 해란지역에 도달하여 우연히 월변한 조선인 한상림, 이계신을 만나 체포하여 아문에 보냈습니다(588). 영고탑 부도통아문에 조사하도록 문서를 다시 보낸 적이 있는데, 보도통이 보고하기를, 훈춘협령 칠격이 보고를 올렸는데, 훈춘에서 조선까지는 토문강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 훈춘에서 알합리하구까지는 원래 훈춘이 관할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하여 매년 관병을 알합리하구에 파견하여 순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토문강을 순사한 것은 파견된 정황기 남이포 좌령 소속의 영최로서 잠시 관원 악기납에게 위임하여 순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 살펴보니 훈춘협령 칠격은 작년 3월 7일 오소리, 득극 등이 등지를 순사하러 나갔고, 그때 좌령인 소친보가 협령의 일을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해 날짜가 전후로 하루 차이가 났고, 도끼로 나이든 자의 미간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고, 왕칠은 낮이나 몽둥이로 친 것과는 완전히 상이하고, 한명은 노인이고 한명은 소인이라고 한 것도 달랐지만 다만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다시 실상을 엄격하게 심문하여 상주하게 하였다(588-589).

12월 초6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회자에 의하면, 김봉이가 공술하기를, 조총에 대한 금령은 매우 엄격하여 자주 간범을 적발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원래 총을 두는 집이 없습니다. 그때 무리 내에도 애초에 총을 가지고 월경한 일이 없습니다....(595).

10월 1일에 귀부에서 발송한 자문에는 소방으로 하여금 죄명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
다(597).²⁰⁾ 그러나 조사한 내용을 조목조목 상주하면서 마음대로 죄명을 정한다는 것
이, 감히 그러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우선 죄수들의 공술서를 가져가게 하겠습니까
(597-598).

건륭 23년 2월 25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본부에서 위의 사유로 상주문을
올렸는데, 원 상주문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회심한 관원이 상주를 올렸는데,
조선에서 방문하여 해당 범인 6명을 전후로 체포하고 그 장물을 추징하여 올려 보냈
습니다. “장물 가운데 사슴고기는 모두가 나누어 먹었고, 녹용과 가죽은 팔아서 다 써
버렸습니다(604).” 11월 3일에 조선국왕이 올린 상주에 의하면, 김인술 등의 예를 고
찰하고, 법률을 상세히 살펴, 수범 조자영과 종범 한성창, 김봉이는 모두 즉시 참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고 가산은 몰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경필 등 3명은 비록 직
접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으나 무리와 결탁하여 범월하고 장물을 나누어 갖는데 동참
하였으므로 ..같이 똑같은 처벌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다른 안건으로 되
어 있는 강비암의 경우도, 전후로 범월하였으므로, 역시 같은 처벌로 결정하고자 합니
다. 관찰사, 절도사는 파직하고, 중성부사는 파직하고 3,000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합
니다(608-609).

건륭 24년 2월 28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건륭 16년에 조선의 흉범 김인술
등이조선국왕에 대해서는 논의를 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항이 동일하므
로.....녹용과 가죽으로 은을 사서 사용하였습니다. 각 범인이 은닉한 은 총 29량을
추징하여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7명이 모두 참형에 처해졌다. 이 사
건은 관원을 파견하여 봉황성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다시 범인들을 돌려
보내 주어 스스로 조사하고 상주하게 해 주었으며, 전임 사자의 비밀조사 (건의를) 물
리치고 온화한 상유를 내려주었다. 이에 조선 국왕이 감사를 표하는 표와 방물표를
상주문과 함께 올렸다(605-606).

4. 조선 국왕이 처리하게 한 사건

(1) 강희 44년 김예진 사건

강희 43년 2월 27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자에 의하면, 2월 18일에 함경도...경원부
사 정문, 1월 10일에 본부 좌수와 병방군관 등이 알려오기를, 아산보인 김유일, 김예
진, 김예혁, 박인옥, 박칠련 등에게 범월로 의심되는 종적이 있어 즉시 체포하였습니
다. 경흥통사가 말하길, 청인이 아산의 경계에 와서 이 지역의 사람이 청의 지역으로
몰래 들어가 3명을 살해한 후, 보관해 둔 물화 중 다수를 훔쳐갔으니 서둘러 보상해

20) 해당 범인들을 예에 따라 조선국왕에게 넘겨 죄명을 결정하여 제본을 갖추어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낭중 사달은 경사로 돌아와 주점을 작성하고 따로 공술서를 초록하여 “살해된 자가 기인인지 민인인
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부에서 각 해당 장군에게 명하여 조사한 후 보고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예부
에서 조사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599).”

달라고 했다. 김유일 등이 공술하기를, “몇년동안 기근에 쫓겼기에, 5명 등과 같이 작년 11월 3일밤 청 지역의 4인이 유막하는 곳으로 들어간 후 3인을 피어 강변으로 피어 내고 몰래 2명으로 하여금 막소를 지키는 1인을 살해한 후 물건을 훔치게 했습니다. 동월 9일 이른 새벽, 또 월강하여 3인이 주막하는 곳으로 가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모두 죽인 후 양록의령, 청백삼승, 황남 조단, 미포, 약환, 인삼, 피물을 모두 취하였습니다(729-731).” 강희 43년 4월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마땅히 30년에 대신을 파견하여 조선으로 가서 심리했었던 예에 따라, 또한 대신을 파견하여...아울러 조선국왕이...제분을 올리게 해야 합니다. 본월 10일 지를 받들었는데, 조선국왕은 공경히 삼가는 (마음이) 예전부터 드러났다. 그 국인이 월경하여 악행을 저질렀는데, 즉시 잡아들여 감금한 후 처분을 주청하였으니 대신을 파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731-733).

8월 27일에 조선국왕이 상주하기를, 5월 18일에 김유일이 공술하기를, 경원의 백성으로, ...작년 9일 밤 몰래 동부의 백성 2명과 종성의 백성 1명, 저의 아들 예진과 강을 건너 화물을 약탈해 올 것을 약속하였다. 저는 가지 않았으나 4명이 경원의 신아산보 관할의 수호에서 청 지역의 4인이 유막하는 곳으로 넘어간 후, 막소 뒤의 숲속에서 숨어 있다가 예진으로 하여금 매때로 피어...3명은 목추로 막소를 지키던...막중에 있던...물건을 약탈하여 10일 밤 잤던 길을 따라 돌아왔습니다. 동월 13일, 저는 4명과 함께 경흥인 유시만 집으로 같이 가서, 시만과 작당한 후 그날 밤 경흥 아아이 해암을 거쳐서 월강하여 결막처에 몰래 도착한 즉, 청인 3명이 동숙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거룩은 막소 뒤에서 숨어 있었고, 3명이 목추로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 3명을 죽이고, ...인삼 3근 여를 약탈하여 다시 잤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박칠련이 공술하기를, 경원에서 생장했고, 연달아 기근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어, 작년 12월 7일 제 누이의 사위인 김예진이 저와 함께 저의 매부인 박인옥의 집에서 만났는데...박인옥이 공술하기를, 경원 백성으로 기아에 쫓겨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꾸몄습니다....김예진이 공술하기를, 경우너 민인으로 기아에 쫓겨 이렇게 범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초목이 무성해지면 청인은 철거했다가 겨울에 얼음이 얼면 돌아와 경원과 경흥에서 서로 보이는 곳에 결막합니다. ...청인들이 피물, 삼승, 장록 등의 고기를 가지고 밤을 틈타 몰래 와서 연강의 촌간에서 때로는 염장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곡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막했던 청인 4인 중 2명은 날짜는 다르지만, 작년 12월 초승 밤에 두 차례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염장을 구했습니다. 제가 중용히 물으니 영고탑의 민인인데, 몽고지역으로 참전했다가 도망 와 강변에 결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곡 사이에 묻었다가 저희 집으로 옮기던 날에 저희들은 붙잡혔습니다. 김예혁이 공술하기를, 경원의 신아산보에서 생장했고 본래 病龔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저녁, 3명이 저의 아버지 김유일의 집으로 와서 저의 형인 예진과 더불어 담화한 후 초혼 즈음에 3인이 흩어져 돌아가 갔습니다. 예진 또한 그들을 뒤따라 나간 후, 9일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자 저의 아버지가 저로 하여금 나가서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사이에 저의 형 및 3인이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쫓

아가서 보니 청인이었습니다. ...거짓으로 형에게 “아산보에서 지금 인구를 점열하고 있다”라고 한 즉 청인이 놀라며 겁을 먹고 되돌아갔습니다. ...3명이 한밤중에 잇따라 제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전미를 가지고 밥을 나누어 먹은 후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노부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하니, “병농한 사람은 마땅히 집에 남아서 집을 지켜라.” 김거룩이 공술하기를, 저의 태생은 경원이고 종성으로 이거했습니다. 종성의 상고 이우백이 저희 집(涪溪村, 744)에 와서 개시 때 쓸 소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박인옥을 알려주었습니다. 미리 2마리의 소 값을 받은 후에 그 중 한 마리를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우백이 본가를 돌려받으려고 하니, 박인옥이 말하길, 김예진과 그 돈을 나누어 썼습니다. 김예진은 마련할 길이 없어 감히 범월할 계책을 내었는데, 제가 동행하려고 하지 않자 박인옥의 처형인 칠련이 칼로 협박하여 부득이하게 그 말을 따랐습니다. ..김예진은 그 약탈한 인삼 3근으로 저로 하여금 소 값을 갚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돌아오니, 이우백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유일이 공술하기를, 저와 예진이 잡힐 때, 예혁은 병농하고 미열하여 놀라 겁을 먹고 도망가 숨은 것인데, 관에서 체포한 후 종적을 의심하여, 여러 차례 엄장을 가하니 끝내 거짓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장하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거짓으로 같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홍, 소서, 우백에 대해서는 혹은 원한이 있어서,²¹⁾ 혹은 안면을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형장을 견딜 수 없어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²²⁾ ...넘어간 날짜에 대해 처음에 11월 3일과 9일이라고 아뢰던 것은 경민이 범월하여 그 죄가 수령에게 미치게 되면 영송할 때에 마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고로 날짜를 바꾸었으니, 대개 죄를 전관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예진, 인옥, 칠련, 시만은 두 차례나 금령을 어기고...3명은 마땅히 입참에 처해야 하고... 시만은 마땅히 입참에 처해야 하나 자보한 후에 병을 얻어 죽었기 때문에...우백, 소성, 기홍, 예혁 등은 또한 마땅히 입참에 처해야 합니다(757-758). 경원부사, 경흥부사, 종성부사, 함경도 절도사, 아산만호, 아오지만호 등은...(758-759). 삼가 황상께서 특별히 사신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한다는 명을 정지시키시고 스스로 조사하여 상주하게 하셨습니다(760).²³⁾ 11월 6일에 예부 등이 보낸 자문에 의하면, 지를 받들

21) 김기홍은 경원에서 성장하여 아산보 포도장의 임무에 차정된 지가 4년이되었음, 작년 12월 22일 만호의 전령으로 인하여 본보의 병방군관과 도훈도 등과 같이 군인을 이끌고 김유일, 예진 등을 잡아들이 가두었는데...동월 23일, 경원 아오지 소성의 집에서 예혁을 잡았으나...올해 정월 13일에 다시 예혁을 종성에서 체포했고...(743-744).

22) 이우백은 개시 때 얼굴을 알고 있어서, 예혁은 김유일의 아들이라서, 소성은 시만의 노비라서...(751). 이우백은 종성에서 성장, 김거룩이 거짓으로 저를 끌어 들여 회령 및 병영에서 혹독한 형장으로 엄히 궁문했으나 차마 거짓으로 자백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소성은 경흥에서 성장, 작년 12월 23일에 예혁이 그의 처를 데리고 저의 집으로 왔기에...올해 정월 8일 예혁이 물건을 가지고 또 저희 집에 왔는데, 저의 주인인 유시만이, “이 물건들은 놓아 둘 수 없으니 소에 실어서 속히 옮겨가게 하라”라고 하여...그 후에 경흥부에서 저를 잡아 가두고 물건을 찾아낸 후, 형신으로 궁문하고, 회령으로 옮겨 가두었는데 형장을 견디지 못하고...(743).

23) 11월 6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조선국왕이 위의 사유로 주하였는데, 지난 번에 지를 받들었는데, 조선국오아은 공경히 삼가는 마음이 일찍부터 드러났었다. ...대관을 파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를 받도 표전을 올려 사은하는 연유로 주합니다(766-767). .

었는데 김예진, 박철련, 박인옥, 김유일, 김거륵은 모두 즉시 참형에 처하라. 이우백, 소성, 김예혁, 김기홍은 관대하게 그 죄를 면해 주어라. 경흥부사, 경흥부사, 아오지만 호는 모두 혁직만 하고 유형은 면해 주어라(763-766).

(2) 옹정 12년 김세정 사건

옹정 11년 11월 21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자에 의하면, 9월 22일에 평안도관찰사가 긴급히 올린 치계에 의하면, 신이 강계지방에 갔을 때 고산리진 김세정 등이 세동의 청인 거주 지역에 가서 인명을 살상하고 인삼을 약탈했다는 것을 듣고....장교를 파견하여 세정 등을 포획하고, 의천군으로 이송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파견한 근신이 긴급히 올린 장계에 의하면, 김세정과 김만금 등이 공술하기를, 지난 9월 4일 2경쯤에 현재 도망 중인 김영창 등 12명과 함께 세동으로 넘어갔는데, 한 막사 안에 청인 4명이 있었고, 3명은 놀라 달아났으나 1명은 병이 들어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영창은 때려죽여 제방 아래 묻었고, 인삼 9량 어치를 약탈하였습니다. 세정이 끌어들이 7명은 8월 16일에 김세정과 중로에 만나 주합평에서 청 지방인 다라내동으로 넘어갔고, 그곳에 머물면서 몰래 인삼을 캐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22일 밤중에 김세정 등과 함께 청인의 막사로 난입하여 몽둥이를 들고 난타했더니 청인 5명 중에 3명은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2명은 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범월사료 2, 82-84). 옹정 12년 2월 21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본부에서 위의 사유로 상주하였는데, 그 살해된 사람들이 기인인지 아니면 민인인지, 마땅히 성경장군과 영도탑장군에게 명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상주하에 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선국왕에게도 명하여, 도망 중인 김영창 등을 체포해서 김세정 등과 함께 정확히 조사하여, 상주해서 황지를 청하게 해야 합니다(84-86).

7월 21일에 조선국왕이 상주하기를, 5월 6일에 김세정이 공술하기를, 강계부 고산리의 진군, 연달아 기근을 당하여 생계가 궁핍해졌기 때문에, 작년 8월 14일 밤에 같은 무리인 김영창 등 18명과 함께 몰래 주합평에서 뗏목을 타고 청 지방인 나다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진 사람인 서보성 등 10명을 만나서 몰래 인삼을 캐다가, 청인들이 머무는 막사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일 초저녁에 저와 19명이 각자 공봉을 들고 쳐들어가 난타하였습니다. 청인 3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모두 달아났습니다. 켄 인삼과 약탈해 온 것을 합하면 양이 10량 어치 정도 될 것입니다. 한시홍은 불을 내어 막사를 태웠습니다. 같은 달 26일 밤에 도 위의 10명 등과 함께 몰래 청 지방인 세동으로 넘어갔다가 청인의 천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무 몽둥이로 청인 1명을 살해하였고, 영창과 부성 등은 조창과 철창을 사용하여 또 5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 청인들은 암흑 속으로 급히 달아나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약탈해온 인삼은 약 1근 정도이며, 각자 나누어 가졌습니다.

서부성이 공술하기를, ...21일에 김영창을 만났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이곳에는 켄 인삼이 없고, 인근에 청인들이 머무는 막사가 있으니...청인 3명을 때려 죽였고...26일

에는 또 저희 무리와 세정, 영창의 무리가 함께 세동으로 갔는데, 청인들이 머무는 막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곧봉과 창으로 3명을 죽였고, 영창 등은 달려가 조총을 쏘며 또 3명을 죽였습니다. 고산리 진군이 19명, 고산리 백성, 위원군 노오량의 진군, 위원부·태천현·의주부·영유현의 백성으로서 고산리 진군(토병)의 역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은산현의 백성으로서 강계부 지방으로 이주해 왔는데, 황해도 평산부 사람으로 거둬지는 기근을 당하여 고산리진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는데..(91). 김세정이 공술하기를, 김만중은 동와와 소미를 보았다고 하였지만, 저는 정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도 실제로 발을 헛디더 떨어진 것이지, 결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100). 한시흥이 공술하기를, 그때 막사를 불태운 것은 흔적을 없애기 위함이었고, 첫 공술에서 시인하지 않았던 것은 죄가 더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103). 5월 19일에 관찰사와 절도사가 도망중인 범인 김영창을 포박하여 압송한다는 장계를 받았다. 김영창이 공술하기를, 저는 산줄기 밑의 깊은 골짜기에서 청인들이 머무는 막사를 발견하였고...처음에는 위원군의 깊은 골짜기로 수명들었다가, 폐사군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양식을 구하려 돌아오는 길에, 체포에 나선 관원과 병정을 만나 포박을 당했습니다(104-105).

고산리진 첩사, 강계부사, 절도사, 관찰사...의정부의 장계에 의하면, 김세정, 김영창, 서보성 등은...확실히 수괴에 해당됩니다. 17명은 비록 주모자와는 다르지만 역시 극형에 처해야 하는 죄입니다. 9명은 살인과 약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2명은 비록 사건이 터진 다음에 체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의로 내버려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직무를 유기한 죄는 피하기 어려울 것...

11월 20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신 등이 강희 44년에 조선인 김예진 등이...마땅히 강희 44년의 예에 따라서...(116-117). 옹정 13년 7월 11일에 조선국왕이 상주하기를, 3명은 참형에 처하고...16명은 극형에 해당되는 죄, 그런데 김귀동과 철동, 박의증과 운증은 본래 친형제인데, 일찍이 강희 50년에 소방의 범인 이만지 형제 등을 조사할 때...이는 대조께서 베푸신 한때의 특별한 은전에서 비롯된 것, 소방의 규정에서도, 이미 변경의 금령을 어겼으므로, 형제라고 해서 감히 예를 원용하여 용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9명은 역시 곧바로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고산리첩사와 강계부사는 혁직하고 2,000리 유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절도사와 관찰사는 응당 혁직해야 하나 공술한 후에 이미 병을 얻어 사망하였기 때문에...(120-122). 12월 17일에 예부가 보낸 자에 의하면, 3명은 '백주대낮에 약탈하고 살인하면 절도, 거포, 살인의 주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비추어 참형에 처한다'는 예에 따라서 참형으로 판결하고 즉시 집행하여 늦춰주어서는 안됩니다. 김귀동 등은 '백주대낮에 약탈하고 살인하면 절도, 거포, 살인의 중범에 대해서는 사형은 면하여 형벌의 등급을 감해주는 강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에 정확히 합치하므로, 무두 사형은 면해주어 형벌의 등급을 낮춰 변경으로 보내 노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운필 등은 '다른 사람이 타인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률에 따라서, 각자 장 100대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고산리첩사와 강계부사에 대해

서는...다만 죄를 지은 것은 용정 13년 9월 3일 사면령 이전으로, 예를 적용하여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 보내야 할...형장을 가해야 할...유배형에 처해야 할..모두 죄를 면해주어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김세정에 대해서는 ..그 처자들을 노비로 삼아 가산을 몰수하는 것은 이 사건이 사면령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마땅히 예를 적용하여 완화해주거나 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삼 1근 10량은 전부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125-128).²⁴⁾

5. 결론

이 글에서는 범월 사건에 대한 분석 가운데서, 범월인, 범월이 발생한 변경 지역과 사회, 그리고 범월 사건을 처리를 둘러싼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중 국경에서의 범월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육지 변경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조선과 청 사이에서는 범월은 그 자체가 참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물론 모든 범월이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었다. 표류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청이 조선 정부에서는 난민의 경우에도 범월인은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대한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범월사건은 현재의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수용국가에서 처리하며, 본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경우에는 범인인도조약에 의해서 범인인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청의 경우에는 특히 조선이 청이 자국의 백성의 출입조차 폐쇄하고 있는 지역에 조선인이 출입하고, 자원-특히 인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은 지나친 일은 아니었다. 다만 범월인에게만 처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관과 국경 경계 담당자에게까지 처벌을 미치게 하고, 심지어는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조선 국왕에게까지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범월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범월의 유형에 따라서 달랐을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도, 다시 말하면 조선과 청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랐다. 이것은 범월 사건 자체가 하나의 외교 사건으로 취급된 데서, 다시 말하면 조선과 청 관계가 조선 국왕과 청 예부 사이의 자문에 의한 관계, 곧 속국관계라는 틀에서 규정된 것이었다. 이 범월 사건은 조선과 청의 관계, 곧 청이 주장하는 속국관계의 실상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채삼, 벌목, 채렵 등과 같은 일종의 경제 활동으로서의 범월, 절도, 강도, 살인으로서의 범월(이 또한 경제 활동과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범월, 나아가서 이민으로서의 범월 등의 유형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유형이 중복되기도 했다. 이 유형도 시기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범월 사건의 당사자는 조선인일수도 청인일수도 있었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범월 사건은 점점 조선인과 청인의 상호의존이 강화되는 형태로 나

24) 이 사건은 건륭 15년에 발생한 유원진 사건에서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진술을 기록하여 본부에 보고하게 한 전례’로 인용되었다.

타났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그러한 상황이었다가, 정묘호란에서 조선과 청이 각각 경계를 지킨다고 하는(각수봉강) 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범월 사건을 엄격하게 취급하였다가, 조선과 청의 관계가 평화의 시기로 접어들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안정적으로 변경이 관리됨에 따라서, 국가의 변경 관리는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범월이 증가하고, 결국 공동 거주형으로서의 범월, 다시 말하면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지역은 난민 공동체와 이민 공동체의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범월인(잠재적 범월인으로서의 변경민)이 난민, 개척민, 범외자(마적과 같은)의 다양한 형태로 띠고 있었음, 곧 경계 위에 서 있었음을 말한다.

참고문헌

- 엘리엇, 마크 C.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10(2009).
 강석화,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의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 79, 1995.
 강석화, 경기남부해로의 대부·영흥도, 기전문화연구 28, 2000.
 강석화, 영·정조대의 함경도 지역개발과 위상변화, 규장각 18, 1995.
 강석화, 조선후기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 2005.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4, 2004.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2005.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구범진, 19세기 성경 동변의 산장의 관리와 조·청 공동회초, 동북아역사재단 편,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2009.
 구범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조선-청 관계, 이익주 외,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2010.
 구범진, 청대 ‘만주’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동북아논총 16, 2006.
 구범진, 청의 조선 사행 인선과 ‘대청제국체제’, 인문논총 8, 2008.
 구범진·배우성 역, 國譯 ‘同文彙考’ 疆界史料, 동북아역사재단, 2008.
 구범진·배우성 역, 國譯 ‘同文彙考’ 犯越史料 1, 동북아역사재단, 2008.
 구범진·이원진·이지영 역, 國譯 ‘同文彙考’ 犯越史料 3, 동북아역사재단, 2011.
 구범진·이지영 역, 國譯 ‘同文彙考’ 犯越史料 2, 동북아역사재단, 2010.
 김경춘, 두만강 하류의 Korean Irredenta에 대한 일고, 백산학보 30·31,
 김경춘, 조청국경문제의 일시점, 경주사학 6, 1987,
 김선민, 변경의 인삼을 둘러싼 조선과 후금의 갈등, 김선민 외, 범월과 이산: 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하대학교출판부, 2010.
 김선민, 옹정-건륭연간 망우초 사건과 청-조선 국경지대, 중국사연구 71, 2011.
 김춘선, 조선후기 한인의 만주로의 범월과 정착과정, 백산학보 51, 1998,
 김태국·김춘선, 조선후기 한인의 북방이주와 만주개척, 한국사론 34, 2002.
 김혜자,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연구 이대사원 18·19, 1982.

- 바필드, 토마스, *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 2009.
- 배우성, *서울에 온 청의 칙사 馬夫大와 삼전도비*, *서울학연구* 38, 2010.
- 변주승, 19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 *사총* 40·41,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 생존방식의 일면, *주명준교수화갑기념논총*,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의 북방 변경 유입과 그 실태, *국학연구* 13, 2008.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의 생활상, *중암유병기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전주사학* 8,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정책, *민족문화* 34,
- 손춘일, 청대 강북의 개척과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청계사학* 13, 1997.
- 송미령, 17-18세기 조선정부의 몽골 이해, *중국사연구* 62, 2009.
- 이동진, 1872년 '강북'의 조선인 사회: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북방 사논총 8, 2005.
- 이흥렬, 삼도구사건과 그 선후책, *백산학보* 5, 1968.
- 이화자, 17·18세기 월경문제를 둘러싼 조청교섭,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 2003.
- 정혜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 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 2006.
- 청조의 대조선정책: 건륭연간을 중심으로 *동양사연구* 92, 2005.
- 청조의 대조선정책-옹정연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 최소자, 청조의 대조선정책-강희연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5, 1996.
- 孫靜, 『滿洲』民族共同體形成歷程, 遼寧民族出版社, 2008.
- 張杰·張丹卉, 清代東北邊疆的滿族(1644-1840), 遼寧民族出版社, 2005.
- 鄭宜庄, 清代八旗駐防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2.
- Chang, Michael G., *A court on horseback : imperial touring & the construction of Qing rule, 1680-1785*,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국경지대에서 국경선으로 - 19세기 말 청과 조선의 관계

김선민 (고려대학교)

I. 머리말
II. 청말 동북변경의 변화
III. 조선인의 범월과 개간
IV. 청과 조선의 국경 교섭
V. 맺음말

I. 머리말

同治6年(1867) 2월 30일 盛京戶部侍郎 額勒和布는 황제에게 올린 상주에서 유조변 동단 바깥의 봉금지역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민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불법적으로 변외로 넘어가 개간을 하던 민인 何名慶 등은 성경아문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자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천의 旺淸門 바깥의 六道河 등지에 수십만 가구가 모여살고 개간한 땅은 수백만 畝이 되니, 청컨대 吉林 五常堡에서 開荒한 예에 따라 升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何名慶의 요청에 대한 額勒和布의 반응은 신중했다. “邊外에서 땅을 파헤친 일은 이미 형률에서 軍罪에 해당합니다. 何名慶 등이 공공연하게 자수한 것은 무리가 많은 것을 믿고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額勒和布는 또한 이 지역이 조선과의 경계지역임을 잘 알고 있었다. “邊外는 동쪽으로 조선과 경계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더욱 과거의 사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¹⁾

額勒和布의 상주는 예부와 군기처에서 다시 검토되었다. 王大臣會議의 관리들은 먼저 “國祖가 發祥한 성경 부근 일대는 수천 리의 비옥한 토지와 황무지 산을 남겨두고 연변에 책문을 세워서” 지켜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동치2년(1863) 성경장군 玉明의 보고를 통해 성경의 유조변 일대, 특히 “남쪽으로 애양문과 북쪽으로 영액문에 이르기까지” 변외에서 집을 짓고 토지를 경작하고 벌목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은 북경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왕대신들 역시 과거의 규칙에 따라 불법 개간민을 몰아내려 할 경우 “수십만의 무리가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그 衣食을 빼앗기게 되어 반드시 저항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결국 북경의 관리들은 성경장군 都興阿를 파견하여 이들이 그대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

1) 배우성·구범진 역,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699쪽 (『同文彙考』 原編 續, 疆界 2, 5b-9a).

여 조정의 은혜를 보이고, 동시에 황실과 관련된 風水之地는 계속 봉금하여 개간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또한 조선에 자문을 보내 경계를 넘어 사사로이 개간하는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고 “매년 會哨를 하면서 조선이 어찌하여 불법개간이 없다고 보고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²⁾

유조변 동단 변외의 조선과의 경계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同治2년(1863)에도 보고된 적이 있었다. 당시 錦州 副都統 恩습은 동변 밖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성경 동변 일대는 원래 황무지로, 동남으로는 조선과의 경계인 靉江과의 거리가 백여 리에서 수십 리로 일정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평평한 하천과 들이 있어 경작하기에 적합한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봉황성 변문 일대만이 조선인이 출입하는 곳이며 애강 북쪽은 조선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舊例에 따라 변외에 카룬 20여 곳을 설치하고 병사를 파견하여 순찰하여 奸民이 越邊하고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이는 실로 심원한 계책이며 법도를 세운 것이 상세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가 넓고 산이 깊고 수목이 조밀하여 조사를 두루 하기가 어려워 전부터 점차 奸民이 이익을 도모하여 숨어들었으니, 처음에는 수렵과 벌목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어 금을 캐고 토지를 개간하게 되었으며, 후에는 直隸와 山東 등지의 遊民이 이곳에 모여들어 무리의 많음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산속에 모여 집을 짓고 토지를 경작하던이 이윽고 한계가 없어져 최근에는 변문 일대 남북으로 수백 리에 점차 모여들어 서로 모방하여 물리쳐도 흩어졌다가 떠나지 않고 있으며, 순찰하는 관병은 수가 부족하고 힘이 미치지 못해 어찌하지 못하여 불법개간자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越邊을 금하는 것을 늦추지 않아도 저절로 느슨해지고 있으며, 邊外의 땅은 개간하지 않아도 저절로 개간되고 있습니다.³⁾

恩습의 보고는 19세기 말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의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명경과 같은 민인들이 유조변 밖의 봉금지에 들어와 토지를 경작하는 일이 이미 만연하여 “越邊의 금령은 저절로 느슨해지고 邊外의 초지는 저절로 개간되는”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황실은 여전히 민인의 출입과 개간을 허용하지 않고 조선과의 국경지대를 공한지로 유지하려는 虛邊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치6년(1867) 9월 성경장군 都興阿와 侍郎 延煦은 봉황성 바깥으로 나가 연변 일대를 살피고, 이어 조선의 兵曹參判 鄭周應, 滿浦僉使 李義明과 中江의 카룬 지역에서 만나 함께 압록강 일대의 개간상황을 조사했다.⁴⁾ 동치8년(1869) 8월 都興阿 일행은 鳳凰·靉陽·城廠·旺淸의 네 변문 밖의 정황을 조사한 후 “鳳凰 변문에서 남쪽으로 해안까지, 旺淸 변문에서 북으로 馬鹿·伊通河 등지까지 남북이 8-900리이며, 동서로는 2-300리에서 5-60리로 일정하지 않다. 모두 개간지가

2)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699-702쪽; 同治6년 6월 2일의 盛京將軍 都興阿의 奏摺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林士鉉, 『清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研究』 (臺北: 政治大學歷史系, 2001年), p. 182. 동치년간 유조변 연장에 관한 청과 조선의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이화자, 『朝淸國境問題研究』 (서울: 집문당, 2007년), 215-221쪽.

3) 同治2年 4月 15日의 恩습의 奏摺은 林士鉉, 앞의 책, pp. 180-181.

4)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705-710쪽 (『同文彙考』 原編 續, 疆界 2, 10a-13a).

96,200여 响이며 남부는 106,100여 명이다.” 특히 灤江 서쪽은 조선과 겨우 강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데,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아 달리 정착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강 부근에 30-50리는 남겨두어 경계를 확정하고 (중략) 개간을 허락받은 민인은 엄금하여 한걸음도 강을 건너는 것을 금지하며, (중략) 만약 경계를 넘어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조선에서 체포하여 변문으로 보내게 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봉황성 변외에서 정착하여 토지를 경작하는 자들이 구축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으니 유조변을 확장[展邊]하여 이들의 거주를 합법화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조선과의 사이에는 공터를 유지하고 불법도강은 엄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⁵⁾

청의 유조변을 조선과의 경계 쪽으로 확장하여 개간[展邊開田]하자는 논의는 이미 18세기 중반 옹정-건륭년간에도 등장한 적이 있었다. 당시 유조변 확장이 제안되었던 것은 불법 개간민이나 도강 이주자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압록강 일대에서 빈발하는 범월과 불법채삼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군 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성경장군이었던 나수투(Nasutu, 那蘇圖)와 달당가(Daldangga, 達爾當阿)는 압록강의 모래톱인 망우초에 수군 초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일대의 지리 조사 및 병력 이동 문제까지 모두 검토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었다. 그러나 국경지대에 병사와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경우 범월이 더욱 잦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 일대를 공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조선의 강력한 반발로 망우초 초소 건설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⁶⁾ 100여 년이 지나 똑같은 지역, 즉 봉황성 변외의 조선과의 국경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다시 양국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똑같은 장소였지만, 논의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달랐다. 18세기 중반의 논의가 국경지대에서 팔기군을 주둔시키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면, 19세기 중반의 논란은 증가하는 불법 이주민을 관리할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양국의 국경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100여년 사이에 정반대의 결론으로 나아갔다. 압록강 일대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한지로 유지한다는 청과 조선의 오랜 합의는 187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光緒 元年(1875) 10월, 황제는 압록강 입구에 위치한 大東溝 일대에서 이미 토지를 개간한 곳은 모두 일률적으로 升科하게 하고, 기인과 민인을 막론하고 토지를 개간한 자는 모두 戶口冊籍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流民이 邊地에서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금령이 극히 엄하였다. 다만 이미 荒地를 개간한 것이 오래된 경우 중전에 또한 일찍이 유지를 내려 徵租를 허락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의 토지는 小民들이 개간한지 오래되었고 조세를 즐거이 납부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과거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민생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⁷⁾

5)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724-725쪽 (『同文彙考』 原編 續, 疆界 2, 20b-21b). 이들은 또한 “인민을 먼저 하고 치변을 나중으로 하며, 조선국왕에게 변계를 확장하는 것은 1-2년 사이에 갑자기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리고 변경 방어에 신중을 기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林士鉉, 앞의 책, pp. 182-183.

6) 김선민, 「雍正-乾隆年間 莽牛哨 사건과 청-조선 국경지대」, 『중국사연구』 71집 (2011년).

7)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769-770쪽 (『同文彙考』 原編 續, 疆界 2, 43b-44b).

大東溝 일대 개간지에서 청이 세금을 징수하기로 한 이듬해인 光緒2년(1876), 조선은 같은 압록강 인근의 국경지대인 沙河子 지역에 청의 관아가 설치될 계획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조선조정의 반응은 옹정-건륭년간 망우초 초소 설치 당시와 매우 유사했다. 조선은 먼저 청이 오랫동안 법으로 국경지대의 개발을 금지하고 空閒地를 유지해 왔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선례에 따라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邊界 근처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은 엄히 금지되어온 것으로, 이미 天朝의 成憲이 있습니다. (중략) 지금 이 沙河子의 성을 쌓고 관아를 설치하는 지역은 小邦의 변경과 겨우 좁은 강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煙火와 鷄犬을 지척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으니, 피차의 백성들이 쉽게 섞이고 숨을 수 있으며 물자를 교역하여 몰래 넘나들게 된다면 우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⁸⁾

조선의 항의에 대해 광서제는 옹정제와 건륭제가 했던 것처럼 지방관에게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광서3년(1877) 정월, 署盛京將軍 崇厚 등은 국경지대의 개간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沙河子 개발은 필연적임을 강조했다.

奴才 등이 앞드려 살피건대, 과거 봉황 변문 밖에 특별히 일단의 閒荒을 남겨두고 백성이 경작하는 것을 금한 것은, 원래 中外를 격리시킴으로써 사람과 물자가 어지럽게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뒤로 변경의 防範은 널리 행하기 어려워지고 流民의 개간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중략) 최근에는 개간한 땅이 갈수록 많아져 강가에까지 직접 맞닿게 되어 빈 땅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중략) 沙河子 지역에 設官하고 駐札하는 것은 피차의 流民이 혹 불법으로 국경을 넘을까 염려한 것으로, 관이 가까이에서 엄밀하게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략) 봉천성 변경의 상황은 이미 升任 侍郎 延煦 등과 전임 署將軍 尙書 崇實이 누차 조사하여 상세히 보고하였으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⁹⁾

崇厚가 인정하듯이, 유조변 동단 바깥 변외의 조선과의 경계지역은 이미 개간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 민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지역을 공한지로 비워둠으로써 양국의 국경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선의 주장, 즉 국가가 虛邊을 강제하여 무인지대를 유지해야 경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민인의 자발적인 이주와 경작, 즉 實邊의 흐름 속에 이제 불가능한 허상이 되고 말았다. 압록강 일대 국경지대는 점차 개방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두만강 일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광서7년(1881) 길림장군 밍안(Minggan, 銘安)과 吳大徵이 土門江 동북쪽 황무지를 개간할 것을 청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 “土門江 동북쪽 일대 황무지는 조선과 겨우 하나의 강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과거에 불법 개간을 금지하였다. 吳大徵이 현재 과거의 규정을 바꾸어 사람을 불러 경작시키고자 하니, 의논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라. 즉시 예부로 하여금 조선국왕에 咨會하여 이번의 개간은 官에서 진행하는

8)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772-773쪽 (『同文彙考』 原編 續, 疆界 2, 45a-46a).

9)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776-778쪽 (『同文彙考』 原編 續, 疆界 2, 47a-47b).

것이니 邊界의 소속 관원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라.”¹⁰⁾ 이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국경지대의 개발과 거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말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범월과 개간을 둘러싼 갈등을 청과 조선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왔는지, 그리고 국경지대 관리에 대한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국경 조사와 협상으로 나아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청의 동북변경 정책과 대외관계에서 발생한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 청의 동북변경 정책의 변화는 민인의 지속적 유입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열강의 침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에 걸쳐 토지를 찾아 생계를 해결하려는 민인의 욕구는 이미 청 황실의 동북 출입 금지령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1860년대부터 러시아의 만주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의 영토와 부족민에 대한 청의 지배가 점차 위협을 받게 되었다.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으로 청은 아무르 강 북쪽 전체와 우수리 강 동쪽의 영토를 상실했고, 그 결과 이 일대 부족민과 청의 오랜 조공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청은 동북지역의 광대한 완충지를 상실하고 러시아에게 만주의 심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 증가하는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移民實邊, 즉 민인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청의 백성으로 변경을 채우는 것이었다. 민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인의 군사력으로 변경을 방어한다는 기존의 정책은 민인의 이주를 허용하고 민인의 거주로 변경을 지킨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청의 동북변경 정책이 虛邊에서 實邊으로 전환하던 바로 그 시기에 조선의 이주민 역시 국경지대로 진출하고 있었다. 변경과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던 19세기 말의 청은 점차 조선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불법도강과 토지개간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이 시기 청과 조선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청은 조선에 대한 과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으나, 서양 각국은 청과 조선의 배타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조선의 대청인식에도 영향을 끼쳤고 조선조정으로 하여금 청과의 관계에서 자주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다. 두만강 북쪽 지역을 경작하는 조선인 이주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은 과거의 전통적인 위계관계에 입각하여 조선에게 “屬國”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한 반면, 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自主國”으로서의 입장을 주장했던 것이다.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해체되어 가는 19세기 말 청과 조선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양국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경협상이었다. 외세의 위협 속에서 자국의 변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접국과의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19세기 말 청은 동북에 대한 정책을 虛邊에서 實邊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

10)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787-788쪽 (『同文彙考』 原編 續, 疆界 2, 52a-52b).

을 방어하고자 했고, 조선은 토지를 찾는 개간민이 국경지대로 이주하는 것을 처음에는 묵인하다가 나중에는 자국의 영토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변경을 지키고 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두 국가의 근대적 욕망은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청이 의지한 것이 전통적인 조공관계에 입각한 종주권이었던다면, 조선은 19세기 말부터 동아시아 세계에 강압적으로 소개된 이른바 근대적인 외교관행을 이용하고자 했다. 본고는 양국의 국경협상을 통해 청과 조선의 전통적인 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의 절대적 권위로 유지되고 있던 국경지대가 사라지고 근대적 외교관계가 매개하는 국경선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청말 동북변경의 변화

청의 동북변경 정책의 기본 방향은 만주족과 그들의 군사적 기구인 八旗制를 통해 이 지역을 배타적으로 통치하는 것이었다. 지역 내에서 기인의 우세한 군사적·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군사조직이자 정치구조인 駐防이 행정을 관할했다.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집단의 정치·문화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한인의 이주를 금지하고, 부족민의 전통적인 정치·사회조직을 유지하여 다른 민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기인의 거주와 직업상의 유동성에 제한이 가해졌다.¹¹⁾ 동북은 또한 청 황실의 발상지로서 제국을 지탱하는 旗人의 육성지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 대해 청은 내지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기인을 보호했고, 기인 이외의 사람들은 민인이라 호칭하며 별도로 통치했다. 유조변으로 둘러싸인 성경에는 기인 외에 다수의 민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희년간부터 민정기구인 州縣 아문이 설치되어 기인을 관리하는 성경장군과 민인을 관리하는 주현아문이 병립했다. 한편 유조변 밖의 길림과 흑룡강에는 민인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는 민정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처럼 청의 동북통치는 단일한 제도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가 도입되었다. 18세기 후반까지 동북의 행정제도는 八旗制度, 州縣制度, 盟旗制度, 噶珊제도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고, 각각 旗籍戶口, 民籍戶口, 蒙民, 기타 소수부족을 대상으로 했다.¹²⁾

한인 민인의 동북 이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었지만, 청 황실은 지역에 따라 이를 다소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을 청조의 발상지이자 기인의 육성지로 보호한다는 원칙은 성경·길림·흑룡강 각지의 특성에 따라 조절될 여지가 있었다.

11) Robert H.G. Lee,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p.183-184.

12) 츠카세 스스무(塚瀬進), 「中國東北統治の變容-1860~80年代の吉林を中心に-」, 사콘 유키무라(左近幸村) 編,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跨境史への試み』(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 2008), p. 271; 구범진, 「청대 '만주'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주방체제'에서 '주현체제'로」, 『동북아역사논총』 14호 (2007년), 80-86쪽.

1776년 건륭제의 다음과 같은 上諭에서 그러한 인식의 일단이 엿보인다. “盛京과 吉林은 本朝의 발상지이니, 流民의 雜居를 허용하는 것은 만주의 풍속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평한 시절이 오래되니, 성경지방은 山東·直隸와 인접하여 유민이 점차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驅逐하면 생계를 잃게 될 것이니 州縣을 설치하여 관리하라. 길림의 경우는 원래 한인의 지역[漢地]과 인접하지 않았으니 민인을 거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유민이 점차 늘어난다고 하니 푸선 (Fesen, 傅森)에게 傳諭하여 분명히 조사하고 영원히 유민을 금지하여 영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¹³⁾ 다시 말해 청조는 성경으로의 유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지만, 길림으로의 유입은 엄격히 금지했던 것이다.

청의 동북정책과 관련하여 林士鉉은 청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동북 전역을 “封禁”한 것이 아니라 關門을 중심으로 출입을 단속하는 “關禁”을 실시했다고 지적한다. 청대 봉금령은 한 번에 동북 전역에 반포된 것이 아니었고, 극동변경의 소수민족과 한족이 거주하는 요하 일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봉금”의 실제 의미는 사람들의 개간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關門과 津口, 변방의 요충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봉금에 대한 세부조항을 보면, 대개 민인이 관문을 나갈 때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불법 벌목, 官田 침입, 圍場 출입 등에 대해서만 중형에 처했다. 따라서 청은 동북변경의 방어를 위해 “關禁”을 실시하여 관리한 것이지 “封禁”으로 토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지 민인의 동북 유입에 대한 청의 관리가 이처럼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문을 벗어나 생계를 도모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청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방입은 궁극적으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민들이 불법적으로 관을 빠져나가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관행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⁴⁾ 민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800년에 長春廳, 1810년에는 버두나 直隸廳이 설치되었고, 길림, 장춘, 버두나 세 곳에 民政기구가 설치되었다. 이것이 민인의 유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고, 1806년, 1808년, 1810년, 1824년에 잇달아 민인의 유입을 금지하는 상유가 내려졌다. 그러나 민인의 이주 금지를 계속 천명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입은 계속되었다. 또한 유입된 민인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아니었고 호적에 편입하여 과세함으로써 거주를 인정했다.¹⁵⁾

19세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된 민인의 동북 유입은 19세기 후반 내지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과 결합하여 청의 동북변경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가운데 부유한 강남지역에서 발발한 태평천국운동은 특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북의 행정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북부 평원과 남부 델타의 부유한 성들은 그동안 잉여 수입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지원해 왔는데, 태평천국군과의 오랜 전쟁으로 이

13) “諭軍機大臣等，盛京·吉林為本朝龍興之地，若聽流民雜處，殊於滿洲風俗攸關。但承平日久，盛京地方，與山東·直隸接壤，流民漸集，若一旦驅逐，必致各失生計，是以設立州縣管理。至吉林，原不與漢地相連，不便令民居住，今聞流寓漸多，著傳諭傅森，查明辦理，並永行禁止流民，毋許入境。”『清高宗實錄』卷1023, 708:1-2 (乾隆41/12/丁巳).

14) 林士鉉, 앞의 책, pp. 18-19; 62-78.

15) 塚瀬進, 앞의 논문, p. 274.

지역이 황폐화되면서 수입이 부족한 길림이나 흑룡강과 같은 곳은 과거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재정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동북의 지방관들에게 비어있는 토지는 가장 풍부하고 손쉬운 수입원이었다.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무수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관들은 토지 판매대금을 얻거나 혹은 경작지에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역 재정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태평천국군을 진압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기인 병력이 동북에서 내지의 전장으로 투입되었고,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거나 혹은 크게 다친 채 귀향했다. 변경의 통치를 담당해야 할 기인이 내지의 반란 진압에 소모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북의 치안이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¹⁶⁾

19세기 말 청이 동북변경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바꾸는 데 태평천국운동이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러시아의 진출은 그 외부적 요인이었다. 17세기 말까지 청과 러시아는 변경문제를 “어느 지역이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느 나라에 복속하느냐의 문제”로 인식했고, 그 결과 흑룡강 중상류는 엄격한 경계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넘나드는 공간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민의 관할을 둘러싸고 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청은 러시아와의 사이에 중립지대를 두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자 했고, 그 결과가 바로 1689년의 네르친스크조약이었다.¹⁷⁾ 19세기에 이르러 청이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서양 열강과 잇따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러시아는 흑룡강 일대의 국경선을 재협상하여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고자 했다. 1857년 러시아는 청과 아이훈(愛琿)조약을 체결하고 이어 1860년에 북경조약을 맺음으로써 아무르강의 북쪽과 우수리강의 동쪽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아이훈 조약 당시에는 아이훈강부터 아무르강의 서쪽은 러시아령으로, 그 동쪽에서 우수리강까지는 청의 영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2년 후 북경조약을 체결하면서 청과 러시아의 공동관리지역이었던 아무르강 남쪽 우수리강 동쪽을 마침내 러시아 영토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청과 러시아의 국경이 확정되고 우수리강 동쪽의 러시아 영토는 연해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약은 청과 아무르 강 일대의 부족민 사이에 유지되어 온 오랜 조공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외부세력과의 사이에 광대한 완충지가 사라지면서 러시아로 하여금 만주의 심장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¹⁸⁾

러시아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청의 기존 동북정책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래 우수리강 일대에는 인삼·사금 채취자들이 많았고, 정주하며 토지를 경작하는 민인은 적었다. 청이 설치한 카문은 대체로 불법 채취자나 밀렵자를 체포하고 유민을

16) Robert Lee, 앞의 책, p. 116.

17) 박대인, 「17-18세기 청-러시아 조약체제와 邊境의 재정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29쪽. 청과 러시아의 관계 및 조약 체결 과정은 Peter C. Pe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피터 퍼듀 저, 공원국 역,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서울: 길, 2012년].

18) 조명철, 「근대 일본의 팽창과 만주」,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출판부, 2010년), pp. 470-471; 홍웅호, 「1858-1898년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동북아역사논총』 14호 (2007년), 111-115쪽.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지, 국경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청은 동북의 방어를 강화해야 했지만, 팔기의 군사력은 이미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¹⁹⁾ 咸豐 말년에 이르러 변경을 방어할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동북으로의 출입을 단속하는 關禁에 대한 조문은 한낱 형식적인 것이 되어갔다. 청 말에 개정된 「現行律例」에서 이미 동북에서 關門과 津口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이 지역의 개간이 날로 확대되면서 금령이 점차 완화되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²⁰⁾ 그러나 官地와 圍場에 대한 봉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강경했다. 위태로운 청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경의 경작지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제국의 근간인 황실과 기인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황실의 입장은 단호했다. “길림위장은 원래 生畜을 길러 수렵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封堆와 카룬을 설치하여 봉금을 엄히 실시하였다. 이 지역에서 유민들이 開荒의 명목으로 몰래 禁地에 넘어 들어가 사사로이 수렵하고 삼림을 벌목하고 있다. 사람을 불러 경작한다는 招佃의 헛된 이름이 있을 뿐 조세 징수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²¹⁾ 實邊과 虛邊의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한 결과 동북의 개방과 개발이 시작된 후에도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 대한 금령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의 지방관들은 개방이 불가피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함풍 9년(1859) 길림장군 景淳과 흑룡강장군 特普欽은 공동으로 올린 상주에서 綏芬과 우수리 등지의 산장은 민인의 거주를 금지한 결과 空曠地가 되어 러시아인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곳의 산장에서 벌목·수렵·인삼채취·어업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거주하게 하면 러시아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²²⁾ 후에 特普欽은 다시 상주를 올려 “과거에는 사람을 불러 개간하는 것이 변경 방어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지금은 방어를 위해 사람을 불러 개간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招民하여 경작하게 하면 세금을 거두어 예산[度支]을 보충할 수 있고 빈 땅에 거주민이 생겨 러시아의 침입을 방어”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지적했다.²³⁾ 1860년대 이래 동북지역의 지방관들은 계속해서 봉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1895년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동북의 개방은 부분적인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동북의 봉금지기가 개방되고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개편은 불가피했다. 1875년 署理盛京將軍에 임명된 崇實은 황제에게 제출한 「變通奉天吏治章程」 일곱 개 조항에서 성경장군의 지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기인과 민인에 관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내지의 행정

19) 塚瀬進, 앞의 논문, p. 275.

20) 林士鉉, 앞의 책, pp. 78-79.

21) 『軍機處上諭檔』(林士鉉, 앞의 책, p. 72에서 재인용).

22) “又諭, 景·特普欽奏, 會籌保護靺山, 藉杜夷人侵越一摺, 綏芬·烏蘇里等處山場, 向禁居民潛往, 地方空曠, 以致俄夷人船得以闖入. 該將軍等奏稱, 靺山開採, 需費較繁, 惟令攬頭招募人夫, 前往保護, 聽其自謀生計. 該處地廣山深, 伐木·打牲·採菜·捕魚, 均可獲利. 明春並可布種口糧, 以資接濟. 似此厚集人力, 漸壯聲威, 夷人當不俟驅逐而自退等語.” 『清文宗實錄』卷294, 302:1-2 (咸豐9/9/己卯).

23) 咸豐11년(1861) 特普欽의 상주는 『宮中檔咸豐朝奏摺』(林士鉉, 앞의 책, pp. 69-70에서 재인용).

체제를 모방한 崇實의 개편안이 황제의 비준을 얻음에 따라 성경장군은 이제 기인과 민인을 포함하여 지역의 모든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는 동북에서 팔기의 관할권을 약화시키고 민인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⁴⁾ 성경에 이어 길림에서도 개편이 시작되었다. 1877년부터 1883년까지 길림장군을 역임한 명안(銘安)의 보고에 따르면 이 시기 동북에는 과거 이 지역의 군사력을 지탱하던 기인이 쇠퇴하면서 치안이 악화되어 마적이 횡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민인의 유입이 증가하여 과거 기인을 주로 상대하던 행정기구로는 통치가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민인과 관련된 각종 살인·절도·호적·혼인사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여전히 기인 훈련이 본업이고 한문에도 익숙하지 않은 協領 아문 등 지방 팔기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변경의 민인을 관리하기 위한 민정기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러시아 및 조선과의 대외업무와 국경방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다.²⁵⁾

지방관의 제안이 수용되면서 동북에는 새로운 행정기구가 잇따라 설치되었다. 먼저 봉천일대에서는 광서2년(1876) 鳳凰廳이 설치되고 동시에 岫巖廳은 岫巖州가 되었으며 大東洵 지역에는 安東縣이 설치되었다. 광서3년(1877)에는 봉천부에 속해있던 興京廳이 興京直隸廳으로 승격되어 桓仁縣과 通化縣을 관할했다. 또한 東邊 兵備道가 설치되어 鳳凰廳과 興京廳 및 소속 주현을 관할했고, 昌圖廳이 昌圖府로 승격하여 奉化縣과 懷德縣을 관할했다. 광서5년(1879)에는 海龍廳이 설치되었고, 이듬해에는 康平縣이 설치되어 昌圖府에 귀속되었다. 한편 광서8년(1882) 吉林廳은 吉林府로 승격되어 伊通州와 敦化縣을 관할했고, 賓州廳, 雙城廳, 五常廳이 설치되었다. 광서15년(1889) 長春廳이 長春府로 승격되어 賓州廳·雙城廳·五常廳·버두나(伯都訥)廳 및 農安縣을 관할했다. 이로써 동북행정의 중심은 기인에서 민인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기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대신 이 지역으로 유입한 이주민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가 되었다.²⁶⁾

Ⅲ. 조선인의 범월과 개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동북지역으로 이주하는 청인들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경작할 토지를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는 조선인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과거에는 조선인의 범월의 이유가 주로 사냥이나 인삼채취였다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토지를 경작하고 거주하기 위해 도강하는 자들이 증가했다. 백두산 동쪽의 무산과 회령, 중성, 온성 등지의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고, 廢四郡 지역에서는 압록강을 넘었다. 두만강 일대에서 범월자들이 특히 많았다. 19세기 전반까지 압록강 중상류의 폐사군 일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청과 조선 모두 상호간의 범월을 막기 위해 경계와 순찰을

24)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鄭州: 中古古籍出版社, 2003), pp. 608-609.

25) 塚瀨進, 앞의 논문, pp. 278-279.

26) 李治亭 앞의 책, p. 610; Robert Lee, 앞의 책, pp. 185-186.

강화하여 범월이 쉽지 않았던 데 비해 두만강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의 범월이 청에게 알려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방관을 문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함경도 일대에서는 범월자를 적발해도 이를 묵인하고 조정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²⁷⁾

19세기 후반 이래 동북변경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청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조선 측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거주하는 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청은 정기적으로 수색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초소를 상설적으로 유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헌종 13년(1847) 평안도 泰川縣監 李源達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은 압록강 연변에 5리, 혹은 7-8리마다 병사를 배치하여 월경을 감시한 반면, 청의 방수처는 강에서 160-170리 밖에 6-7곳에 설치되어 있어 청인들이 잠입하기가 쉬웠다. 고종 7년(1870)에는 청인들이 평안도 碧潼郡에 침입하여 민가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의 관리들은 보복으로 청인들의 침자를 효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²⁸⁾ 청인들의 민가 습격은 이듬해에도 계속 이어져, 평안도 厚昌郡에 잠입하여 민가를 습격한 청인들을 조선의 군병이 물리치고 후창군수가 압록강 대안지역에 군관을 파견하여 정탐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²⁹⁾ 한편 1860년 체결된 북경조약으로 러시아가 우수리강 동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조선은 러시아와 접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인들도 두만강 일대에 출몰하게 되었다. 고종 3년(1866) 함경감사는 러시아인들이 慶興과 穩城 일대에 침입하여 조선인들과 접전을 벌였음을 보고하기도 했다.³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인들의 도강과 불법개간은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의 길림 延吉을 가리키는 “間島”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간도의 범위는 넓게 만주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압록강 대안 지역은 “西間島,” 두만강 대안 지역이 흔히 “北間島”로 불리었다.³¹⁾ 김춘선에 따르면 서간도에 조선인 촌락이 형성된 것은 1860-70년대였고, 북간도에는 이보다 늦은 1880년대에 본격적으로 조선인의 이주가 진행되었다.³²⁾ 1869-1870년 함경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흉작으로 두만강 대안지역으로의 불법도강은 더욱 증가했다.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청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同治9년(1870), 조선에 큰 우박이 내려 국내가 기근에 빠지자 아사자가 길을 메웠다. 韓民은 이윽고 금령을 범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강을 건너 월경하였으며 [韓民 가운데 많은 자들이 러시아국 경내로 들어간 것도 바로 이 때

27)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서울: 경세원, 2000년), 269-274쪽.

28) 강석화, 앞의 책, 277쪽.

29) 고종 9년(1872) 후창군 군수는 軍官 崔宗範과 金泰興, 首鄉 林碩根을 압록강 북쪽의 江界, 慈城, 厚昌, 三水 대안지역, 즉 오늘날 중국 길림성 集安, 通化, 渾江 일대로 파견하여 정찰하게 하였다. 그들이 제출한 정찰 보고서가 『江北日記』이다. 고구려연구재단 편,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2004년), 423-443쪽.

30) 당시 러시아인의 침입에 대해 조선은 봉황성에 자문을 보내 보고하였다. 『조선고종실록』 권3, 96:b (고종 3/12/29).

31) 張存武,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引書館, 1987), p. 178;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서울: 혜안, 2011), 151-156쪽.

32) 김춘선, 「북간도지역 한인사회의 형성과 토지소유권 문제」, 『전주사학』 6 (1998), 179-180쪽.

다], 처자를 팔고 걸식하며 살았다.”³³⁾ 기근에 더하여 조선 관리의 학정도 불법도강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함경도의 茂山, 會寧, 鐘城, 穩城, 慶源, 慶興 등 六鎭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이유는 “오로지 수령의 탐학 때문이니, 苛政이 猛虎보다 심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졌다.³⁴⁾

자연재해 외에 조선 서북지역의 인구증가 역시 대규모 월강 개간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두만강 중하류의 육진 지역과 압록강 상류의 폐사군 지역은 토질이 황폐하고 경작이 어려워 인구가 희박한 곳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648년에 평안도의 인구는 조선 전체 인구의 9.54%, 함경도의 인구는 4.51%를 차지했다. 1864년에 이르면 평안도 인구는 조선 전체 인구의 12.78%로, 함경도 인구는 10.96%에 달하게 되었다. 함경도 내에서도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南關보다 경제가 낙후한 北關, 즉 六鎭과 三水·甲山의 인구증가가 더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이렇게 팽창한 인구를 수용할 토지가 많지 않았다. 특히 六鎭과 三水·甲山 일대는 토지가 매우 척박한 반면, 두만강 북쪽대안은 토지가 비옥하고 상대적으로 공지가 많았다. 경작할 토지가 필요한 조선의 변민들에게 월경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범월에 대한 조선의 처벌이 약화된 것 역시 조선인의 도강 개간에 기여했다. 1867년 체포된 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었고, 월경하다가 붙잡힌 자가 죄를 뉘우칠 경우 석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이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월사건을 은폐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868년부터 월경자 발생에 대한 지방관 처벌을 경감하기 시작했고 1871년에 이르러는 지방관을 아예 처벌을 하지 않게 되었다.³⁵⁾

고종8년(1871) 厚昌 郡守 趙瑋顯은 병사를 동원하여 폐사군과 삼수·갑산 일대에 잠입하여 목재를 불법채취하는 청의 유민들을 소탕했다. 이듬해 그는 軍官 崔宗範과 金泰興, 首鄉 林碩根을 압록강 북쪽의 江界, 慈城, 厚昌, 三水의 대안지역, 즉 오늘날 중국 길림성 集安, 通化, 渾江 일대로 파견하여 정찰하게 하였다. 이들은 1872년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여일간 압록강 상류 북쪽일대를 살펴보고 돌아와 일종의 정찰보고서인 「江北日記」를 남겼다. 이에 따르면 후창군 대안에 거주하는 청의 유민들은 무리지어 거주하면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한편 崔宗範 등은 조선인 이주자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했다. 1872년 당시 압록강 상류로 월경한 조선인은 6,000-7,000명이었는데, 이 지역은 봉황성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해서 도강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波猪江(渾江) 일대에는 유조변의 동쪽 邊外 지역으로 관리를 피해 조선인이 월경하여 정착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1869-1870년 대기근 시기에 월경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薙髮易服”하였고 “假胡”라 불렸다. 두만강 대안으로 이주한 자들과 달리 압록강 대안으로 월경한 조선인들은 대체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청인들에게 고용되어 토지를 경작하거나 금광에서 일하거나 수렵에 따라다니며 생계를

33) 吳祿貞, 「延吉邊務報告」, 李澍田 編 『長白叢書』 初集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95), p. 60.

34) 이지영, 「19世紀 末 清朝의 對 間島朝鮮人 政策 - 越墾 韓人의 地位문제와 관련하여」, 『명칭사연구』 32 (2009년), 260쪽.

35) 이화자, 『조청국경문제연구』, 230-232쪽.

유지했다.³⁶⁾

한편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주로 함경도 무산 출신이었으며, 1860년대에 이미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다. 1870년 당시에 함경도 삼수군에서 평안도 후창군까지 압록강 대안에 있는 18개 촌락에서 조선인 193호, 1673명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고, 후창군 대안에는 277호, 1465명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³⁷⁾ 지방관이 집단 범월과 이주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종6년(1869) 회령부사 洪南周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월강하여 개간하는 길 뿐이라고 여기고, 주민들에게 개간 청원서를 내게 하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두만강 대안을 경작하게 했다. 같은 해 강계군수는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서간도 일대의 땅을 28개 면으로 분할하여 강계군, 초산군, 자성군, 후창군에서 각각 통치하게 했다. 조선 지방관의 이러한 조치는 곧 도강과 개간을 허용하는 것이었다.³⁸⁾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지역에서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여 토지를 경작하는 상황에 대해 청은 처음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성경장군이나 길림장군이 관리를 파견하여 단속하거나 조선인을 쇠환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 지역으로 들어온 청의 流民에 대해서도 단속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청의 봉금이 해제되어 거주와 경작이 가능해졌다고 여겼고, “이곳이 청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국민 모두에게 개간과 거주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믿었던 것이다.”³⁹⁾

그러나 청이 조선인의 이주와 집단 취락을 계속 방치할 리는 없었다. 오늘날 연변 일대에 설치되었던 길림 최후의 봉금지인 南荒圍場이 1881년부터 개방되고 훈춘 초간국이 설립되면서 조선인 범월자와 취락은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1881년 훈춘 招墾局의 李金鏞은 실지 답사과정에서 조선인이 개간한 토지의 면적이 8천여 畝에 이르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길림장군 鳴安과 邊務總督 吳大澂을 통해 북경에 보고되었다. 훈춘에 부도통을 설치되고 일대가 개발되면서 두만강 대안을 경작하는 조선인의 수가 증가하고 심지어 함경도 관리가 토지 執照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鳴安은 두만강 북쪽을 경작하는 조선인에게 조선 관리가 토지 집조를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엄금해야 하며, 조선인 역시 “天朝의 赤子”임을 고려하여 이들을 쇠환하기보다 경작을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앞으로 더 이상 이주가 증가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鳴安은 월강한 조선인은 중국의 영토를 경작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백성[中國之民]이며, 중국의 정교에 따라서 징세는 물론 이들에게 “중국의 의복을 착용[易我冠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⁰⁾ 鳴安이 인용한 禮部의 보고에는 이러한 청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36) 이화자, 앞의 책, 236-241쪽.

37) 『江北日記』, 6월 3일; 8일.

38) 당시 흥남주의 조치는 “庚辰開拓”으로도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회령 대안의 평야 일부를 개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1881년부터 두만강 북쪽 500리에 달하는 광대한 토지로 확장되었다. 김춘선, 앞의 논문, 181쪽; 강석화, 앞의 책, 281쪽.

39) 강석화, 앞의 책, 282-283쪽.

40) 楊昭全·孫玉梅, 『中朝邊界史』(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pp. 232-237.

해당 백성들은 이미 중국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니 중국의 백성입니다. 해당 장군 등이 청한 바에 따라 그들에게 領照納租를 허락하는 것 외에 반드시 우리 관도로 예속시켜 우리의 정교를 따르도록 해야 하며 기한을 정하여 우리의 의복으로 갈아입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잠시 운남·귀주의 苗人들처럼 일시적으로 각자 편의에 따르도록 합니다.⁴¹⁾

황제는 밍안의 제안을 수용했다. 조선인들이 이미 이주하여 개간한지 오래되었음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권을 발행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아울러 이들을 훈춘과 돈화현으로 나누어 귀속시켜 관할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결정은 곧 조선인들을 중국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의 조선인 귀화정책은 조선조정의 반발을 초래했다. 조선인을 청인으로 만들 수는 없으며, 조선인을 청에 예속시킬 경우 러시아나 일본 역시 그러한 선례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양국은) 습속이 이미 다르고 風土가 맞지 않을뿐더러, 월경·개간한 해당 백성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번엔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한 것 때문에 관도에 예속 시키어 만약 (이들이) 政教를 따르지 않고 사단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양쪽 변경에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조선은 북으로 러시아, 동으로 일본과 모두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그곳에도 변경의 백성들이 토문에서처럼 경계를 넘어 점유한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天朝의 사례를 원용한다면, 비록 사대교린에 따라 형세가 달라지겠지만, 그에 따르든 어기든,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⁴²⁾

조선은 황제에게 길림의 훈춘과 돈화현 지방관으로 하여금 조선의 유민을 본국으로 쇄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서제는 조선인 개간자들을 1년 안에 본국으로 쇄환시키기로 하고 이 결정을 조선국왕에게 알렸다. “조선의 빈민들이 길림의 변방지역을 점거하여 개간하는데, 그들을 그대로 본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나, 만약 즉시 그들을 쫓아내어 국경 밖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流離하여 살 곳이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를까 염려된다. (중략) 1년 안에 모두 숫자대로 거두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짐의 體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⁴³⁾

그러나 이로써 청이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41) “諭軍機大臣等，銘安吳大澂奏，朝鮮貧民，占種吉林邊地，遵旨妥議覆陳一摺。吉林與朝鮮，向以圖們江為界，該國民人越界墾種，前據禮部議奏，該民人等，既種中國之地，即為中國之民。除照該將軍等所請，准其領照納租外，必令隸我版圖遵我政教。並酌立年限，易我冠服，目前姑照雲貴苗人暫從各便等語。茲據銘安等遵旨詳細妥議，請照該部所議辦理。朝鮮民人，越界墾地，本應懲辦，歷奉成憲，禁令甚嚴。惟現在該民人等開墾有年，人數衆多，朝廷務從寬大，不究既往。即著准其領照納租，並由銘安吳大澂，派員履勘，查明戶籍，分歸琿春暨敦化縣管轄，所有地方詞訟及命盜案件，均照吉林一律辦理。該將軍等務當體察情形，將應辦事宜，妥籌經理，毋致滋生弊端。並督飭該地方官隨時妥為撫綏，俾該民人得以安業，用副一視同仁至意，該部即咨照該國王知悉，嗣後仍當嚴申禁令，儻再有私行越界情事，定當照例懲辦不貸，將此諭知禮部，並諭令銘安吳大澂知之。”『清德宗實錄』卷143，17:1-18:1（光緒8/2/壬戌）。

42) 方郎, 『吉朝分界案』(이지영, 앞의 논문, 263쪽에서 재인용). 吳祿貞의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선 자문이 소개되어 있으나 러시아나 일본과의 경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吳祿貞, 『『延吉邊務報告』, p. 61.

43) 『국역 通文館志』(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제3집, 283쪽.

조선인 이주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1885년 吉韓通商局을 설치하고 통상과 세무 뿐만 아니라 개간사무를 겸하게 했다. 또한 會寧府 대안에 和龍峪 통상국, 鍾城府 대안에 光霽峪 分卡, 온성부 대안에 西步江 分卡를 설치하여 아직 주현이 세워지지 않은 지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韓民 개간자를 安置하고 韓民과 華民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여 韓民을 보호하고 위무하는 것”이었다. 또한 통상국에 더하여 越壘局을 설치하고 통상국 관리가 겸임하게 했다. 越壘局은 圖們江 북쪽 700리에 달하는 땅을 한민의 전용 개간구역으로 정하고 5년간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청의 이러한 정책은 두만강 대안에 조선인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1886년 당시 훈춘 일대로 이주한 조선인이 2350호, 12,490명에 달하게 되었다.⁴⁴⁾

19세기 말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넘어간 것은 조선의 인구증가와 토지부족이라는 내부적 팽창요인과 청의 동북개방과 개발이라는 외부적 흡수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이었다. 과거에는 접근이 금지되었던 국경지대의 공한지가 조선인들에게 개간과 거주 가능한 땅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청의 동북변경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동북변경에 대한 금령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조선과의 국경지대 역시 개방과 이주의 흐름에 노출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사람들이 접근하고 출입하는 일은 만주족이 국가를 세우기 전부터 있었고, 청과 조선의 외교 현안으로 빈번히 거론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현상은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과거의 범월과 도강이 주로 단기적인 채삼이나 수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거주와 토지경작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국경지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청이 조선에 대해 더 이상 절대적이고 유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청의 위상이 쇠락하면서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종주국의 전통적인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국제법에 기반한 근대적 외교관계가 소개되면서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제삼국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해야 했다. 국경지대의 조선인 이주민 처리 문제는 청과 조선이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제기되었다. 결국 종주국과 조공국의 관계가 근대적 용어로 재정리되기 전까지 두만강 대안의 조선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IV. 청과 조선의 국경 교섭

청과 조선의 두만강 유역의 국경교섭은 1882년 훈춘 초간국이 설립된 후 청의 관리들이 두만강 대안지역에서 조선인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비롯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청의 관리들은 월경·개간하는 조선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지급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호적을 조사하여 훈춘과 돈화현에 나누어 귀속시킬 것을 상주하였고, 이듬해 황제는 이러한 제안을 윤허했다. 반면 조선은 조선인이

44) 이지영, 앞의 논문, 264쪽.

청으로 귀화하는 것에 반발하고 이들을 모두 쇠환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의 이러한 요구가 현지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굶주림을 피해 도강했고 오랫동안 힘들여 개간한 땅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이에 광서9년(1883) 4월 돈화현의 관리는 월강한 조선인 유민들을 추수 후에 모두 刷還할 것을 공지하고 이를 조선 會寧과 鍾城의 부사에게 알렸다. 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조선인들은 청의 요구사항에 깔려있는 전제, 즉 조선인들이 국경을 벗어났다는 가정 자체에 도전하기 시작했다.⁴⁵⁾

당시 청의 대조선정책은 화이질서에 입각한 명목상의 종속관계에서 강력한 간섭을 통한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전환하고 있었다. 1874년 일본군의 대만출병과 1879년 일본의 류큐 합병은 청이 조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李鴻章은 조선을 법적으로 청에 종속시키는 것, 즉 “기존의 ‘自主’를 박탈하고 조선을 국제법상의 ‘屬國’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청과 조선의 특수한 종속관계를 서양열강에게 인정받고자 했다.⁴⁶⁾ 李鴻章을 비롯한 청의 통치자들은 조선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직접적인 개입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근대적 조약체제나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국주의적·상업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 시기 청의 비공식적 제국주의 정책(informal imperialism)은 청-조선의 관계가 양자간 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⁴⁷⁾ 다시 말해 청은 전통적인 조공관계가 부여했던 유일무이한 중주국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근대적인 국제법이 상정한 속국의 지위를 조선에 강제함으로써 다른 열강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배타적이고 특수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조선이 청에게 적극적으로 현지조사와 국경조사를 요구한 배경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생존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아울러 근대적인 국제법적 인식의 확산이 있었다. 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법을 활용한 것처럼, 조선 역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국제법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秋月望이 분석했듯이, 경계에 대한 조선의 강경한 입장과 대청관계에 대한 인식상의 전환은 1884년 조선의 동북 변방 출신인 副護軍 池慶龍이 올린 상소문에서 잘 드러난다. 이 글에서 지경룡은 “청과의 경계인 土門江은 두만강이 아니라 海蘭江이며” “세계 각국이 크고 작은 나라를 따지지 않고 교섭하는 날을 당하여 (況此四瀛交涉, 無大無小之日)” 청에게 조선의 주장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경룡의 이러한 언급에는 강한 민족의식, 전통적인 화이관념, 그리고 국제법적 질서에 대한 인식 등이 불균질하게 드러나 있었다.⁴⁸⁾ 전통적 조공관계와 근대적 만국공법의 공존과 대립은 지경룡 개인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청과 조선의 관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45) 앙드레 슈미드, 저, 정여울 역, 『제국 그사이의 한국 1895-1919』, (서울: 휴머니스트, 2007년), 478-479쪽.

46) 오카모토 다카시 저, 강진아 역,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소와당, 2009년), 96-111쪽.

47) Kirk Larsen,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on Korea 1850-1910*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p. 11-14.

48) 秋月望, 「朝中勸界交渉の發端と展開-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報』 132輯 (1989年), pp. 85-90;

특징이기도 했다.

1883년 두만강 북쪽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청의 쇄환 요구에 대해 같은 해 7월 조선의 鍾城 府使는 청에 보낸 문서에서 土門江과 두만강은 같은 강이 아니라 실제로 두 개의 다른 강이며, 양국은 본래 두만강이 아니라 土門江을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두 강 사이의 토지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다름아닌 강희년간에 설립된 백두산 정계비였다.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土門江을 경계로 국경을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鍾城 부사는 이 土門江을 두만강으로 볼 수 없으며 두 강의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각각은 분명히 두 개의 서로 다른 강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서와 함께 옛 지도의 복사본과 강희년간 정계비의 비문을 함께 보내고, 함께 인원을 파견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조사하여 土門江의 발원지를 밝혀 경계를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다.⁴⁹⁾

당시 이 지역에서는 청인이 조선인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조선인이 청인을 구타하는 등, 양국의 백성들 사이의 잦은 충돌로 형사·민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두만강 북쪽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백두산 정계비에 쓰인 토문강, 즉 양국의 경계는 海蘭河이라고 확신하였고 따라서 자신들이 개간한 토지를 조선 영토로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시 함경북도 兵使는 조선조정이 직접 禮部와 北洋大臣과 교섭하여 土門江의 남쪽을 분명히 밝혀 두만강 북쪽을 조선의 영토로 확보하고, 백두산의 분수령에 새로운 비석을 세우고 土門江邊에 목책을 설치하여 조선인들로 하여금 들어가 거주하게 하면 영토를 되찾고 변방의 우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1885년 조선은 정식으로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여 국경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土門江의 남쪽 땅은 실로 敝邦에 속한 것이며, 敝邦의 백성이 敝邦의 영토에 거주하는 것은 결코 不可하지 않다”고 주장했다.⁵⁰⁾

조선의 자문을 받은 청의 총리아문은 조선의 감계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당시 조선은 전통적으로 조공관계 업무를 관장해 온 예부가 아니라 국제법적 요소를 갖춘 총리아문이나 북양대신아문과 접촉함으로써 새로운 청-조선관계를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총리아문에서 청의 대외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이홍장은 조선의 이러한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청은 토문강이 해란강이라는 조선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로 해란강의 발원지는 정계비의 소재지와 떨어져 있으며, 경계 설정은 반드시 연속된 하천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⁵¹⁾ 특히 길림장군 希元은 1881년 이래 조선이 자국의 유민들을 쇄환할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시키고 이는 곧 그들 스스로 토문강을 경계로 북쪽은 청의 영토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희년간의 백두산 정계비는 오래 전에 세워진 것으로, “비석은 옮겨질 수 있으나 강은 千古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논할 때는 “비석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강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양대신을 비롯한 북경의 관리들 역시 조선의 주장이 속임수라고

49) 張存武, 「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 pp. 179-180; 슈미드, 앞의 책, 479-480쪽.

50) 국역 『通文館志』 3집, 294-295쪽.

51) 秋月望, 앞의 논문, pp. 92-93.

주장하고, 감계에 참여하는 관원들은 경계를 분명히 하여 판도를 밝히고 藩屬을 體恤하고 邊民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상주했다.⁵²⁾

결국 청과 조선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강희년간에 세워진 穆克登의 비석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의 관리들은 穆克登이 청과 조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의 수원을 조사했고 그 결과 석비를 세웠다고 믿었다. 만약 국경문제에 모호한 점이 있다면 穆克登의 비석을 근거로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청의 관리들은 국경 교섭에서 비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선과 달리 청에서는 황실만이 피상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지리 지식을 논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穆克登의 정계비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도 청의 관리들이 석비를 불신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또한 穆克登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버린 것도 청의 의구심을 키웠다. 여러 가지 증빙자료와 문서를 준비한 조선과 달리 청은 穆克登의 비석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청의 감계위원에게는 비석이 아니라 강의 수원이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야 했다.⁵³⁾

1885년 9월 청의 감계위원 秦煥, 德玉, 賈元桂와 조선의 감계사 李重夏는 회녕에서 만나 교섭을 시작했다. 후에 乙酉勘界라 불린 당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장백산은 조선에서는 백두산이라 칭한다. 천지의 남쪽에 있는 大幹嶺을 중국에서는 黃沙嶺이라 하고 조선에서는 천지 남쪽을 分水嶺이라 하는데, 여기에 穆克登의 비석이 있다. 비석의 서쪽에 있는 도량은 압록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동쪽에 있는 도량을 중국에서는 黃花松溝子라 칭하는데, 이는 아래로 장백산을 돌아 동북으로 흐른다. 동남쪽에 돌담과 흙담이 있고, 높은 봉우리를 지나면서 도량은 갑자기 좁아지고 양쪽의 흙담은 높이가 몇 丈에 달한다. 조선에서는 이를 土門江이라 부르지만 이것은 穆克登의 비석에서 9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수십 리 아래의 도량에서 물이 시작되어 북쪽으로 흘러 圖們江이 아니라 松花江으로 흘러들어간다.”⁵⁴⁾ 청의 관리들은 석비의 동쪽에 있는 물줄기는 圖們江이 아니라 松花江으로 들어가고, 따라서 비문에 있는 “동쪽의 토문, 서쪽의 압록”이라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穆克登이 세운 석비는 정확한 지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의 이중하는 穆克登이 경계를 조사했을 당시 양국이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면서 穆克登의 조사와 석비가 모두 사실임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석비의 문자는 모두 皇朝의 문헌에 들어있으므로 감히 다시 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다.⁵⁵⁾ 청은 두만강 상류에 있는 세 개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를 경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선은 정계비의 위치와 현지의 상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만강 상류부에서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귀국했다.⁵⁶⁾

52) 張存武, 앞의 책, p. 182.

53) 슈미드, 앞의 책, 481-484쪽. 당시 청에서는 정계비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으며, 그 의미 역시 조선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1712년 정계비 설립에 관한 청의 공문서가 모두 소실되어 증거로 삼을만한 것이 없었고, 당시 穆克登이 세웠다는 木柵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썩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서울: 혜안, 2011), 125-129쪽.

54) 張存武, 앞의 책, pp. 183-184.

55) 張存武, 앞의 책, p. 184.

원래 청과 조선의 경계 협상이 제기된 것은 두만강 북쪽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경계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었지만 1885년의 감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청과 조선은 조선인 이주자에 대한 정책을 다시 강구해야 했다. 1885년 조선에 부임한 원세개는 이듬해 총리아문에 보낸 글에서 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五道白河 상류를 土門江으로 하자는 조선의 주장은 길림 전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농민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책으로 “借地安民”을 제안했다. 경계 문제와 월강 조선인 처리를 분리시켜 경계에 대해서는 조선의 양보를 얻어내고 월강 조선인에 대해서는 “借地”의 형태로 조선인의 경작과 거주를 용인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조선의 金允植은 경계는 양보하되 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수세 대행권, 소송과 통치권은 조선이 행사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전제로 두만강의 세 지류 가운데 하나인 紅土水를 경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토문강 하류의 송화강을 경계로 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선은 해란강을 버리고 두만강으로 경계선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⁵⁷⁾ 그러나 두만강 북쪽 청의 영토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조선이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부당한 주장이었다. 이는 조선이 국제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전통적인 조공질서에 기반한 청-조선 관계에 도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⁸⁾

그나마 조선은 “借地安民”에 대한 청의 분명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1887년에 국경교섭을 재개했다. 1887년 丁亥勘界에 참여한 것은 청의 秦煥, 德玉 외에 훈춘에서 方郎이 참여하였고 길림에서도 측량사 劉虞卿과 화가 王汝舟를 파견했다. 조선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서로 다른 강이며 양국의 경계는 해란강이라는 1885년의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穆克登의 정계비와 紅土水를 경계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은 소백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한 石乙水를 경계로 주장했다. 紅土水와 石乙水의 거리는 실제로 수십 리에 불과했지만, 조선이 주장하는 紅土水는 백두산 동쪽으로 연결되는 반면 청이 주장하는 石乙水는 소백산 동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石乙水를 경계로 해야 청의 발상지인 장백산과 천지를 모두 청의 영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⁵⁹⁾ 두만강 발원지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은 두 번째 감계에서도 경계의 위치에 합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감계과정에서 원세개와 김윤식이 논의한 “借地安民”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감계가 끝난 후 청은 소백산과 石乙水를 기준으로 정계비를

56) 秋月望, 앞의 논문, pp. 94-95.

57) 정해감계에서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두 개의 강이라는 주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이화자는 을유감계 당시 이중하가 黃花松溝子에서 紅土山水까지 목책이 설치된 흔적을 발견하였고 이를 조선조정에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두만강 수원에 연결된 물증을 발견함으로써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임을 확인하였고 양국의 경계가 토문강, 즉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조선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은 정해감계에서는 토문강의 수원 문제보다는 두만강 대안 지역의 조선인 유민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129-133쪽.

58) 秋月望, 앞의 논문, pp. 96-101.

59) 이화자, 앞의 책, 145-147쪽.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부했다. 石乙水가 도문강의 발원지라는 것은 “圖典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⁶⁰⁾ 그 후에도 양국은 몇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말을 맺지 못했다.

1880년대 말 청과 조선의 국경교섭은 양국의 조공관계가 지닌 특징과 그것이 도전을 받고 붕괴되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앙드레 슈미드가 지적하듯이, “중주국과 조공국의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영토를 둘러싼 논쟁은 매우 예민하고 첨예한 문제였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서구적 담론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 청과 조선의 국경교섭은 조공관계라는 양국의 위계질서가 근대적 영토인식과 접촉하면서 나타난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양국 모두 “大國”과 “小邦”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감계 협상에 참여한 조선의 관리는 청의 관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의 관리들이 기존 조공관계의 관행과 조선 관리의 완강한 태도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고 이에 대해 분노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⁶¹⁾

근대적 영토주권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청과의 전통적인 조공관계에 대한 신념과 불안정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18세기에 이미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두만강 북쪽까지 조선의 영역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역사의식이 이미 존재했지만, 이들의 민족의식은 외부지향적인 것은 아니었고 특히 군사적인 정복을 경험한 청과의 관계에서 공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秋月望이 지적하듯이, 1880년대에 이르러 조선에서는 청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기는 했으나, 당시 “조선은 근대적 국제법이 전통적인 화이논리와 대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계와 관련하여 池慶龍이 올린 상소에는 국제법적인 세계인식과 화이질서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드러나 있는데, 이는 池慶龍이라는 한 개인의 인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과 조선의 감계 과정에서 내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었다. 경계를 양보하는 대가로 두만강 북쪽 조선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한다는 조선의 구상은 청의 “소국을 어루만지는 자애로운 태도[字小]”나 “華의 은혜”와 같은 전통적인 화이질서를 신뢰한 결과였으며, 또한 국제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었다.⁶²⁾ 청과 조선 사이의 국경 협상에서는 이처럼 전통적 조공관계의 질서와 근대적 국제공법의 질서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조정과 새로운 해석의 과정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국경지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IV. 맺음말

1985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청과 조선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동학농

60) 北洋大臣의 咨文에 대한 李重夏의 狀啓, 국역 『通文館志』 3권, 308-309쪽.

61) 슈미드, 앞의 책, 481-482쪽.

62) 秋月望, 앞의 논문, pp. 101-103.

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조정에서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파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민씨 戚族은 원세개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上國’과 ‘小國’의 관계를 내세웠는데, 이는 조선의 권력자들이 과거 청과의 속방관계에 의지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고, 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고자 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청과 조선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유하고 있던 ‘상국’과 ‘소국’이라는 인식은 이미 당시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청이 조선파병을 통보하자 일본은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회답하고 곧바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다. 일본 파병의 공식적인 이유는 공관과 상민 보호였으나, 청군의 기선을 제압하고 서울 인근을 장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였다.⁶³⁾ 이어지는 전투에서 일본의 군사력에 굴복한 청은 이제 조선이 자국의 속국임을 입증할 법적 근거도 힘도 없었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청은 더 이상 조선에 대한 배타적인 종주국의 지위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조공사절 파견, 청의 책력 사용 등 청의 종주권을 상징하는 관행들은 영구히 종료되었다. 청과 조선의 전통적인 조공관계는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함으로써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두만강 일대에서 국경조사가 진행되고 이어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충돌하는 동안 조선인 이주민의 쇄환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자격이나 토지 소유권은 가지지 못한 채 임시거주권과 토지사용권만 갖고 있는 상태였다. 광서15년(1889)에 이르러 길림장군 長順은 1881년 밍안과 吳大澂이 주장했던 토지소유권 발행과 세금 징수를 재차 제안했다. 양국의 국경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은 돈화현과 훈춘현에 대한 淸丈·編甲·升科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인 가운데 청의 영토에 남고자 하는 이들은 “薙髮易服,” 즉 변발과 중국식 복장을 통해 중국의 관도로 편입시키고 그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894년 長順은 撫墾局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월경·개간하는 조선인을 전담하여 관리하게 했는데, 撫墾局은 기존의 越墾局보다 조선인에 대한 관할업무가 훨씬 구체화되었다.⁶⁴⁾ 이후 1899년에 체결된 中朝通商條約의 제12조에서는 지금까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안전은 보장하지만 이후 월경은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1904년에는 「新定畫界防邊條約(中韓邊界善後章程)」을 체결하여 국경을 재조정했다.⁶⁵⁾

결국 동북지역에 대한 청의 “移民實邊” 정책은 두만강 대안으로 이주한 조선인들로 하여금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나아가 변방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이 필요했고 이는 조선인을 청에 入籍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다. 이지영이 지적하듯이, 처음에 청은 “자국 내의 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조선은 “외국내의 자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월경·개간하는 조선인 문제에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청과 조선 모두 “자국 내의 자국민”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청은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63) 구선희, 앞의 책, 219-220; 227-235쪽.

64) 이지영, 앞의 논문, 266-269쪽.

65) 塚瀬進, 앞의 논문, pp. 283-284.

청의 호적에 올림으로써 이들을 자국민으로 만들고자 했고, 조선은 국경교섭을 통해 문제의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만듦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⁶⁶⁾ 월경·개간하는 조선인의 문제가 국경논의로 발전하는 과정은 당시 양국의 주권에 대한 관점이 속인 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변화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주권의 근거를 사람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영토에 대한 지배에서 찾으려는 조선의 움직임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졌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군대가 동북에 주둔하면서 이 지역의 치안이 더욱 불안정해지자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경비체제를 강화해갔다. 한편 월강 조선인들 역시 단순한 범월자가 아닌 이주자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대한제국 정부에게 법적인 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조선인 월강 이주자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향력 행사는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을 무인지대 혹은 空曠地로 여기고 이 지역을 조선의 故土로 간주하는 새로운 영토의식이 확산되었던 당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했다. 1902년에 이르러 대한제국은 압록강 북쪽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徐相懋를 邊界探察官으로 파견하였고 이듬해에는 李範允을 北間島視察員으로 임명하여 두만강 북쪽으로 파견했다.⁶⁷⁾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에서 “인민에 대한 지배범위는 한 국가의 경계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⁶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국제법적 외교인식과 관행이 확산되면서 조선은 청을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上國이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협상해야 할 인접국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국민과 국토를 일치시키는 근대 국민 국가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영토가 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근대적 인식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앙드레 슈미드가 지적하듯이, 경계에 대한 개념은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강제된 것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분명한 경계선으로 규정되고 구분되어야만 하는 공간적 분리선으로 여겨진 것은 아니었다. 범월은 금지되었고 위반자들은 심한 처벌을 받았지만, 변방에까지 국가권력이 빈틈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경지대의 주요한 경제활동은 인삼 채취와 수렵이었고, 이러한 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황은 달라졌다. “영토 주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국경(porous border)을 방지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는 급격히 사라졌다.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국가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주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국경은 준수되어야 했다.”⁶⁹⁾

19세기 후반 청의 동북변경 정책과 대조선 정책을 18세기와 비교해 보면 이 시기의 특징이 더욱 분명해진다. 강희제의 백두산 정계비 설치의 인접국과의 경계선을 분

66) 이지영, 앞의 논문, 277쪽.

67) 대한제국시기 조선의 간도정책에 대해서는 秋月望, 「朝淸境界問題にみれる朝鮮の「領域觀」-「勘界會談」後から日露戰爭期まで」,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2002); 하원호,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2006);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150-172쪽에 자세하다.

68) 秋月望, 「朝淸境界問題にみれる朝鮮の「領域觀」」, pp. 132-133.

69) 슈미드, 앞의 책, 491쪽.

명히 하고 청의 영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당시 러시아와의 충돌과 뒤이은 경계 설정을 계기로 제국의 판도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가시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穆克登 일행이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조사하고 황실 발상지의 지리지식을 수집한 것은 이른바 청 제국 건설(empire building)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경계 범위를 설정한 것은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민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에서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황제의 권위에 충실히 복종하고 있는 조선을 상대로 굳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은 별로 없었다. 백두산 정계비의 설치와 위치에 대해 강희제나 후대의 황제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지 않았던 당시 양국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청의 동북변경, 특히 조선과의 국경지대가 황실의 발상지이자 기인의 육성지로 보호되기 위해 일부러 공한지로 유지되면서 경계의 범위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비록 조선인 범월자가 간혹 출몰한다 해도 청 황제는 번방을 회유한다는 취지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조선에 위임했고, 조선은 상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국경지대의 출입을 금지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비워두었다. 청과 조선 사이 국경지대의 공한지와 불확실한 경계는 청의 강력한 권위와 그에 기반한 조공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변경의 허변화와 국경지대의 공한지화는 19세기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청은 내외의 압박으로 동북에 대한 허변 정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는 곧 조선과의 국경지대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국경지대, 그리고 조선조정에 대한 청의 영향력은 과거와 같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청과 조선의 관계에 깃든 모호함, 즉 국경지대를 출입이 금지된 공한지로 유지하고 조선이 속국이면서 동시에 자주국임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청의 권위가 압도적으로 강력할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강희-옹정-건륭년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러한 모호함은 광서년간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19세기 말의 청은 속국의 자주를 허용할만한 정치·경제적인 힘이 없었다. 이제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종주국의 권위가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조약에서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국경지대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근대적 외교관계로 매개된 청과 조선은 이제 명확한 국경선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두 인접국은 길고 오랜 국경협상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